

중산층가족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Study on Improving Ways to Meet the Welfare Needs of the Middle Class Families

김유경 · 정현숙 · 임성은 · 김정숙

연구보고서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발 행 일 2011년 12월
저 자 김 유 경 외
발 행 인 김 용 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예원기획
가 격 12,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802-3 93330



머리말

경제위기 이후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새로운 경제적 위협이 대두되면서 우리 사회에서의 가족갈등 및 가족해체 등 가족안정성 약화가 심화되고 있다. 가계부채의 확대, 물가상승 및 실업률 상승 등이 지속되면서 중산 계층이 저소득층으로 유입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동 법 제15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1년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을 확정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고, 가정의 돌봄 기능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분담의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산층가족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중산층을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합적인 가족복지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중산층 관련 연구는 중산층의 규모측정, 경제위기 전·후의 중산층의 약화 등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만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서 중산층가족의 특성 및 문제점, 복지욕구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통합적인 가족정책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도 미흡하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위험에 대비하여 중산층가족을 유지하고,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산층가족의 특성, 문제점 진단 및 복지수준 등을 파악하는 가족 단위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정책’이라는 거시적인 틀 안에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가족기능을 제고하는 가족복지의 모색을 위하여 통합적인 사회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수행 및 보고서 집필을 위한 연구진의 구체적인 분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요약(김유경·김정숙)

제1장 서론(김유경)

제2장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김유경·임성은)

제3장 국내외 중산층가족 관련 법·제도 비교분석(정현숙)

제4장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김유경·임성은)

제5장 중산층가족의 특성 및 복지욕구(김유경·김정숙)

제6장 중산층가족에 대한 전문가 의견분석(김유경·김정숙)

제7장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김유경·정현숙·김정숙)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수행되었다.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위하여 검토를 해주신 강혜규 연구위원과 김미숙 연구위원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통계표를 작성하고 자료를 정리해 주신 남주영 연구보조원과 원고를 교정해주신 이영주 보조원에게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2
제2장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31
제1절 중산층가족 및 복지체감의 개념 및 범위 정립	31
제2절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 관련 선행연구	44
제3장 국내외 중산층가족 관련 법·제도 비교분석	61
제1절 중산층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및 방향	61
제2절 중산층 가족정책 관련법	76
제3절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국내 중산층 가족정책	87
제4절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국외 중산층 가족정책	106
제5절 시사점	133
제4장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141
제1절 분석대상자의 특성	141
제2절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151
제3절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및 변화	171
제4절 시사점	193

제5장 중산층가족의 특성 및 복지욕구	199
제1절 중산층가족의 특성	199
제2절 중산층가족의 문제점 진단	262
제3절 중산층가족의 복지욕구	310
제4절 시사점	333
제6장 중산층가족의 기준 및 복지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339
제1절 전문가조사 응답자의 특성	339
제2절 중산층가족의 기준 및 범위	341
제3절 중산층가족의 복지정책 방향 및 수요	350
제4절 중산층가족의 정책욕구	355
제5절 시사점	364
제7장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369
제1절 중산층가족정책의 패러다임 및 방향	369
제2절 중산층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	370
제3절 중산층가족의 고용관련 대책	375
제4절 중산층가족의 소득관련 대책	379
제5절 중산층가족의 일·가정양립정책	381
제6절 중산층가족의 자녀양육정책	383
제7절 중산층가족의 가족돌봄서비스	390
제8절 중산층가족의 주택정책	394
제9절 중산층가족의 특수욕구서비스	397
참고문헌	403
부록	419

표 목차

〈표 1- 1〉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내용	25
〈표 1- 2〉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연구 전문가 조사내용 ..	26
〈표 2- 1〉 다양한 중산층 범주구분(소득수준 기준)	34
〈표 2- 2〉 홍두승의 중산층 판별 기준	35
〈표 2- 3〉 캐머만과 칸의 가족정책분류	38
〈표 3- 1〉 학자들의 가족정책에 대한 정의 및 내용	63
〈표 3- 2〉 복지수혜가족의 의무규정	70
〈표 3- 3〉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Act in 2003, 103조: Healthy Marriage Promotion Activity의 내용	73
〈표 3- 4〉 여성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관련 법률과 정책	77
〈표 3- 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발전과 역할	80
〈표 3- 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	84
〈표 3- 7〉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유연근무제	85
〈표 3- 8〉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86
〈표 3- 9〉 연도별 예비부부 및 신혼기 가족교육의 현황	88
〈표 3-10〉 드림스타드의 서비스 내용	91
〈표 3-11〉 임신에서 육아까지 정부지원정책 사업대상과 내용	95
〈표 3-1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사업의 서비스 이용요금	100
〈표 3-13〉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에 상당하는 소득기준	100
〈표 3-14〉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현황	101
〈표 3-15〉 이용아동의 연령	102
〈표 3-16〉 중고령자 고용지원정책	103
〈표 3-17〉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104

〈표 3-18〉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107
〈표 3-19〉 미국의 Head Start와 한국의 We start의 비교 ...	107
〈표 3-20〉 Florida주와 Illinois주의 관련법안과 내용	109
〈표 3-21〉 Tennessee주와 New Mexico주의 관련법안과 내용 ..	110
〈표 3-22〉 종교기관이나 단체의 결혼운동	111
〈표 3-23〉 결혼교육을 위한 사회운동	112
〈표 3-24〉 이혼법개정운동	113
〈표 3-25〉 중고등학교에서의 결혼기술교육운동	113
〈표 3-26〉 학자들 중심의 결혼운동(Marriage Movement) ...	114
〈표 3-27〉 연방정부의 결혼운동	115
〈표 3-28〉 친결혼적 아버지역할 운동	115
〈표 3-29〉 주지사의 결혼운동	116
〈표 3-30〉 시민들의 결혼운동	117
〈표 3-31〉 홍콩 가족지원서비스의 유형별 주요 서비스 내용	121
〈표 3-32〉 돌봄 사회화를 위한 일본의 보육 서비스	124
〈표 4- 1〉 소득계층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143
〈표 4- 2〉 소득계층별 직업 및 경제적 특성	145
〈표 4- 3〉 분석대상자의 소득계층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148
〈표 4- 4〉 분석대상자의 소득계층별 직업 및 경제적 특성	150
〈표 4- 5〉 소득계층별 '한국사회유형' 에 대한 인식	151
〈표 4- 6〉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한국사회유형' 에 대한 인식	153
〈표 4- 7〉 소득계층별 '미래 한국사회의 지향 유형' 에 대한 인식 ..	154
〈표 4- 8〉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미래 한국사회의 지향 유형' 에 대한 인식	156

〈표 4-9〉 소득계층별 '성장과 분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57
〈표 4-10〉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성장과 분배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158
〈표 4-11〉 소득계층별 우리나라 소득/재산 평등정도'에 대한 인식	159
〈표 4-12〉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우리나라 소득/재산 평등정도'에 대한 인식	161
〈표 4-13〉 소득계층별 '소득격차 감소에 대한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162
〈표 4-14〉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소득격차 감소에 대한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도	163
〈표 4-15〉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별 향후 복지사회에 대한 인식	164
〈표 4-16〉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향후 복지사회에 대한 인식	165
〈표 4-17〉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복지서비스 인지도	168
〈표 4-18〉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복지서비스 인지도	170
〈표 4-19〉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복지서비스 이용률 및 도움정도	173
〈표 4-20〉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복지서비스 이용수준	176
〈표 4-21〉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복지서비스 도움정도	178
〈표 4-22〉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복지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180
〈표 4-23〉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복지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181
〈표 4-24〉 소득계층별 중산층가족의 복지서비스 체감도: 2007년도	182
〈표 4-25〉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중산층가족의 복지서비스 체감도: 2011년도	184

〈표 4-26〉 소득계층별 정부로부터 세금을 내는 만큼 복지혜택 수혜정도: 2007년도	185
〈표 4-27〉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정부로부터 세금을 내는 만큼 복지혜택 수혜정도: 2011년도	186
〈표 4-28〉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복지체감도: 2007년도	188
〈표 4-29〉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복지체감도: 2011년도	189
〈표 4-30〉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정부로부터 세금을 내는 만큼 복지혜택 수혜정도: 2007년도	191
〈표 4-31〉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정부로부터 세금을 내는 만큼 복지혜택 수혜정도: 2011년도	192
〈표 5- 1〉 소득계층별 가구형태 및 가구규모	200
〈표 5- 2〉 소득계층별 주택유형 및 소유형태	200
〈표 5- 3〉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주택유형	202
〈표 5- 4〉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주택소유형태	203
〈표 5- 5〉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주거환경 만족도	204
〈표 5- 6〉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주거환경 만족도	205
〈표 5- 7〉 소득계층별 재산보유 규모 및 재산유형	206
〈표 5- 8〉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재산보유 규모 및 재산유형	207
〈표 5- 9〉 소득계층별 가구소득·소비 수준 및 주관적 최저생계비 ..	209
〈표 5-10〉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가구소득 수준	211
〈표 5-11〉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가족수입 만족도	212
〈표 5-12〉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가족수입 만족도	213
〈표 5-13〉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가구소비 수준	214
〈표 5-14〉 소득계층별 가구소비생활 구조	215

〈표 5-15〉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소비생활구조	217
〈표 5-16〉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주관적 최저생계비 평균	218
〈표 5-17〉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경제수준	220
〈표 5-18〉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근로상태	222
〈표 5-19〉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근로능력 및 근로무능력 사유	223
〈표 5-20〉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근로지속가능성 및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224
〈표 5-21〉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취업생활	226
〈표 5-22〉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취업여부 및 직종	228
〈표 5-23〉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종사상지위	229
〈표 5-24〉 소득계층 및 경제적 생활수준별 가구주의 직업만족도	230
〈표 5-25〉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가구주의 직업 만족도	231
〈표 5-26〉 소득계층별 건강수준 및 보건의료행태	232
〈표 5-27〉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건강상태 및 만성질환 유무	233
〈표 5-28〉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의료기관 이용 및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235
〈표 5-29〉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병원에 입원한 이유	237
〈표 5-30〉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가구주의 건강 만족도	238
〈표 5-31〉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건강 만족도	239
〈표 5-32〉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성역할 의식	240
〈표 5-33〉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성역할 의식	241
〈표 5-34〉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가족관계 만족도	242
〈표 5-35〉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243
〈표 5-36〉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244

〈표 5-37〉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245
〈표 5-38〉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	246
〈표 5-39〉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247
〈표 5-40〉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가족생활만족도	248
〈표 5-41〉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가족생활만족도	249
〈표 5-42〉 소득계층별 사회보장수준	251
〈표 5-43〉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연금가입여부 및 연금 미가입 이유	253
〈표 5-44〉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3대보험 및 연금 가입여부	255
〈표 5-45〉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여부 ..	257
〈표 5-46〉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여부	258
〈표 5-47〉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	259
〈표 5-48〉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260
〈표 5-49〉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가구주의 여가생활 만족도 ..	261
〈표 5-50〉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가구주의 여가생활 만족도	261
〈표 5-51〉 소득계층 및 경제수준별 가족 갈등문제(중복응답)	263
〈표 5-52〉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가족 갈등문제	264
〈표 5-53〉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귀댁의 가장 큰 어려움 ..	266
〈표 5-54〉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귀댁의 가장 큰 어려움	267
〈표 5-55〉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문제해결방식	268
〈표 5-56〉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문제해결방식	269
〈표 5-57〉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배우자 폭력 발생율	270
〈표 5-58〉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배우자 폭력 발생율	272
〈표 5-59〉 소득계층별 경제수준 인지도(2007년 말 기준)	273
〈표 5-60〉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경제수준 인지도(2007년 말 기준) ..	274

〈표 5-61〉 소득계층별 경제수준 인지도(2008년 말 기준)	275
〈표 5-62〉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경제수준 인지도(2008년 말 기준)	276
〈표 5-63〉 소득계층별 경제적 생활상태 변화 예상 정도(2013년 이후) ..	277
〈표 5-64〉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경제수준 인지도(2013년 이후)	278
〈표 5-65〉 소득계층별 저축·부채규모 및 형태	279
〈표 5-66〉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저축규모, 부채규모, 형태 및 이자규모 ..	281
〈표 5-67〉 소득계층별 주거비출처 및 주거관련 부채	282
〈표 5-68〉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주거비출처 및 주거관련 부채	284
〈표 5-69〉 소득계층별 국민연금 미납실태	287
〈표 5-70〉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국민연금 미납실태	289
〈표 5-71〉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미납실태	292
〈표 5-72〉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건강보험 미납실태	294
〈표 5-73〉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문제점 및 효과성	296
〈표 5-74〉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비경제활동 사유	298
〈표 5-75〉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정부의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	299
〈표 5-76〉 정부의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의 도움 여부	300
〈표 5-77〉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아동가구의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률	301
〈표 5-78〉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아동가구의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률	302
〈표 5-79〉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보육비 ...	303
〈표 5-80〉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보육비	304
〈표 5-81〉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계산된 우울정도	306

〈표 5-82〉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우울정도	307
〈표 5-83〉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자아존중감 수준	308
〈표 5-84〉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자아존중감 수준	309
〈표 5-85〉 소득계층별 1순위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311
〈표 5-86〉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1순위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312
〈표 5-87〉 소득계층별 2순위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314
〈표 5-88〉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2순위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315
〈표 5-89〉 소득계층별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에 관한 의견	316
〈표 5-90〉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에 관한 의견 ..	318
〈표 5-91〉 소득계층별 영역에 따른 정부지출 희망정도	320
〈표 5-92〉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영역에 따른 정부지출 정도 희망’ ..	323
〈표 5-93〉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정부가 중산층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정책 ..	327
〈표 5-94〉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정부가 중산층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정책	329
〈표 5-95〉 소득계층별 노인, 아동,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제공 위한 재원 마련 방안	331
〈표 5-96〉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노인, 아동,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제공 위한 재원 마련 방안	332
〈표 6-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40
〈표 6- 2〉 중산층가족 기준의 중요도	341
〈표 6- 3〉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 기준의 중요도	342
〈표 6- 4〉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중위소득 기준	343
〈표 6- 5〉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직업유형	344

〈표 6- 6〉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재산규모 기준	346
〈표 6- 7〉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교육수준 기준	347
〈표 6- 8〉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문화생활참여정도 기준	348
〈표 6- 9〉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최저·최고 계층 기준	349
〈표 6-10〉 중산층가족의 복지정책의 중요도	350
〈표 6-11〉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복지정책의 중요도	352
〈표 6-12〉 중산층가족의 복지정책의 효과성	353
〈표 6-13〉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복지정책의 효과성	355
〈표 6-14〉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소득보장정책 ...	356
〈표 6-15〉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조세정책 ...	357
〈표 6-16〉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보건의료정책 ...	358
〈표 6-17〉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교육정책 ...	359
〈표 6-18〉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주거정책 ...	360
〈표 6-19〉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고용정책 ...	362
〈표 6-20〉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일·가정양립정책	363

부표 목차

〈부표 1〉 소득계층 및 이용여부별 '한국사회유형' 에 대한 인식	429
〈부표 2〉 소득계층 및 이용여부별 '성장과 분배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	429
〈부표 3〉 소득계층 및 이용여부별 '우리나라 소득/재산 평등정도' 에 대한 인식	430

〈부표 4〉 소득계층 및 이용여부별 ‘소득격차 감소에 대한 정부책임’ 에 대한 동의도	430
〈부표 5〉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향후 복지사회에 대한 인식 ..	431
〈부표 6〉 소득계층 및 이용여부별 중산층가족의 복지서비스 체감도: 2007년도	432
〈부표 7〉 소득계층 및 이용여부별 복지서비스 체감도: 2011년도 ..	433
〈부표 8〉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에 대한 복지체감도	434
〈부표 9〉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 에 대한 복지체감도	434
〈부표 10〉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 에 대한 복지체감도	435
〈부표 11〉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 제공’ 에 대한 복지체감도	435
〈부표 12〉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빈곤예방 및 감소’ 에 대한 복지체감도	436
〈부표 13〉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실업에 대한 대응’ 에 대한 복지체감도	436
〈부표 14〉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 에 대한 복지체감도	437
〈부표 15〉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모두가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 에 대한 복지체감도	437
〈부표 16〉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교육’ 에 대한 복지체감도	438

〈부표 17〉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에 대한 복지체감도	438
〈부표 18〉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복지체감도	439
〈부표 19〉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에 대한 복지체감도	440
〈부표 20〉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복지체감도	441
〈부표 21〉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복지체감도	442
〈부표 22〉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빈곤예방 및 감소’에 대한 복지체감도 ..	443
〈부표 23〉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실업에 대한 대응’에 대한 복지체감도 ..	444
〈부표 24〉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한 복지체감도	445
〈부표 25〉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모두가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에 대한 복지체감도	446
〈부표 26〉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교육’에 대한 복지체감도	447
〈부표 27〉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에 대한 복지체감도	448
〈부표 28〉 소득계층별 정부로부터 세금을 내는 만큼 복지혜택 수혜정도: 2007년도	449
〈부표 29〉 소득계층별 정부로부터 세금을 내는 만큼 복지혜택 수혜정도: 2011년도	450

그림 목차

[그림 1- 1] 연구흐름도	27
[그림 2- 1] 미래기획위원회의 중산층 기준	32
[그림 3- 1] 소득기준 계층분류와 주관적 계층의식사이의 괴리	64
[그림 3- 2] 개인의 처한 최대 불안 요인	64
[그림 3- 3] 위스타트 사업 내용	92
[그림 3- 4]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93
[그림 3- 5]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체계도	99
[그림 3- 6] 아일랜드 가족지원단체 운영 조직도	119
[그림 4- 1] 소득계층별 '한국사회유형' 에 대한 인식	152
[그림 4- 2] 소득계층별 '성장과 분배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	157
[그림 4- 3] 소득계층별 우리나라 소득/재산 평등정도' 에 대한 인식	160
[그림 4- 4] 소득계층별 '소득격차 감소에 대한 정부책임' 에 대한 동의도	162
[그림 4- 5] 소득계층별 복지서비스 체감도: 2007년과 2011년 비교	184
[그림 4- 6] 중산층가족의 세금대비 복지수혜정도에 대한 인식: 2007년과 2011년 비교	187
[그림 5- 1] 소득계층별 가구소득·소비 수준 및 주관적 최저생계비 비교	210
[그림 5- 2] 소득계층별 가구소득·소비 수준 및 주관적 최저생계비 비율 비교	210
[그림 5- 3] 소득계층별 가구소비생활 구조 비교	216
[그림 5- 4] 소득계층별 가족 갈등문제(중복 응답)	263
[그림 5- 5] 소득계층별 저축·부채규모 및 형태	280
[그림 5- 6] 소득계층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납율	286
[그림 5- 7]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계산된 우울정도	306

[그림 5- 8] 소득계층별 1순위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313
[그림 5- 9] 소득계층별 '영역에 따른 정부지출 희망정도' 비교 ..	321
[그림 5-10] 소득계층별 정부가 중산층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정책	326
[그림 5-11] 중산층가족의 어려움과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욕구	330
[그림 6- 1] 중산층가족 기준의 중요도	341
[그림 6- 2] 중산층가족의 복지정책의 중요도 평균 점수	351
[그림 6- 3] 중산층가족의 복지정책의 효과성 점수	354
[그림 6- 4]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소득보장정책	356
[그림 6- 5]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조세정책	357
[그림 6- 6]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보건의료정책	358
[그림 6- 7]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교육정책	359
[그림 6- 8]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주거정책	361
[그림 6- 9]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고용정책	362
[그림 6-10]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일·가정양립정책	363
[그림 7-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산	373



Study on Improving Ways to Meet the Welfare Needs of the Middle Class Families

Today, our society is facing several challenges such as increasing family conflict and family break-up in the changing socio-economic environment surrounding families.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stemming from the US for the last 2-3 years has led to the undermining of family-stability, in particular, that of the middle class families. However, public welfare policies are still focused on vulnerable and low-income families while lacking in meeting the needs of the middle class families.

This study is aimed at developing welfare policies to meet the needs of the middle class familie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middle class families and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As part of this research, a broad-scale survey was also conducted with the middle class families and experts in the relevant welfare field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Middle class families were less satisfied with the welfare policy than low-income families but more satisfied than high-income

families. Middle-class families are in favor of labor policy, income security policy, and work-family balance policy among welfare policies. In addition, the majority of the middle class families were willing to pay more taxes to receive a wide range of social welfare services. Therefore, while the main policies for the middle class families should be focused on employment and labor, the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differentiate social services depending on different needs of families as arising from different situations they are in such as parents' marital status or education levels.

요약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사회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다시 2007년 외환위기로 중산층가족이 감소하고 빈곤층 증가추세가 심화되면서 가족갈등 및 가족해체 등 가족안정성 약화가 예측됨.
- 중산층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중산층가족의 복지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또는 저소득층 가족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복지정책이 제공되고 있어 중산층을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합적인 가족복지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정책’이라는 거시적인 틀 안에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가족기능을 제고하는 가족복지의 모색을 위하여 통합적인 사회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내용 및 방법

-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중산층가족 및 복지체감도의 개념과 범위정립
 - 중산층가족정책의 모형
 - 중산층가족과 복지체감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국내외 가족위기 관련 법·제도 검토

- 중산층가족의 특성 및 복지욕구 파악
 -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중산층만 추출
 - 중산층가족의 특성 및 문제점 진단, 복지욕구 도출
 - 타 계층과의 비교분석
-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복지체감도 분석
 - 전화조사실시: 일반국민 1,500명 대상으로 복지인식 및 복지체감도 파악
 - 기존자료 재분석: 2007년,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 및 중산층가족 특성별로 문제점, 가족의 복지수준 및 만족도, 복지욕구 등 파악
- 중산층가족에 대한 전문가 의견분석
 - 전문가조사 실시: 공무원, 학자, 기관 및 단체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조사 실시
 - 중산층가족의 기준 및 범위, 중산층가족의 복지정책 방향 및 수요(정책중요도, 정책효과성), 건의사항 등 파악
-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도출
 - 연구결과의 타당성 검토 및 정책수립을 위한 워크숍 실시

제2장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중산층의 개념 및 범주

- 본 연구에서는 중산층의 정의를 OECD, 통계청 그리고 정부와 각 정당 등에서 중산층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150%의 범위로 설정

□ 중산층가족 정책 및 복지체감도의 범위 정립

- 중산층은 OECD, 통계청 그리고 정부와 각 정당 등에서 중산층

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150%의 범위로 설정하고, 중산층가족은 중간소득계층에 포함되는 가족으로 정의함.

- 중산층 가족정책 대상은 중산층 가족을 단위로 한 정책과 가족 내 대상을 고려한 정책을 포괄하며 중산층 가족정책의 범위는 캐머만과 칸의 가족정책 분류 적용
 - － 중산층 가족의 고용관련 정책, 소득관련 정책(소득공제, 감면, 수당),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사회서비스(보육, 주택, 가족특수육구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립
- ‘복지체감도’는 복지인식(복지의식)과 복지욕구를 포괄하여 복지제도 이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규정함.

□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관련 선행연구

- 중산층가족에 대한 연구의 초점은 대체로 중산층에 대한 정의와 범위, 소득분배의 양극화 측면에서 중간소득계층의 규모나 비중의 감소, 중산층의 복원 등에 맞추어져 있으며(삼성경제연구소, 1997; 홍두승, 2005, 2006; 조동기, 2006; 유경준 외 2008; 삼성경제연구소, 2010;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1), 중산층 가족 단위의 특성과 욕구 분석 그리고 중산층가족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 기존의 복지체감 관련 연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일·가정양립, 양육관련 정책의 복지체감도 및 사회서비스 복지체감도, 복지지출과 복지수준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됨.
 - － 직접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가족단위의 복지체감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제3장 국내외 중산층가족 관련 법·제도 비교분석

□ 국내 중산층가족 관련 법·제도

- 우리나라의 중산층가족정책은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임신·출산지원, 여성의 일자리유지 및 보육료 그리고 일과 양립 지원 외에 소득공제, 중산층보호차원의 휴먼뉴딜(Human New Deal)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음.
- 국내 중산층가족정책은 중산층가족의 역량강화 및 빈곤예방 그리고 탈빈곤 지원 기능으로서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임.

□ 국외 중산층가족 관련 법·제도

-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중산층가족 정책으로는 중산층 탈락방지를 위해 근로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적 신분이동과 관련한 교육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결혼자격 강화와 이혼감소 그리고 위기가정에게 가족중재서비스(Family Mediation Services)를 제공하는 가족기능강화정책 및 일가족양립지원정책 등이 수행됨.
- 선진국의 중산층가족 정책은 전반적으로 맞벌이 중산층가족에만 정책이 맞추어져서 제한적으로 수행됨
- 중산층가족 탈락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조기교육과 보육제공, 대학진학 기회 확대 등 교육 및 인적자본 투자, 근로인센티브 제공, 기술교육프로그램 혁신, 각종 고용지원 등 노동 유연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로유인 강화책 등이 추진됨.
- 일가족양립지원정책으로 노동시간정책, 휴가정책, 보육정책, 조세정책, 현금지원 정책 등이 지원됨.

제4장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 중산층가족의 귀속의식은 상중하로 분류할 때 중층에 속한다는 비율은 65.3%, 하층은 32.0% 그리고 상층에 속한다는 의식은 약 3%에 불과하여 귀속의식이 낮음.
 - 사회적 귀속의식은 소득계층별로도 동일하게 낮은 경향을 보임.
- 현재 한국사회유형에 대한 인식은 중산층은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라는 인식이, 저소득층은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는 인식이, 고소득층은 ‘가난한 사람이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라는 인식이 높았음.
 - 미래 한국사회는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가 많은 사회’를 지향하는 의식이 높았으며, 중산층은 ‘중간층이 대다수’라는 인식이, 저소득층은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 사회’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 향후 복지사회에 대한 인식은 모든 소득계층이 공통적으로 세 부담이 높고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로 선회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이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 높아서 중산층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
- 우리나라 소득과 재산의 평등정도에 대해서 평등하다는 인식은 중산층이 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저소득층이 7.6%, 고소득층이 6.5% 순으로 높아서 중산층이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았고, 고소득이 가장 낮았음.
 - 소득격차 감소가 정부책임이라는 인식은 중산층(73%)과 고소득층(73%)이 높았고, 정부책임이 아니라는 인식은 저소득층(10%)이 높게 나타남.

□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수준 및 변화

-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는 2.9~3.8점으로 고소득층(2.9~3.8점) 보다는 복지체감도가 높았으나, 저소득층(2.8~3.4점)보다는 저조하였고, 이는 4년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는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중산층가족은 의료서비스, 성평등 향상 및 다문화 영역에서 복지체감도가 가장 높았고, 빈곤예방·감소와 실업대응 영역에서 복지체감도가 낮았고 이는 4년전과 유사하여 복지체감도가 높아지지 않았음을 시사함.
- 중산층가족의 세금대비 복지수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8.7%로 타 소득계층에 비해 가장 저조하였고, 부정적인 인식은 중산층가족이 64.6%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고소득층: 71.0%, 저소득층: 59.9%)
- 소득계층별 세금 수준은 고소득층은 세금 수준이 낮다(74.6%),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세금수준이 높다고 적절하다고 높아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높게 나타남(중산층: 78.5%, 저소득층: 82.2%)

제5장 중산층가족의 특성 및 복지욕구

□ 가구형태 및 주거생활

- 부부 또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일반 가족이 약 88%로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었고, 이외에 1인 가구는 10%, 취약가구는 약 2%에 불과하였음.
- 가구원수는 2인 이하가 약 36%이고 나머지 64%는 3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주택유형은 단독주택과 일반아파트(76.9%)로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었고, 아파트 거주는 고소득층(54.4%)이, 단독주택은 저소득층(67.6%)이 높았음.
- 소유형태는 자가 56.9%로 과반수이었고, 전세·월세는 35.9%로 고소득층(63.8%)에 비해 자가비율이 낮았음.

□ 경제 및 취업생활

- 평균 재산보유규모는 중산층이 11,113.1만원으로 고소득층(36,798.7만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였고, 저소득층(6,931.2만원)보다는 1.6배 높았음.
- 재산유형은 부동산이 67.6%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도 4분의 1에 해당되었고 고소득층(27.0%)도 유사하였으나 저소득층은 금융자산(12.5%)이 적게 나타남.
- 중산층가족의 평균 가구소득수준은 282.7만원, 평균 가구소비수준은 270.8만원 그리고 주관적인 최저생계비 수준은 178.9만원으로 소득 대비 소비는 96%로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행태를 보였음.
- 소득대비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63%로 소득의 37%는 삶의 질을 위해 활용 가능함을 의미하며, 소비대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66%로 가구소비의 34%는 최저생계수준을 초과하여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생활구조는 식료품, 교통통신 그리고 교육과 세금·사회보장 항목 지출이 53.5%로 과반수에 해당되었고, 특히 교육비, 교통통신비 및 세금·사회보장부담금은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임.
- 중산층 가구주의 취업은 82%로 다수가 해당되었으며, 직종은 사무직, 서비스판매직과 기능 및 장치·기계조작이 과반수 이상이었고,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외에 자영업자와 임시직·일용직도 많아서 종사상 지위가 불안정한 편임.

□ 건강 및 가족·사회생활

- 중산층가족의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65%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만성질환 유병률은 45%로 거의 과반수가 질병이 있으며 건강한 상태는 고소득층(76%)이 높았고, 저소득층(28%)은 중산층의 절반정도에 불과하였음.
- 중산층가족의 현재 주관적인 경제적 생활수준은 가난하다(35%)는 인식이 높았으나, 향후 5년 후에는 부유해질 것이라는 인식(18%)이 높아서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음.
 - 생활영역별 만족도는 3.0~4.0점으로 가족관계와 사회적 친분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임.
- 중산층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10%로 10명 중 1명에 해당되었으며 고소득층은 24%, 저소득층은 4%로 소득 계층이 높을수록 사회참여 정도가 높게 나타남.

□ 사회보장수준

- 중산층가족의 사회보장수준은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68~99%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낮았고, 퇴직금 적용은 56%로 중산층의 과반수 정도가 해당되었고, 퇴직연금 가입률은 5%로 극히 미미하였음.
 - 개인연금 가입률은 27%에 불과하여 노후소득보장에 대해 국민연금 외에 퇴직금 및 개인연금 등 개인보장수준은 미흡한 실정임.

□ 중산층가족의 문제점 진단

- 중산층가족의 갈등문제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원의 건강이 45%로 비중이 높았고, 이외에 가족원의 취업·실업과 자녀교육·행동은 9%에 불과하였고, 소득계층별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음.

- 중산층가족의 문제해결방식은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였고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비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음.
- 중산층가족의 어려움은 자녀보육·교육비용부담(33%)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주택마련, 생계, 보건의료비용 부담 순으로 높았고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임.
- 중산층 가구주의 근로가능성과 근로지속성은 각각 90%, 73%로 중산층의 5분의 1 정도는 근로가능함에도 근로를 중단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함.
 - 비경제활동사유는 근로의사가 없는 경우 외에 구직활동의 어려움과 집안일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난.
- 중산층가족의 정신건강으로 우울정도는 도시거주, 결혼해체 그리고 비취업인 경우 높음.
 - 중산층가족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1점으로 농촌지역 거주, 고연령, 이혼·별거·사별, 저학력, 종사상지위가 불안정 할 경우 비교적 낮은 자존감을 보임.
- 중산층가족의 보육기관 이용률은 76%, 고소득층은 91%, 저소득층은 60%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보육기관 이용률이 높아서 중산층의 24%정도는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짐
 - 월평균 사교육비 및 보육비용은 중산층은 37만원, 고소득층은 67만원, 저소득층은 19만원으로 소득계층 간에 2배 정도 차이를 보임.
- 중산층가족의 사회보장의 불건전성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미납수준은 각각 28%와 4%이었고, 평균 미납기간은 5.2~10.6개월이었음.
 - 미납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과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불신 등 유용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난.

□ 중산층가족의 복지욕구

- 중산층가족은 국가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사회문제로 ‘노후생활문제’, ‘건강 및 의료문제’라는 응답이 많아서 장애인 및 아동 등 특정 계층에 대한 문제보다는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노후생활, 건강 및 의료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중산층가족은 바람직한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으로 46%인 거의 과반수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라고 응답하였고, 33.4%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 복지영역별 정부지출확대 희망 정도는 주거지원과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그리고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에 대한 지출확대 희망이 높았음.
 -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보육·교육비 지원과 일자리정책 그리고 노인복지 등에 정책욕구가 높았음.
- 중산층가족의 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복지재원에 대한 의견은 37.5%가 ‘돈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한다’가 가장 많았음.
 - 남성, 미혼,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주, 자영업자에서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모두가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제6장 중산층가족에 대한 전문가 의견분석

□ 중산층가족의 기준 및 범위

- 중산층가족의 기준에 대해 소득수준(100.0%)이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재산규모(94%), 직업(78%), 교육수준(68%), 주관적 계층귀속의식(59%), 문화생활 참여도 순으로 기준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 중산층가족의 복지정책 방향 및 수요

- 중산층가족 복지정책 중요도는 일·가정양립정책(4.4점)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보건의료·소득보장·교육·고용정책(4.3점), 주거정책(4.2점), 조세정책(4.1점)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음.
 - 중산층가족 복지정책 효과성은 2.7~3.4점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정책중요도에 비해 효과성이 저조하게 나타난 일·가정양립, 고용 및 주거정책 등은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모색이 요구됨.
-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연금·퇴직금의 내실화 및 중산층 대상 수당확대, 연금의 소득공제 한도상향, 보건의료 서비스 범위 확대,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이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
 - 또한 임대·전세 입주기준 중산층까지 확대와 대출 확대·상환 부담 완화, 중장년층의 고용안정화, 유연근무제 확대 등 직장 내 가정친화 분위기 조성이 높음.

제7장 중산층가족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 중산층가족 정책의 패러다임 및 방향

- 중산층 우선 정책으로 ‘고용·노동정책’에 주력하되, 중산층 특성별 ‘차별적 지원’ 필요
 - 중산층정책은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중산층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추되, 정책 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직업 특성, 고용상의 지위, 계층 위협 요소 등에 따른 구체화된 정책 마련
-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편적 복지 제공
 - 중산층 유지·복원을 위해서는 고용능력 제고와 병행하여 주거비·사교육비 경감 등 통합적인 사회서비스 지원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한계중산층 또는 위기중산층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제공

□ 중산층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

- 중산층의 다양성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
- 다양한 가족생활주기를 포괄하는 중산층정책 확대
- 중산층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기능 확대

□ 중산층가족의 고용관련 대책

- ‘중·장년층’의 고용안정화를 위한 퇴직제도의 실효화 및 경력개발 강화
- 빈곤진입위기에 있는 ‘한계중산층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 ‘고학력·고숙련 중산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
- ‘여성·고연령·저학력 중산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중산층가족의 소득관련 대책

- 위기 중산층가족의 기능제고를 위한 한시적 지원강화
- 중산층의 보호·유지를 위한 연금 및 퇴직금의 점진적 내실화

□ 중산층가족의 일·가정 양립정책

- 일·가정 양립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법적 보장제도로의 전환
- 육아휴직제도의 대상 확대 및 수준제고로 실효성 확보
- 직장 내 유연근무제 및 기업 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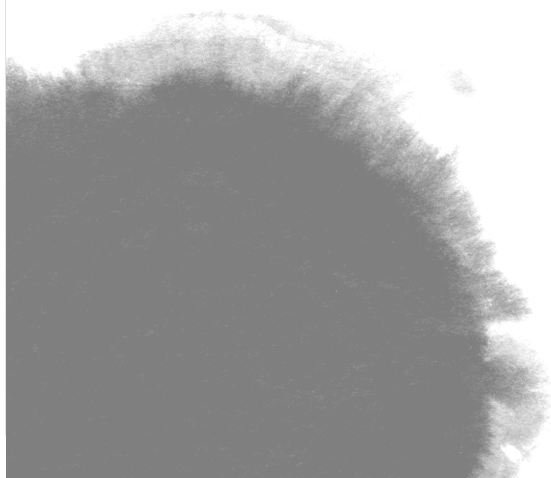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 중산층가족의 자녀양육정책

- 자녀양육기 중산층가족의 양육비 실효성 확보
- 자녀양육기 중산층가족의 보편적 제도 도입 및 강화
- 생애주기별 자녀양육서비스

- 중산층가족의 가족돌봄서비스
 - 지역사회 돌봄망 확충
 - 돌봄서비스의 내실화, 홍보 및 신규서비스 발굴
 - 가족 내 돌봄 지원 강화
- 중산층가족의 주택정책
 - 중산층가족의 주거권 보호
 - 중산층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한 현금 외 지원방안
 - 무주택 중산층가족을 위한 주거권 보장
- 중산층가족의 특수욕구 서비스
 - 중·고령 중산층가족의 고용정책
 - 영세자영업 중산층가족의 지원 정책

01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최근 2~3년간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새로운 경제적 위험이 대두되면서 우리 사회에서의 가족갈등 및 가족해체 등 가족안정성의 약화가 예측되고 있다. 과거 1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국가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위기라는 점에서 가족은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확대, 물가상승 및 실업을 상승 등이 지속되면서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유입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가족의 복지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계층 또는 저소득층 가족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복지정책이 제공되고 있어 중산층을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합적인 가족복지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중산층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은 보육료 지원, 불임부부 지원, 치매 노인 지원 등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통념상 가족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하므로 요보호대상 가족을 제외하고는 공적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조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동 법 제15조

에 의거하여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1년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을 확정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고, 가정의 돌봄 기능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분담의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산층 가족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가족정책의 실천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차 계획은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가족가치의 확산’,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 역량 강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등 총 5개 영역의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중산층 가족을 포함한 가족 단위의 통합적인 가족정책은 여전히 미흡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규모, 조직, 예산, 전문성, 역할, 서비스의 질, 사업의 효과성 등에서 전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실질적 기능이 미약한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현재 수행되는 가족정책은 중산층 가족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이 미흡하다. 따라서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변화를 반영하는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책 실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족 구성원 전체를 단위로 한 가족복지서비스가 부족하며,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대상자 범위 제한으로 인하여 중산층 및 맞벌이 가족의 복지체감도가 낮고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다. 또한 가족정책은 사후적 측면에만 편중되어 예방적 측면의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리고 가족서비스의 전달체계와 공적·사적 서비스 간 연계성이 미약하며 서비스 수준이 미흡한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족관련 연구는 취약가족 및 저소득층의 실태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중산층 관련 연구도 중산층의 규모측정, 경제위기 전·후의 중산층의 약화 등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만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산층 가족과 관련하여 중산층 가족의 특성 및 문제점, 복지욕구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통합적인 가족정책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도 미흡하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위험에 대비하여 중산층 가족을 유지하고,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산층 가족의 특성, 문제점 진단 및 복지수준 등을 파악하는 가족 단위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가족정책’이라는 거시적인 틀 안에서 중산층 가족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가족기능을 제고하는 가족복지의 모색을 위하여 통합적인 사회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중산층 가족, 복지체감도 및 가족정책의 이론을 체계화한다.

둘째, 국내외 가족정책 관련 법·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 등을 진단한다.

셋째, 최근 급변하는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와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한 중산층 가족의 특성 및 복지체감 수준을 도출한다.

넷째, 중산층 가족의 복지체감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정책적 효과를 제고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전체 8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6개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영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제2장과 제3장은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그리고 국내외 중산층가족 관련 법·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논의되며, 제4장부터 제6장까지는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이 인지하거나 체감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복지체감도 분석, 중산층가족 유형별 특성 및 복지욕구 그리고 중산층가족에 대한 전문가 의견분석 등이 논의된다. 그리고 제7장에서는 앞서 분석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가.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2장은 중산층가족 및 복지체감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범위를 정리하며, 복지체감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중산층가족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150%의 범위에 있는 계층으로 정의하며, 복지체감도는 복지의 혜택을 느끼는 정도로 그 개념이 정확히 규정짓기에는 애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인식(복지의식)과 복지욕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나. 국내외 중산층가족 관련 법·제도 비교분석

제3장은 국내외 중산층가족 관련 법·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중산층가족 관련법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노인복지법」 등을 살펴보았다. 관련 정책으로는 ‘휴먼뉴딜정책’, ‘일가족양립정책’,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기능강화 정책’, ‘주택정책’, ‘출산과 자녀지원정책’, ‘청장년지원정책’, ‘중년 및 노인지원정책’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의 법·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다.

국외는 미국을 중심으로 중산층가족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영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일본 등을 중심으로 가족기능강화와 일가정양립을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제4장은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복지체감도를 분석하고, 소득계층별 복지체감도를 비교 분석하며,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도출에 반영하였다.

라. 중산층가족의 특성 및 복지욕구

제5장은 제2차와 제4차 복지패널 조사를 기초로 하여 중산층가족 유형별로 가족의 특성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였고,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욕구는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도출에 반영하였다.

마. 중산층가족에 대한 전문가 의견분석

제6장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산층가족의 기준 및 범위, 중산층가족의 복지정책 방향 및 수요(중요도, 효과성, 정책 우선순위), 기타(건의사항) 등을 분석하여, 중산층가족의 개념 및 범위 정립과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도출에 반영하였다.

바.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제7장에서는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내외 법·제도의 시사점, 전화조사 결과, 사례 및 전문가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복지체감도 증진방안을 도출하였다. 중산층가족 정책의 패러다임 및 방향, 중산층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 중산층가족의 고용관련 대책, 소득관련 대책,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자녀양육정책, 가족돌봄 서비스, 주택정책, 가족의 특수욕구 서비스 등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가. 문헌고찰

중산층가족 개념 및 범위정립, 복지체감도와 관련한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국내외 중산층가족 관련 법·제도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종 기존문헌을 고찰하였다. 문헌연구 대상에는 각종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모두 포함하였다.

나. 기존자료 재분석

중산층가족의 기존자료 재분석은 2007년,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중산층(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150%)만 추출하여 인구 사회적 및 가구특성, 가족생활, 경제활동상태, 소득 및 지출, 건강 및 의료생활, 사회보장수준, 주거, 복지서비스 이용(전체, 노인가구, 아동가구, 장애인가구) 등을 분석하였다.

다. 전화조사

일반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20세 이상의 남녀이고, 조사 시기는 2011년 6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12일간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은 응답자 일반특성, 복지서비스 인지도,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체감도, 복지서비스 욕구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1-1〉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내용

부 문	내 용
응답자 일반특성 (11개 항목)	① 성별 ② 연령 ③ 교육수준 ④ 취업여부 및 고용상태 ⑤ 교육정도 및 졸업여부 ⑥ 월평균 가구소득 ⑦ 혼인상태 ⑧ 가구형태 ⑨ 가구원수 ⑩ 주택소유형태 ⑪ 사회적 지위
복지서비스 인지도 (9개 항목)	① 육아휴직제도 인지도 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 ③ 0~4세 영유아가구 무상보육 ④ 위기청소년 지원제도·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또는 학생상담지원센터 ⑤ 기초노령연금제도 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⑦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인하 ⑧ 장애인활동지원제도 ⑨ 보금자리주택
복지서비스 이용 (10개 항목)	①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이용여부 및 도움정도 ② 영유아보육서비스 이용여부 및 도움정도 ③ 아동청소년 서비스 이용여부 및 도움정도 ④ 노인서비스 이용여부 및 도움정도 ⑤ 장애인서비스 이용여부 및 도움정도 ⑥ 공적연금 이용여부 및 도움정도 ⑦ 고용보험 이용여부 및 도움정도 ⑧ 산재보험 이용여부 및 도움정도 ⑨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이용여부 및 도움정도 ⑩ 기타서비스 이용여부 및 도움정도
복지서비스 체감도 (9개 항목)	①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는 정도 ② 노인들이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정도 ③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의 이루어지는 정도 ④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의 이루어지는 정도 ⑤ 빈곤예방 및 감소의 이루어지는 정도 ⑥ 실업에 대한 대응의 이루어지는 정도 ⑦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이루어지는 정도 ⑧ 모두가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정도 ⑨ 인제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는 정도 ⑩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이 이루어지는 정도
복지서비스 욕구 (4개 항목)	① 복지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② 귀댁의 가장 큰 어려움 ③ 세금을 내는 만큼 복지혜택을 정부로부터 받는 정도 ④ 정부가 중산층의 복지체감 증진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인 정책

라. 전문가조사

가족정책 관련 공무원, 학자,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 자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시기는 9월 중에 10일간 실시되었으며, 조사 완료된 전문가는 104명으로 교수 및 학계종사자 27명, 연구기관 종사자 44명, 공무원 18명, 그리고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13명이 조사 되었다. 조사내용은 응답자 특성, 중산층가족의 기준 및 범위, 중산층가족의 복지정책 방향 및 수요(정책의 중요도, 정책의 효과성),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표 1-2〉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연구 전문가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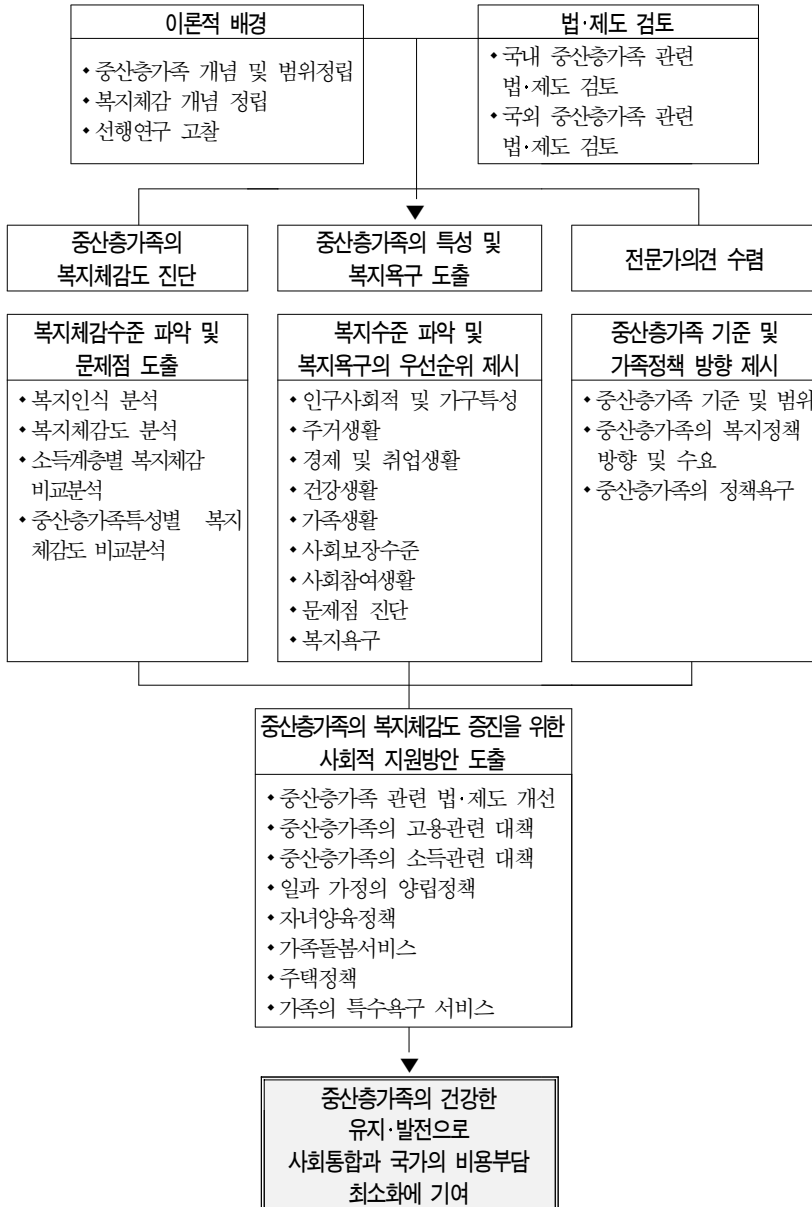
부 문	내 용
응답자 특성 (6개 항목)	① 성별 ② 연령 ③ 교육수준 ④ 전공분야 ⑤ 전문가 유형 ⑥ 현 업무/연구종사기간
중산층가족의 기준 및 범위(7개 항목)	① 중산층가족의 기준 중요도(소득수준, 직업, 재산규모, 교육수준, 문화생활 참여도,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 ② 중산층가족의 중위소득 기준 범위 ③ 중산층가족의 대표 직업유형 ④ 중산층가족의 재산규모 기준선 ⑤ 중산층가족의 대표적인 교육수준 ⑥ 중산층가족의 대표적인 문화생활참여정도 ⑦ 중산층가족의 주관적인 귀속계층
중산층가족의 복지정책 방향 및 수요(9개 항목)	① 중산층가족정책의 중요도 ② 중산층가족정책의 효과성 ③ 소득보장분야의 우선정책 ④ 조세분야의 우선정책 ⑤ 보건의료분야의 우선정책 ⑥ 교육분야의 우선정책 ⑦ 주거분야의 우선정책 ⑧ 고용분야의 우선정책 ⑨ 일가정양립분야의 우선정책

마. 워크숍 개최

연구의 원활한 수행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고서 검토자를 포함한 원내외 전문가와 전체 연구진이 참여하여 세 차례의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워크숍은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이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 워크숍은 연구의 중간단계에서 당초 계획된 대로 연구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구내용 및 방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워크숍은 최종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내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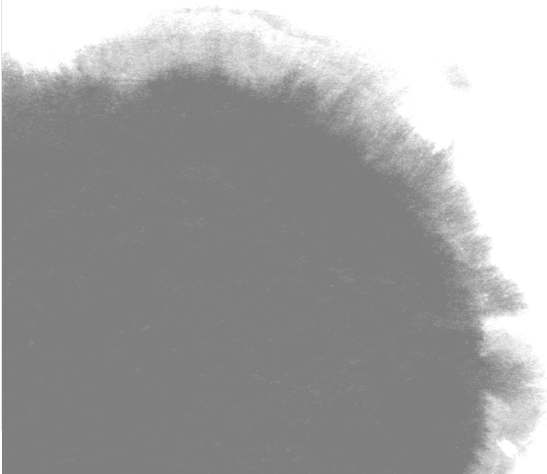
이와 같은 연구의 내용 및 방법에 기초한 본 연구의 흐름도는 [그림 1-1]과 같이 요약된다.

[그림 1-1] 연구흐름도



02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2장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 절 중산층가족 및 복지체감의 개념 및 범위 정립

1. 중산층의 개념 및 범주

중산층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은 상대적인 기준에 속하는 중위소득에 대한 ‘일정비율접근법(fixed percentage of median income approach)’과 특정 연도의 소득에 따라 중산층을 정의하고 다른 비교 연도에 대하여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을 고려하는 ‘구간환가방법(interval deflator approach)’이 있다. 또한 절대적인 기준의 중산층 정의로는 중산층의 소득점유율로 정의되는 기준이 있다(Levy, 1998 재인용; easterly, 2001). 이는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20%씩 균등한 수로 5등분하였을 때 중간에 속하는 2~4 등분에 속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가. OECD와 미국 센서스국 기준

OECD와 미국 센서스국에서는 중산층의 정의를 일정비율접근법인 상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OECD(1995)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50% 미만의 범위로 정의하여 50% 미만, 50~150%, 150%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센서스국에서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200%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정의에 의한 중산층의 가구비중은 빈곤의 상대적 기준을 반영하므로 소득불평등도가 커질 경우 빈곤층과 상류층이 증가하는 한계점이 있다.

나. 한국 정부 정책의 중산층 기준

통계청에서는 중산층의 정의를 OECD와 마찬가지로 소득분배지표(가구 중위소득의 50~150% 미만)를 활용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정부와 각 정당에서도 동 지표를 서민생활안정 및 중산층 육성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2009년 ‘중산층 복원을 위한 휴먼뉴딜 정책’ 발표 시에 중산층의 기준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150% 미만 즉 소득 10분위 중 3~8분위 계층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2-1] 미래기획위원회의 중산층 기준



자료: 관계부처 합동,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미래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자료, 2009.3.23.

다. 선행연구에서의 중산층 기준

중산층에 대한 연구로 Thurow(1984)와 Lawrence(1984)는 미국의 중산층 추이를 소득 중위수의 일정한 퍼센트를 차지하는 관찰치를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중위소득에 대한 일정비율 접근법(fixed percentage of median income approach)을 사용하였다. Thurow(1984)는 중산층을 가계소득 중위수의 75~125%로 정의하였고, Lawrence(1984)는 가계소득 중위수의 2/3~4/3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Bradbury(1986)와 Duncan 등(1991)은 중산층의 접근방법으로 구간환가방법(interval deflator approach)을 적용하였다. 이는 특정연도의 소득에 따라 중산층을 정의하고 다른 비교 연도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을 고려하는 방법이다. Horrigan & Haugen(1988)은 구간환가방법과 일정비율접근법을 모두 사용하여 중산층과 소득에 대해 정의하였다.

그리고 Duncan은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을 활용하여 중간의 70%로 중산층을 정의하였다. 이는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20%씩 균등한 수로, 5등분하였을 때 중간에 속하는 세 개의 5분위의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즉 전체 가구에서 중간의 60~7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양쪽 끝에 있는 가구들을 각각 빈곤층과 상류층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소득의 변동은 분석할 수 있으나, 중산층의 규모가 항상 60% 또는 70%로 고정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삼성경제연구소(양준호, 2006; 민승규 외, 2006)에서는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정의하였고, 남준우(2007)는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75~150%로 규정하여 극빈층과 최상위층은 각각 연도별 1인당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와 최저생계비의 6배 이상인 가구로 정의하였다. 석상훈(2008)은 중위소득의 50% 미

만은 빈곤층으로, 50~70%는 중하층으로, 70~150%는 중산층으로, 150%는 고소득층으로 정의하였다. 중산층 몰락과 관련하여 Grabka & Frick(2008)은 70% 미만을 빈곤층, 70~150%는 중산층, 150% 이상은 상위층으로 분류하였다. 최경수(2008)는 도시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을 이용하여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을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표 2-1〉 다양한 중산층 범주구분(소득수준 기준)

연구자	사용자료	중산층 범주
이정우, 이성림(2001)	대우패널, 1993~1998	중위소득의 80~125% 중위소득의 66.7~133.3% 중위소득의 50~150% 중위소득의 50~200%
민승규 외(2006), 양준호(2006)	survey papers	중위소득의 50~150%
남준우(2007)	노동패널, 1998~2004	중위소득의 75~150%
석상훈(2008)	노동패널, 1998~2005	중위소득의 70~150%
Grabka and Frick(2008)	Socio-Economic Panel, 1984~2006	중위소득의 70~150%
함인희 외(2009)	가계동향조사, 노동패널조사	중위소득의 50~150%
김용기 외(2010)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의 50~150%

자료: 강성진 외, 『중산층의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지금까지 살펴 본 중산층 규정방식에는 소득으로 정의하는 방법 이외에도 사회학적, 정치학적, 직업군별 등 다양한 분류가 존재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기획원(1985)에서는 중산층을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0% 이상, 독채 전세 이상, 고졸 이상 학력, 상용고용 또는 자영업 이상의 고용 안정된 계층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한상진(1985)은 가구원수별 연평균소득의 75% 이상 외에 연령대별 교육, 직업, 주택변수 등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1988)에서는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가구소

득, 아파트기준 30평 전세 이상, 자가용 보유, 안정된 직장, 고학력, 외식 등 여가생활이 가능한 계층으로 정의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1999)에서는 최저생계비와 소득수준의 중위값을 조합하여 최저생계비 200~250% 이상, 소득수준이 중간값 소득기준으로 50~150% 사이의 계층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그리고 홍두승(2005)은 그의 연구에서 중산층 판별기준으로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을 사용하였다. 객관적 기준으로는 직업, 소득 및 자산 등의 경제적 요인과 교육 및 중산층 문화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설정하였고, 주관적 기준으로는 귀속의식을 적용하였다.

〈표 2-2〉 홍두승의 중산층 판별 기준

기준	차원		주요변수		최저기준
객관적	경제적	생산·소유관계	직업	명칭	화이트칼라(신중단계급) 소부르주아지(구중단계급)
				종사상의 지위	
		소비·경제수준	소득	가구소득	중간소득 ¹⁾
			자산	금융·부동산	중간정도의 자산 ¹⁾ (주택, 주거지역)
	사회문화적	학업성취	교육	양(교육연수)	대학
				질(학교의 명성)	- ¹⁾
		문화	중산층 문화		- ¹⁾
주관적	귀속의식		계층의 단계구분		중 또는 중하 ²⁾

주: 1) 주관적 판단이 필요함; 2) 계층의 단계수와 구분 명칭에 따라 달라짐; 3) 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90% 이상, 주택은 자가 20평, 전월세 30평 이상, 교육은 2년제 이상, 계급은 중간계급을 말함.

자료: 홍두승,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조동기(2006)도 홍두승(2005)의 틀을 따라 객관적 판별기준으로 직업과 종사상 지위로 중상계급, 신중단계급, 구중단계급 등을 포함하였고, 월평균소득은 300만원 그리고 자산·주택으로 자가 및 전·월세 30평 이상, 교육·연수는 2년제 대학 이상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질과 중산층 문화는 제외하였으며, 주관적 판별기준으로는 중간계층 귀속의식

과 중산층 귀속의식을 사용하였다.

남은영(2011)은 중산층의 정의로, 계급적 지위가 관리직·전문직, 사무직, 자영업자 범주에 속하며, 교육수준은 재학·중퇴 포함 2년제 대학 이상이고, 월평균소득이 300만원이면서 주택은 전세·자가 포함하여 30평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와 같이 학자에 따라 중산층의 정의는 다양한 분류와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통일된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라. 본 연구에서의 중산층가족 정의

본 연구는 중산층의 정의를 OECD, 통계청 그리고 정부와 각 정당 등에서 중산층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150%’의 범위로 설정하고자 한다. 중산층가족은 중간계급, 중간소득계층, 중간층의 속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계층집단으로 이 계층에 속하는 가족원을 의미한다.

중산층의 기준으로 중위소득 50~150%를 활용하는 이유는 국제비교나 정부 자료 및 선행연구와의 비교 측면에서 용이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타 연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신뢰도 및 타당도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소득불평등도가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는 동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저소득층과 상위층이 동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구소득으로 가처분소득을 활용하고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소득불평등도에서 오는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2. 중산층가족 정책의 범위

가. 가족정책의 범위 관련 선행연구

가족정책에서 포함하는 대상과 그 범위에 대한 논의를 캐머만과 칸(Kamerman & Kahn, 1978), 짐머만(Zimmerman, 1995), 맥도날드(McDonald, 2003) 등의 분류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Kamerman & Kahn(1978)의 가족정책 범위

캐머만과 칸(Kamerman & Kahn, 1978)은 가족정책의 분류기준으로 ‘명시적(explicit) 정책’과 ‘묵시적(implicit) 정책’으로 나누었다.

명시적 정책은 가족들을 위한 목적과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거나, 가족에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체계적 활동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은 가족이 함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부모가 가정 밖에서 일하는 동안 사회가 그들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아동보육시설을 확대 하며, 성인자녀가 노인부모를 돌보기 어려울 경우 시설과 재정적 지원을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 밖에 가족상담, 가족계획, 소득유지, 조세 급여와 주택 정책 등이 포함된다.

반면, 묵시적 가족정책은 정부활동과 정책들이 가족에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결과를 가져오는 활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선정, 도로건설, 무역과 관세규제, 이민정책 등 임시적·간접적 또는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정책이 예기치 않게 가족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포함한다.

〈표 2-3〉 캐머만과 칸의 가족정책분류

영역	제도	프로그램
고용관련	고용과 양육제도	모성·부성 지원정책, 피고용자 급여
소득관련	조세제도	세율의 자동적 책정, 피부양자를 위한 면세제도, 빈곤자 면세, 근로소득공제
	가족급여제도	TANF(구 AFDC), 피부양자 수당, 식권제도
사회서비스	보육제도, 모성·아동건강, 주택정책	-
	가족에 대한 특수육구 관련 제도	빈곤가족을 위한 보충급여제 장애 등 특별육구가 있는 아동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아동영양서비스

캐머만과 칸(Kamerman & Kahn, 1978)은 영역(field)에 따라 가족 정책을 분류하기도 하였는데, 공공정책을 개발하는 기준과 목적의 근원 또는 목표로서 ‘가족의 안녕(family well-being)’을 위한 노력이나 가족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들과 관련하여 가족정책의 기준을 밝혔다.

2) 짐머만(Zimmerman, 1995)의 가족정책 분류

짐머만(Zimmerman, 1995)은 캐머만과 칸(Kamerman & Kahn)의 가족정책을 분류하는데 가족정책의 직·간접성 분류 기준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정책들과 프로그램의 결과가 가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아니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따라 ‘직접적 가족정책’과 ‘간접적 가족정책’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관점의 측면에서 가족정책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며, 정부에 의해서 조장되거나 제지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한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가족정책이 여타의 정책과 다른 점은 개인이 아닌 가족원으로서의 개인, 즉 가족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족을 위한 정책의 결과를 중시하였는데, 가족을 변화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목표를 표방한 것과 직접적 목표를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정책수행의 결과 가족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을 가족정책으로 포함하였다.

이진숙(2004)은 관점으로서 가족정책은 정책의 범위 또는 범주를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방법으로, 그 개념 틀의 기저에는 잔여가 아닌 보편주의적인 가족정책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방법들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광범위하게 널려있는 사회정책들을 가족 친화성이라는 가치적 요소에 의해 내적인 통합성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3) 맥도날드(McDonald, 2003)의 가족정책 분류

맥도날드(McDonald)는 유형(forms)에 따라 가족정책을 분류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법률, 재정(조세, 공공부조), 산업, 서비스의 네 가지 유형에 따라 구분하였다.

첫째, 법률에 의한 것은 혼인법에서 혼인에 대한 파트너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형식적인 정의를 하고 있고, 혼인으로 태어난 아동의 법적인 지위에 대해 정의되어진다는 측면에서 가족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혼관련 법도 포함되는데, 이는 이혼이 승인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 재산분배, 아동의 보호와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법에서는 임신상태, 성 또는 가족 지위에 근거한 고용 내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가족정책에 포함된다고 정의하였다. 이 외에 돌봄, 보호, 아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양육과 재생산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한 관련된 법들까지도 가족정책으로 보았다.

둘째, 재정에 의한 것은 정기적인 현금지급 또는 저금리 대부와 조세할인, 신용대부, 세금공제 등의 혜택을 가족정책의 일부분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현금으로 지급되는 형태에는 아동수당, 또는 사회보험이나 퇴직연금, 노인연금 등이 있다.

셋째, 산업유형은 일과 가족의 조화를 장려하는 정책, 부모휴가제도,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시간, 파트타임 업무 등을 가족정책의 유형이라

고 보았다.

넷째, 서비스 유형은 가족관계의 질 향상, 피부양자나 장애 가족의 욕구를 관리하고 대처하기 위한 교육과 정보 서비스, 그리고 아동과 노인, 여성과 관련된 직접적 가족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것에는 특별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노인 구성원을 돌보는 가족구성원의 보호 서비스 등 주로 대인적 관계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들이 해당된다고 하였다.

4)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 1999)의 가족정책 분류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사회보장 보고서(Social Protection)는 가족과 아동에 대한 사회보호정책 중에서 가족정책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범주화하였다. 이들 정책들은 모두 국가가 제도적으로 가족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통합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간주하였다.

첫째, 직접적인 현금급여의 형태를 취하거나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양육으로 인해 유발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보상하는 형태로, 각 국의 가족수당 및 아동수당제도와 소득세환급 또는 양육관련 지출에 대한 세금공제제도 등이 포함된다.

둘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가 자녀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직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받도록 배려하는 근로자 보호 형태의 정책으로 모성·부성휴가 또는 가족휴가(maternity and/or parental leave) 관련 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셋째, 가족과 아동에 대한 사회보호정책의 형태로서 아동의 양육 및 장애아동 양육 또는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 국가가 보호서비스(caring service)를 제공하는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프로그램의

제공과 함께 장애아동의 보육정책 또는 노인 부양서비스 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

5) 기타 분류

조흥식 등(2002)은 가족기능을 기준으로 현대가족에서 주로 기대되는 가족기능인 애정 부여의 기능, 아동양육의 기능, 경제적 기능, 보호기능을 중심으로 가족복지정책을 분류하였다. 또한 김경신 외(2007)의 연구에서는 가족정책의 범주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빈번하게 제시된 범주의 내용을 크게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생활의 내용(구성요소)’으로 정리하였다.

김경신 외(2007)의 연구에서는 생활주기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가족정책은 가족의 탄생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구성원 모두의 복지가 증대되어야 하며, 기존의 아동·노인·청소년·여성을 대상으로 선별적·산발적으로 추진되었던 정책의 비효과성을 해결하기 위해 각 생활주기에 필요한 가족정책들은 통합성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족정책으로는 육아기의 부모역할, 노년기의 생활설계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생활의 내용이나 구성요소 측면에서 접근하는 가족정책은 소비생활, 양육과 부모역할, 자원관리 등 가족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을 기준으로 가족정책의 범주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의 수혜대상을 기준으로 가족정책을 분류하기도 하는데, 크게 가족구성원 전체를 위한 가족단위의 정책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아동, 노인, 여성 등을 위한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변화순 외, 2001; 최경석 외, 2001). 특히, 최경석 외(2001)는 정책의 수혜대상 뿐만 아니라 정책의 주체를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사적 부문을 다시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하여 비교적 세분화된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김승권(2003)은 선행연구를 고찰하면서 가족정책을 소득보장정책, 주거정책, 양육 및 부양지원정책, 의료보장정책, 가정생활문화정책, 가족보호정책, 기타 가족정책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정책을 다시 가족정책의 내용으로 구분하였는데, 가족을 단위로 한 정책과 가족 내 대상과 가족 유형을 고려한 정책으로 세분화하였다.

나. 중산층가족 정책의 범위 정립

본 연구에서 중산층 가족정책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중산층 가족정책 대상은 중산층 가족을 단위로 한 정책과 가족 내 대상을 고려한 정책을 포괄하며, 중산층 가족정책의 범위는 캐머만과 칸의 가족정책 분류를 적용하여 중산층 가족의 고용관련 정책, 소득관련 정책(소득공제, 감면, 수당),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사회서비스(보육, 주택, 가족특수육구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3. 복지체감의 개념 및 범위

‘복지체감도’란 복지의 혜택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지만, 그 개념이 다소 모호하여 쉽게 정의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선행연구 등에서도 복지체감도에 대한 개념화, 복지체감도를 결정하는 인지과정, 복지체감도를 구성하거나 결정하는 요인 등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는 찾기 쉽지 않아 정확한 개념 설정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즉 복지체감도 관련 연구는 그 중요도에 비해 극히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만 수행되어 체계적인 이론화 작업이 시도된 경우는 거의 없다.

개인의 주관적인 인지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체감도는 조작화를 통해 정확하게 측정되기 어려우며(Hochberg, 1956; 최진욱, 2008), 복지정책을 구성하는 예산, 서비스 전달체계, 인력, 인프라, 서비스 내용 등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체감도가 측정되게 된다. 따라서 복지체감도는 궁극적인 수요자인 국민이 구성요인 또는 결정요인의 요소를 무엇으로 결정하고, 어떤 관점에서 측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복지체감도 구성요인으로 기존 복지인식지표에서는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일자리 제공, 실업, 건강, 노인, 대학생 학비, 부자와 빈자의 소득 완화, 가격통제, 삶의 질 등), 복지지출에 대한 태도, 복지정책과 서비스 전달을 위한 복지재원에 대한 태도, 평등인식, 공공복지확대 지지도, 소득분배인식, 사회계층구조, 복지인식, 정부사회정책평가, 복지서비스운영 및 전달주체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체감도는 복지정책 평가와는 다소 다른 의미를 갖는다. 복지정책 평가는 정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 정책의 책임성 혹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활동 평가라 할 수 있다. 반면, 복지체감도는 체감의 대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와 개인이 인식하는 실제치 간의 차이로서(Hochberg, 1956; Law & Wong, 1999; 최진욱, 2008)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며, 개인이 갖고 있는 인지적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Axelrod, 1973; 최진욱, 2008).

따라서 복지체감도는 복지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와 실제로 느끼고 있는 정책 실행도와의 차이로 정의내릴 수 있다. 즉 국민들이 복지정책에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느껴지는 정책실행도가 낮다면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낮은 것이고, 중요도에 비례하여 혹은 그 이상으로 정책실행도가 높다면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신윤정 외, 2009).

또한 복지체감도와 복지만족도 간에도 차별성이 존재한다. 복지만족도는 포괄적인 의미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과물로서의 충족도를 의미하여, 개인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복지체감과는 차이가 있다.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전준구(2006)는 “특

정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이용하고 난 후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느끼는 전반적이고 주관적이며 평가적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서비스 전달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체감도를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복지정책 평가시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게 된다. 객관적인 지표로 국민들의 정책체감도를 적절히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족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감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복지정책은 특히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면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기존부터 추진되고 있는 복지정책이나 새롭게 실시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과 정책수요자들의 인식은 정책의 수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국민 중심의 복지체감도와 관련하여 최진욱(2008)은 “국민이 느끼는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일 때 정부와 정책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높을수록 정책의 신뢰도와 효과성은 높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체감도’는 복지인식(복지의식)과 복지욕구를 포괄하여 복지제도 이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규정하고자 한다.

제2절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 관련 선행연구

1. 중산층가족 관련 선행연구

가. 중산층 관련 전반적 선행연구

지금까지 수행된 중산층 관련 연구의 관심과 초점은 대체로 중산층에 대한 정의와 소득분배의 양극화 측면에서 중간소득계층의 규모나 비중

에 중점을 두었다. 중산층의 규모와 소득변화 추이 및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삼성경제연구소, 1999; 남준우, 2007; 유경준, 2008; 삼성경제연구소, 2010; 강성진 외, 2010; 한준 외, 2011), 중산층의 빈곤층 하락에 관한 연구(유경준 외, 2008; 남은영, 2011) 등이 수행되었다. 또한 중산층 붕괴 현상 및 원인에 대한 연구(이정우·이성림, 2001; 유팔무 외, 2005; 삼성경제연구소, 2006; 남준우, 2007; 신광영, 2008; 이병훈 외, 2011)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중산층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 및 전망에 대해 다룬 연구(민현주, 2011), 중산층의 양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장미혜, 2006), 중산층 육성 정책에 관한 연구(류상영·강석훈, 1999; 홍석표 외, 2003; 이재열, 2006), 중산층의 위기를 계층적, 의식적 측면에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접근한 연구(조동기, 2006) 등도 수행되었다.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 변화 추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경준 외(2008)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중산층이 65%까지 급락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며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서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이 외환위기 이후 53%로 하락하였으며 최근 다시 감소 추이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전체 가구 중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2003년에서 2009년 사이 60.4%에서 4.9% 감소하여 2009년 기준 전체 가구 중 55.5%를 점유하고 있다. 전체 가구 소득 중 중산층의 소득 비중도 연간 실질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54.0%에서 48.1%로 5.9% 포인트 하락하였다. 중산층 내부에서도 중위소득 75%~125%에 해당하는 핵심 중산층의 비중이 2003년 33.5%에서 2009년 30.0%로 3.4%p 집중 하락하였다. 또한 소득의 경우에도 2003년 30.1%에서 2008년 26.1%로 4.0%p나 하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1)에서는 한국 외환위기 전후의 계층별, 계층이동의 변화양상을 중산층 귀속의식을 기준으로 고찰하고 소득

의 증가와 감소여부를 분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한 사람들은 5.6%이나 중산층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15.6%로 나타나 중산층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한 사람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에 중산층이었던 사람들 중 약 59%가 중산층에 잔류하였으나 나머지 41%는 중산층에서 이탈하여 경제적 지위의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통해서 볼 때도 중산층에서 이탈한 집단은 중산층에 진입한 집단과 비중산층 집단보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약 100만원 이상 낮게 나타났다.

나. 중산층가족의 특성 관련 선행연구

중산층가족의 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중산층가족의 인구사회적 및 경제적 특성에 관한 연구(삼성경제연구소, 1997, 1999, 2010;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2009; 조동기, 2006), 중산층의 생활양식과 사회적 속성에 관한 연구(홍두승, 2005; 홍두승 외, 2006), 중산층의 주관적 귀속의식에 대한 연구(양춘, 2002; 김병조, 2000; 조동기, 2006; 최효미, 2008) 등이 수행되었다. 이 외에도 IMF 이후 중산층 이하 사람들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의 증가를 강조한 연구(백진아, 2001; 송혜림 외, 2009), 중산층 특성별 문화예술소비와 물질소비에 대해 분석한 연구(남은영, 2011) 등이 이루어졌다.

중산층 가구의 거주지 특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서울 거주자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에는 서울 거주자가 전체 중산층의 30%를 상회하였으나, 2008년에는 20% 미만으로 줄어 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계층 이동 및 탈락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함인희 외, 2009). 중산층 중에서도 핵심적 중산층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대전(61.0%), 서울(53.8%), 경기(50.3%) 등이 높게 나타나 주

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서 핵심적 중산층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조동기, 2006).

다음으로 중산층 가구주의 인적특성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남성가구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그 절대적인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8의 경우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중산층 내에서 23.5%를 차지하여 10년 전과 비교할 때 10% 이상 상승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가구에서 여성 가구가 증가하는 속도나 2008년 전체의 28.4%에 달하는 여성 가구주의 비율에 비해 중산층 내부에서의 변화는 그에 미치지 못하여 여성가구의 중산층 진입은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알 수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연령별로 중산층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기준으로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대, 50대 순이었다. 특히 1998년, 2003년, 2008년 세 시점에 걸쳐 50대 이상, 60대 이상, 70대 이상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인해 중산층 내부의 연령분포가 점차 고연령대 쪽으로 이동·확장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가구주의 학력수준은 1997년 기준 중산층의 비중은 중졸이 69.4%, 고졸이 69.6%로 가장 높았고, 대졸 55.2%, 대학원졸은 34.4%로 나타났다(삼성경제연구소, 1997). 한편 조동기(2006)는 핵심적 중산층의 다수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나 주변적 중산층은 고졸 학력의 비중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다고 보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은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 학력 모두 고졸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중산층의 50%에 달하여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가구주는 대학 4년제 졸업, 가구주의 배우자는 중졸이 많았다. 전문대 이상의 범주들을 통합해보면 가구주의 경우는 학력상 큰 변동이 없었으나 가구주의 배우

자는 1998년 13.3%, 2003년 17.4%, 2008년 20.1%로 점차 학력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가구는 중산층 가구의 19.9%에 불과하였으나, 맞벌이 부부는 62.2%에 달하였다. 또한 무직가구인 경우도 45.2%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삼성경제연구소, 1997). 가구규모는 가구원수가 3인 및 4인인 경우 중산층의 비율이 각각 70.1%와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98년, 2003년, 2008년 모두 4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인, 2인 순으로 나타났는데 두드러진 특징은 4인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 199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중산층가족의 직업적 특성을 보면 1997년 기준으로 전체 중산층 가구의 44.7%가 노무근로자 가구였으며, 24.5%는 자영업자 가구, 22.7%는 봉급근로자 가구로 이들 직업이 91.9%에 달하여 전체 중산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삼성경제연구소, 1997). 조동기(2006)는 중산층을 핵심적 중산층과 주변적 중산층, 하층으로 구분하여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핵심적 중산층은 전문직과 관리직의 비율이 큰 반면, 하층에서는 생산직과 농어민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직업적 기준으로 중산층의 판별은 화이트칼라(전문직, 관리직, 준전문직, 사무직)와 구중간계급이었는데, 기타 범주를 제외하면 핵심적 중산층은 판매직의 비중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경우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그 비율은 1998년 이후 점차 하향세를 보였으며, 건설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종사자는 다소 늘어나 중산층의 내적 구성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중산층가구 내에 취업 가구원 수를 보면, 취업 인원이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2명인 가족이 많았는데, 1인 취업가구는 2003년도 다소 줄었다가 2008년도에 오히려 더욱 증가하였고, 2인 취업가구는 같은 시점에 5% 늘었다가 그 이후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한국 직업능력개발원, 2009).

중산층의 소득 특성을 살펴보면, 1997년 기준 중산층의 연평균 가구 소득은 2,067.8만원이며, 연간 근로소득은 1,314.4만원으로 나타났다. 즉 중산층 소득은 빈곤층 및 상류층 소득의 각각 312.2%와 44.7%에 해당되며, 중산층 근로소득은 빈곤층 및 상류층 근로소득의 397.2%와 57.0%에 해당되었다. 또한 근로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산층의 경우 64.2%이며 근로소득에서 가구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산층의 경우 74.7%에 이르렀다. 이는 중산층가구의 경우 근로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류층과 하류층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실직에 의한 소득감소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삼성경제연구소, 1997; 류상영, 1999). 재산소득은 141.9만원으로 연간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빈곤층과 상류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삼성경제연구소, 1997). 조동기(2006)는 핵심적 중산층의 다수가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및 400-600만원 미만 범주에 속해 소득 수준이 월등히 높지만, 주변적 중산층은 200-400만원 미만, 하층은 200만원 미만 범주로 보았다. 이 외에도 한국노동패널 4차년도(2001년)~10차년도(2007년) 자료를 통해 중산층이 타 소득계층에 비해 근로소득 비중이 높고 금융·부동산 소득 및 이전소득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소득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다음으로 주택 소유 여부는 중산층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산층의 경우 아파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비중산층에 비해 자가 소유 비율이

높고 점유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홍두승, 2005). 2008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산층의 63.3% 이상이 주택을 소유하였으며 이는 1998년도의 57.1%보다 더 높아진 수치이다. 입주형태에 있어서도 중산층의 60% 정도가 자가주택에 거주하였으며 다음으로 전세, 보증부 월세가 많았다. 주거형태는 2003년까지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이 가장 많았으나 2008년부터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1위로 가장 높았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중산층의 생활양식을 살펴보면, 2000년도 기준으로 소비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은 외식비를 제외한 식료품비(16.6%)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교통통신비(16.0%), 교육비(11.2%), 외식비(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변적 중산층은 교육비 부담이 가장 높았고 이외에 문화비, 의복구입비, 교통비 등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과 관련된 소비태도를 보면 힘들게 저축하기보다 사고 싶은 것은 산다는 태도를 보인 사람은 중산층이 비중산층보다 더 높았다(홍두승, 2005).

조동기(2006)의 연구에 따르면 중산층의 귀속의식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 약 20~30%로 나타나는 중산층 귀속의식은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된 중산층 비율(주변적 중산층을 포함하여 66.9%)이나 계층 귀속에서 중간계층으로 분류된 비율(73.8%)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중산층’에 대해 상당히 높은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객관적 지표를 고려하여 중산층 귀속 확률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택소유, 소득 및 교육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소유는 한국사회에서 중산층을 정의하는데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사람들은 주로 경제적인 기준으로 중산층을 생각하며,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재산 10억 이상을 기준으로 생각하여서 사실상 상층에 버금가는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하고 있다. 최효미(2008)의 연구에서도 중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가구 중 68.0%가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하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49.3%만이 자가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중위소득계층에 속하지만 자가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응답자는 하류층에 속한다고 응답하여 자산이 높을수록 중간층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층의 경우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이 27.0%이며 부동산 시가에 있어서도 중간층은 1억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68.2%나 되었다. 즉 현재 근로소득이 없어 가구총소득이 낮을지라도 가구 내 부동산 자산이나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응답자들은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객관적 지위와 주관적 지위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지위와 주관적 지위가 일치하는 비중은 45.8%이며, 주관적 지위가 객관적 지위보다 높다고 응답한 경우는 5.3%에 불과하였으며, 객관적 지위보다 낮은 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49.0%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중위소득계층에 속하면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관리직 종사자일수록 중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최효미, 2008).

이 외에도 홍두승(2005)은 가정설비 및 문화품목, 정보화 정도, 가족생활, 여가생활 등에 대한 중산층의 생활양식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김응렬(1996)은 중산층의 교육 열망, 직업열망, 정당지지 태도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송혜림 외(2009)는 중산층이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층으로 하향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국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보았다. 또한 중산층 가족의 경우 갑작스러운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 결핍감, 준거집단과의 괴리로 인한 박탈감 등의 문제 소지가 크다고 보았다.

2. 복지체감도 관련 선행연구

직접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체감도조사는 대부분 여론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연구에서는 복지체감도와 그 개념 및 범주에 관한 실증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는 거의 부재하며, 우리나라 복지수준에 대한 체감도를 통해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파악하거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특정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산층가족이 체감하는 복지 또는 복지수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보다는 복지체감도 측면에서 연구결과를 제시한 선행연구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가. 임신·출산, 일·가정양립, 양육관련 정책의 복지체감도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출산율이 급락하고, 향후 수십 년 내에 고령화가 세계 최고수준으로 심각해질 전망이어서 정부는 중점추진과제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중산층의 양육·교육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과 양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과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었다.

신윤정 외(2009)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정책을 중심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체감도 및 우선순위 조사”를 실시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정책적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동안 정책 평가는 실질적인 대상자인 국민의 정책체감도보다는 정부의 목표달성도를

측정하는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지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국민의 정책 지지도를 바탕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실효성 있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사결과, 일-가정양립 분야의 경우 중요도 인식은 높으나 실행도 체감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개선이 요청되는 사업으로 지적되었다. 다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동 영역 사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실행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비 지원’의 경우 정책 실행도 체감이 타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보편적인 형태에 가까운 지원일수록 체감도가 높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저출산 분야에서는 기존의 양육지원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정책이 선회되어야 하고, 저소득층에서 맞벌이 등 중산층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어야 하며, 국민의 정책체감 향상을 위해 급여 및 서비스 수준이 현실화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서문희 등(2008)은 우리나라의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과 관련하여 육아휴직과 직장보육시설 이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보육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가 가정 내 보육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고, 보육시설 서비스 중심으로 12시간 종일제로 획일화되어 있어 이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은 양육비 지원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임에도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기회는 크게 부족하고 지역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 향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조주은(2009)은 산전후휴가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으로부터

90일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다수의 여성근로자들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이용자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개별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은 해당 가구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화 되어 있어 일정한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정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의 보육정책이 국공립시설확충이 아닌 민간보육시설의 기본보조금제도 등 보육료 지원에 집중되어 서비스의 질이 검증되지 않는 민간보육시설이 더욱 확대되었으므로 보육예산 대비 개별 부모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여전히 미미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조병구 외(2007)는 보육료 지원에 있어 인건비나 기본보조금 등은 전달방식 때문에 지원금이 교사 인건비나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에 사용된다는 부모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이었으나, 2011년 3월부터는 소득 하위 70%가정에 보육료가 지원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25%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즉 만3~5세를 둔 가정에 최대 247,000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명선 외(2008)는 현재 추진 중인 다문화정책이 주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편중되어 있으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일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일반가정에 비해 매우 낮아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들이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들은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그에 따라 복지체감도도 더 낮을 확률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이순형 외(2006)는 여성 결혼이민자가족의 복지수준 및 욕구와 관련하여, 제도와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영유아 보육

료지원, 빈곤층의 생계·의료비 지원 등이 높았다고 하였다. 설동훈 외(2005)의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는 읍·면·동사무소 등 공적기관과 사회복지관, 이주여성상담소 등 민관기관의 이용이 매우 적었으며, 특히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지적되어 이들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의 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이선 외(2007)의 연구에서는 출산, 자녀양육,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등을 겪는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미약한 수준이었으며 주된 원인은 서비스 실시가 초기라는 점과 예산수반 등이 지적되었다.

나. 사회서비스 복지체감도

사회서비스 복지체감도와 관련하여, 강혜규(2008)는 사회서비스 제도 혁신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사회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문제 급증과 신사회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되었다. 동 분석자료에서는 일자리 개발에 치우친 사회서비스 확충, 이로 인한 국민의 체감도 괴리, 사회서비스 공급 인프라 확보 미흡, 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형평성과 영역별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이용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지속성을 가진 사회서비스 제도화에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문제시하였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체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기반으로 공공-민간영역의 역할분담을 통한 공급주체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며, 수요자 중심의 이용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결국 사회서비스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복지체감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강혜규(2010)는 또한 공공-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체감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을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

스 제공을 통해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복지제도 이용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전담공무원과 서비스 이용자 간의 관계형성이 중요하며, 서비스 만족도 및 체감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서비스 및 급여 종류, 급여 수준 또는 빈도, 접근성’으로 현물 급여보다 현금 급여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는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현재 서비스 이용자의 복지만족도와 체감도 측면에 동시에 접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복지체감도 증가 측면에서는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서비스의 등 보편적 서비스 강화를 제안하였다.

다. 복지지출과 복지수준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을 통한 복지체감도 분석연구로, 고경환(2007)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증가하였지만 서민의 복지체감도는 하락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1990년 이후 2003년까지 연평균 36.8%가 증가하여 GDP 증가율 10.8%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조세를 포함한 사회복지지출을 통한 소득분포 개선율은 2004년 기준 OECD 평균인 41.3%에 훨씬 못 미치는 3.1%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의 주된 원인은 2003년 사회복지지출 수준(GDP 대비 7.9%)이 OECD 주요 국가들의 25~50% 수준에 머물고, 사회복지지출구조가 사회보험성 급여 등 법정지출은 높은 반면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사회서비스성 재량지출은 미미하여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친화적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지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의료 지원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복지재정지출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복지체감도가 낮은 원인으로 복지분야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건강보험의 비중으로 지적되었다(조선일보, 2011.3.5일자 보도). 이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30.6%(33조6835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이나 중증환자들은 복지체감도가 높지만 청장년층은 병원이용률이 낮아 “건강보험료만 내고 돌아오는 복지는 없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6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도 복지체감도 하락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밖에도 보금자리 주택,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은 일부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이 제공되어 대다수 중산층은 도움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방안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중산층의 욕구가 큰 보육 서비스 등의 확대를 강조하였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이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보건복지정책 수요분석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결과, ‘경제수준 대비 복지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12.6%에 그쳤다. 국민 대다수가 현재의 복지 수준이 경제 수준에 걸맞지 않아 복지정책에 체감도는 낮은 편임을 시사하고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고령자일수록, 읍·면·군 거주자일수록 현재의 복지 수준이 경제 수준에 비해 높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젊은 계층 또는 도시거주자의 경우 복지에 대한 체감 인식이 더욱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52.6%로 중립적 의견이 절반에 가까웠던 일반 국민들과 달리 전문가 집단은 현실적인 체감복지에 더욱 부정적이었다.

라.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체감도 향상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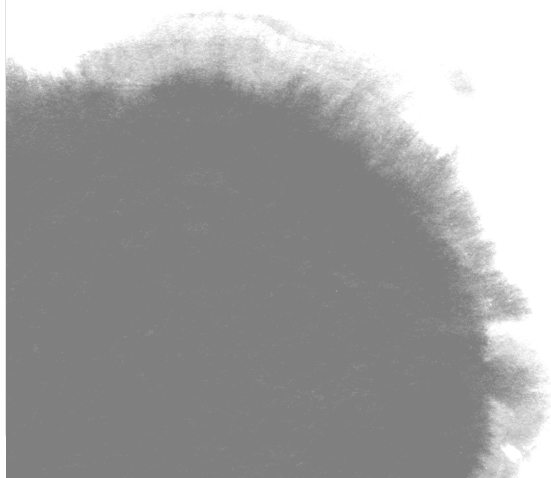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선행연구 이외의 논의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진수희 장관 주재로

복지전문가와 실무자 등이 참석한 MB 정부 출범 3년을 맞이한 “더 나은 복지정책을 위한 복지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2011.2).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빈곤대책 중심에서 의료, 고용, 주거 등 중산층의 복지욕구 대응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이 지적되었다. 또한 향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제도가 효율성 확보 노력의 지속을 가장 중요하다고 제시되었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 도입을 통해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복지급여 증가에 따른 국민의 복지체감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인력충원, 읍·면·동의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리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복지제도 발전 및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노력은 향후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기초자료를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이 발전적으로 제시된다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복지사업은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서비스전달체계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해당부처에서 분산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이러한 복잡한 복지체계는 낮은 복지체감도로 이어진다. 특히 공공부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영역에서는 노인, 장애인의 경우 각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고용지원서비스는 지자체와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강혜규(2011)는 복지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이나, 서비스전달체계가 통합적으로 구축되지 않아 국민들이 복지급여나 서비스관련 정보 및 접근성과 관련하여 어디에서 도움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임을 강조하였다.

03

국내외 중산층가족 관련 법제도 비교분석



제3장 국내외 중산층가족 관련 법·제도 비교분석

본 연구에서 중산층가족의 정의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나 국제비교 측면에서 용이한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50% 미만 가구”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명백하게 구분되지만, 중위소득자인 중산층만을 대상으로 규정된 정책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내외 중산층의 가족정책 관련법과 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중산층 가족정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논하고, 이를 기초로 국내외 관련법과 정책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1절 중산층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및 방향

1. 가족정책과 중산층에 접근하는 인식론

학자들의 가족정책에 대한 정의는 <표 3-1>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조홍식 등(2002)은 직접적으로 ‘가족’복지에 관심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조치나 행동을 가리키는 것, 개인을 다루더라도 가족과 연계 속에서 접근하는 경우, 즉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도 그것이 가족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가족과 관련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

비스·고용정책·조세정책·보건의료정책·주택정책 등이 모두 가족정책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초의수(2008)도 Kamerman과 Kahn(1976)의 가족정책 개념을 인용해 가족을 위해 목적과 목표를 갖고 정부가 체계적으로 수립, 집행하는 명시적 가족정책과, 간접적인 결과로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묵시적인 정책도 가족정책의 대상으로 분류한다.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족법은 ‘가족을 규제하는 판례(case)들과 법령들(statutes)’을 의미한다(Diduck & O'Donovan, 2006, p.7). 따라서 가족법은 가족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규제하는 고용법, 범죄관련 법, 청소년법, 세법, 이민법, 소유와 관련된 법, 사회안전보장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해석된다(정혜정 외, 2009).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가구 중 가족이 아닌 집단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정의에 기초한다면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개별가족원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이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정책이 가족정책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는 유영주(1996)의 주장과 같이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어떠한 통합성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중산층에 대한 기존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중산층 가족정책의 방향이 좀 더 명확해 진다. 학자들의 정의가 다양하지만 유경준과 최바울(2008)은 중산층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중산층의 가구비중’, ‘울프슨(Wolfson) 지수’ 및 ‘중산층의 소득점유율’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중산층 가구 비중’을 기준으로 할 때 중위소득의 50~150% 사이에 포함되는 가구가 포함된다. 그리고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을 기준으로 할 때는 전체 가구 소득수준 중간 60%가 포함된다. 홍두승(2005)도 중산층 판별을 위한 객관적, 주관적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객관적 기준으로는 직업, 소득, 자산과 같은 경제적 차원과 학업성취와 중산층 문화 등의 사회문화적 차원을, 주관적으로는 귀속의식으로 구분하였다. 이동훈(2007)도 객관적 분류(소득이나 자산 등 경제적 지

수 중심)와 주관적 분류(귀속의식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 정치사회적 변수 중심)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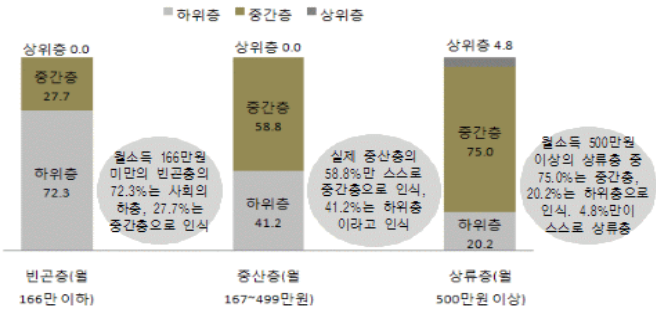
〈표 3-1〉 학자들의 가족정책에 대한 정의 및 내용

연구자	내 용
이혜숙(2004).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 가족정책은 가족의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하는 정책을 의미
김혜경(2003). 가족정책과 양성평등. 국회도서관보 기획논문	· 가족정책의 광의의 정의: 가족법, 세제정책은 물론 노동시장정책까지 포함 · 가족정책의 협의의 정의: 생활보호대상자, 요보호 대상 가족을 위한 정책에 국한될 수도 있음(변화순, 1995).
김성천·안현미(2003). 참여정부 가족정책의 기본 구성요소의 분석과 발전방향 모색	· 가족정책은 국가가 가족이라는 단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Quah, 1994; Harding, 1996; Muncie, et al., 1997), “가족을 위한” 정책과, “가족에 의한” 정책이 다 포함됨. · 가족복지정책(family welfare policy)은 가족정책의 한 영역으로 복지의 속성상 가족의 행복을 지향하는 “가족을 위한” 제도적 개입으로 규정.
조흥식 외(2002). 가족복지학	· 가족정책은 가족과의 연계성이나 가족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가족’복지에 관심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조치나 행동을 가리키는 것, 개인을 다루더라도 가족과 연계 속에서 접근하는 경우, 즉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도 그것이 가족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가족과 관련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고용정책·조세정책·보건의료정책·주택정책 등
Kamerman and Kahn (1997)	· 가족정책은 가족을 하나의 “전체로서 고려”하거나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가족원으로서의 위치를 고려”하여 수행되는 법·조례·각종 급부와 프로그램 · 구체적으로는 모성·부성정책 등의 취업관련정책, 소득공제나 세금제도·직접적 이전 등의 소득관련정책, 그리고 보육서비스나 주택정책·아동복지서비스 등의 사회적 서비스가 모두 가족정책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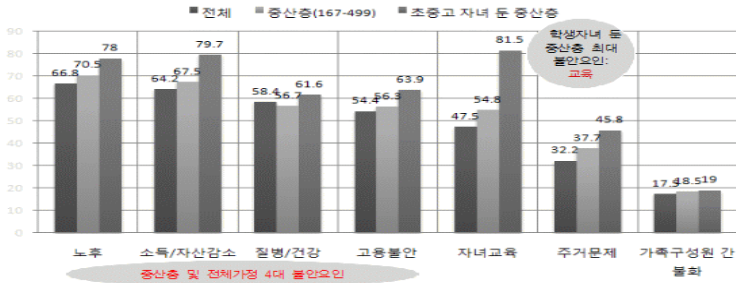
이들 기준은 얼마만큼의 가구 비중이 중산층에 속하는가하는 것과 이러한 비중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결국 정책적인 관점

에서는 조동기(2006)의 주장과 같이 주로 중산층의 확대와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즉 중산층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이숙중(2009)의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2007년 4인 가구 중위소득(median)의 50%~150%(2007년 중위(총)소득 월 333만원, 167만원~449만원)을 중산층으로, 50% 미만은 빈곤층, 150% 이상은 상위층으로 분류하여 계층별 인식조사(이숙중, 2009)의 결과는 [그림 3-1]과 [그림 3-2]와 같다.

[그림 3-1] 소득기준 계층분류와 주관적 계층의식사이의 괴리



[그림 3-2] 개인의 처한 최대 불안 요인



자료: 이숙중(2009). 계층인식조사.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브리핑, 59, 1-19.

결국 정책적 관점에서의 중산층은 자신들이 중산층으로 인식하는가 하는 점과 이들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숙중(2009)의 연구결과와 같이 소득(노후포함), 건강, 주거, 고용 등 가족외적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과 가족구성원들의 관계 등 가족관계적인 요인들은 중산층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의 정책이 필요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문형표 등(2009)의 연구가 시사점이 있다. 문형표 등(2009)은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위기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고, 우리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미래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을 휴먼뉴딜정책으로 명명하고 중산층 탈락방지,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미래 중산층 육성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한다. 결국 문형표(2009)의 휴먼뉴딜정책의 기준에서 볼 때 이숙중(2009)의 연구에서 중산층 가족의 4대 불안요인으로 지적된 “소득감소, 질병, 고용, 노후”에 대한 우려는 중산층탈락방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즉 중산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바로 연금, 의료, 고용, 산재의 4대 보험이 핵심이다. 기획예산처(2002)의 중산층 서민생활안정대책에 대한 논의에서도 주거생활안정대책,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대책, 실업대책과 기초생활보장대책으로 대별하여 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또한 문형표 외(2009) 등이 제안한 휴먼뉴딜의 기본방향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금, 의료, 고용 산재 등의 보험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관점을 벗어난다. 따라서 휴먼뉴딜(박성쾌·김중천, 2010; 문형표 외, 2009; 미래기획위원회, 2009)의 핵심인 ‘각생애주기마다 처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와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적 관점으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중산층가족 정책을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휴먼뉴딜 정책과 미국의 오바마정부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그 한계 내에서 중산층가족 관련 정책을 정리하고자 한다.

2. 중산층가족 관련 정책

공식적으로 중산층가족을 정책의 대상으로 표방하는 정책은 2009년 3월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휴먼뉴딜(Human New Deal) 정책과 미국의 오바마정부의 “백악관 중산층맞벌이가족을 위한 테스크포스”(White House Task Force on the Middle Class Working Families)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가. 한국의 휴먼뉴딜정책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이 4배 이상 증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근로장려세제 및 기초노령연금 등의 다양한 복지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 현상이 되었다. 이에 기존의 소극적이고 시혜적인 정책만으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 이명박정부는 2009년 3월 중산층 탈락방지 및 진입촉진, 그리고 미래 중산층 육성을 위한 새로운 휴먼뉴딜(Human New Deal) 정책을 추진하였다(문형표 외, 2009). ‘휴먼뉴딜’의 핵심은 ‘생애주기마다 처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와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을 의미한다(박성쾌·김종천, 2010). 따라서 ‘휴먼뉴딜’이 지향하는 목표는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위

기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고,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미래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을 의미하며, 위기에 대한 사전예방적 접근과 근로를 통한 재도약을 통해 가계안정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미래기획위원회 보도자료, 2009).

이러한 정책은 첫째,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확대 등 분배구조 약화에 대한 대응, 둘째, 고용불안정성 증가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의 노동시장여건 변화에의 대응, 셋째, 노인부양부담 등으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하락 등의 저출산·고령화사회에의 대응, 넷째, 4대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등 불안정한 사회안전망의 대응에 대한 요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휴먼뉴딜정책은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줌으로써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낮추고 스스로의 힘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문형표 등, 2009, p. 18)인 능동적인 복지(active welfare)를 표방한다. 따라서 휴먼뉴딜의 궁극적인 비전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사회, 사회이동성이 높은 사회,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 지속가능한 통합된 사회’이다. 이를 위해 예방적 투자적, 수요자 중심의 융합적, 생애주기별 접근을 추진원칙으로 제시한다(문형표 외, 2009).

미래기획위원회(2009)에 의하면 휴먼뉴딜의 3대 핵심 정책방향은 첫째, 중산층 탈락방지, 둘째,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셋째, 미래 중산층 육성이다. ‘중산층 탈락방지’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지원, 여성 적합형 일자리 창출 등 가구소득원 다양화, 가계 지출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사실상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감안, 주거·교육·의료비 등 가계지출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특히,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개혁이 필요한 점을 감안, 사교육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

도 선진화도 휴먼뉴딜 정책에 포함시켜 검토해 나가는 등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비용 발생구조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골자이다.

‘중산층 진입 촉진’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직업교육·훈련 강화,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근로유인 강화, 창업마인드 확산을 통한 창업촉진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창업촉진을 위하여 중산층이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새로운 맞춤형 모델로 제시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골자이다.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더불어, 관련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복지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기본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중산층 육성’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빈곤을 이어받지 않도록 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육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서민·중산층이 혜택을 받는 좋은 학교 만들기 등 공교육 경쟁력 확보, 방과 후 교육 및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교육 수요 경감,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영유아 서비스 확대, 인력양성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 강화 등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중산층탈락방지를 위한 가족정책은 여성의 취업촉진이 핵심으로 이를 위한 ‘일과가족양립정책’이 중요한 과제이다. 중산층진입 촉진과 미래중산층육성에서 중요한 과제는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가족정책일 것이다. 또한 이 3가지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각생애주기마다 처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가족관계강화정책 즉 가족역량강화와 건강성증진을 위한 정책들일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정책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 미국의 중산층 가족정책

오바마정부의 “백악관 중산층맞벌이가족을 위한 테스크포스”(White House Task Force on the Middle Class Working Families)의 활동은 1996년부터 시행된 클린턴의 복지제도 개선안과, 2002년 이후 시행된 미국의 건강가족정책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중산층 가족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건강가족정책을 설명하고, 오바마정부의 중산층맞벌이가족을 위한 테스크포스의 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가족관계강화정책: Healthy Marriage Initiative

미국의 건강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은 1996년부터 시행된 1995년 클린턴대통령의 복지제도 개선안(근거법안: 연방정부의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Act in 1996’(Senate Bill 104)-ACT 389)에 근거한다. 이 개선안의 목적은 아동복지의 수단으로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수혜가족들이 일을 하게 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기능토록 하는 것이다. 핵심 업무부서는 Division of Family and Child Service(DFCS)에서 담당하나,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부서의 협력적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인적자원부(Dept. of Human Resources: DHR: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case management 제공), 노동부(훈련을 위한 1차적인 지원) 및 기술과 성인교육부(Dept. of Technical and Adult Education: DTAE: 일자리 개발과 일자리 배치 등)가 협력한다.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2001년부터 연간 255억-240억을 투자하여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이하 TANF)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재무부에서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해 165억 6,654만\$을

마련하였으며, 각 주정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각 주에 차등지급되었다. 주정부는 기존의 아동지원기금(Child Support fund), TANF 자금 및 주정부의 대응출연기금(matching fund)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기금은 크게 5가지 사업에 지원되는데, 첫째는 아동의 빈곤을 해결·예방하고 부모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을 돕고 양부모가족의 형성과 유지를 강화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둘째는 맞벌이 가족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의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AFDC)에도 지원하며, 셋째는 결혼을 증진(promote)하고, 아버지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실험에 지원한다. 넷째는 아동의 삶을 더 좋게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버지 참여활동과 부부(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강화사업에 지원하며, 다섯째는 사회보장법 Title IV의 Part A 규정에 근거하여 건강한 양부모가족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50%(건강가족증진기금)이내의 자금을 사용(2003년 개정안에 포함됨 103조)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특히 이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 기금을 통해 복지수혜를 받는 가족은 <표 3-2>와 같은 의무규정이 신설되었다.

〈표 3-2〉 복지수혜가족의 의무규정

1. 기간제한-복지수혜자들은 연방정부에서 제정한 최대 48개월 지원. TANF는 소득을 위한 영구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시적인 지원 프로그램임.
2. 일에 대한 의무(work requirement): 1살 이상의 자녀를 가진 모든 TANF 수혜자는 일을 해야 함-최대 50%로 올리도록 연방정부에서 요구함*
3. 자기책임에 대한 동의: TANF 수혜자는 자신의 삶을 더 좋게 하려고 노력해야한다는 동의서를 작성. 또한 학교 conference에 참가하고, 아이들 예방접종과 산전검진을 받는 것 등 포함. 10대 부모는 부모나 책임있는 친척과 살아야하며, 학교에 다녀야만 함.
4. family cap: TANF수혜자(지원이 있는 시기 10달 이후 다른 아이를 갖는 TANF 수혜자는 한 아이를 더 낳는다고 해서 현금지원이 증가하지 않음), 이 규정의 내용을 강력히 조사함.

특히 Minnesota주와 Montana주에서는 TANF 수혜자중 2세미만의 어린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의 복지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4년 7월 1일부터 TANF-funded At-Home Infant Care(AHIC)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 부모의 정의는 출생부모, 재혼부모, 입양부모, 수양모(foster)와 실제로 부모역할을 하고 있는 양육자(guardian)를 모두 포함 하며, 부모는 18세 이상이며, 고등학교학위나 이와 동등한 학위를 받아 야한다. 이 정책은 부모가 취업할 경우 보조받는 아동양육(child care) 비용 90-100%를 받으면서 유아와 집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수혜대상 부모의 기준은 연방정부의 빈곤선 150%미만이거나, AHIC로 이전에 전체 24개월을 지원받지 아니한 자, 이 법의 혜택을 받기 전 3개월 중 최소한 한 달은 다음 조건에 맞게 일을 해야 한다). 이 정책은 Bush 정부의 강화정책으로 더욱 활성화 되었다²⁾.

Bush정부의 정책은 기존에 복지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업에서 TANF 기금을 통해 건강가족 증진을 위한 지원, 즉 예방적 복지의 필요성을 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2002년 의회에 처음 관련 법안이 상정되었으며, Dept of Health & Human Services에서 TANF fund로 2001년부터 결혼연구, 평가, 훈련과 시범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법안이 2003년 하원을 통과하였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초기의 여론이 매우 비판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직업훈련, 건강보험, 임신예방프로그램 등에 비

- 1) 양부모가족의 경우는 한부모 또는 양부모 모두 한 달에 120시간, 한부모가족이 경우 한 달에 60시간 학교에 다니거나 훈련 중인 한부모의 경우는 한 달에 60시간을 일을 해야 함.
- 2) Bush 대통령은 Marriage Protection Week(2003)에서 ‘나는 부부들이 건강한 결혼(healthy marriages)을 형성,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Marriage Initiative를 제안합니다. 이 법은 결혼을 지원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다른 가족구조보다는 두 부모가 있는 가족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평균적으로 더 낫다고 합니다. 교육과 상담프로그램, 종교단체나 지역사회와 정부기관을 통해서 건강한 결혼과 아동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책임 있는 아동양육과 건강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정부는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3/10/20031003-12.html라는 취지하에 이 사업을 위해 5년간 15억\$ 지원을 공약화함.

용을 지출해야하는데 부부형성과 건강가족이 유지되도록 돕는 것 자체가 빈곤퇴치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활성화된 배경에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기여를 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몇 가지 연구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정된 결혼생활이 더 안정된 고용과 높은 임금과 관련이 있으며, 부부형성과 건강가족이 유지되도록 돕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가족을 돕는 전반적인 책략의 한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한 가족에서 남성과 여성, 아동이 신체와 정서 상태가 더 좋다는 것이다. 미국통계청에 의하면 미국인의 90%가 궁극적으로 결혼을 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길 희망한다는 것이다(Williams, Sawyer & Wahlstrom, 2006; Wilcox, 2005).

건강가족 증진정책은 아동 및 가족부(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ACF)에서 지원된다. 이 정책에서 정의하는 “건강한 결혼(healthy marriage)”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특성을 포함한 결혼생활을 의미한다. 첫째는 부부가 함께 관계가 향상(mutually enriching)되는 관계이며, 둘째로는 배우자가 서로 깊이 존중(deep respect)하는 결혼이다. 이러한 상호 만족스러운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만약 있다면)에게 모두 혜택을 준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committed), 효과적 의사소통기술을 이용하고 성공적인 갈등해결기술을 이용한다고 기대된다. 그리고 정책목표는 첫째, 건강한 결혼생활을 하는 양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의 비율 증가, 둘째는 건강한 결혼생활을 하는 결혼한 부부의 비율증가, 셋째, 부부형성과 건강가족의 유지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혼전부부들의 비율증가 그리고 넷째는 궁극적으로 건강한 결혼을 형성,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포함한 건강한 관계에 대한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성인과 젊은이들의 비율증가이며, 다섯째로는

건강한 결혼의 가치와, 부부들이 건강한 결혼을 유지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술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여섯째,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성, 남성과 아동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 등이다.

Bush 대통령의 제안한 법안(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Act in 2003) 103조에는 건강한 결혼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8가지 활동에 건강가족증진기금(Healthy Marriage Promotion Grant)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기금의 50%를 건강하고 결혼한 두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3-3〉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Act in 2003, 103조: Healthy Marriage Promotion Activity의 내용

1. 결혼의 가치, 결혼안정성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에 대한 가치를 알리는 공공홍보
2. 결혼 가치와 관계기술, 경제관리(budgeting)에 대한 가치를 고등학교에서 교육
3. 결혼하지 않은 임신여성과 결혼하지 않은 예비아버지를 위한 부모역할기술, 재정관리, 갈등해결, 직업과 경력 증진 등을 포함한 결혼교육과 결혼기술과 관계기술훈련 프로그램
4. 약혼한 커플과 결혼에 관심을 가진 개인 부부를 위한 혼전교육과 결혼기술훈련
5. 결혼한 부부를 위한 결혼향상과 결혼기술훈련프로그램
6. 관계기술을 교육하는 이혼감소프로그램
7. 결혼부부가 역할모델로 삼고, 그리고 위기의 지역사회에서 멘토육성을 위한 결혼 멘토링프로그램
8. 이상에서 제시된 활동과 관련되어 기금이 제공되고, 결혼에 대한 의욕을 꺾는 것(disincentive)을 줄이는 프로그램

자료: 1) 미국 Dept. of Health & Human Services부의 아동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ACF)의 가족지원사업은 http://www.acf.hhs.gov/acf_services.html 참조
2) http://www.acf.hhs.gov/healthymarriage/about/myths_facts.html 참조

2) 중산증가족정책의 내용과 방향

2009년 오바마 정부 수립 이후 연방정부(www.whitehouse.gov)에서 다루는 이슈는 크게 23개 영역³⁾으로 가족이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이

다. 가족문제에 대한 정책은 부통령 Biden⁴⁾이 이끄는 “백악관 중산층 맞벌이가족을 위한 테스크포스”(White House Task Force on the Middle Class Working Families: 이하 중산층 TF로 명명함)의 활동이 핵심이다.

어려운 시기에 처한 가족을 지원하는 근거는 “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Act”이다. 오바마정부는 이법의 자금으로 2009년 2월 \$ 7870억의 자금을 요청해 의회를 통과했다(Staff Report, 2010). 이 법안에서 다루는 중요한 내용은 실직자 700만 명의 건강보험지원, Child Tax Credit를 확대하고 새로운 Make Work Pay tax credit를 만들어 맞벌이가족의 소득지원, 또한 맞벌이가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질적인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를 추가로 20억\$, Head Star 및 Early Head Start에 각각 11억\$를 지원하는 맞벌이가족 소득지원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기아를 없애기 위하여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과 WIC(food bank &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을 위해 200억을 지원하는 기아예방 및 영양정책, 저소득층의 에너지사용비용을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적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50억\$의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을 통한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이 지원된다. green job training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summer jobs 등의

3) 23개 영역에는 Civil Rights, Defense, Disabilities, Economy, Education, Energy & Environment, Ethics, Family, Fiscal Responsibility, Foreign Policy, Health Care, Homeland Security, Immigration, Poverty, Rural, Seniors & Social Security, Service, Taxes, Technology, Urban Policy, Veterans, Women, Additional Issues(Faith, Arts, Child Advocacy, Katrina, Science, Sportsmen, & Transportation) 등이 포함됨.

4) 조직의 구성원은 부통령 Biden이 의장이며, the Secretaries of Labor, Health and Human Services, Education, Treasury, Commerce,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Transportation, and Agriculture; 이들과 함께 Directors of the National Economic Council,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the Domestic Policy Council, and the Chair of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ors도 포함됨.

훈련과 Workforce Investment system을 위한 기금으로 39억5천만\$를 지원하는 직업훈련기금 확충 정책, 그리고 고용보험수혜자(Unemployment Insurance recipients)들은 1주일에 25\$, Social Security and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beneficiaries들에게는 추가로 250\$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지원하며, 또한 주정부에게는 고용보험자격자들을 확대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TANF의 새로운 자원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재정을 확충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이법의 취지는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게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근간은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국가를 만든다’(A strong nation is made up of strong families)는 전제하에 맞벌이가족 지원, 건강보험 개정(Reform Health Care), 교육 투자, 일과 가족의 균형증진, 가족의 건강성 강화 등이 기본적인 목적이다. 맞벌이가족지원을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내의 전체 가족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맞벌이가족이 필요로 하는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모든 아동이 요람에서 직업을 갖기까지 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기위해 초중고등학교(K-12 Education)교육을 개혁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고용 창출, 근로가정 세제지원, 의료보험의 확대, 교육정책, 주택소유자 지원 등을 근간으로 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중산층 대책(www.whitehouse.gov/issues)은 문형표(2009)가 제시한 3가지 관점이 통합된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가족이 대상이 아니라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족의 위기극복을 위한 중산층탈락방지를 위한 정책이 핵심이다. 그러나 대학진학 기회확대와 조기 교육의 강화(교육) 등의 교육정책은 미래 중산층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의의가 있다.

제2절 중산층 가족정책 관련법

현재 제안되고 있는 노동과 사회보험 등 중산층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가족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족원들의 역량 강화와 가족기능을 지원하는 서비스 정책이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휴먼뉴딜정책이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줌으로써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낮추고 스스로의 힘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문형표 등, 2009, p. 18)인 능동적인 복지(active welfare)를 표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가족원의 역량강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국회의 여성가족 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관련 법률과 주요정책은 <표 3-4>와 같다. 그러나 본 연구의 범위에 속하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회 산하의 가족관련 법 중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노인복지법’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책방향이 건강한 가족을 위한 예방적, 투자적, 수요자중심 및 생애주기별 접근을 표방하므로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휴먼뉴딜 정책의 기본방향(문형표 등, 2009)에 접근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법 중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먼저 다루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노인복지법’ 등의 내용은 다음 절의 정책분석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표 3-4〉 여성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관련 법률과 정책

영역	법률	정책
여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여성인력활용 · 여성인권보호 ·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가족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건강가정기본법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다문화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가족기능강화: 아이돌보미서비스,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문화사업확대 · 다양한가족의 자립역량강화: 다문화가족생애주기별 서비스지원 ·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가족친화적 사회조화 ·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다양화, 지역사회·관련기관 가족돌봄 자원의 연대구축
청소년	·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 청소년 사회적 역량강화 · 청소년 인권, 복지증진 ·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정비
건강 질병 정책	· 국민건강증진법 · 보건환경연구원법 ·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지역보건법 · 공중위생관리법 · 위생사에관한 법률 · 구강보건법 · 모자보건법 · 전염병예방법 · 기생충질환예방법 · 검역법 · 결핵예방법	· 응급의료체계구축 및 1399안내 · 식품안전지킴이 · 의약분업 · 국립의료원 육성 · 지방의료원육성 · 금연상담전화 운영 · 일반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영유아 건강검진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사업 ·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역암센터

〈표 3-4〉 계속

영역	법률	정책
건강 질병 정책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 국립암센터법 · 건강검진기본법 · 암관리법 · 정신보건법	·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서비스 ·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 · 정신보건센터 운영 ·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 알콜상담센터운영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수돗물 · 불소농도조정 ·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제공 · 보건소 중심 통합건강관리 체계 구축 ·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화 ·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도입 · U Health 서비스산업기반 확충
연금 정책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국민연금법 · 기초노령연금법	· 국민연금정책의 이해 · 국민연금 정책의 목표/추진전략 · 공적연금연계제도 · 공적연금연계신청 · 공적연금연계급여 · 공적연금연계급여심의위원회 · 공적연금연계심사청구 · 퇴직연금 ·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 고령자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 · 농지연금 도입 ·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사회 복지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의료급여법 · 외국인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의사상자에우에 관한 법률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 기초생활보장 · 국민연금 · 기초노령연금 · 공적연금연계 · 사회서비스

〈표 3-4〉 계속

영역	법률	정책
저출산 고령 사회 정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아동복지법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영유아보육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노인복지법 · 장사등에 관한 법률	· 직장근로자 지원 · 결혼 및 임신·출산 지원 · 양육부담 경감 · 아동청소년지원 · 베이비붐세대 지원 · 노인지원 · 사회환경조성
장애인 정책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안	· 장애인 복지선진화: 장애연금제도, 장기요양서비스, 주택서비스 확대 등 · 장애인 경제활동확대: 고용의무제도 운영강화, 직업재활 내실화 등 · 장애인 교육문화 증진: 교육지원체계 구축, 통합교육 강화, 문화바우처 등 ·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상황 모니터링, 활동보조서비스, 보조기구 지원 등

1.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지원센터

급격한 사회적, 가족적 변화에 따른 가족문제의 증가로 가족문제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0세기 후반부터 가족문제를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해왔던 기존의 국가정책에 변화를 추구하고, 가족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외부적 도움과 중재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관심의 성과는 2004년 가족문제예방과 해결을 목표로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과 서비스 제공의 현장으로 2005년 이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각 시군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은 이러한 활동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족지원사업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의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상남도 김해시, 전라남도 여수시 등 3곳에 시범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부터 확대되어 새로운 가족지원사업의 현장으로서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표 3-5 참조). 2010년 6월 현재 전국의 132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가족돌봄지원 서비스,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등을 포함하는 공통필수사업과 아이돌보미,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취약가족역량강화,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지원, 가족보듬사업을 포함한 별도지침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표 3-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발전과 역할

일시	내 용
2004. 2.	설치근거 마련 :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2004. 6 - 12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 운영: 서울시 용산구·숙명여자대학교, 경남 김해시 사회복지관, 전남 여수시
2005. 1. 24	보건복지부와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약정 4팀제(인력개발관리/지원평가팀, 건강가정프로그램개발팀, 정보제공/문화운동팀, 총무지원팀), 정원 9인
3. 4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개원식
6. 23	여성가족부로 이관 (정부조직법 제42조)
2006. 1. 16	직제개편 3팀제, 정원 9인
3. 3	여성가족부와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업 위탁 약정
5. 1	직제개편 4팀제 정원 12인
11. 20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 개소식

〈표 3-5〉 계속

일시	내 용
2007. 1. 1	직제개편 5팀제 (연구개발팀, 교육팀, 지원평가팀, 결혼이민자사업지원팀, 운영지원팀), 정원 19인 66개소 운영 사업내용 - 장애아가정 아동양육지원사업 16기관 관리사업 -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사업 관리사업 - 한부모가족생활안정 지원사업 5개소 교육사업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40개소 관리사업
2008. 1. 1	83개소 확대설치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실시
2. 29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3. 2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9.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변경
2009. 1. 1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분리 ('09월. 1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16기관 관리사업 98개소 운영 사업내용 ▶가정내 양육 아동돌봄 서비스 강화 - 가족품앗이 사업 공동필수사업 추진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에 맞는 서비스 제공 - 이혼관련 가족상담지원 강화 - 군인가족행복지원서비스 사업(29개소)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성화 - 법원: 이혼숙려기간제도 시행에 따른 이혼전후 상담 - 노동부: 고용, 가족지원서비스 연계 협력 - 국방부: 군인가족행복지원서비스 MOU 체결 - 법무부: 가정헌법만들기 MOU 체결 ▶센터 가족사업 관리기능 전산정보화
2010. 1. 1	3월 여성가족부로 이관 6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포함 현재 132곳 운영 취약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관리

자료: 1) 건강가정지원센터(2010). 센터소개. Retrieved from <http://www.familynet.or.kr/>.

2)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각년도). 2007, 2008, 2009, 2010 운영가이드북.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3)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0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또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6년부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사업체로 위탁되어 결혼이민자방문교육사업도 운영하였다. 그러

나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이 2009년 1월 분리되면서 다문화업무도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0년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5개의 독립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 일가족양립정책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가족양립을 위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2007년 12월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직장보육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추진되었다.

또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적인 환경의 정착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도 2008년 6월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 법을 통해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기

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공표하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 인증을 실시한다.

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고령화가 중요한 아젠다로 대두되면서 2011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2011-2015년까지의 제2차기본계획도 수립되었다. 근간이 된 법률과 계획안은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기본계획」(2006)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법」(2007) 및 고용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007)이다. 이들 법률에 의한 직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유연근무,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등 3가지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6, 7, 8>과 같다.

특히 2011년 9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6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를 위해 1년간 근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남성의 출산휴가도 5일로 늘리고, 5일 중 3일도 유급으로 바뀐다. 이 밖에 산전후휴가의 명칭이 ‘출산휴가’로 변경되며, 임신 기간에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재 90일의 출산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유산·사산자에 관한 보호휴가의 범위가 넓어져 임신 16주 이전에도 휴가를 쓸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거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표 3-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영역	내용과 담당부처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1. 산전후휴가 분할사용 허용 (고용노동부) · 임신 초기 안정이 필요한 경우, 임신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시 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 2.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고용노동부) ·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시 5일까지(추가기간은 무급)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3. 가족간호 휴직제 활성화 (고용노동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가족간호휴직(무급)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 4.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 대상 확대 노력: 국제·사회보험간 전산망 연계 등을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적용 조치 강화, 수혜 대상 확대 추진 · 육아휴직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보장방안 추진: 사용자·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 계약기간을 연장, 연장된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 사업주 부담 경감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개선 : 출산 전·후 시기에 기간제·파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고용계약이 단절되었더라도 출산후 1년 이내에 기존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검토

자료: 보건복지부(2011)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표 3-7〉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유연근무제

영역	내 용
유연근로제 확산	1.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확산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 5개분야 9개 유형의 유연근무제 도입 2. 시간제근무 활성화 (행정안전부) · 전일제 1인 담당 업무를 시간제 2인이 담당하는 직무공유제(Job Sharing) 도입 · 육아가사 등으로 전일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의 시간제 전환 권장,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또는 단시간근로자(비공무원) 채용 ·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한 인사·보수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3. 단시간 일자리 확산·지원 (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단시간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토록 하고 신규고용을 유도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1.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고용노동부) · 정부지원 및 규제제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개선 - 단시간 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것이 정부의 규제 및 지원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을 조정 - 각 개별법 성격에 맞게 상시근로자수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개정 추진 ·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TV·인터넷 등 매체 홍보, 기업·노동계·여성계 등과 CEO 포럼 등 공동행사 개최 2. ‘스마트 워크센터’ 도입 및 확산 (행정안전부) · 지자체와 협의하여 일산, 분당 등 대도시 외곽에 구청, 주민센터 등 유휴공간을 활용, 스마트 워크센터 시범구축 · 본청과 동일한 업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워크센터 원격 근무지원시스템 구축 - 정부통합전산센터내에 스마트 워크센터 근무지원시스템, 서버기반, 자료유출방지시스템 등 기반 구축 ·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선진형 스마트 워크센터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으로 단계적 확산 3.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추진 (여성가족부) · TV, 인터넷 등 매체활용 정책 광고 등 홍보 추진 · 기업, 노동, 여성계 등과 유연근무제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CEO포럼 등 공동행사 등 추진

자료: 보건복지부(2011)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표 3-8〉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영역	내 용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설치가능 층수 및 인건 높이터 인정기준 완화 -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비시설 설치 시 4층 이상인 층에도 설치 허용 2차선(편도 1차선) 이내 도로를 횡단하여 이용가능한 높이터의 경우 인건 높이터로 인정 - 의무사업장별(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민간사업장) 접근방식 다양화를 통해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 사업장별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에 대한 세부원인 분석 및 각급기관 의무이행 독려 - 공공부분의 직접설치 유도를 위해 보육수당 지급은 직장 내 또는 인근에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수요가 부족한 경우로 제한 - 보육수요 적은 경우 컨소시엄 구성하여 보육시설 설치 지원 - 설치 지원 확대 및 인건비 지원 강화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상 (7% → 10%) - 교재교구, 놀이기구 등 유구비용 교체비 지원비용 상향 조정 추진 - 개·보수비에 대한 융자 외에도 무상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경력있는 우수 보육교사 확보를 통한 직장보육시설 운영 내실화 -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를 시간제근로자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강제방안 도입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기업의 사회적 책임·기업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트렌드를 고려하여 의무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제도 도입 추진(법 개정 후 1년 유예기간 부여)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기업 등 참여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마련 지원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 정부지원 및 규제제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개선 - 정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가족친화경영 인증 취득 - 가족친화 인증제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인식 개선 - 가족친화경영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분석 및 확산을 통해 '투자로 돌려 받기' 인식 제고 - 가족친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 메시지 개발, 정책고객별 다양한 매체 조합(Media Mix)을 통한 효과적·적극적 정책광고 실시 - 인증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에 의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 유도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여성가족부) - 중기창·조달청 입찰 가산점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 및 확대 추진 -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우수사례 홍보, 가족친화 인증표시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제고로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이미지 개선 지원 - 가족친화직장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인증기관 등 사업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안정적 사업추진 여건 마련 - 교육·컨설팅·인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사업효과 제고 및 상시적 기업 지원 - 맞춤형 변화관리 컨설팅 및 자문형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제반여건(규모, 업종, 재정상황 등)에 맞는 실행 가능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관리 지원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 지자체가 관할 구역내 기업의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 관할 구역내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등 추진

〈표 3-8〉 계속

영역	내 용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 노사정위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추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장시간근로 지도감독, 근로문화 선진화 등이 반영된 장시간근로기본계획 수립 추진 · 근로시간단축 및 근로문화 개선사례 발굴 보급, 범국민 캠페인 실시 등 ·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패밀리데이(Family Day) 활성화 추진 - ‘패밀리데이’ 한글명칭 및 우수사례 UCC 공모전 등 실시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패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 2. 공무원 정상근무 관행 확산 - 초과근무 관리 강화 (행정안전부) · 과도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인사조직 담당 부서에 매월 통보하여 내역관리 · 사전승인된 범위내 시간외근무 인정하는 시간외근무 사전승인제 도입 · 부당수령 승인권자에 대해 성과연봉(성과상여금) 등급결정시 불이익 조치 3. 출산장려 우수지역(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저출산 관련 지표 비중 확대 - 저출산 관련 지표를 중점과제 분야에 포함시켜 평가지표의 가중치 비중 상향 조정(‘10년 8.11점 → ‘11년 10점 이상) -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지원 확대 (타 평가분야의 1.5배)

자료: 보건복지부(2011)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또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연분만에 의한 출산 및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려는 취지로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령도 개정되었다.

제3절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국내 중산층 가족정책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휴먼뉴딜’의 핵심이 각생애주기마다 처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와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을 의

미하므로 본 장에서도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국내외 중산층가족정책을 정리하고자 한다. 가족형성의 일반적인 가족발달주기와 자녀출산을 기준으로 결혼과 신혼기, 영유아기가족, 학동기와 청소년기가족, 중년기, 노년기로 나누어 국내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자 한다.

1. 결혼과 신혼기

가. 가족기능강화 정책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의 기능강화를 위해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다양한 교육이 무료로 이루어진다. 예비부부 및 신혼기 가족교육은 전국 200여 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통필수사업으로 <표 3-9>와 같이 수행되고 있다.

〈표 3-9〉 연도별 예비부부 및 신혼기 가족교육의 현황

(단위: 수, 명, 횟수)

연도	실시 센터수	총참여 인원	평균 참여인원	실시 회기수	평균 회기수
2009	96	13,537	141	485	5.1
2010	126	22,616	179	978	7.8

자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11), 2010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p.107)

이 프로그램은 결혼을 앞두거나 교제중인 미혼남녀나 신혼기 부부를 대상으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초기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건강한 결혼과 가족가치관을 확립하고 결혼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이다. 미혼남녀 대상의 교육내용은 결혼 및 출산의 중요성, 가족의 기능, 의사소통법이 포함되며, 예비(신혼)부부들에게는 출산의 중요성, 부모의 연령과 출산, 서로의 차이점 인정하기, 신혼기부부 갈등의 요인과 해결방법, 의사소통법, 가족계획, 원가족으로부터 독립된

가족만들기, 예비부모교육 등이다.

부부관계에 대한 교육효과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은 부부관계가 형성되기 전인 미혼시기의 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며, 교육효과도 지속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Gallagher(2002. 4. 23.)는 결혼전 교육을 받은 예비부부들이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부정적인 감정교환과 폭력 및 이혼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말순(1998)도 결혼전 부부교육이 결혼후 부부의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여 결혼전교육이 가족의 건강성 증진에 매우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

나. 주택정책

우리나라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특별공급주택제도)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내집 마련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에게 기회를 넓혀주고자 마련된 것으로 주택물량 중 공공주택 15%, 민영주택 10%, 국민임대주택 30%를 공급하며, 임대주택의 면적은 85㎡이하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공급대상은 결혼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자녀를 임신 하거나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임신중인 부부 포함. 2010년 2월 23일부터 시행)이다.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회수 6회 이상(청약예금 제외)가입자가 대상이지만, 가구주 연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는 제외된다. 또한 신혼기 주택자금지원도 확대되어 신혼부부의 경우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2천 만원에서 3천 만원으로 완화하고, 전세자금 대출요건도 3천 만원에서 3천5백 만원으로 완화하였다(보건복지부, 2011). 이 밖에도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시 기존에는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

을 유지'해야 했으나,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 제한을 폐지하였다. 또한 미임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우선권이 부여되는 등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2. 출산과 자녀 지원정책

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정책

미국의 Head Start와 비교되는 국내정책은 보건복지부의 “Dream Start”와 사단법인 위스타트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We Start”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저소득층자녀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산층정책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으나 미래기획위원회(2009)의 휴먼뉴딜의 3대 핵심 정책방향 중 하나가 미래 중산층 육성이므로 여기서 다루고자 한다.

1) 드림스타트(Dream Start)

2006년 보건복지부의 ‘희망스타트’ 사업에서 시작된 이사업은 2008년 32개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명칭이 ‘드림스타트’로 전환되었다. 2009년에는 대상지역이 75개, 2010년 101개로 확대되었으며, 2011년에는 130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공적 전달체계를 통해 서비스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과 빈곤아동의 전인적 발달증진 및 공평한 기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군·구 단위의 전담조직(취약 지역 집중관리체계)을 배정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0~12세대)의 아동과 임산부 중 위기 사정을 통해 고·중위기 아동을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

여 아동의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부모교육 등 아동의 중요한 지원망으로서의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이라는 특징이 있다.

〈표 3-10〉 드림스타트의 서비스 내용

분야	서비스내용	프로그램 예시
신체/건강 서비스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발달 증진 ·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지원 · 건강한 생활 위한 건강검진/ 예방, 치료 · 아동발달에 필요한 신체/ 건강정보 제공	· 건강검진 및 예방, 성장발달 진단, 구강교육, 심리검사, 정신건강, 산 전산후관리, 영양교육 등
인지/언어 서비스	·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 맞춤형 인지/ 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 기초학습지원, 영유아 가정방문 교육 중재, 경제교육, 인터넷 중독예방, 소 방 및 안전교육, 독서지도
정서/ 행동 서비스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 올바른 사회인식 및 이해를 도와 성숙한 사회시민으로 성장을 도모 · 아동과 가족의 생활안정, 삶의 질 개선, 가족유대감 증진	·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아동관리교 육, 아동학대예방, 성폭력예방, 다 문화 관련교육, 진로지도, 멘토링프 로그램
가족 및 통합지원 서비스	· 전문 사례관리자의 1:1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제공 · 부모의 유능감 및 자존감 강화 및 양육 기술 지원	·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 애착증진 프로그램 등

자료: 2010년 12월 드림스타트 리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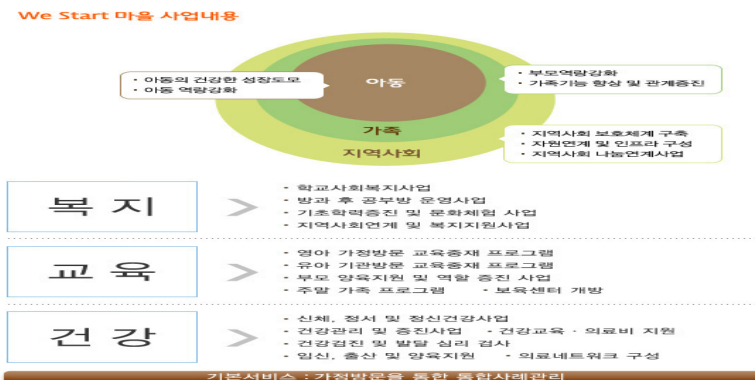
사업의 운영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사업지원단 구성, 운영), 시도 아동업무 담당과(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가족과, 아동청소년 과,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과 등), 시군 드림스타트 센터(드림스타트전담 인력 구성),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한국청소년상담원 소속)에 의해 이 루어진다. 사업지원단에서는 모니터링 및 자문, 드림스타트 홍보 및 교육 운영, 사업프로그램 개발, 보급 운영, 사업평가 운영, 표준 모델 안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대상은 특히 기초 수급 및 차상위층 가정, 결손가정, 성폭행 피해아동, 한부모가정 아동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내용 은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표 3-10>과 같다.

2) 위스타트(We Start) 마을 사업

중앙일보, 한국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여러 기관 단체들이 2004년 ‘가난의 대물림을 끊자’는 슬로건 하에 빈곤가정의 아동을 돕기로 뜻을 모아 시작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빈곤 아동 밀집지역에 센터를 만들어 복지, 교육, 건강 전문 인력이 아동과 부모별로 인생의 장애물을 파악해 해법을 개인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역량강화사업이다. 우선 저소득 지역(동 단위)을 선정하고, 지원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기준)와 차상위계층(보육료 감면 대상 기준)의 아동이다. 1개 마을 당 적정 사업대상 아동 수는 300명 정도이며, 2010년 12월 현재 서울, 경기, 강원, 전남의 24곳과 캄보디아 해외 위스타트도 운영 중이다.

위스타트 마을사업은 가정방문을 통한 통합사례관리를 기본으로, 가정방문간호 사업,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만 3, 4, 5세의 취학전 유아의 혼합연령을 구성하여 기관방문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방문하여 그림책을 활용하여 3-7명의 소집단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유아용 기관방문 소집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 위스타트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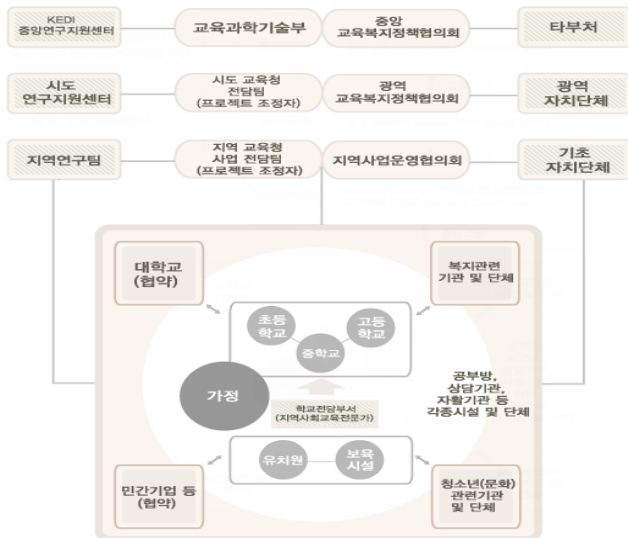


자료: 2010년 12월 드림스타트 리플렛

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이 사업은 소득분배구조 악화와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지역별, 학교별 계층 분화 및 교육적 성취에 대한 계층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교육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과정, 결과에서 나타나는 주요 취약성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원 방법은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학습, 문화, 체험, 심리 정서, 보건 등 학생들의 삶 전반에 개입한다. 사업대상은 교육취약 아동·청소년 밀집지역 학교이며, 사업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개별 학생의 교육적 취약성에 따른 초점 지원이 특징이다.

[그림 3-4]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자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홈페이지(<http://eduzone.kedi.re.kr>)

2003년 서울, 부산 8개 지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인구 제한 없이 시 지역 100개 지역에 사업이 추진되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학습능력 증진, 문화 체험활동, 심리정서발달지원, 복지프로그램 활성화, 교사와 학부모 지원 및 영유아 교육, 보육지원활성화 등이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담당 국장, 담당과장, 실무담당관), 시도교육청(담당팀장, 장학사, 담당 공무원), 지역교육청(전담팀장(과장), 담당 장학사, 영유아담당 장학사, 담당공무원, 프로젝트 조정자), 학교(담당부장, 담당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운영되며 사업추진 및 지원체계는 [그림 3-4]와 같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홈페이지).

나.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

모성보호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임신부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 제정되어있다. 임신부의 보호를 위해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도 보호휴가가 주어지는데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또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해서는 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며,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밖에도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다. 자녀양육지원정책

1) 보건복지부의 0-5세 자녀양육지원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의 핵심은 보육·교육비지원확대, 보육시설확충 등이다. 현재 임신부터 육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중요정책의 대상과 내용은 <표 3-11>과 같다.

<표 3-11> 임신에서 육아까지 정부지원정책 사업대상과 내용

구분	지원사업	대상기준	신청장소	비고
아동성장단계별지원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6종) 및 환아 관리	검사: 모든 신생아, 환아지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220%이하	검사 (의료기관) 환아관리 (보건소)	· 모든 신생아 대상, 검사 후 환아에 대해 월소득 상한없이 특수조제분유 지원(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150%이하	보건소	· 소득 623만원(4인 가구 기준)의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최저생계비 200%이하	보건소	· 288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36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지원	차상위계층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읍, 면, 동 주민센터	· 차상위계층(173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월 20-1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함. · 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36개월 미만: 10만원
만0-5세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지원	소득하위 70%이하	읍,면,동 주민센터	· 월 소득인정액 48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와 교육비를 전액 지원

〈표 3-11〉 계속

구분	지원사업	대상기준	신청장소	비고
아동성장단계별지원				
3개월-만12세	아이돌보미 지원	3개월-만12세 자녀를 둔 가정	지역별사업 수행기관	
학령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해당 학교	
모든 아동	국가필수예방접종	모든 아동 (신생아부터 만12세까지)	지정의료기관	·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 22회 접종)비용을 지원. 보건소 이용시 전액무료, 지원의료기관 경우 접종비용의 일부 지원(1회 접종당 본인 부담금은 1만5,000~1만6,000원 수준이며, 지역별 의료기관별 접종비 차이)
	영유아 건강검진	모든 아동	건강검진기관	
부모 및 가구특성별 지원				
가임기 및 임산부	난임부부 체외수정사술비 및 인공수정사술비 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보건소	부인 만44세 이하
	임신, 출산 진료비용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	건강보험공단 지사, 우체국, KB국민은행 지점	
	산모, 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보건소	
	영양플러스	최저생계비 200%미만	보건소	
	출산, 양육 정보 및 상담서비스	모든 임산부	인터넷, 전화	
	철분제지원	보건소 등록 모든 임산부	보건소	
	엽산제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임산 후 3개월까지)	보건소	정부 철분제 지원예산범위 내에서 시범실시
	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의료기관 외 출산 산모	건강보험공단 지사	

〈표 3-11〉 계속

구분	지원사업	대상기준	신청장소	비고
부모 및 가구특성별 지원				
근로자 가정	산전산후 휴가급여	여성근로자	고용지원센터	
	유산, 사산 휴가급여	여성근로자	고용지원센터	
	육아휴직급여	피보함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연속 30일 이상 육아휴직자	고용지원센터	휴직 전 임금의 40% (50만원-10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근로자	해당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만6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다자녀 가정	주거지원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청약기관	공공주택 10% 민영주택 3% 국민임대 10%
	국민주택기금 주택마련대출 우대금리 적용 및 대출한도 상향조정	3자녀이상 무주택 세대주	취급은행	
	전기요금 20% 감액	3자녀이상 가정	한국전력지점,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터넷 신청가능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이후 출생 둘째이상 자녀를 둔 가정		노령연금 수급시 확인증명
	다자녀 유대카드	2-3자녀이상 가정	읍면동주민 센터 및 위탁은행	
입양 가정	입양 수수료 전액지원	13세미만 전체 입양아	시, 군, 구청	
	입양아 양육수당 지원	13세미만 전체 입양아	시, 군, 구청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13세미만 전체 입양 장애아	시, 군, 구청	
장애아동 가정	장애아 보육비 전액지원	보육시설 이용 만12세 이하 장애아	읍, 면, 동 주민센터	
	장애아 교육비 전액비원	유치원 이용 만3-5세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	지역교육청	
농어업인 가정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지 소유 5ha 미만 등	읍,면, 동, 주민센터	(‘10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35% → (‘12년) 60%

자료: 보건복지부(2011). 임신에서 육아까지 정부지원정책 가이드: 행복한 우리아이.

이밖에도 맞벌이가구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제외한 후 합산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을 위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다문화가족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11년, 28천명)함으로써 점차 보육, 교육비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지역내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해 평가인증제도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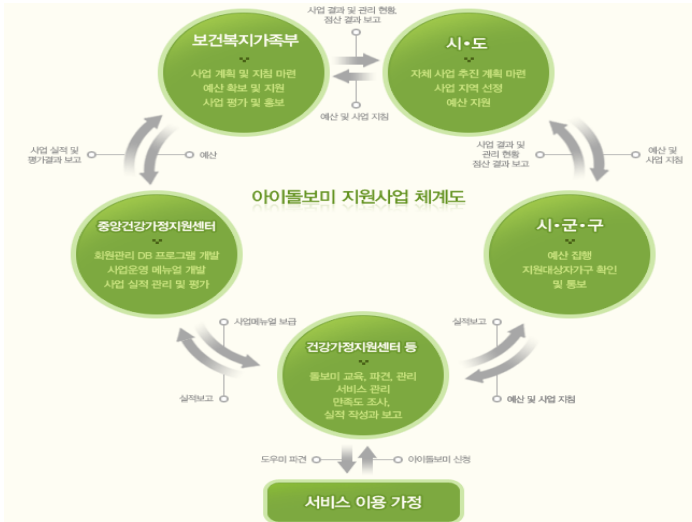
2) 여성가족부의 가족돌봄사업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령에서는 가정봉사원의 교육 및 건강가정교육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가족의 기능강화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위한 가정봉사원제도의 일환으로 [그림 3-5]와 같이 “아이돌보미”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공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부모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시설 보육 외 대체적인 양육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에 있는 개별 가정에게 돌보미를 파견함으로써 아동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가족의 아동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가족이 갖고 있는 자녀 양육, 가족 부양의 책임을 사회가 분담하는 차원에서 장애아가족으로도 영역이 확대되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두가지 유형으로 일시긴급 등 시간제(0세(3개월)~만 12세 아동)와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12개월의 영아)로 구분된다.

[그림 3-5]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체계도



자료: www.idolbom.or.kr/form/Introduction010.asp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2010년 6월부터는 0세아 정기돌봄사업도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이용요금은 <표 3-12>와 같다. 서비스는 기본 2시간으로 운영되며, 서비스 이용시간은 년 480시간 이용 가능하다(가, 나형). 그러나 2011년 6월에 소득기준 외 취업 등 지원 사유가 추가되었다. 즉 취업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 중증 장애아 포함 아동 2명 이상 양육, 장애부모 가정, 양육자의 장기입원 질병 및 그 외 가정 중 양육자의 취업 준비 등 긴급일시 사유에 이용가능하며, 이용시간도 긴급한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96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형가정은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없이 이용가능하다. 가나다형은 <표 3-12>와 같이 가족수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액을 토대로 산정된

다(가형: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나형: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이하, 다형: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초과).

〈표 3-1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사업의 서비스 이용요금

구분	일시긴급 등 시간제			영아종일제			
지원기준 (4인가구 소득)	전국가구평균소득			영유아 가구소득하위			
	50% (208만원)	50-100% (416만원)	초과	50% (293만원)	50-60% (376만원)	60-70% (480만원)	초과
이용요금	시간당5천원			월120만원(240시간 기준)			
정부지원	4천원	1천원	0	72만원	60만원	48만원	0
본인부담	1천원	4천원	5천원	48만원	60만원	72만원	120만원
지원시간	연 480시간 원칙			월 120-240시간			

자료: www.idolbom.or.kr/form/Introduction020.asp

〈표 3-13〉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에 상당하는 소득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포함여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까지	1,823천	미포함	51,745	48,132	52,349
		포함	55,134	51,285	55,778
4인	2,077천	미포함	58,804	60,141	59,280
		포함	62,652	64,080	63,163
5인	2,296천	미포함	65,199	70,562	65,996
		포함	69,470	75,184	70,319
6인	2,515천	미포함	71,661	79,941	72,572
		포함	76,355	85,177	77,325
7인	2,734천	미포함	77,637	88,530	78,615
		포함	82,722	94,329	83,764

2009년 아이돌보미 활동에 참여한 가정은 74,212 가구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총 702,589 건의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2010년 10월 현재는 약 11만8천여 가정에 100만 건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되

고 있다. 2009년 전국에서 아이돌보미를 이용한 가구는 <표 3-14>와 같이 38.33%가 맞벌이 가구이며, 39.87%가 비취업 주부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약 50%가 만 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15 참조), 만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30대 이하 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38.9%로 40대의 맞벌이 비율인 48.1%보다 10%가량 낮은 것을 고려할 때(통계청, 2010) 맞벌이가족 이용률은 전체 가구분포에 비해 높지 않다.

사업 초기인 이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가족돌봄의 사회화'와 '직장·가정의 양립'이라는 정책과제를 달성하는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정현숙, 장세경, 정선영, 2010). 한가지 이유는 이 사업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제도를 통한 돌봄(예: 어린이집, 학교)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사회에서 아이돌보미지원사업으로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그 공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구가 전체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누적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3%이고, 이용사유도 직장근무가 누적건수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다. 즉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응급상황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취업모가 야근을 할 경우 이용하는 식으로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돌봄공백을 메우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표 3-14〉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한부모	맞벌이 가족	장애인 가족	조손 가족	결혼이민 자가족	비취업 주부가족 (일반가정)	기타	계
가구수	9,906	27,999	1,345	544	2,670	29,124	1,456	73,044
비율(%)	13.56	38.33	1.84	0.74	3.66	39.87	1.99	100.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12. 10) 보도자료

〈표 3-15〉 이혼아동의 연령

(단위 : %)

구분	12개월 이하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8세	만9-12세	계
비율(%)	10.86	17.26	14.46	11.40	9.57	9.63	19.28	7.54	100.00

자료:보건복지가족부(2009. 12. 10) 보도자료

3. 청장년지원정책

청장년지원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친환경사회적일자리’라는 용어로 녹색일자리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사회적으로 의제화 되지는 못하였으나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천명하고, 2010년 녹색뉴딜을 통해 녹색일자리 정책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급증되었다(김현우, 2010). 녹색뉴딜로 명명된 핵심사업은 4대강살리기, 녹색교통망확충,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우수유출시설/중소댐, 그 린카 및 청정에너지보급, 폐기물자원 재활용, 녹색 숲 가꾸기, 그린홈/그린스쿨 사업, eco river 조성 등이다. 이들 9개의 핵심사업과 연계사업에 총 500,492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55,180의 일자리(명)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0).

4. 중년 및 노인지원정책

가. 돌봄노동지원정책

2008년부터는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를 위해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보육정책,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의 제도화, 돌봄인력 공급 및 관리 등도 이슈화되고 있다.

나. 중고령자 고용지원정책

은퇴를 앞둔 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명시적인 정책은 많지 않으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고령자의 고용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다.

〈표 3-16〉 중고령자 고용지원정책

구분			대상 연령	내용
고령자 고용 촉진 재정 지원	고령자 고용촉 진장려 금	다수고용 장려금	55세 이상	- 일정비용 이상을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고용할 경우, 한 분기에 1인당 15만원씩 5년간 지급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57세 이상	- 57년 이상의 나이에 정년퇴직한 사람을 재고용할 경우, 1인당 매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급
	고령자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50세 이상	- 50세 이상인 사람을 고용할 경우 첫 6개월은 인당 매월 30만원, 이후 6개월은 매월 15만원 지급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54세 이상	-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10% 이상 삭감시, 피크시점과 신청 시점 임금 차이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
	고령자 고용촉진 컨설팅			-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사업무 관련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주에게 경상경비의 80%를 지원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자금 융자			- 고령자 고용에 따라 고령자 친화적인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5년 거치 연리 3%로 10억 원 까지 대출
직업 교육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50세 이상	- 50세 이상 실업자들의 중소기업현장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월 20만원, 참가기업에 대상자 1인당 월20만원 지급
	고령자 단기적응훈련		50세 이상	- 50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무기능, 소양교육 등의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

자료: 태원유(2009).

다.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 자리를 창출·보급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참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분으로 한정되나 사업종류 및 운영형태에 따라 만 60세~64세인 자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유형은 <표 3-17>과 같다.

<표 3-17>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유형 (‘10계획)		정의	일자리 예시	지원내용 (‘10년)
공공분야 (166,000개)	공익형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	거리·자연환경지킴이, 교통안전, 방범순찰 등	월 20만원, 7개월
	교육형	특정분야 전문지식·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	순생태·문화재해설사, 예절·서예·한자강사 등	월 20만원, 7개월
	복지형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	노(老)-노(老)케어, 노인주거개선, 독거노인보호, 보육도우미 등	월 20만원, 7개월
민간분야 (20,000개)	시장형	제조, 판매, 서비스 등 사업을 연간 운영하면서 일정수익이 발생	택배, 세탁방, 밀반찬판매, 재활용품점, 농산물판매 등	수익에 따라 배분
	인력 파견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파견되어 일정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	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가사도우미, 건물관리 등	수익에 따라 배분
	창업 모델형	시장형 중 사회적 파급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모델사업	실버카페, 휴게소, 떡 등 식품제조 판매업 등	수익에 따라 배분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관(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고령자 취업알선 실시),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노인들의 자립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각 지역별로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공통적으로는 연령(60세 이상), 건강상태(일할 수 있는 건강정도면 모두 가능), 세대주형태(60세 이상 노인가구 우선)가 선발기준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정부 부처(보건복지부 포함)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제외된다.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직확충 및 정책지원 기능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구축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신규 지정 확대('11년 100개소→'15년 140개소)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직능·직장 시니어클럽 확대 및 제도적 기반 마련('11년)을 추진하고 있다.

라. 고령자 주거안정정책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령자주거안정법』 제정을 통해 고령자 주거안정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체계 구축하였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고령자 최저주거기준 및 최저안전기준 설정하고, 고령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 정립, 고령자용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주택개보수 비용 지원, 무장애설계 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통해 고령자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위하여 신기술 및 복지수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설기준을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으로 개정하고, 개정된 시설기준

을 적용한 고령자용 임대주택 '10년, 1,500호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보급자리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3%)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지속 공급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 3%)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한다. 특히 주거환경이 양호한 주거동 저층부에 고령자용 주택을 집중 공급하며, 욕조 높이 조정 등 일부 편의시설 항목 신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좌식 샤워시설 설치 등 선택형 항목이 제공되는 특징이 있다.

제4절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국외 중산층 가족정책

국외의 중산층 가족정책도 미국을 제외하고 명시적으로 중산층정책으로 명명된 경우는 거의 없다. 본 절에서는 자녀출산을 기준으로 미래 중산층의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생의 초기에 지원하는 영유아기와 아동기가족을 지원하는 정책과 가족전반의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 및 일가족 양립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영유아기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가.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

빈곤세습 억제를 위해 1965년 시작된 헤드스타트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발달지원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 0~5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기교육, 건강 및 영양지원, 사회발달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에서 감독한다.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연방정부에서 지역사회 내 개별 프로그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직접 전달하며, 서비스대상에 따라 <표 3-18>과 같이 대상에 따라 프로그램이 구분된다.

<표 3-18>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프로그램 명	서비스 대상	보조금 전달방식
조기헤드스타트	0세에서 3세의 영유아	지역사회
헤드 스타트	3세에서 5세 아동	지역사회
이주자헤드스타트	노동자층 이민 자녀	해당기관에 직접
원주민 헤드 스타트	인디언 자녀	해당기관에 직접
장애아동 헤드 스타트	장애아동	지역사회

자료: 엽철현(2008). p. 53.

<표 3-19> 미국의 Head Start와 한국의 We start의 비교

구분	미국 Head start	한국 We start	비고
체계 및 성격	연방정부와 지역사회 협력체제의 국가프로젝트	지방자치단체, 기업, 지역사회단체 등 민관협력의 시민운동	- 미국: 연방 보건복지부 아동가족복지국 - 한국: 위스타트 운동본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 운영
개념	예방적, 통합적	예방적, 통합적	
시기 및 법령	1965년 (연방의회 관련법 제정)	2004년(사단법인)	- 한국: 시민운동 - 미국: 국가프로젝트
재원 조달	연방 80%, 지역 20%	지방자치단체 100 (기업체 등 후원)	
서비스 영역	교육(보육), 건강, 복지	교육(보육), 건강, 복지	
대상 및 유형	- 조기헤드스타트(0-2세) - 헤드스타트(3-5세) - 이주민자녀헤드스타트 - 원주민헤드스타트	저소득가정 임산부 및 12세 이하 아동과 그 가족(출산 및 영유아기 아동(0-2세), 취학 전 학교준비(3-5세), 학교 적응력 향상 및 학업성취도 증진 (6-12세)	- 미국의 헤드스타트 수혜대상: 4인 가족 17,050\$미만) - 한국의 저소득가정: 기초수급자, 모부자가정, 차상위가정

자료: 엽철현(2008). p.61, 이봉주(2006) 재인용.

한국의 위스타드와 비교할 때 <표 3-19>와 같은 차이점이 있으나, 엄철원(2008)에 의하면 이 두 프로그램은 통합적 프로그램(사례관리, 보육, 건강, 조기교육, 정서 및 사회적 기능)운영, 표적화된 프로그램 지원(공공부조 수급자, 근로빈곤층, 연방빈곤선 이하, 저소득층 가정), 발달 결과에 초점, 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중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현재 헤드스타트의 운영규모는 1,954개이며, 조기헤드스타트는 741개에 이르며, 수혜대상은 4인 가족 기준으로 17,050\$ 미만이다(엄철원, 2008).

2. 가족 기능강화정책

가. 미국의 가족기능강화 정책

결혼생활에 있어 미국 주 정부가 중요시 여기는 2가지는 결혼자격 강화와 이혼 감소를 위한 정책들이다. 특히 한부모 가족에서의 아동의 성취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공공기관과 정책가들의 관심을 끌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모든 주들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정책, 예를 들면 결혼지원, 두 부모 가족강화, 이혼감소를 위해 계획된 활동들에 착수하였다. 36개주는 한 부모와 두 부모 가족들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TANF의 적격성(자격)도 수정하였다(Ooms, Bouchet, Parke, 2004). 주정부차원의 다양한 법안이 제정되어있으며 그 대상과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관련법안과 내용은 <표 3-20>, <표 3-21>과 같다.

〈표 3-20〉 Florida주와 Illinois주의 관련법안과 내용

구분	Florida 주	Illinois 주
법안명칭	Marriage Preparation and Preservation Act of 1998.	
교육시간 및 요구	· 결혼준비교육: 4시간 · 중등학생: 9-12학년까지, or international baccalaureate curriculum 24학점을 습득 · 이혼시 부모교육: 4시간(가족법책자제공)	· 4시간의 혼전교육을 받는 자에게만 결혼증명서
교육내용	· 혼전교육: 갈등해결, 의사소통기술, 경제적책임감, 아동과 부모역할의 책임감, 그리고 상담결과에서 나온 내용들 · 중등학교 교과과정: life management skill-소비자교육, 긍정적 정서발달, 결혼과 관계에 대한 기술교육, 영양, 성병과 AIDS, 순결의 혜택과 십대임신의 결과, 유방암 진단과 예방, 유방암자 가진단, 심폐소생술, 약물교육, 흡연의 위험 · 이혼시 부모교육: custody와 자녀지원 논쟁 해결을 위한 법적인 과정과 문제들, 이혼한 성인의 문제와 정서적 경험, 가족문제와 정서적인 관심과 아동의 요구, 가능한 지역사회 지원과 자원	
프로그램의 평가 인가 등 업무	· 교육, 상담: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Center for Marriage and Family가 담당 · 가족법책자: 플로리다 주 변호사협회제공-가족법조정위원회에서 검토	
예산	· section 16-1998-1999년 General Revenue Fund에서 75,000불이 플로리다주립대학교 Marriage & Family Center 지원: 혼전준비교육 평가, 혼전교육을 위한 pilot program 개발, 커리큘럼 개발과 질문지개발에 이용.	
교육자격자 규정	· 490조에 의한 심리학 자격 · 491조에 의한 입산사회복지자격자 · 491조하의 결혼과 가족상담가 · 491조하의 정신건강상담가 · 496.404조하의 공무원이나 종교기관의 자격인으로 관련 훈련 받은 사람 · 이런 과목을 강의하는 자격 있는 학교상담사, · 각 순회재판관은 지역강의제공자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비용을 받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사람의 명부작성	· 종교지도자나 행동건강전문가들로부터
교육수료 혜택, 벌칙	· 혜택: 결혼자격증 비용 32.5\$ 면제 · 벌칙: 결혼증명서 발급이 3일간 유예	· 결혼증명서 발급을 60일을 유예
벌금의 이용	· 7.5\$: Displaced Homemaker Trust fund(주정부) · 25불은 Family Court Trust Fund(대법원 예산)	

〈표 3-21〉 Tennessee주와 New Mexico주의 관련법안과 내용

구분	Tennessee 주	New Mexico 주
법안명칭	Tennessee Marriage Education Legislation: Senate bill 0899, 2001	senate Bill 482, 784, 497 of 2001
교육시간 및 요구		3회 이상의; 최소한 6시간의 교육과 상담 (cf) 미네소타주: 12시간)
교육내용		- 이혼예방책자: 의사소통기술과 갈등해결, 재정상담, 약물오남용관련 문제, 외도를 끝내기, 결혼에 다시 헌신하거나 재구조화하기. 가족상담자원과 기타 결혼생활의 위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 중등학교교과과정개발: 결혼의 가치와 혜택,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이혼의 사회적, 경제적, 건강적 의미와 아동에게 미치는 이혼의 영향 등
프로그램의 연구, 평가 인업무		- New Mexico State Univ. - 이혼예방책자(Before You Check Out-Check Your Option)개발 - 고등학교 교과과정 개발
예산		TANF 기금중 105만불 지원
교육자격자 규정	- 심리학자 - 임상사회사업가 - 자격있는 결혼과 가족치료사 - 임상목회 치료사 - 전문상담가 - 심리검사전문가 (Psychological examiners) - 종교기관의 공식적인 대표 - 기타 주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자	- 종교기관의 공식적 대표나 그에 의한 임명자 - 주법에 의해 자격을 갖춘 결혼가 가족치료사 - 정신의학자(psychiatrist) - 심리학자(psychologist) - 전문임상정신건강상담사 - 사회복지사 (an independent social worker) - 가족생활교육전문가 (certified family life educator)
교육수료시 혜택 및 벌칙	결혼자격증 비용 62.5불 중 60불 감면(주 재무부에서 냄)	소득신고시 결혼유자나 혼전교육을 받은 경우 100불 감면신청
벌금의 이용	7\$ AOC, 15\$은 아동학대예방 아동서비스국, 7\$ 사법부, 4\$ 교육부(방과후 소년소녀 club 지원), 20.5\$ Tennessee Disability Coalition(장애아동가족지원), 3\$ 사회복지협회(교육, 정보, 출판 지원), 1.25\$ CASA, 1.75\$ Weems Academy for forster care children	

그러나 미국은 주정부의 노력과 함께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그 효과가 증대되고 있다. 종교기관, 학계, 기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은 <표 3-22>에서 <표 3-30>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들 각각의 기관들은 자신들의 역량에 따라 정책을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며 사회운동화되고 있다.

〈표 3-22〉 종교기관이나 단체의 결혼운동

단체	활동내용
Marriage Savior	· 목사인 Harriet & Mike McManus가 125개 도시에 Community Marriage Policies and Covenants를 조직함. · 4개월 동안의 결혼준비, Marriage Encounter, Family Life Weekends, Retrouvaille(www.retrovaille.org)등 결혼향상이나 예방프로그램 참여 홍보
National Council of Church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U.S. Catholic Church Th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 2000년 4월 6일 네 기관의 지도자회의에서 결혼을 promote 하기위해 함께 일할 것을 결정함. · 주교수준의 16개 지역조직을 만들고, 결혼강화를 위한 공동의 목표설정과 결혼증진을 위한 홍보, World Marriage Day(2월 11일 혹은 발렌타인데이 가장 가까운 일요일) 승인
Covenant Marriage Movement (전신은 Promise Keepers임)	· 비정치적, 교회중심의 “결혼서약운동”은 35개 종교단체의 3,100만명 회원중심으로 이루어짐. · 중요 도시에서 세미나를 열고, 결혼한 사람들이 새롭게 신, 가족, 서로에게, 지역사회에 새로운 서약을 하는 것.

〈표 3-23〉 결혼교육을 위한 사회운동

단체	활동내용
The Coalition for Marriage, Family and Couple Education	· 매년 Smart Marriage Conference 개최 · www.smartmarriages.com
Minnesota, Utah Marriage Initiative	· 치료사, 교육자, 성직자 대상 결혼준비기술교육
The family Relations Success Council (Philadelphia)	· 교육자, 성직자, 정신건강제공자, 상담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가족생활교육사, 사업가, 판검사 등에게 혼전교육, 이혼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고취
The African American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Indiana University 사회사업학과와 지역사회지원자들:	·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가족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교육함 · www.aafle.org · African American Marriage Enrichment: 7주 프로그램
Virginia주 Chesterfield 카운티	· Marriage Education Course에 보조금 미국서 가장 먼저 지급함
Georgia주 Cobb County	· 자원상담자들과 배심원들의 수당 중 자발적인 헌금을 통해 이혼법정에서 4시간의 결혼교육코스 실시
미국의 군대	· 결혼기술교육(PREP, Pairs, Couple Communication) 프로그램을 전 세계 미군에게 실시함
Texas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 1999년, 결혼신고 위해 혼전교육 필수로 하고, “효과적인 관계와 결혼기술”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주정부에 요청하는 백서 발간
Oklahoma, Florida, Minnesota, Maryland, Arizona, Mew Mexico, Texas, Michigan주	· 결혼 신고시 혼전교육 관련 세금감면정책 등에 대한 법안 상정 혹은 통과시킴

〈표 3-24〉 이혼법개정운동

주	활동내용
학자들의 연구	• no-fault 이혼법이 결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제고를 추구하는 연구들이 발표됨 • Friedberg, L.(1998). Did Unilateral Divorce Raise Divorce Rates? Evidence From Panel Data" American Economic Review, 88, 608-627. • Gray, J. & Vanderhart, M.(2000). The Determinants of Wages: Does Marriage Matter?" in Linda J. Waite, et. al. (Eds.), The Ties that Bind: Perspectives on Marriage and Cohabitation. New York: Aldine de Gruyter. • Parkman, A.(1998). Why Are Married Women Walking So Hard? Internationa Review of Law & Economics 18, 41-49. • Parkman, A(2000). Good intentions gone away: No fault divorce law and the American family.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Louisiana주(1997) Arizona주(1998)	• covenant marriage law가 채택됨 • 부부들에게 no-fault 이혼법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결혼준비와 결혼상담에 참여할 기회제공. 약 20개주에서 이 법안이 제안됨.

〈표 3-25〉 중고등학교에서의 결혼기술교육운동

주	활동내용
Florida주	• 1998년 미국서 처음으로 공립고등학교에서 결혼과 관계 기술훈련 교육 실시
35개주의 1000개 이상의 고등학교	• 인생기술, 가족생활, 가정, 건강, 십대임신과 abstinence 교육 등. 구체적인 학교와 내용은 www.americanvalues.org 참조

〈표 3-26〉 학자들 중심의 결혼운동(Marriage Movement)

주	활동내용
Ticker & Fields, Wallerstein, McLanahan & Sandefur, Amato & Booth Waite & Gallagher 등	· In second Chance(Ticker & Fields, 1990) · The Good Marriage(1995), The Unexpected legacy of divorce(Wallerstein, 2000) ·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McLanahan & Sandefur, 1994) · A generation at risk(Amato & Booth, 1994) · The case for marriage(Waite & Gallagher, 2000) - 이혼과 혼외출산의 위험에 대한 관련 책들
The Council on Families	· 1995년 결성된 비당파적, 학제적 가족학자 및 작가들의 연대 · Marriage in America: A report to the nation - 두부모가족에서 자라는 아동의 비율을 높이는 행동 촉구
The Communitarian Network	· 1996년 “Conference on Communitarian Pro-Family Policies”을 지원함. · 가족치료와는 구별되는 결혼교육과 결혼강화방법들과, 결혼강화를 위해 교회와 이혼법의 역할도 강조함 www.gwu.edu/~cccp
National Marriage Project at Rutgers University	· 1997년 D. PoPenoe와 B. Whitehead 설립, 지속적인 연구발표 · The State of Our Union: The social health of marriage in America 매년발행 · http://marriage.rutgers.edu
The Family Impact Seminar	· 1997년 2일간 전문가와 정책전문가들이 워싱턴에서 모여 2일간 Round table 세미나 개최. · Toward more perfect unions: Putting marriage on the public agenda를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결혼을 주요한 사회적 조직이며 가장 우선순위로 다루어야함을 강조한 보고서
The Fragile Families & Child Wellbeing Survey	· S. McLanahan과 I. Garfinkel이 조사한 미국 20개 도시의 저소득층 부부의 결혼과 동거에 대한 지식의 gap이 매우 큼을 보고(http://opr.princeton.edu.crew/ff)
대학연구소와 학회	· Duquesne University's Family Institute · The University of Virginia Center for Children, Families and the Law · National Institutes for Health에서 지원한 결혼과 가족형성에 관한 conference 결과 "The Ties that Bind: Perspectives on Marriage and Cohabitation(2000)
Marriage Research Lab	· University of Washington(J. Gottman) · University of Denver(H. Markman & S. Stanley) · UCLA(A. Christiansen & T. Bradbury) - 결혼교육과 상담을 더 과학적 위치에 올리는 계기 마련
Oklahoma State University	· 2000년 주정부 최초로 marriage scholar-in residence 지명, 이혼과 결혼에 대한 기초연구를 시작하여 2002년 “Marriage in Oklahoma” 발간.

〈표 3-27〉 연방정부의 결혼운동

주	활동내용
부통령 Al Gore와 주지사 George W. Bush	2000년 이들은 federal tax code에서 marriage penalties를 삭감하는 제안 제출
미국의 국회 입법부 발의	저소득층 아버지들이 결혼과 가족생활을 증진하여 더 나은 아버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국회입법부 발의안인 "Father Count", "Responsible Fatherhood"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
1996년이 복지개혁 (Welfare Reform Act)	1996년 연방정부의 복지정책 목표를 결혼을 증진하고, 사용하지 않은 복지기금을 결혼정책에 쓰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복지법개정안이 통과됨 - 복지정책 3/4이 "결혼을 ...증진하고" "두부모가족을....격려하고", "혼외출산을 ...줄이는" 정책과 관련된 것임. - 연구결과 이런 정책이 결혼증가, 이혼감소 및 저소득층의 가정폭력 감소 보고
결혼운동 지도자들	이들은 미통계청, National Center or Health Statistics 등의 연방정부기관에 연구주제로 결혼을 다시 추가하고, 결혼과 이혼에 대한 정확한 자료수집 촉구.

〈표 3-28〉 친결혼적 아버지역할 운동

단체	활동내용
The National Fatherhood Initiative(NFI)	- 아버지 부재로 인한 비용과 아버지역할을 유지하는데 결혼의 중요성 강조 - 아버지역할에 대한 대중campaign과 주지사와 시장들과 연대하여 새롭게 지역 NFI결성. National Institute for Fatherhood & Family Revitalization의 C. Ballard와 함께 연대 (www.fatherhood.org)
The Morehouse Research Institute	1998년 African American Fathers와 Ford재단 후원으로 Morehouse Conference 개최. 결혼생활과 건강한 결혼을 위해 아버지운동의 중요성 강조

〈표 3-29〉 주지사의 결혼운동

주	활동내용
Arkansas주, Oklahoma주	1999년 공개적으로 자신의 임기동안 이혼율 30-50% 줄이는 것을 공약
Oklahoma주	- 주지사 Frank Keating이 “the Governor's and First Lady's Conference of Marriage” 개최. - 기업, 교회, 정부, 복지, 교육, 대중매체의 지도자 모임을 통해 주정부의 가장 중심적 사업인 이혼감소를 위한 action plan에 대한 협조 요청 2000년 주정부가 미사용 복지자금의 10%를 이용하여 1,000만\$의 marriage initiative를 계획. 미국 최초로 TANF 기금의 상당부분을 이혼예방과 결혼강화를 위해 책정하였으며, 지역사회결혼서약운동, marriage resource center, 결혼기술훈련, 이혼문화 변화를 위한 대중캠페인 실시, social service careworkers, 공공보건간호사, 상담사, 교육자들을 결혼장려를 위해 교육과 훈련에 기금사용. - 중립적 결혼과 친가족정책 수립을 위해 주정부 산하기관에 공공정책 평가 의뢰
Florida주	- 주지사 Lawton Chiles "The Florida Marriage Preparation and Preservation Act of 1988" 승인으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교과과정에 결혼기술교육이 포함됨. 1999년 새 주지사인 Jeb Bush가 “Community Marriage Policy” 승인
Utah주	1998년 주지사 Michael Leavit가 “Governor's Commission on Marriage”를 만들고 유타주의 결혼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도구들 정리 - Oklahoma, Arkansas, Kansas, New Mexico, Iowa에서도 결혼수 뇌회화가 열림.
Louisiana, Utah, North Carolina 주	1998, 1999년 주지사가 공공재로서의 결혼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결혼 선언 싸인
Arizona주	2000년 주지사 Jane Hull이 새로운 marriage initiative를 제안하여, 결혼기술교육에 100만\$, 저소득층부부의 결혼기술교실 수강비용 감면 을 위해 7만5천\$, 결혼준비를 위한 혼전순결을 위한 미디어캠페인을 위한 10만\$ 책정
Texas주	1999년 주지사 George W. Bush가 결혼부부들에게 줄 혼전교육자료를 만들고, 새로운 혼전 및 결혼교육 연구를 지원하기위해 5\$로 결혼 허가증 비용을 인상함.
Virginia	2000년 Public Health Department's Partners in Prevention Program에서 10대 임신프로그램을 새롭게 영역에 포함하여 20대여성들의 혼외출산 감소를 목적으로 활동
Wisconsin주	미사용분 TANF 기금 중 21만\$을 Community Marriage Policy Project를 통해 지역 성직자들을 연합하고 이 지역사회에 맞는 결혼기준을 만드는데 지원
Minnesota주와 Maryland주	2000년 결혼교육을 장려하는 제안서가 주의회를 통과하였으나,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함.

〈표 3-30〉 시민들의 결혼운동

주	활동내용
The Greater Grand Rapid Community Marriage Policy	Michigan주에서 시민, 기업, 성직자, 전문적 지도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이 건강하고 지속되는 결혼생활을 위해 부부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혼전준비와 결혼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에 동의하여 설립
First Thing First Inc. in Tennessee	- The Chattanooga Initiative를 통해 결혼교육자 훈련과 대중홍보, 결혼에 대한 이슈에 교회를 동원시키기 위한 결혼캠페인을 주도함. - 대중을 교육하고, marriage mentor를 확보하고, 교회파트너를 끌어들이고자 광범위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실시
Michigan주 Lenawee County	1997년 판사, 시장, 치안관사 등이 결혼준비와 기술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으면 부부들이 결혼하지 않도록 하는데 동의함. 2000년 11월, 사법부와 사회복지, 변호사협회, 학계가 연합하여 이혼을 줄이고 부부간 화해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이혼교육이나 중재방법을 위한 divorce mediation summit을 엮. - 새로운 미시간법원규칙은 판사에게 이혼진행과정초기에 화해의 조짐이 있을 때 이혼중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비영리 지역사회기반 조직	- 지역, 주, 연방정부, 박애주의 기관들, 기업, the United Way, 개인적 기부자들의 다양한 단체가 설립됨 - 복합적 "one stop shopping" 가족센터들이 지역사회에 설립됨 - 더 자세한 내용은 www.avance.org, www.frca.org 참조
비영리 시민조직	- Washington, Michigan, South Carolina, Georgia, Indiana, Pennsylvania, Florida, Alabama주 등에서 비영리 시민조직들이 단체목표를 결혼강화와 이혼예방으로 표방함 - Washington Family Council(WFC)은 워싱턴 젊은이들의 결혼, 이혼, 가족생활에 대한 태도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성직자들을 위해 "Marriage Builders" program 개발. 현재 550개(130개 도시와 15개 county)의 워싱턴주 교회에서 18가지의 "community marriage agreement" 받아들임.

2000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결혼장려 및 이혼방지를 위한 상담, 교육 등 가족강화 프로그램은 자녀양육의 장으로서의 가족의 안정성을 강조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2002년부터 시행되는 10대 임신예방의

날(5월 8일) (www.teenpregnancy.org)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정책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10대 임신문제를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을 강조한다. 10대 임신은 학교의 중퇴로 이어지며, 직업기회의 박탈로 경제적 빈곤층을 양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에 미혼학생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만들고, 학교중퇴를 예방하여 자립의 길을 열어주고 있으며, 미혼학생들을 위한 부모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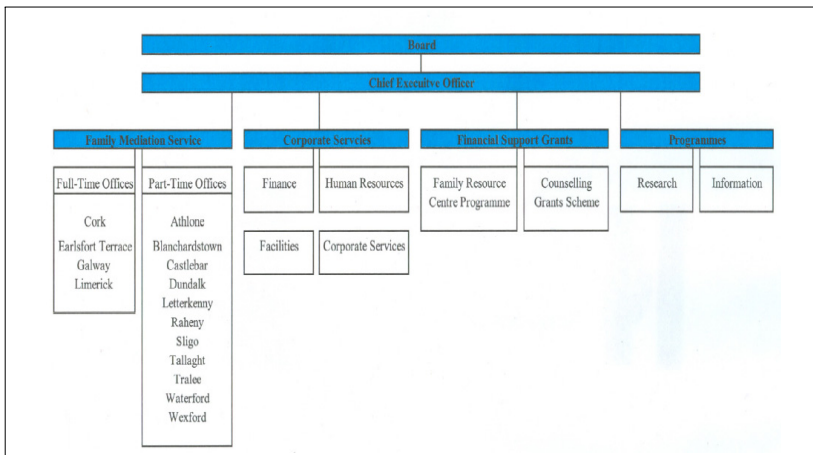
나. 아일랜드의 가족중재서비스(Family Mediation Services)

아일랜드의 가족지원단체(Family Support Agency, 이하 FSA)는 사회가족부(Department of Social & Family Affairs)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2003년도에 설치되었다. 기본적으로 FSA는 아일랜드 전체에 설치된 107개 가족자원센터(Family Resource Centre, FRC)의 운영지원을 담당하고, 결혼생활, 가족관계, 양육지원, 상담서비스 및 가족중재서비스(Family Mediation Services)를 제공하는 역할을 총괄한다. 이 중 핵심서비스는 가족중재서비스(Family Mediation Services)와 상담서비스이다(정현숙 등, 2010)(그림 3-6 참조).

아일랜드의 가족중재서비스는 혼인상태의 부부가 별거 또는 이혼을 결심하거나 이혼·별거자를 대상으로 중재자(mediator)의 개입과정을 통해 건강한 이혼·별거의 과정을 거치도록 돕는다. 주로 이혼·별거 이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녀양육, 가정경제, 부부재산의 분할 및 관리, 연금 등과 관련된 무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부부상담과 이혼에 따른 법률지원서비스와는 명확히 구분됨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에는 동 서비스만을 특성화한 16개의 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동 가족중재

서비스는 사례에 따라 3~6회기에 걸쳐 이루어지며, 각 회기당 1시간의 시간소요를 원칙으로 한다. 대부분의 중재서비스는 이혼·별거 당사자의 합의 문서를 도출하는 것으로 종료되며, 도출된 합의문서는 법적 분리 과정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정현숙 등, 2010).

[그림 3-6] 아일랜드 가족지원단체 운영 조직도



자료: 1) www.fsa.ie/fileadmin/user_upload/Files/FSA_Organisational_Chart.pdf.
 2) 정현숙외(2010)에서 재인용, p. 45.

한편, 아일랜드 가족지원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각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족자원센터(FRC)는 가족기능의 강화 및 건강한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가족생활 관련 정보의 제공, 지역사회 가족강화 활동에 대한 실무지원(정보제공, 컨설팅 등), 가족지원 활동 관련 교육·훈련, 보육서비스, 아버지 교육, 가족단위 또는 남성가족원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을 비롯하여 한부모, 중년여성, 부모집단 등 자조집단의 운영을 지원하기도 한다. 개별 가족자원센터(FRC) 종사자의 21%는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인력이고 과반수의 종사자는(약51%) 관련 기금으로 확보된 인력이며, 나머지

28%는 자원봉사 인력이다(2009년도 기준).

가족지원단체(FSA)의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센터프로그램 보조금(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Resource Center Programme Funds)으로 운영되는 가족자원센터(FRC)의 성과평가는 SPEAK system(Strategic Planning, Evaluation and Knowledge- networking)을 통해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가족자원센터(FRC)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SPEAK system에 의한 평가는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점검의 기회를 마련하고, 차기년도 가족지원 사업을 기획·구성하는데 객관적 근거로 활용되며, 타 지역사회에서 운영된 가족지원서비스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SPEAK system(The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Resource Center Programme Achievements, 2009)을 통해 확보된 자료에 근거하여 2009년도 가족자원센터(FRC)의 대표 성과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센터의 재원마련 노력의 일환으로 확보된 기부금 모금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 지원금의 전년 대비 12.9% 삭감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FRC의 재정구성의 40%가 정부보조금). 둘째, 센터운영의 실인원 기준 154,793명이 지역사회에서 제공된 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이 가운데 75,948명은 유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되었다. 특히,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이 증가하면서 지역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및 지지그룹의 FRC 방문은 2008년도 28,859건에서 33,676건으로 증가하였다. 셋째, FRC 센터의 핵심기능으로서 교육·훈련 부분은 전체 업무 비중의 14.5%를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 교육·훈련 참가자의 지속적 교육 참여 및 관련 분야에 고용으로 연계된 성공사례가 보고되었다(정현숙·박세경·정선영, 2010).

다. 홍콩의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홍콩은 중앙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구도 하에 가족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위상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가족해체의 증가와 가정폭력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을 전후로 하여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모여지기 시작하면서 가족의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가족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동중심, 가족중심, 그리고 지역사회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홍콩 가족지원서비스의 대표적 유형은 <표 3-31>과 같다.

〈표 3-31〉 홍콩 가족지원서비스의 유형별 주요 서비스 내용

서비스 유형	주요 서비스 내용	제공기관 수 (’09.6 기준)
통합가족서비스센터 (Integrated Family Service Centre)	-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치료를 사레관리 - 취약가족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정부 주도: 40개소 NGO 주도: 21개소
가족중재서비스 (Family Mediation Service)	- 인증 가족중재자(Family Mediator)에 의한 이혼·별거 이후 적응지원 서비스	NGO 주도: 9개소
가족아동보호서비스 (Family and Child Protection Service)	- 가정폭력, 아동학대로부터 피해가족원 및 아동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직접 보호서비스 제공	지역거점 센터 11개 개소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서비스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일시보호/쉼터 - 가족위기센터: 위기상황의 가족을 단기/일시 보호 - One-stop 위기개입센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복지부와 다기능 위기 개입 및 지원센터(Multi-purpose Crisis Intervention and Support Center)	쉼터: 5개소 가족위기센터: 1개소 다기능센터: 11개소 폭력예방센터 (NGO): 7개소
지역사회센터 (Community Centre)	- 지역사회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통합과 사회적 책임, 자조그룹 활동 지원	13개소

자료: 1) http://www.hkcss.org.hk/download/folder/fc/fc_eng.htm#3. 2010. 11.

2) 정현숙외(2010)에서 재인용, p. 48.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기관으로서 통합가족서비스센터(Integrated Family Service Centre, IFSC)의 기능은 모든 개별가족에게 잠재된 가족기능의 강점과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가족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동 가족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과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가족의 내적 능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자원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서비스 제공 목표로 한다.

일반적으로 통합가족지원서비스센터(IFSC)는 가족자원팀, 가족지원팀, 그리고 가족상담팀으로 구성하는데, 가족자원팀(Family Resource Unit)의 경우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의 전달하는데, 주로 가족생활교육, 자녀양육 관련 자조집단 운영지원, 자원봉사자의 발굴 및 교육·훈련, 사회적 지지망의 연계·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족지원팀(Family Support Unit)은 위기상황에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을 시도한다. 그리고 가족상담팀(Family Counseling Unit)은 가족치료를 목표로 개인 또는 가족단위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 팀 구성은 업무분담의 명확한 경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하나의 가족개입사례에 대해 3개 사업팀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고 있다(정현숙·박세경·정선영, 2010).

라. 패밀리데이

1년에 한번 패밀리데이를 정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려는 국가로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등이 있다. 캐나다의 몇 지역(province)에서는 패밀리데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2월 셋째주 월요일을

공휴일로 정하였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1995년 이후 부활절 월요일을 패밀리데이로 정하였다. 미국의 패밀리데이는 아리조나 주의 공휴일로 1978년 이후 8월 첫째주 일요일을 패밀리데일로 정해 따르고 있다. 또한, 미국 전역에서 ‘패밀리데이 - 자녀와 같이 저녁 먹는 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Casafamilyday(casafamilyday.org/familyday)라는 민간단체는 부모와 식사를 같이 하는 청소년의 경우 약물중독이 적었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 같이하는 식사的重要性을 강조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9월 27일 월요일을 패밀리데일로 정하였다(정현숙·박세경·장선영, 2010).

마. 일본의 돌봄노동 지원정책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일본의 서비스로는 보호자가 일이나 병 등으로 아동(0세~초등학교 취학 전)을 보살필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보호자 대신 보육하는 시설로 보육소(허가 보육소)가 있으며, 아이들을 맡거나 보육사를 파견하는 쉼트스테이나 트와일라이트 스테이, 긴급일시보육, 일시보육, 병상후 아동보육, 어린이단기보호 등의 양육지원 서비스가 있다. 또한, 각 시정촌의 인증을 받은 인증보육소, 일정 요건을 갖춘 보육실이나 일정 자격을 갖춘 가정복지원(보육마마)의 보육 서비스도 있다(최진희, 2009). 각 보육서비스의 내용과 이용관련 정보는 <표 3-32>와 같다.

〈표 3-32〉 돌봄 사회화를 위한 일본의 보육 서비스

보육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이용 관련 정보
숏스테이/ 트와일라이트 스테이	보호자가 일 등으로 인해 야간에 귀가할 경우, 자녀(2세~초등학교생) 기관 보육	이용시간은 오후 5시~오후 10시, 이용료는 1일 2,000엔
긴급일시 보육	보호자가, 입원이나 출산 등 긴급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보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위해서, 보호자의 집에서 보육을 하는 보육원(베이비시터) 파견	대상자는 생후 4개월 ~초등학교 입학 전 (대체로 6세 이하)까지의 건강한 자녀
일시보육	보호자가 관상상제 및 육아피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할 경우의 일시적 자녀(생후 57일~초등학교 입학전) 기관보육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이며 이용료는 1시간 800엔
병상후 아동보육	병 회복기로 병상이 가벼운 자녀(생후 7개월 ~초등학교 3학년생)를 보호자가 간호할 수 없을 때, 구가 위탁한 병원이나 인증 탁아소의 병상후 아동보육실에서 보육	이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30분, 이용료는 1일 2,000엔
어린이 단기보호	보호자의 병 등으로 인해 양육이 곤란해졌을 경우, 구가 위탁한 유아원이나 아동 양호시설에서 자녀분(생후7일~중학생)을 보육	이용기간은 1회에 대해 7일간 (6박 7일)까지이며 이용료는 1일 3,000엔

자료: 정현숙·박세경·장선영(2010). p. 78.

한편, 일본의 ‘보편적 양육’ 서비스로는 양육지원방문사업이 있다. 2009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유아가 있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사업을 실시할 것을 법제화 하였다. 아기의 생후 4개 월 안에 방문하여 양육에 관한 고민, 불안을 상담하고 아동양육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모의 심신상황, 양육환경 등을 파악, 조언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유아가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처음으로 연결되는 기회로 삼아 유아가 있는 가정의 고립을 막고 아기의 건전한 양육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양육지원방문사업은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산후 우울증, 육아 노이로제 등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불안

과 고립감을 가지고 있는 가정과 여러 요인으로 양육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육아경험자가 육아와 가사원조를 제공하며, 보건사(保健師, public health nurse)는 구체적인 양육지도와 조언 등을 실시하여 각각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양육 상의 문제들을 해결·경감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구의 소득과 가구 구조를 기초로 서비스 이용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가구의 소득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정부부담액이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정현숙 등(2010)은 우리나라의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비교해 볼 때, 일본의 양육지원방문사업은 앞으로 아이돌보미사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평가한다.

양육자의 취업 여부나 상황의 긴급성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프로그램으로 프랑스와 스웨덴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간제 보육 프로그램의 예를 들 수 있다. 프랑스의 시간제 보육시설 ‘알트 가르드리(halte-garderie)’는 하루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로 취업모에게 다양한 근로시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취업모에게는 쇼핑이나 운동 등 잠깐 불일을 보러가는 부모들과 자기개발과 취업준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에는 종일제 보육시설 이외에도 시간제로 운영되는 개방형 피르스콜라(open preschool), 집에 있는 부모나 가정보육모들에게 사회적 교육적 자극을 주는 활동을 제공하는 센터프로그램 방문(drop-in service)유형, 가정보육(family daycare)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www.ymcaagaya.kr/about/about01.html).

3. 일가족양립지원 정책

프랑스, 스웨덴,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일본의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은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김태현(2009)의 “지속가능발전과 일가족양립정

책”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 여기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정리하였다. 그 외 핀란드와 노르웨이(여성부 국제협력담당관실, 2005), 미국(장혜경, 2002)과 영국(보건사회연구원, 2010)의 정책을 추가하였다

가. 스웨덴 일가족양립정책

스웨덴의 일가족양립정책은 노동시간, 휴가, 보육, 조세정과 현금지원 정책으로 구분된다. 노동시간은 근로시간단축법(2002)에 따라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노동시간을 25%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휴가정책은 출산휴가(14주 별도의 제도적 명칭 없이 부모휴가제도 내에서 운영), 부모휴가(16개월, 8세미만 자녀의 부모, 정률/정액급여, 휴가탄력적 사용), 아버지 할당(2개월), 성평등보너스(부모 중 높은 임금소득자가 휴가 이용시, 낮은 임금소득자에게 보너스 제공, 월 최고 3,000SEK), 임신 육아휴직(60일, 아픈자녀 돌봄, 소득 80%), 부성휴가(10일, 유급)로 구분되면 휴가는 1/2, 1/3, 1/4, 1/8로 분할사용이 가능하다(김태현, 2009).

나. 영국 일가족양립정책

영국의 일가족양립정책은 노동시간정책, 휴가정책, 보육정책, 조세정책과 현금지원정책으로 구분된다. 노동시간은 파트타임근로지침(2000), 탄력근무규제(2002), 탄력근무요청권에 관한 법(2003), 일과 가족법(2006)에 따라 근로자의 유연한 노동을 요청할 권리와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휴가정책은 일반모성휴가(26주, 6주간 평균임금의 90%, 이후 33주 £117.8 정액급여), 추가모성휴가(총 52주까지 모성휴가 사용, 39주까지 모성휴가 급여 또는 모성수당 제공),

부성휴가(2주, 정액급여제공), 육아휴직(만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13주, 무급) 등이 있다. 보육정책은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 38주, 주당 15시간의 무상유아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아원·아동센터·가족센터 등의 보육시설, 부모, 방과후 클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서비스 비용은 부모비용 부담이 70% 정도이며, 보육형태와 지역에 따라 보육비용이 다르다. 중·저소득층의 보육비 지원에 대한 세금환급제로 근로세액공제제도가 있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바우처 제도는 주당 보육비의 일부 세금 감면혜택이 있다(김태현, 2009).

영국은 또한 산후복지권에 따라 근로자에게 산후휴가 후 직장 복귀시 기존과 동일한 근무기간과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만약 복귀한 조건이 부당한 경우, 고용주는 유사한 근무기간과 조건의 대체업무를 제공해야 하며, 복직 가능한 동일한 업무가 있음에도 고용주가 대체업무를 제공한다면 전화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모유수유(출산후 6개월)를 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데, 특히 직장에서 출산여성과 아이 건강에 대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제거해야 한다. 만약 직장에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없다면 여성 근로자에게 대체업무를 제공해야 하며, 적당한 대체업무가 없는 경우 임금의 100% 지급하고 일을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복직 후 모유수유를 위해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일시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데, 만약 고용주가 타당한 업무적인 이유 없이 거절한다면 이는 간접적인 성차별로 간주된다. 또한 1999년 모성 및 부성 휴가 등에 대한 규제에 따라 산후휴가기간 동안 근로자를 정리하고 할 경우 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대체 직위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직위에 지원하거나 면접에 응시할 필요 없이 다른 사원에 비해 우선권을 가진다. 만약 적당한 대체직위가 있으나 제안을 받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불공정해고로 청구가 가능하다(보건사회연구원, 2010).

다. 프랑스 일가족양립정책

프랑스의 일가족 양립정책은 부모들이 더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간 감소와 최소연간 유급휴가 규정을 두고 있다. 휴가정책으로는 모성휴가(첫째, 둘째자녀 16주/ 셋째, 넷째 자녀 26주/ 입양의 경우 첫째, 둘째자녀 10주/ 3명 이상 18주, 임금의 80% 정률 급여), 부성휴가(11일, 유급), 육아휴가(첫째 6개월, 둘째 자녀부터 3년까지 시간제사용 가능, 동일한 임금직위 보장)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보육정책은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공공보육(어린이집, 비정기적 보육 시설, 복합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민간보육(베이비시터, 가족내보육), 비공식적 보육(가족, 신고되지 않은 베이비시터)의 서비스를 하고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보육의 경우 부모부담율은 6.6%~12% 정도로 자녀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직접양육을 할 경우 PAJE(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을 통해서 현금급여를 지원하고 혹은 집단보육시설이 아닌 개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PAJE를 통해 현금급여를 지원한다. 7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시설에서 보육하는 부모들에 대한 보육비세액을 공제해주고, 가정내 보육을 하거나 가정내 특별수업을 이용하는 부모들에 대해서도 보육비를 지원한다(김태현, 2009).

라. 네덜란드 일가족양립정책

네덜란드 일가족정책은 노동시간 정책, 휴가정책, 보육정책으로 구분된다. 노동시간은 노동시간에 따른 차별금지법(1995), 근로시간조정법(2000)에 의해 풀타임과 파트타임 노동자가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다.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늘이는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고용주는 중요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휴가제도는 모성휴

가(16주, 출산전 4-6주, 출산후 10-12주, 임금전액지급), 부모휴가(8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부모 각각 13주씩 무급), 부성휴가(2일, 임금전액지급), 입양휴가(4주, 임금전액지급), 응급휴가(개인 필요시), 단기케어휴가(자녀·배우자·부모의 유병시 연간 10일, 월급의 70%)와 장기케어휴가(배우자·아동·부모가 중병시 연가 6주, 무급)의 사용이 가능하다. 4세 미만 아동의 보육정책은 공식보육시설(지방정부, 고용주제공), 비공식보육(조부모, 친척, 이웃 등)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정부·고용주가 공식적 보육비용의 1/3씩 부담한다(김태현, 2009).

마. 일본 일가족양립정책

일본의 일가족양립정책도 노동시간, 휴가, 보육정책으로 구분된다. 노동시간은 육아·개호 휴업법(2005)과 파트타임노동법(2008)에 의해 시간외 노동제한(육아·개호 등 노동자 1개월 24시간, 1년 150시간 시간외 노동 금지), 심야업 제한(육아·개호 등 노동자 오후 10시~오전 5시 노동 금지), 근무시간단축(단시간 근무, 플렉스타임, 사업종업시간 앞당기거나 늦춤), 파트타임 노동(고용시 노동조건 문서화, 직무 인재활용구조 계약기간에 따른 대우, 정규사원 전환제도, 불평제외에 대한 대응) 등의 정책이 있다. 휴가정책으로는 육아휴업(1년, 휴업전 임금 40%까지 지급)과 자녀간호휴가(5일)제도가 있다. 보육정책은 보육원, 가정보육(보육마마), 인정보육원, 유치원 보육, 직장보육, 방과후보육의 형태로 제공된다(김태현, 2009).

일본은 또한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1998년 후생노동성은 육아휴직제도, 가족간호휴가제도, 탄력근무제도, 재택근무제도 등 직장가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남성과 관리자까지도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근로자의

제도 이용이 자유로우며,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경영진과 관리자의 이해도가 높은 문화를 가진 기업을 ‘가족친화기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육아 및 가족간호휴가법(1999)의 시행을 통해 직장-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기업 확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1999년 고용평등과 가족친화 기업에 대한 수상을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가족친화 기업후보를 각 현의 노동국에서 추천하는 방식이었으나 2003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가족(family-friendly) 기업부문상을 제정하고 차세대 인정마크 제도도 실시한다. 차세대 인정마크는 기업이 가족친화정책 관련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신고하면 신고업체 중 기업주의 신청에 의해 정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행동계획을 수립한 기업체에 수여하는 인증마크이며, 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다(보건사회연구원, 2010).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 기준은 법 기준을 상회하는 육아, 돌봄휴직제도 운영, 분할사용이 가능한 육아휴직제도, 통산 93일을 초과하는 돌봄휴직제도 및 연간 5일을 초과하는 자녀돌봄휴직제도 등이다.

바. 핀란드 일가족양립정책

핀란드의 일가족양립정책은 휴가, 가족지원 및 주택정책이 대표적이다. 휴가정책은 출산휴가, 부모휴가, 부성휴가, 입양아휴가로 대별된다(여성부 국제협력담당관실, 2005). 출산 후 유급양육휴가 제도는 출산 후 최초 105일간(주말제외) 소득의 70%를 지급하는 유급휴가이다. 어머니는 출산전 30-50일, 출산후 55-75일 휴가가 가능하다. 임신부가 화학물질이나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 등 태아에게 해로운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 임신기간 동안 쉴 수 있는 특별휴가제도도 운영한다. 또한 자녀의 보육, 질병, 장애, 재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급 도는 정

부지원 없이 아동보육을 위해 4개 휴가제도(파트타임 아동보육휴가/ 일시 아동보육휴가/ 유급 부분보육휴가/ 유급 특별보육휴가)도 운영하고 있다.

부모휴가제도는 출산휴가 이후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 사람이 158일(쌍둥이 출산 경우 한 자녀 당 주말을 제외한 60일 더 연장 206일)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 취학연령인 7세까지는 무급육아휴가(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가정육아 수당 받음), 사설 보육시설, 시립 보육시설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나 아버지 한 사람이 무급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고 수당은 부모휴가수당이 끝나는 시점에 지급된다.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3세미만 가정에 대해 시당국은 아동가정육아수당을, 시설에 보낼 경우 사설아동보육수당을 지급한다. 아버지도 18일간 부성휴가가 가능하며, 출산휴가 또는 어머니가 부모휴가를 받은 경우는 부모휴가가 가능하다.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도 입양아 나이에 따라 다른 기간이 적용되는데 신생아 입양은 234일, 7세 미만인 경우는 180일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사. 노르웨이 일가족양립정책

노르웨이는 아동가족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의 가족보육서비스 및 양성평등국(Department of Family, Daycare services and Gender Equality)에서 가족정책, 가족법, 양성평등, 보육시설을 담당한다. 노르웨이의 일가족양립정책은 수당(여성부 국제협력담당관실, 2005)과 휴가정책(여성가족부 국제협력팀, 2006)이 대표적이다. 수당은 부모수당, 가족수당, 현금수당 등이 있다.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주는 현금수당(Cash Benefit for Parent with Small Children)은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돕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대하여 보육시설에 보낼지 직접 돌볼지 선택의 자유를 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만약 정식으로 아이가 국가 운영 보육시설에 시간제로 등록되었다면 현금수당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주당 33시간이상 보육시설에 등록한 아이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부모수당은 52주는 임금의 80%를, 42주는 임금의 100%를 받는다. 입양수당은 49주간 임금의 80% 또는 39주 동안 임금의 100%를 받는다. 부모수당이나 입양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은 여성은 일시불로 EUR4,198(2004기준)을 받는다.

노르웨이의 가족수당과 관련된 법은 1946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가족수당은 자녀를 가진 가족에게 지원되는 사회보험으로 18세미만의 아이를 부양하는 사람들은 아동 1명당 매달 EUR 121(2004기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등록하지 않거나 시간제로 등록한 1-3세 유아가 있는 가족에게 EUR457(2004기준)의 현금수당을 지급한다. 정부지원 가족수당은 국가보험행정국과 지역사회 보험국에서 운영한다.

아. 미국 일가족양립지원정책

미국의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가족의료휴가제도(FMLA: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이다. 미국은 국가적 차원의 모성, 부성, 부모 휴가정책은 없으나, 1993년 도입된 가족의료휴가제도가 부분적으로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무급인 것에 반해 일부 주에서는 장애수당 관련 제도를 활용하여 여성의 출산, 초기 양육기 동안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78년 고용기회균등법에 기반하여 임신을 다른 장애상태와 같은 조건으로 취급하고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연방법률인 ‘임신차별방지법’(PDA: Pregnancy Discrimination Act)가

통과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의 다섯 개 주가 이전부터 실시하던 단기간의 장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법령을 임신과 출산관련 장애를 포함하도록 확대시켜 적용하는데, 대략 1임신 0-12주와 출산기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50명이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기업은 출산, 입양한 자녀를 돌보는, 혹은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질병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복직이 보장되는 12주간의 무급의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밖에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책은 크게 3가지로 시간관련 지원(휴가 제도, 근무시간 조정), 고용조정(재택근무), 복지시설 및 비용지원(보육시설, 보육비지원)으로 구분된다. 보육관련 제도는 직장내보육센터, 기업간 공동보육센터, 방학/주말캠프, 가족보육네트워크, 위급한 기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보육마우처는 보육비용상환제도, 보육기관과 기업이 합의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가족간호나 보육에 사용한 비용을 소득세 과표에서 제외시켜주는 제도 등이 있다(장혜경, 2002).

제5절 시사점

본 장에서는 각생애주기마다 처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와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국내외 중산층가족정책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산층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활성화와 고용증진이다. 왜냐하면 중산층의 정의 자체가 소득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튼튼히 하고 고용을 늘리는 것이 일차적인

국가의 과제이다. 문형표 등(2009)은 근로빈곤층에 특화된 고용지원서비스, 단시간 근로 활성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중고령자 근로자의 고용안정, 근로장려세제의 제도 보완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방하남(2009)은 공평한 기회와 안정된 고용, 신축적인 노동시장, 사전·예비적인 인적자본 투자로 직업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조건 확립, 노동·교육·복지정책 간 융합적 정책의 추구 등을 중요 과제로 제시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창출과 같은 정책이 본연구의 초점을 벗어나므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으나 중산층가족의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⁵⁾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지출을 늘리고 세금과 금리를 낮추는 확대 재정·금융정책이 필요하다⁶⁾. 성장과 분배가 핵심 키워드이지만 분배적 관점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출을 늘려야하며,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분배구조를 개선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책의 방향은 사회의 다양한 지원망에서의 활동과 지원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의 많은 정책들은 장기적인 인구현황이나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에 의해 제정되고 운영되었다기보다는 각 시기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후처리를 위해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져 왔다는 점이다. 사회의 발

5) 2012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재정건전성 확보이며, 글로벌 재정 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일자리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으로 발표됨(중앙일보, 2011. 9. 28). 일자리 예산 규모는 2010년 9조4679억 원에서 6.8% 늘어난 10조 1,107억 원이며, 정부가 직접 돈을 풀어 만들어 내는 일자리는 2010년 54만1000명 규모에서 내년에는 56만2000명으로 늘어남.

전과정에서 예측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한 시기에 어떠한 사회문제가 드러나는가에 따라서 다문화, 한부모, 인구정책 등의 주제들이 부각되고 그 대상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다양성에 따라 가족구조를 구분한 정책이 주를 이루어왔다.

미국, 프랑스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의 가족정책에는 각 국가의 가족에 대한 철학이 잘 반영되어있으며, 이러한 철학에 의해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는 가족을 “사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지위를 갖는, 일차적으로는 부모-자녀 관계에 입각한 삶의 형태”로 정의할 만큼 부모자녀관계를 가족관계의 기초로 인식한다. 또한 가족의 구조적 취약성에 주목하여 법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가족의 주체적 책임을 우선시하여 국가는 가족의 자조 능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한다. 프랑스의 경우는 가족주의보다 개인주의를 강조한다. 따라서 가족집단에 대한 지원에서 가족구성원들 개별에 대한 지원으로, 포괄적인 가족수당 지급에서 선별적인 수당 지급으로, 가족과 고용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가족을 교육의 기본적인 장이자 사회통합의 장으로 개념화하며, 여성의 출산을 사회재생산 활동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해 사회가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적 장치(영유아수당 등)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가족을 아동보호 및 노인보호의 핵심제도로 인식하며, 친가족(pro-family) 정책을 강력히 표명한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가족정책을 마련하여 아동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춘다. 즉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자녀부양비 강제(CSE),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아동 및 청소년 학대 등 미성년자 권리보호법 등이 그 예이다. 또한 가족에 대한 시장형 복지전략을 수립하여 한부모가족의 부모에게 노동을 선택하게 강제하는 정책

을 시행하여 자활을 강조하고 있으며, 복지수급자의 수를 줄이고 근로하는 복지수급자의 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일하는 여성을 지지하는 보육, 교통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다. 일본의 가족에 대한 정의는 전통적 가부장적 특징을 나타낸다. 따라서 부부간의 동반자적 특성보다는 수직적 세대관계를 중시하며 가족의 자녀출산, 사회경제적 기능수행을 우선시한다. 이러한 일본의 강한 가족이데올로기는 가족의 자조원칙, 가족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범위 제한, 선별주의적 원칙, 가족정책의 수립과 운용방식에 있어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세대간의 공평성 추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정현숙, 2004).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방향은 매우 임의적이다. 현재 소관부처별 정책도 효율성에 의한 구분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한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매우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가족의 사회적 책임 및 인간발달에서 가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족업무는 보건복지부, 여성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그리고 다시 여성가족부로 옮겨 다니는 천덕구러기가 되어왔다는 점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부끄러운 사례이다⁷⁾.

셋째, 정책 수립시 가족의 책임과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일가족양립과 관련된 정책과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이 많은 부분 기여한 점이 있으나 실제 출산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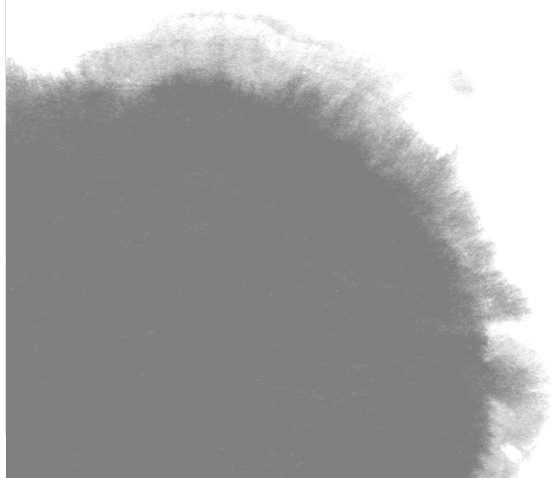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7) 송다영(2011)은 2008년이 이후의 보육정책에 대해 “국가의 역할을 보육서비스 공급이나 전달체계의 공공성 확보보다는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한정시키고 바우처형식을 결합하면서 보육서비스 선택의 최종 책임을 가족과 시장으로 위임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p. 289)으로 분석함. 또한 송다영은 이명박정부의 보육정책의 재편이 소득수준별, 성별계층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모든 아동의 고른 성장을 담보하는 아동보육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함.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시장화, 개별화, 가족화 등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앞으로의 가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어디까지가 국가의 책임이며, 어디까지가 가족의 책임인가를 가족정책의 방향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해 우선해야하는 과제는 인간의 그리고 가족의 본질에 대한 고민과 우리사회의 중심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의 가족에 대한 인식이 가족을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연대와 경제적 의존의 복합적 공존집단으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자녀출산과 결혼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개인의 자율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은 더욱 다양해 질 것이다. 따라서 건강하고 안정된 결혼을 돕는 일은 여전히 가족학자들과 상담가, 정책가들의 핵심공약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결혼은 지금보다 더욱 유연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한편으로는 Cherlin(2009)의 주장과 같이 결혼은 이전보다 더 선택적으로 되고, 개인적인 보상이 강조되지만, 전통적인 경제적 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은 남아있을 것이며, 자녀들의 삶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결혼, 출산에 대한 무조건적인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발달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는 개인의 책임에 바탕을 둔 정책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가족에 대한 시장형 복지전략을 수립하여 한부모가족의 부모에게 노동을 선택하게 강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자활을 강조하고 있으며, 복지수급자의 수를 줄이고 근로하는 복지수급자의 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등 가족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04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제4장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제1 절 분석대상자의 특성

1. 전화조사대상자

전화조사결과 조사완료된 분석대상자수는 1,501명이었고, 소득계층별 분석대상자는 총 815명으로 무응답자수인 686명을 제외한 수치이다⁸⁾. 그 중 고소득층은 162명으로 19.9%의 분포를 보였고, 중산층은 481명으로 59.0%, 저소득층은 172명으로 21.1%의 분포를 보였다.⁹⁾

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반적으로 도시지역 거주자는 86.3%로 분석대상자의 5분의 4 이상이 해당되었으며, 농·어촌지역 거주자는 13.7%에 불과하였다. 중산층가족은 88.6%가 도시지역 거주자였고, 고소득층은 중산층보다 도시지역 거주자가 높았으며, 저소득층은 중산층보다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상당히 높았다. 성별은 여성과 남성이 비슷하였으며 중산층가족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다소 높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여성이 높아서 중산층가족은 다른 소득층에 비해 남성비율이 높았다. 연령은 30~40대가

8) 소득계층은 월평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총 1,500명 월평균 가구소득 문항을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815명, 무응답자는 685명으로 소득계층 분석은 81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9) 소득계층의 구분은 중위소득 150만원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50~150%가구로 정의할 때 고소득층은 중위소득의 150% 초과 가구,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를 말함.

44.1%로 거의 과반수에 이르고 50~64세 이하는 25.0%로 중장년층이 69.1%에 이르며 20대와 65세 이상은 30.8% 분포를 보였다. 중산층가족은 30~40대 연령층이 51.8%, 50~64세 이하는 23.1%로 중장년층이 74.9%, 20대와 65세 이상은 25.1%이었다. 고소득층은 중장년층이 77.8%로 중산층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저소득층은 중장년층이 45.2%, 65세 이상이 48.3%로 중산층보다 중장년층은 거의 절반수준에 불과한데 비해 노인층은 5.3배 높았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79.6%로 미혼보다 약 4배 많았으며, 중산층가족은 기혼이 77.3%로 미혼보다 3.4배 많았고, 고소득층은 기혼이 약 3배, 저소득층은 기혼이 약 10배 많아서 고소득층은 중산층보다 미혼이 다소 높았고, 저소득층은 기혼이 약간 높았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의 저학력 소지자가 52.1%, 대학 이상의 고학력 소지자는 48.0%로 저학력 소지자가 4.1%pt 높았다. 중산층가족은 고학력소지자가 저학력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고소득층은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약 3배 높았으며, 저소득층은 저학력자가 고학력자보다 약 5배 높아서 중산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고학력자의 비율이 상당히 낮았고, 저소득층보다는 고학력자의 비율이 3배 높았다. 가구형태는 부부 또는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78.4%로 3분의 2 이상 분포를 보였고, 나머지 가구는 21.6%에 불과하였다. 부부 또는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중산층가족은 82.1%, 고소득층은 85.8%로 중산층보다 3.7%pt 높았고, 저소득층은 61.1%로 중산층에 비해 낮은데 반해 1인 가구는 약 4배 많았다. 가구원수는 3인 이상이 73.7%로 3분의 2 이상이 해당되었고, 2인 이하는 26.3%에 불과하였다. 중산층가족은 3인 이상이 81.7%로 2인 이하보다 4.5배 높았고, 고소득층은 중산층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저소득층은 2인 이하가 54.0%로 중산층보다 약 3배 높았고, 3인 이상은 절반수준에 불과하여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저소득층은 2인 이하 가구가 높아서 소
가족형태를 보였다.

〈표 4-1〉 소득계층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특성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χ^2
전체	21.1	59.0	19.9	100.0	
응답자 거주지역					
도시	71.5	88.6	95.1	86.3	44.306***
농어촌	28.5	11.4	4.9	13.7	
응답자 성별					
남성	43.0	53.0	44.4	49.2	6.892*
여성	57.0	47.0	55.6	50.8	
응답자 연령					
20~29세	6.4	16.0	17.9	14.4	184.387***
30~39세	5.7	26.6	22.2	21.3	
40~49세	12.2	25.2	27.2	22.8	
50~64세	27.3	23.1	28.4	25.0	
65세 이상	48.3	9.1	4.3	16.4	
응답자 결혼상태					
기혼	90.7	77.3	74.7	79.6	16.983***
미혼	9.3	22.7	25.3	20.4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0.5	14.4	4.9	22.3	218.723***
고등학교	23.3	35.1	21.0	29.8	
대학 이상	16.3	50.5	74.1	48.0	
가구형태					
1인 가구	17.4	4.4	3.7	7.0	117.244***
부부가구	32.6	11.4	13.6	16.3	
부부+자녀	28.5	70.7	72.2	62.1	
기타가구	21.5	13.5	10.5	14.6	
가구원수					
1인	17.4	4.4	3.7	7.0	91.635***
2인	36.6	13.9	16.7	19.3	
3인 이상	45.9	81.7	79.6	73.7	
사회적 지위					
상	.0	2.7	7.4	3.1	147.271***
중	29.1	65.3	82.1	61.0	
하	70.9	32.0	10.5	36.0	
계(수)	100.0(172)	100.0(481)	100.0(162)	100.0(815)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귀속의식은 상중하로 분류할 때 중층에 속한다는 비율이 61.0%로 과반수 이상에 해당되었고, 하층도 36.0%로 3분 1 정도이었으며, 상층은 3.1%로 전반적으로 97.0%가 중하층에 속한다는 비율이 높아서 사회적 귀속의식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중산층가족의 귀속의식은 중층에 속한다는 비율이 65.3%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하층에 속한다는 비율은 32.0%로 3분의 1에 해당되었으며, 상층에 속한다는 의식은 미미하여 귀속의식이 낮았다. 고소득층은 중층과 하층에 속한다는 의식이 92.6%로 높았으며, 저소득층은 하층에 대한 귀속의식이 70.9%로 중산층보다 2.2배 높았고, 중층에 대한 귀속의식은 29.1%로 적지 않은 분포를 보였다.

나. 응답자의 직업경제적 특성

전체는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약간 높았고, 중산층가족은 비취업자가 다소 높았으며 고소득층도 유사한 분포를 보였고, 저소득층은 취업자가 비취업자에 비해 약 2배 많았으며 중산층보다 높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취업자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고용상태는 자영업자가 4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상용근로자는 38.1%, 일용·임시는 16.0%이었고 나머지는 미미하였다. 중산층가족은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가 83.1%로 많았고, 일용·임시근로자는 15.4%이었으며,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는 1.5%에 불과하였다. 고소득층은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가 89.3%로 중산층보다 상용근로자가 다소 많았고, 일용·임시근로자는 6.4%로 중산층보다 약간 낮았으며, 고용주와 무급가족사자는 다소 높았다. 저소득층은 영세자영업자가 47.5%로 중산층과 고소득층보다 높았고, 일용·임시근로자는 33.8%로 타 소득계층에 비해 약 2~5배 많았으며, 상용근로자는 16.9%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표 4-2〉 소득계층별 직업 및 경제적 특성

(단위: %, 명, 만원)

특성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χ^2
전체	21.1	59.0	19.9	100.0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65.7	43.5	42.0	47.9	27.926***
비취업	34.3	56.5	58.0	52.1	
응답자 고용상태					
자영업자	47.5	43.0	43.6	43.8	
고용주	-	.4	4.3	1.2	
무급가족종사자	1.7	1.1	-	0.9	
상용근로자	16.9	40.1	45.7	38.1	
일용근로자	16.9	4.0	1.1	5.2	
임시근로자	16.9	11.4	5.3	10.8	
응답자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00.0	18.5	-	32.0	906.840***
100~200만원 미만	-	56.5	-	33.4	
200~300만원 미만	-	24.9	55.6	25.8	
300~400만원 미만	-	-	22.2	4.4	
400~500만원 미만	-	-	11.7	2.3	
500만원 이상	-	-	10.5	2.1	
평균	49.5	152.0	333.6	166.5	
주택소유형태					
자가	69.8	72.1	87.0	74.6	
전세	14.0	18.7	10.5	16.1	
전·월세	1.2	1.9	-	1.3	
월세	12.2	6.4	2.5	6.9	
기타	2.9	0.8	-	1.1	
계(수)	100.0 (172)	100.0 (481)	100.0 (162)	100.0 (815)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소득수준은 가구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눈 균등화 지수값을 적용한 것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이 65.4%로 과반수를 초과하였고, 200~400만원 미만은 30.2%, 400만원 이상은 4.4%이었으며 평균소득은 166.5만원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산층가족은 100만원 미만이 18.5%, 100~200만원 미만이 56.5%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200~300만원 미만은 24.9%이었으며 평균은 152.0만원으로 중위소득보다 다소 높았다.

고소득층은 200~300만원 미만인 55.6%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300~500만원 미만인 33.9%, 500만원 이상은 10.5%이었으며, 평균은 333.6만원으로 중산층보다 약 2배 높았다. 저소득층은 100만원 미만이 100.0%이었고, 평균소득은 49.5만원으로 중산층가족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주택소유형태는 자가가 74.6%, 전·월세는 24.3%로 자가가 3배 높았다. 중산층가족은 자가가 전·월세보다 2.7배 높았고, 고소득층은 6.7배, 저소득층은 2.5배 높았다. 자가비율은 고소득층이 중산층보다 상당히 높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비슷하였다.

2. 복지패널조사대상자

2차 복지패널분석대상자는 1,678명으로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은 229명으로 13.6%의 분포를 보였고, 중산층은 766명으로 45.6%, 저소득층은 683명으로 40.7%의 분포를 보였다¹⁰⁾.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반적으로 도시지역 거주자는 76.6%로 분석대상자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되었으며, 농·어촌지역 거주자는 23.4%에 불과하였다. 중산층가족은 82.0%가 도시지역 거주자로 고소득층은 중산층보다 도시지역 거주자가 다소 높았고, 저소득층은 중산층보다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약 2배 높았다.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중산층가족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고소득층은 중산층보다 남성이 높았고, 저소득층은 중산층보다 여성이 다소 높았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남녀비율이 비슷하였고, 저소득층은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높았다. 연령은 40~50대가

10) 소득계층의 구분은 중위소득 248만원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50~150%의 가구로 정의할 때, 고소득층은 중위소득의 150% 초과가구,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를 말함.

50.8%로 거의 과반수에 이르고 39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49.1% 분포를 보였다. 중산층가족은 40~50대 연령층이 61.0%, 39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39.0%이었다. 고소득층은 중장년층이 67.7%로 중산층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저소득층은 중장년층이 34.0%, 65세 이상이 60.8%로 중산층보다 중장년층은 거의 절반수준에 불과한데 비해 노인층은 약 3배 높았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95.8%로 대다수에 해당되었으며, 중산층가족은 95.2%이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차이가 없었다. 특히 유배우가 78.9%이었고 이혼·별거·사별이 16.9%로 유배우 상태가 혼인해체보다 약 5배 높았다. 중산층가족은 유배우가 86.4%, 이혼·별거·사별은 8.7%이었고, 고소득층은 유사하였으며, 저소득층은 각각 67.2%와 30.0%로 중산층은 저소득층보다 유배우상태가 높았고, 저소득층은 타 소득계층에 비해 혼인해체 상태가 약 3~6배 높았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의 저학력 소지자가 79.1%, 대학 이상의 고학력 소지자는 20.9%로 저학력 소지자가 약 4배 높았다. 중산층가족은 저학력소지자가 고학력보다 3.4배 높았고, 고소득층은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다소 높았으며, 저소득층은 저학력자가 92.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중산층은 고소득층보다 저학력자가 약 2배 높았고, 저소득층보다는 고학력자가 약 3배 높았다.

가구형태는 부부 또는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85.5%로 5분의 4 이상 분포를 보였고, 나머지 가구는 14.5%에 불과하였다. 부부 또는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중산층가족과 고소득층이 비슷하였고, 저소득층은 중산층보다 낮은데 비해 단독가구는 약 4배 많았다. 가구원수는 3인 이상이 57.3%로 과반수에 해당되었고, 2인 이하는 42.8%에 불과하였다. 중산층가족은 3인 이상이 71.9%로 2인 이하보다 2.6배 높았고, 고소득층은 중산층과 유사하였다.

〈표 4-3〉 분석대상자의 소득계층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특성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χ^2
전체	40.7	45.6	13.6	100.0	
거주지역					
도시	66.5	82.0	89.1	76.6	71.469***
도농복합·농촌	33.5	18.0	10.9	23.4	
성별					
남성	39.4	48.4	51.1	45.1	15.766***
여성	60.6	51.6	48.9	54.9	
연령					
20~29세	0.6	1.4	-	0.9	337.938***
30~39세	4.7	16.6	20.1	12.2	
40~49세	11.9	29.8	33.2	22.9	
50~64세	22.1	31.2	34.5	27.9	
65세 이상	60.8	21.0	12.2	36.0	
결혼상태					
기혼	97.2	95.2	93.9	95.8	
미혼	2.8	4.7	6.1	4.1	
결혼상태					
유배우	67.2	86.4	88.6	78.9	
이혼·별거·사별	30.0	8.7	5.2	16.9	
미혼	2.8	4.7	6.1	4.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2.6	36.0	10.9	47.5	417.458***
고등학교	19.8	41.5	34.1	31.6	
대학 이상	7.6	22.5	55.0	20.9	
가구형태					
단독	23.9	5.5	6.6	13.1	
모부자	2.0	0.7	0.9	1.3	
소년·소녀가장	0.3	-	-	0.1	
기타	73.8	93.9	92.6	85.5	
가구원수					
1인	24.0	5.5	6.6	13.2	246.425***
2인	40.6	22.6	20.1	29.6	
3인 이상	35.4	71.9	73.4	57.3	
계(수)	100.0 (683)	100.0 (766)	100.0 (229)	100.0 (1,678)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01, *** p<0.001; 3)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저소득층은 2인 이하가 64.6%로 중산층보다 2.3배 높았고, 3인 이상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저소득층은 2인 이하 가구가 높아서 소가족형태를 보였다.

나. 직업경제적 특성

전체는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다소 높았고, 중산층가족과 고소득층은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약 2배 높았고, 저소득층은 비취업이 1.7배 높았다. 고용상태는 상용근로자가 3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영업자, 일용·임시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주 순으로 많았다. 중산층가족은 전체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고, 고소득층은 상용근로자가 64.7%로 중산층보다 상당히 높았으며, 저소득층은 상용직은 13.4%로 중산층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였고, 임시·일용직은 29.8%로 중산층보다 다소 높았다.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이 53.2%, 200~400만원 미만은 33.1%, 400만원 이상은 13.7%이었고 평균소득은 222.1만원으로 높은 편이었다. 중산층가족은 100~200만원 미만이 27.4%이었고, 200~300만원 미만은 42.6%, 300~400만원 미만은 30.0%이었으며 평균은 256.2만원으로 3분의 2 이상이 200~400만원에 분포하였다. 고소득층은 300~400만원 미만이 18.3%에 불과하였고, 400만원 이상이 81.6%로 대다수가 해당되었고, 평균은 524.1만원으로 중산층보다 2배 높았다. 저소득층은 100만원 미만이 65.4%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100~200만원 미만은 34.6%이었으며, 평균소득은 82.5만원으로 중산층가족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주택소유형태는 자가 57.5%로 과반수 정도이었고, 전·월세는 33.5%로 자가 상당히 높았다. 중산층가족은 자가 전·월세보다 약 2배 높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도 유사하였다.

〈표 4-4〉 분석대상자의 소득계층별 직업 및 경제적 특성

(단위: %, 명, 만원)

특성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χ^2
전체	40.7	45.6	13.6	100.0	
취업여부					
취업	37.6	61.5	70.7	53.0	115.894***
비취업	62.4	38.5	29.3	47.0	
고용상태					
자영업자	37.5	22.4	14.1	25.6	175.310***
고용주	1.0	3.1	5.9	3.0	
무급가족종사자	18.4	7.9	4.7	10.5	
상용근로자	13.4	45.8	64.7	39.2	
일용근로자	20.1	11.0	2.9	12.4	
임시근로자	9.7	9.8	7.6	9.4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5.4	-	-	27.1	2184.643***
100~200만원 미만	34.6	27.4	-	26.1	
200~300만원 미만	-	42.6	-	19.9	
300~400만원 미만	-	30.0	18.3	13.2	
400~500만원 미만	-	-	33.6	6.9	
500만원 이상	-	-	48.0	6.8	
평균	82.5	256.2	524.1	222.1	
주택소유형태					
자가	51.8	61.9	59.8	57.5	58.593***
전세	14.3	15.1	23.6	16.0	
전·월세	16.0	15.1	9.6	14.7	
월세	4.7	1.7	0.9	2.8	
기타	13.2	6.1	6.1	9.0	
계(수)	100.0 (683)	100.0 (766)	100.0 (229)	100.0 (1,678)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제2절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1.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가. 한국사회 유형에 대한 인식

현재 한국사회유형에 대한 인식은 모든 소득계층이 공통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는 인식이 34.9~4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라는 인식이 19.5~23.4%로 높았으며,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라는 인식은 12.7~13.7%로 많았고,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 사회라는 인식은 미미하였다.

중산층가족은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라는 인식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높았고, 저소득층은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는 인식이, 고소득층은 ‘가난한 사람이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라는 인식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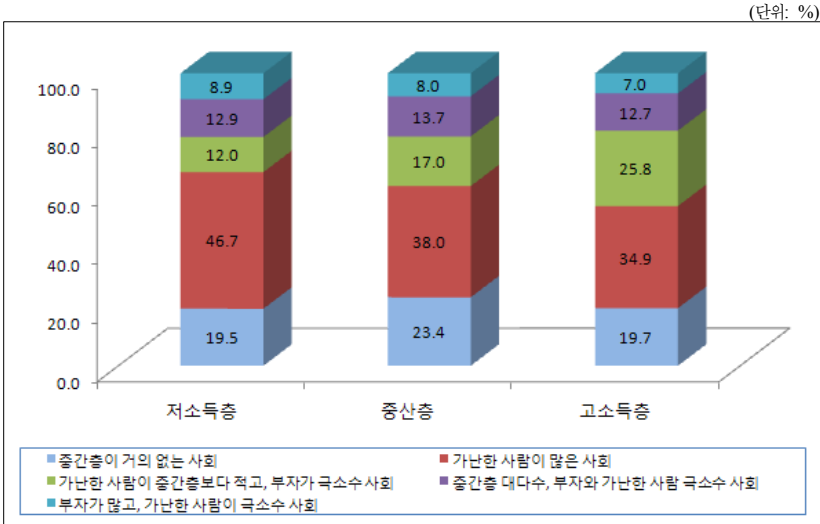
〈표 4-5〉 소득계층별 ‘한국사회유형’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χ^2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	19.5	23.4	19.7	21.3	33.886***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	46.7	38.0	34.9	41.1	
가난한 사람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	12.0	17.0	25.8	16.2	
중간층 대다수,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극소수인 사회	12.9	13.7	12.7	13.2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 사회	8.9	8.0	7.0	8.2	
계(수)	100.0 (683)	100.0 (766)	100.0 (229)	100.0 (1,678)	

주: * $p<.05$, ** $p<.01$, *** $p<.001$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4-1] 소득계층별 '한국사회유형'에 대한 인식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한국사회 유형에 대한 인식은 교육수준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나머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자와 가난한 사람보다 중간층이 많다는 의식이 높았다.

이외에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도농복합·농촌지역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 중간층의 거의 없는 사회,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많은 사회라는 인식이 높았고, 반대로 도농복합·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라는 인식과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라는 인식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는 인식이 높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 가난한 사람은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라는 인식과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극소수 사회라는 인식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는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

수인 사회라는 인식과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라는 인식이 타 연령층 보다 높게 나타났다. 30대는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와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라는 인식과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라는 인식이 타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연령층은 타 연령층에 비해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는 인식이 높았다.

〈표 4-6〉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한국사회유형'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특성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	중간층 대다수,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극소수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	계(수)	χ^2
전체	23.4	38.0	17.0	13.7	8.0	100.0(766)	
거주지역							
도시	23.9	38.1	17.0	13.5	7.5	100.0(628)	1.494
농촌	21.0	37.7	16.7	14.5	10.1	100.0(138)	
가구주의 성별							
남성	23.2	41.5	15.1	12.7	7.5	100.0(371)	4.574
여성	23.5	34.7	18.7	14.7	8.4	100.0(395)	
가구주의 연령							
20~29세	18.2	36.4	9.1	27.3	9.1	100.0 (11)	
30~39세	27.6	26.8	26.8	13.4	5.5	100.0(127)	
40~49세	22.4	38.2	12.3	18.4	8.8	100.0(228)	
50~64세	22.6	39.3	17.6	12.1	8.4	100.0(239)	
65세 이상	23.0	44.7	15.5	8.7	8.1	100.0(161)	
가구주의 결혼상태							
기혼	22.9	38.1	17.0	13.9	8.1	100.0(729)	
미혼	30.6	36.1	16.7	11.1	5.6	100.0(36)	
가구주의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0.3	41.3	17.4	10.5	10.5	100.0(276)	22.643**
고등학교	24.8	40.9	14.5	12.9	6.9	100.0(318)	
대학 이상	25.6	27.3	20.9	20.3	5.8	100.0(172)	
가구주의 취업여부							
취업	25.5	38.6	15.7	12.3	7.9	100.0(471)	5.360
비취업	20.0	36.9	19.0	15.9	8.1	100.0(295)	
가구형태							
단독	19.0	50.0	11.9	9.5	9.5	100.0(42)	
모부자	40.0	20.0	20.0	-	20.0	100.0(5)	
소년소녀가장	-	-	-	-	-	100.0(2)	
기타	23.5	37.4	17.2	14.0	7.8	100.0(719)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28.1	42.9	13.8	4.3	11.0	100.0(210)	32.285
200~300만원 미만	20.9	35.3	20.2	16.0	7.7	100.0(326)	***
300~400만원 미만	22.6	37.4	15.2	19.1	5.7	100.0(230)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01, *** p<0.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은 기혼보다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라는 인식이 높았으며, 그 외 한국사회유형은 모두 기혼이 미혼보다 높았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는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와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라는 인식이 비취업자보다 높았다. 가구형태별로는 단독가구와 기타 가구는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는 인식이, 그리고 모부자가구는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라는 인식이 다른 가구형태보다 높아 가구형태별 차이를 보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는 인식이 높았다.

미래 한국사회 지향 유형에 대한 인식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라는 인식이 61.6~7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 사회’라는 인식이 19.8~28.1%로 많았으며,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라는 인식은 7.3~7.6%로 미미하였다.

〈표 4-7〉 소득계층별 ‘미래 한국사회의 지향 유형’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χ^2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	1.2	0.5	0.9	0.8	19.618*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	1.8	0.9	1.3	1.3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	7.3	7.6	7.4	7.4	
중간층 대다수,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극소수	61.6	71.1	68.6	66.9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 사회	28.1	19.8	21.8	23.5	
계(수)	100.0 (683)	100.0 (766)	100.0 (229)	100.0 (1,678)	

주: * $p<.05$, ** $p<.01$, *** $p<.001$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미래 한국사회는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가 많은 사회’를 지향하는 의식이 높았으며, 중산층은 ‘중간층이 대다수’라는 인식이 다른 소득 계층보다 높았고, 저소득층은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 사회’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미래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은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라는 인식과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라는 인식이 높았다. 여성은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라는 인식이 더 높아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는 타 연령층 보다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라는 인식이 낮았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와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라는 인식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라는 인식이 높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라는 인식이 높았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는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라는 인식이 높았고, 비취업자는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라는 인식이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100~200만원은 타 소득계층에 비해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라는 인식이 높았고, 200~300만원 미만은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라는 인식이 높았으며, 미미하나 소득이 높을수록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높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라는 인식이 높았다.

〈표 4-8〉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미래 한국사회의 지향 유형'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특성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	가난한 사람이 중산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	중간층 대다수,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극소수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	계수
전체	0.5	0.9	7.6	71.1	19.8	100.0(766)
거주지역						
도시	0.6	0.8	6.5	72.6	19.4	100.0(628)
도농복합·농촌	-	1.4	12.3	64.5	21.7	100.0(138)
성별						
남성	0.8	0.5	10.0	72.2	16.4	100.0(371)
여성	0.3	1.3	5.3	70.1	23.0	100.0(395)
연령						
20~29세	-	18.2	18.2	36.4	27.3	100.0(11)
30~39세	0.8	-	4.7	71.7	22.8	100.0(127)
40~49세	0.9	0.9	11.4	71.1	15.8	100.0(228)
50~64세	0.4	0.8	6.3	73.2	19.2	100.0(239)
65세 이상	-	0.6	5.6	70.2	23.6	100.0(161)
결혼상태						
기혼	0.5	0.7	7.4	71.6	19.8	100.0(729)
미혼	-	5.6	11.1	61.1	22.2	100.0(3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0.7	8.7	67.0	23.6	100.0(276)
고등학교	0.9	0.9	6.9	72.3	18.9	100.0(318)
대학 이상	0.6	1.2	7.0	75.6	15.7	100.0(172)
가구형태						
단독	-	2.4	9.5	59.6	28.6	100.0(42)
모부자	-	-	-	80.0	20.0	100.0(5)
소년소녀가장	-	-	-	-	-	100.0(2)
기타	0.6	0.8	7.5	71.8	19.3	100.0(719)
취업여부						
취업	0.8	1.1	8.1	69.6	20.4	100.0(471)
비취업	-	0.7	6.8	73.6	19.0	100.0(295)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0.5	1.0	6.7	68.1	23.8	100.0(210)
200~300만원 미만	0.3	1.2	7.4	73.3	17.8	100.0(326)
300~400만원 미만	0.9	0.4	8.7	70.9	19.1	100.0(230)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X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나. 소득분배 및 정부책임에 관한 인식

1) 성장과 분배에 관한 인식

성장과 분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성장만이 중요하다는 성장의 분배보다 중요하다는 합친 비율은 각각 56.3%와 57.2%로 높았고, 저소득층은 분배가 성장보다 중요하다는 분배만이 중요하다는 합친 비율이 52.1%로 높아서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성장지향 의식이, 저소득층은 분배지향 의식이 높아서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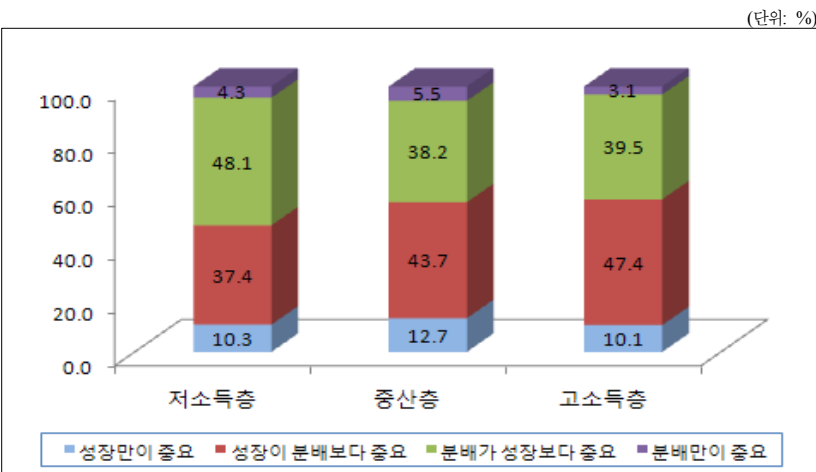
〈표 4-9〉 소득계층별 '성장과 분배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성장만이 중요	10.2	12.7	10.0	11.3
성장이 분배보다 중요	37.2	43.6	47.2	41.5
분배가 성장보다 중요	47.9	38.1	39.3	42.3
분배만이 중요	4.2	5.5	3.1	4.6
계(수)	100.0(683)	100.0(766)	100.0(229)	100.0(1,678)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x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4-2〕 소득계층별 '성장과 분배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4-10〉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성장과 분배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단위: %, 명)

특성	성장만이 중요	성장이 분배보다 중요	분배가 성장보다 중요	분배만이 중요	계(수)	χ^2
전체	12.7	43.7	38.2	5.5	100.0(765)	
거주지역						
도시	12.1	43.9	38.4	5.6	100.0(627)	1.005
도농복합·농촌	15.2	42.8	37.0	5.1	100.0(138)	
성별						
남성	13.8	42.4	37.0	6.8	100.0(370)	3.275
여성	11.6	44.8	39.2	4.3	100.0(395)	
연령						
20~29세	9.1	81.8	9.1	-	100.0(11)	
30~39세	5.5	44.1	44.9	5.5	100.0(127)	
40~49세	14.1	47.6	33.9	4.4	100.0(227)	
50~64세	12.1	42.7	38.1	7.1	100.0(239)	
65세 이상	17.4	36.6	41.0	5.0	100.0(161)	
결혼상태						
기혼	12.8	42.9	38.7	5.6	100.0(728)	
미혼	11.1	58.3	27.8	2.8	100.0(3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4.1	37.7	41.7	6.5	100.0(797)	8.598
고등학교	13.2	45.7	35.6	5.4	100.0(531)	
대학 이상	9.3	49.4	37.2	4.1	100.0(350)	
가구형태						
단독	7.1	66.7	26.2	-	100.0(42)	
모부자	20.0	40.0	40.0	-	100.0(5)	
소년소녀가장	-	-	-	-	-	
기타	13.0	42.3	38.9	5.8	100.0(718)	
취업여부						
취업	13.2	42.3	38.5	6.0	100.0(470)	1.260
비취업	11.9	45.8	37.6	4.7	100.0(295)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16.2	44.8	36.2	2.9	100.0(210)	4.495*
200~300만원 미만	11.1	40.3	40.6	8.0	100.0(325)	
300~400만원 미만	11.7	47.4	36.5	4.3	100.0(230)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3) 셀의 빈도가 5 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성장과 분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성장만이 중요하다와 성장이 분배보다 중요하다는 합친 성장지향 의식은 성별로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 연령층을 제외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상이 중학교 이하보다 높았으며, 소득별로는 일정하지 않았다. 반면, 분배가 성장보다 중요하다는 분배만이 중요하다는 합친 분배지향 의식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였으며 연령별로는 30~39세 중년층이 가장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가 높았으며, 소득별로는 일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은 중산층가족의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2) 소득분배 인식

우리나라 소득과 재산의 평등정도에 대해 모든 소득계층에서 평등보다 불평등하다는 의식이 9~12배 높았다. 우리나라 소득과 재산이 매우 평등, 평등, 대체로 평등을 합친 평등하다는 인식은 중산층가족이 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저소득층이 7.6%, 고소득층이 6.5% 순으로 높았다.

〈표 4-11〉 소득계층별 ‘우리나라 소득/재산 평등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점)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chi^2(F값)$
매우 평등	1.2	0.9	0.4	1.0	17.723
평등	2.3	1.6	0.4	1.7	
대체로 평등	4.1	5.7	5.7	5.1	
보통	15.2	15.1	13.5	15.0	
대체로 불평등	24.0	30.0	30.1	27.6	
불평등	29.4	23.5	27.5	26.5	
매우 불평등	23.7	23.1	22.3	23.2	
계(수)	100.0(683)	100.0(766)	100.0(229)	100.0(1,678)	
평균	5.42	5.35	5.44	5.39	(0.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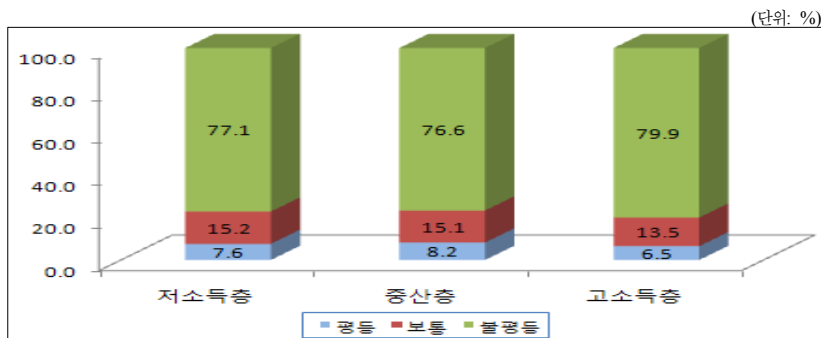
주: 7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평등정도가 높음을 말함.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소득과 재산의 평등이 보통이라는 인식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비슷하였으며, 고소득층은 다소 낮았다. 대체로 불평등, 불평등, 매우 불평등

을 합친 불평등의식은 고소득층이 79.9%, 저소득층 77.1%, 중산층이 76.6%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의 평등정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은 중산층가족이 가장 높았고, 고소득층이 가장 낮았다.

[그림 4-3] 소득계층별 '우리나라 소득/재산 평등정도' 에 대한 인식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 가족의 특성별로 소득과 재산의 평등정도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과 재산이 평등하다는 인식은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고, 연령별로는 20~29세 연령층과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등의식이 높았고, 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층에서 높은 편이었다. 소득과 재산이 불평등하다는 의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상당히 높았으며, 30~40대 연령층과 50~64세 연령층에서 높았고,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의 저학력소지자인 경우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중산층가족의 성, 연령 및 교육수준, 소득수준별 평균점수는 7점 만점 중에서 4.5점~5.5점으로 보통에서 대체로 불평등 사이에 분포하였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의 평등정도에 대한 인식은 중산층가족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표 4-12〉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우리나라 소득/재산 평등정도' 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평등	평등	대체로 평등	보통	대체로 불평등	불평등	매우 불평등	계(수)	χ^2	평균	F(t)값
전체	0.9	1.6	5.7	15.1	30.0	23.5	23.1	100.0(766)			
거주지역											
도시	1.1	1.4	5.4	15.4	30.9	23.1	22.6	100.0(628)	4.295	4.1	(0.516)
도농복합·농촌	-	2.2	7.2	13.8	26.1	25.4	25.4	100.0(138)		4.1	
성별											
남성	1.1	1.1	5.4	12.9	29.4	22.9	27.2	100.0(371)	9.258	5.5	(2.339)
여성	0.8	2.0	6.1	17.2	30.6	24.1	19.2	100.0(395)		5.2	
연령											
20~29세	-	-	9.1	63.6	9.1	9.1	9.1	100.0(11)		4.5	1.747
30~39세	0.8	0.8	6.3	13.4	37.0	18.9	22.8	100.0(127)		5.3	
40~49세	0.9	1.3	4.8	18.0	29.8	20.2	25.0	100.0(228)		5.4	
50~64세	1.3	1.7	5.0	11.7	28.5	27.6	24.3	100.0(239)		5.4	
65세 이상	0.6	2.5	7.5	14.3	28.6	26.7	19.9	100.0(161)		5.3	
결혼상태											
기혼	1.0	1.5	5.8	14.3	30.0	24.6	22.9	100.0(729)		5.4	(1.250)
미혼	-	2.8	5.6	30.6	30.6	2.8	27.8	100.0(36)		5.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4	1.8	5.1	14.1	30.4	23.9	24.3	100.0(276)		5.4	1.981
고등학교	0.9	1.3	6.3	16.0	25.8	24.8	24.8	100.0(318)		5.4	
대학 이상	1.7	1.7	5.8	15.1	37.2	20.3	18.0	100.0(172)		5.2	
취업여부											
취업	0.4	1.3	5.5	13.4	29.5	24.8	25.1	100.0(471)		5.5	(2.763)
비취업	1.7	2.0	6.1	18.0	30.8	21.4	20.0	100.0(295)		5.2	
가구형태											
단독	-	2.4	9.5	16.7	19.0	16.7	35.7	100.0(42)		5.5	1.799
모부자	-	-	-	-	-	60.0	40.0	100.0(5)		6.4	
소년소녀가장	-	-	-	-	-	-	-	-		-	
기타	1.0	1.5	5.6	15.2	30.9	23.6	22.3	100.0(719)		5.3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0.5	1.9	8.6	15.7	21.9	25.7	25.7	100.0(210)		5.4	1.301
200~300만원 미만	0.3	1.2	4.9	14.1	31.9	24.8	22.7	100.0(326)		5.4	
300~400만원 미만	2.2	1.7	4.3	16.1	34.8	19.6	21.3	100.0(230)		5.2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7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평등정도가 높음을 말함.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다. 소득격차 감소에 대한 정부책임

소득격차 감소에 대한 정부책임의 동의정도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이 각각 73.0%와 72.6%로 비슷하였고, 저소득층은 69.9%로 다소 낮았으며, 반대의견은 저소득층이 1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산층이

9.0%, 고소득층이 7.5%로 나타나서 소득격차 감소가 정부책임이라는 인식은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높았고, 정부책임이 아니라는 인식은 저소득층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3〉 소득계층별 '소득격차 감소에 대한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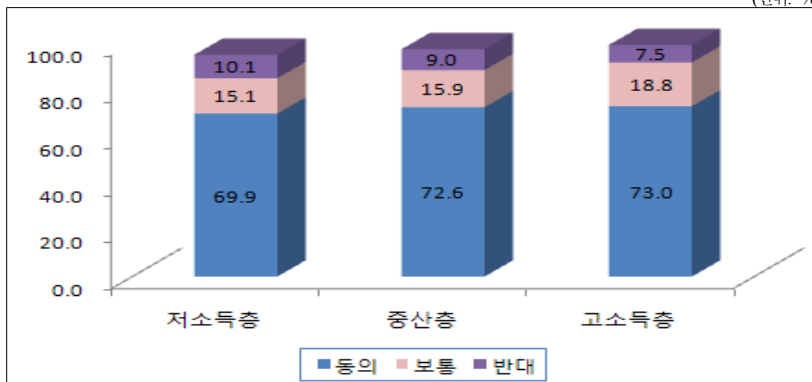
(단위: %, 명, 점)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chi^2(F값)$
매우 동의	26.1	29.2	32.8	28.4	19.769
동의	43.8	43.4	40.2	43.1	
동의/반대도 하지 않음	15.1	15.9	18.8	16.0	
반대	9.1	7.7	6.6	8.1	
매우 반대	1.0	1.3	0.9	1.1	
모름	5.0	2.5	0.9	3.3	
계(수)	100.0(683)	100.0(766)	100.0(229)	100.0(1,678)	
평균	2.3	2.2	2.1	2.2	(4.959**)

주: 1) * $p<.05$, ** $p<.01$, *** $p<.001$; 2) 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반대정도가 높음을 말함.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4-4〕 소득계층별 '소득격차 감소에 대한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도

(단위: %)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 가족의 특성별 소득격차 감소에 대한 정부책임의 동의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격차 감소에 대한 정부책임에 동의하는 비율은 거주지역별로는 농어촌지역이 다소 높았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30~39세와 50~64세 연령층이 높았고,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하 학

력소지자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소득격차 감소에 대한 정부책임에 반대하는 비율은 도시지역 거주자, 남성과 65세 이상, 대학 이상 학력소지자, 그리고 가구소득수준이 200~300만원 미만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14〉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소득격차 감소에 대한 정부책임'에 대한 동의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동의	동의	동의도 반대로 하지 않음	반대	매우 반대	모름	계(수)	χ^2	평균	F(값)
전체	29.2	43.4	15.9	7.7	1.3	2.5	100.0(765)		2.2	
거주지역										
도시	28.9	43.5	15.8	8.0	1.4	2.4	100.0(627)	1.029	2.2	(0.352)
도농복합·농촌	30.4	42.8	16.7	6.5	0.7	2.9	100.0(138)		2.1	
성별										
남성	31.4	40.0	16.8	8.9	1.6	1.4	100.0(370)	8.986	2.1	(-0.614)
여성	27.1	46.6	15.2	6.6	1.0	3.5	100.0(395)		2.2	
연령										
20~29세	27.3	45.5	9.1	-	-	18.2	100.0(11)		2.6	0.569
30~39세	25.2	48.0	16.5	5.5	2.4	2.4	100.0(127)		2.2	
40~49세	32.6	39.6	17.2	7.9	0.9	1.8	100.0(227)		2.1	
50~64세	29.3	46.0	13.0	7.1	0.8	3.8	100.0(239)		2.2	
65세 이상	27.3	41.0	18.6	10.6	1.9	0.6	100.0(161)		2.2	
결혼상태										
기혼	29.8	43.0	15.5	8.1	1.1	2.5	100.0(728)		2.2	(-1.099)
미혼	16.7	50.0	25.0	-	5.6	2.8	100.0(36)		2.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0.8	41.7	15.2	8.0	1.4	2.9	100.0(276)		2.2	0.660
고등학교	31.5	41.6	16.1	7.6	0.6	2.5	100.0(317)		2.1	
대학 이상	22.1	49.4	16.9	7.6	2.3	1.7	100.0(172)		2.2	
가구형태										
단독	38.1	26.2	16.7	9.5	4.8	4.8	100.0(42)		2.3	0.642
모부자	60.0	20.0	-	20.0	-	-	100.0(5)		1.8	
소년소녀가장	-	-	-	-	-	-	-		-	
기타	28.4	44.6	16.0	7.5	1.1	2.4	100.0(718)		2.2	
취업여부										
취업	29.6	42.8	16.8	7.7	1.3	1.9	100.0(470)	2.355	2.1	(-0.635)
비취업	28.5	44.4	14.6	7.8	1.4	3.4	100.0(295)		2.2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34.3	36.2	18.6	8.1	0.5	2.4	100.0(210)	19.537*	2.1	0.441
200~300만원 미만	28.8	42.9	15.0	15.0	2.8	2.8	100.0(326)		2.2	
300~400만원 미만	24.8	50.4	14.8	7.8	-	2.2	100.0(230)		2.1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반대정도가 높음을 말함.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평균점으로 보면 거주지역, 성별,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 등은 2.1~2.6점으로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동의에서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 사이에 분포하였다. 따라서 소득격차 감소에 대한 정부책임에 동의정도는 중산층가족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라. 향후 복지사회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가 미래에 어떠한 복지사회를 목표로 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세금부담이 높고,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로 방향이 선회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인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별로도 부유한 계층일수록 세금을 높이면서 복지를 확대해 가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세금부담을 높이면서 복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4-15〉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별 향후 복지사회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점)

구분	高세금 高복지	←		→	低세금 低복지	계수	χ^2	평균	F값
전체	36.1	29.7	27.5	5.2	1.6	100.0(12,020)		2.1	
소득계층									
저소득층	36.9	26.4	29.1	6.0	1.6	100.0(4,450)	80.333***	21	13.989***
중산층	34.9	30.5	27.9	5.1	1.7	100.0(5,816)		21	
고소득층	37.9	35.1	22.3	3.4	1.3	100.0(1,754)		20	
경제적 의식									
가난	35.6	27.0	29.3	6.4	1.8	100.0(4,927)	56.045***	21	11.371***
보통	36.3	31.4	26.4	4.4	1.5	100.0(6,856)		20	
부유	37.3	34.3	23.7	3.0	1.7	100.0(236)		20	

주: 1) 가구원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05, ** p<.01, *** p<.001; 3) 평균이 1에 가까울수록 ‘高세금, 高복지’ 선호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향후 복지사회에 대한 인식은 거주지역,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에서는 ‘高세금과 高복지’를 가장 선호하였다. 성별로는 남성가구주가, 연령대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교육수준별로는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이, 결혼상태별로는 미혼보다 기혼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높이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4-16〉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향후 복지사회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점)

구분	高세금 高복지	<		>	低세금 低복지	계(수)	χ^2	평균	F(값)
전체	34.9	30.5	27.9	5.1	1.7	100.0(5,816)		2.1	
거주지역									
도시	33.6	31.6	27.9	5.1	1.8	100.0(4,691)	22.873***	2.1	(2.740)
농·어촌	40.2	26.0	27.6	5.1	1.2	100.0(1,125)		2.0	
성별									
남성	35.5	31.6	25.7	5.2	2.0	100.0(2,732)	15.781**	2.1	(-1.132)
여성	34.2	29.6	29.8	5.0	1.4	100.0(3,084)		2.1	
연령									
20~29세	29.4	34.4	30.0	4.9	1.2	100.0(669)	48.433***	2.1	5.613***
30~39세	31.1	31.2	31.5	4.4	1.7	100.0(1,291)		2.1	
40~49세	34.9	30.7	27.1	5.1	2.1	100.0(1,321)		2.1	
50~64세	36.2	28.6	27.6	5.8	1.8	100.0(1,372)		2.1	
65세 이상	40.5	29.5	23.8	4.9	1.3	100.0(1,163)		2.0	
결혼상태									
기혼	36.2	29.2	27.6	5.3	1.7	100.0(4,741)	30.072***	2.1	(-2.009**)
미혼	28.8	36.3	29.0	4.3	1.6	100.0(1,072)		2.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5.7	28.1	28.6	6.1	1.5	100.0(1,812)	30.281***	2.1	6.054**
고등학교	33.5	29.8	29.3	5.2	2.2	100.0(2,096)		2.1	
대학 이상	35.5	33.6	25.5	4.0	1.3	100.0(1,908)		2.0	
취업여부									
취업	33.6	32.0	27.6	5.2	1.7	100.0(3,507)	11.031*	2.1	(1.106)
비취업	36.8	28.3	28.3	4.9	1.7	100.0(2,309)		2.1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40.5	27.8	25.0	6.0	0.7	100.0(551)	12.758	2.0	0.971
200~300만원 미만	35.4	31.0	26.3	5.2	2.1	100.0(1,012)		2.1	
300~400만원 미만	36.9	30.5	24.4	6.0	2.1	100.0(655)		2.1	
400~500만원 미만	36.6	33.5	22.1	5.3	2.5	100.0(358)		2.0	

주: 1) 가구원을 대상으로 분석함; 2) * p<.05, ** p<.01, *** p<.001; 3) 평균이 1에 가까울수록 ‘高세금, 高복지’를 선호함.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따라서 중산층가족은 전반적으로 세금부담을 늘리면서 복지를 확대해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의 목표로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는 2.0점~2.1점으로 ‘高세금과 高복지’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분포를 잘 반영하고 있다.

2. 중산층가족의 복지서비스 인지도

가. 소득계층별 복지서비스 인지도

현재 중산층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주로 저출산고령 정책에 편중되며, 이외에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 정책 등이 일부 포함된다. 저출산고령 정책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¹¹⁾, 육아휴직제도¹²⁾, 0~4세 영유아가구 무상보육¹³⁾, 기초노령연금제도¹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¹⁵⁾ 등이 해당된다. 보편적 정책으로는 위기청소년지원제도¹⁶⁾,

- 1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에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과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이 제공되며,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부인연령 만 44세 이하)에게 회당 180만원이 지급되고, 지원횟수도 4회로 확대되었으나, 4회차 지원은 100만원으로 제한되며,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은 동일 대상에게 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함.
- 12) 육아휴직제도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육아를 위한 휴직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시 동일 자녀에 대해 2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함.
- 13) 무상보육제도는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4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함.
- 14)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전체 노인의 70%에게 제공됨.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 기준으로 책정되며,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연금수준은 감액됨.
- 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이용 대상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인 경우임. 장기요양급여는 1~3등급의 장기요양을 인정받은 자에 한해 제공되며,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어 지급됨.
- 16)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학생 등록금 대출제도¹⁷⁾가 있으며, 가족특성별 지원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¹⁸⁾,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건강보험료 인하¹⁹⁾ 등이 해당된다.

이들 9개종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소득계층별로는 중산층가족은 35.6~90.0%로 대학생 등록금 대출제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제도, 육아휴직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무상보육 등은 높은 편이었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위기청소년지원제도,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건강보험료 인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 등은 낮은 편이었다. 고소득층의 복지서비스인지도는 47.5~90.1%로 복지서비스별 인지도는 중산층가족과 유사하였다. 저소득층은 24.4~89.0%로 중산층과 고소득층보다 복지서비스 인지도가 상당히 낮았으며, 복지서비스별 인지도는 타 소득계층에 비해 장애인활동지원지원제도가 무상보육보다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소득계층별 복지서비스 인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로는 중층의 복지서비스 인지도는 36.7~90.8%, 상층은 44.7~85.1% 그리고 하층은 28.0~83.6%로 소득계층과 비슷한 차이를 보였으며 서비스 유형별 인지도 또한 소득계층과 유

-
- 로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을 예방하고 보호·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학교에는 Wee 클래스, 지역교육청에는 Wee 센터, 시·도 교육청에는 Wee 스쿨이 설치되어 있어 3단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운영됨.
- 17) ‘든든학자금’은 취업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에 의해 운영되는데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대학생(소득 7분위 이내)에게 등록금 실소요액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며, 대출범위는 등록금 전액과 연간 200만원 이내의 생활비가 해당됨.
- 18)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 대상자는 활동지원 급여등급이 1~4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활동지원급여에는 신체활동 지원·가사활동 지원·이동 보조 등의 활동보조, 방문목욕차량 등을 이용한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있고, 돌봄 가족이 없는 경우 긴급활동지원이 제공됨.
- 19)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최저생계비와 최고재산액의 300% 미만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범위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월 80만원 이내),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월 18만원 이내), 월 30만원의 간병비 지급 등이 포함됨.

사하였다.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복지서비스 인지도는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복지서비스 인지도는 소득과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복지서비스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소득계층				주관적 사회적 지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χ^2	하	중	상	χ^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	24.4	35.6	47.5	19.442***	28.0	36.7	44.7	14.418**
육아휴직제도(배우자 포함)	53.5	75.3	80.2	36.915***	64.5	74.9	76.6	18.882***
0-4세 영유아기 무상보육	45.9	59.5	63.6	12.620**	49.7	56.0	68.1	9.236**
위탁청소년지원제도	27.9	47.4	57.4	31.442***	35.5	48.9	53.2	20.353***
대학생 등록금 대출제도	76.7	90.0	90.1	21.572***	83.6	90.8	85.1	17.087***
기초노령연금제도	89.0	77.5	77.8	10.927**	83.4	77.3	80.9	8.00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9.3	66.9	69.1	4.305	61.5	63.8	70.2	1.838***
장애인활동지원제도	48.8	50.7	51.2	0.234	49.0	54.0	66.0	6.990*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건강보험료 인하	34.3	42.2	49.4	7.818*	36.7	45.5	51.1	12.371**
(분석대상수)	(172)	(481)	(162)		(561)	(890)	(47)	

주: 1) 소득계층의 분석대상자는 815명, 주관적 사회적 지위 분석대상수는 1,498명임. 2) * p<.05, ** p<.01, ***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나.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복지서비스 인지도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9개종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4-18 참조).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서비스 인지도는 35.2~90.4%, 농·어촌은 38.2~89.1%로 지역 간에 비슷하였고, 서비스별 인지도는 두 지역 모두 대학생 등록금대출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육아휴직제도,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와 무상보육 등은 높았으나, 나머지는 저조하였다. 연령별 서비스 인지도는 20대 연령층은 18.2~96.1%로 편차가 컸

고, 30대, 40대 그리고 50~64세 연령층은 각각 43.8~85.9%, 42.1~90.9%, 그리고 34.2~91.9%로 타 연령층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고, 65세 이상 연령층은 20.5~88.6%로 타 연령층에 비해서 저조하였다. 서비스별 인지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대학생 등록금 대출제도가 높았고, 30대와 40대 연령층에서는 무상보육제도의 인지도가 높았으며,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육아휴직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등이 높아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결혼상태별로는 기혼자의 서비스 인지도는 39.0~87.9%, 미혼자는 23.9~97.2%로 기혼자보다 미혼자의 편차가 컸으며 서비스별 인지도는 공통적으로 대학생 등록금대출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 등은 높았고, 이외에 기혼자는 육아휴직제도,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그리고 무상보육 등이 높았고, 나머지는 낮았다. 미혼자는 나머지는 모두 저조한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 학력소지자는 34.8~89.9%, 고등학교 학력소지자 37.5~87.5%, 그리고 대학교 이상은 34.3~91.7%로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 인도가 높았다. 서비스별 인지도는 공통적으로 대학생 등록금대출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육아휴직제도,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등이 높았으며,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소지자는 무상보육도 높은 편이었다. 이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보다 연령별 정책 필요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의 서비스 인지도는 32.5~85.6%, 비취업자는 37.9~93.4%로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인지도가 높았다. 서비스별 인지도는 두 집단 모두 대학생 등록금 대출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육아휴직제도,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등이 높았고, 나머지는 저조한 편이었다.

전반적으로 9개종의 서비스 인지도는 중장년층과 고학력소지자, 비취업자인 경우 높은 편이었고, 거주지역과 결혼상태별로는 비슷하였다.

〈표 4-18〉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복지서비스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제도 ② 육아휴직제도 ③ 0~4세 영유아가구 무상보육 ④ 위기청소년지원제도 ⑤ 대학생 등록금대출제도					⑥ 기초노령연금제도 ⑦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⑧ 장애인활동지원제도 ⑨ 건강보험료본인부담인하 (중증질환·취기난치성질환)					(분석대상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35.6	75.3	59.5	47.4	90.0	77.5	66.9	50.7	42.2	(481)	
거주지역											
도시	35.2	75.4	59.4	46.7	90.4	76.1	66.2	50.5	40.6	(119)	
농·어촌	38.2	74.5	60.0	52.7	87.3	89.1	72.7	52.7	54.5	(362)	
χ ²	.188	.017	.008	.707	.522	4.753*	.939	.099	3.878*		
연령											
20~29세	18.2	55.8	36.4	46.8	96.1	55.8	41.6	39.0	20.8	(77)	
30~39세	46.1	78.9	68.0	48.4	85.9	71.9	63.3	46.1	43.8	(128)	
40~49세	42.1	83.5	72.7	56.2	90.9	84.3	78.5	56.2	55.4	(121)	
50~64세	34.2	80.2	55.0	44.1	91.9	87.4	77.5	59.5	43.2	(111)	
65세 이상	20.5	63.6	50.0	29.5	84.1	88.6	63.6	47.7	36.4	(44)	
χ ²	23.108***	25.521***	32.288***	9.923*	7.809	35.642***	36.300***	10.358*	23.881***		
결혼상태											
기혼	39.0	79.8	65.3	47.8	87.9	83.3	73.4	52.2	47.0	(372)	
미혼	23.9	59.6	39.4	45.9	97.2	57.8	45.0	45.9	25.7	(109)	
χ ²	8.417**	18.484***	23.410***	.132	8.194**	31.569***	30.797***	1.330	15.76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4.8	76.8	60.9	40.6	89.9	89.9	75.4	55.1	36.2	(69)	
고등학교	37.5	72.0	64.9	48.8	87.5	79.2	72.0	52.4	47.6	(168)	
대학 이상	34.3	76.9	55.0	47.9	91.7	72.7	60.7	47.9	39.7	(242)	
χ ²	.462	1.360	4.128	1.440	1.974	9.455**	8.351*	1.452	3.660		
취업여부											
취업	32.5	71.8	60.3	48.3	85.6	76.1	61.7	45.0	44.5	(209)	
비취업	37.9	77.9	58.8	46.7	93.4	78.7	71.0	55.1	40.4	(272)	
χ ²	1.466	2.417	.105	.127	7.874**	.459	4.553*	4.892*	.797		

주: * p<.05, ** p<.01, ***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서비스별 인지도는 공통적으로 대학생 등록금대출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육아휴직제도,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무상보육 등은 높았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제도, 위기청소년지원제도, 장애인활동제도,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건강보험료 인하 등은 낮은 편이었다.

제3절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및 변화

1. 복지서비스 이용 및 도움정도

가. 소득계층별 복지서비스 이용 및 도움정도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는 복지서비스의 이용과 그 결과인 도움정도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 중산층가족이 이용 가능한 9개종의 서비스영역에는 임신·출산서비스²⁰⁾, 영유아보육서비스²¹⁾, 아동청소년서비스²²⁾, 노인서비스²³⁾, 장애인서비스²⁴⁾, 공적연금²⁵⁾, 고용보험²⁶⁾, 산재보험²⁷⁾, 기타 서비스²⁸⁾ 등이 포함된다. 9개종의 서비스영역별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19 참조).

9개 서비스 영역의 이용률은 소득계층별로는 중산층가족은 1.0~50.5%로 서비스별로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소득공제 및 면세 등을 포함하는 기타 서비스 이용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영유아보육서비스, 고용보험, 공적연금, 임신·출산서비스 등이 높은 편이었으며, 아동청소년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서비스, 산재보험 등은 저조하였다. 고소득층의 서비스 이용률은 1.2~67.3%로 중산층보다 다소

-
- 20) 임신·출산관련 서비스에는 임신·출산진료비,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난임부부 지원, 신혼부부 주택지원 등이 포함됨.
 - 21) 영유아보육서비스에는 직장보육시설, 예방접종, 보육·교육비 지원, 양육수당, 돌봄서비스, 다자녀가정 보육지원 등이 포함됨.
 - 22) 아동청소년 서비스에는 드림스타트, CYS-net, Wee센터, 멘토지원, 아동학대 예방·보호 서비스,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보호서비스, 게임중독 예방치료 등이 포함됨.
 - 23) 노인서비스에는 무임승차권, 노인의치보철, 취업·창업지원, 퇴직연금, 기초노령연금, 농지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노인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 등이 포함됨.
 - 24) 장애인서비스에는 장애인연금, 활동보조지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교통관련지원, 통신비지원 등이 포함됨.
 - 25)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연금, 보훈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이 포함됨.
 - 26)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이 포함됨.
 - 27) 산재보험에는 장애급여, 유족급여, 요양급여, 후속급여, 간병급여 등이 포함됨.
 - 28) 기타 서비스에는 일자리, 소득공제, 면세 등이 포함됨.

이용도가 높았고, 임신·출산서비스 이용률은 중산층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중산층과 유사하였다.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률은 2.9~49.4%로 타 소득계층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며, 이용하는 서비스도 차이를 보였다. 노인서비스 이용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공적연금, 기타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등이 높은 편이었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계층별로 아동청소년서비스와 산재보험 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나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계층별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차이로 볼 때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주로 중장년층의 가구주로 구성되는데 반해, 저소득층은 노인가구가 다수일 것으로 짐작된다.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로는 중층의 서비스 이용률은 0.8~49.3%, 상층은 2.1~55.3%, 그리고 하층은 0.7~32.5%로 소득계층과 비슷한 차이를 보였다. 서비스유형별 이용 정도는 중층은 기타 서비스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영유아보육서비스, 고용보험, 공적연금, 노인서비스 등이 높았으나 나머지는 낮았다. 상층은 기타 서비스 이용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노인서비스, 공적연금, 고용보험, 장애인 및 영유아서비스 등이 높은 편으로 중층과는 차이를 보였다. 하층은 중층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로 노인 및 장애인서비스, 공적연금, 산재보험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수준은 소득과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용하는 서비스유형은 가구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복지서비스 이용률 및 도움정도

(단위: %, 점)

구분	소득계층				주관적 사회적 지위				전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chi^2(F값)$	하	중	상	$\chi^2(F값)$	
임신·출산서비스									
이용률	2.9	10.4	3.7	14.433**	5.5	7.8	6.4	2.684	6.9
도움정도	2.80	2.98	3.00	(.206)	3.10	3.00	3.00	(.292)	3.03
영유아보육서비스									
이용률	5.2	18.7	6.8	27.504***	11.1	15.1	14.9	4.785	13.6
도움정도	3.22	3.16	2.82	(1.951)	3.08	3.10	3.14	(.053)	3.10
아동청소년서비스									
이용률	0.6	1.0	0.6		0.7	1.0	-		0.9
도움정도	4.00	3.40	4.00	(.321)	3.75	3.33	-	(1.113)	3.46
노인서비스									
이용률	49.4	7.9	5.6	177.769***	27.8	10.7	10.6	72.716***	17.1
도움정도	2.92	3.05	3.00	(.829)	3.04	3.03	3.00	(.023)	3.04
장애인서비스									
이용률	14.5	6.4	6.8	11.538**	11.2	5.5	6.4	16.023***	7.7
도움정도	3.08	2.71	3.00	(2.027)	2.79	3.04	2.33	(2.782)	2.89
공적연금									
이용률	27.3	13.1	12.3	21.091***	18.7	12.1	12.8	12.076**	14.6
도움정도	2.87	3.33	3.55	(9.403***)	3.07	3.31	3.50	(3.712*)	3.20
고용보험									
이용률	7.0	16.2	17.9	10.440**	13.4	14.5	10.6	.807	14.0
도움정도	3.08	3.28	3.21	(.910)	3.27	3.22	3.00	(.635)	3.23
산재보험									
이용률	2.3	1.2	1.2		2.7	0.8	2.1	8.220*	1.5
도움정도	2.75	2.83	4.00	(1.135)	2.73	3.43	3.00	(2.168)	2.96
기타서비스									
이용률	15.7	50.5	67.3	96.851***	32.5	49.3	55.3	42.290***	43.2
도움정도	2.85	2.67	2.79	(2.424)	2.78	2.76	2.77	(.050)	2.77

주: 1) 소득계층별 복지서비스 이용여부의 분석대상수는 815명, 주관적 사회적 지위의 분석대상수는 1,498명이고 소득계층별 도움정도의 분석대상수는 61명, 주관적 사회적 지위의 분석대상수는 103명임; 2) * p<.05, ** p<.01, *** p<.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도움정도는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9개 서비스 영역의 도움정도를 소득계층별로 보면 중산층가족은 2.67~3.40점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도움이 안된다는 도움의 된다는 사이에

분포하였다. 아동청소년서비스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공적연금, 고용보험, 영유아보육서비스, 노인서비스가 높은 편이었다. 이외에 임신·출산서비스, 산재보험, 장애인서비스 그리고 기타 서비스 등은 도움정도가 낮았다. 고소득층의 서비스 도움정도는 2.79~4.00점으로 대체로 중산층가족과 유사하였으나 임신·출산서비스, 장애인서비스, 산재보험, 기타 서비스 등은 중산층가족보다 도움정도가 높았다. 저소득층은 2.75~4.00점으로 아동청소년서비스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영유아보육서비스, 장애인서비스, 고용보험, 노인서비스 등이 높은 편이었으나 나머지는 낮아서 타 소득계층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주관적 사회적 지위는 중층은 2.76~3.43점, 상층은 2.33~3.50점, 그리고 하층은 2.73~3.75점으로 중층은 중산층가족과 비슷하였으나 상층과 하층은 소득계층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서비스 유형별 도움정도도 소득계층과 다른 경향을 보였다. 중층은 산재보험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서비스, 공적연금과 고용보험, 영유아보육서비스, 그리고 장애인 및 노인서비스 등이 높은 편이었으며, 기타 서비스는 낮아서 중산층가족보다 서비스 유형별 도움정도가 대체로 높았다. 상층은 공적연금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영유아보육서비스, 임신·출산서비스, 노인서비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높았고, 나머지는 낮아서 고소득층보다 서비스 유형별 도움정도가 낮았다. 하층은 아동청소년서비스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고용보험, 임신·출산서비스, 영유아보육서비스, 공적연금, 노인서비스 등이 높았고, 나머지는 낮아서 저소득층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복지서비스 도움수준은 고소득층과 상층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일정하지는 않았으며 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은 경우 도움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고소득층과 중산층은 기타 서비스 이용이 높았으나 서비스가 도움이 된다고 체감하는 수준이 낮았다. 이는 일자리,

소득공제, 면세 관련하여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복지서비스 이용 및 도움정도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9개 서비스 영역의 이용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1.2~50.5%, 농·어촌은 1.8~50.9%로 농·어촌지역이 도시보다 이용률이 높았고, 지역 간에 편차도 컸다. 서비스별 이용률은 두 지역 모두 기타 서비스와 영유아보육서비스가 높았고, 이외에 도시지역은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이 높은 편이었고, 농·어촌은 공적연금, 노인서비스 그리고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고용보험 등이 높았으며, 나머지는 저조하였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연령층에서 서비스 이용률이 각각 1.3~51.9%, 1.6~66.4% 그리고 0.8~57.0%로 높은 편이었으며, 50대 연령층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서비스별 이용률은 20대~40대 연령층까지 일자리, 소득공제 및 면세를 포함하는 기타 서비스의 이용이 높았고, 30대와 40대 연령층에서는 영유아보육서비스와 고용보험이 높았고, 이외에 30대 연령층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이용도 높았다. 그리고 50세 이상은 노인서비스와 공적연금의 이용이 높은 편이었다.

결혼상태별로는 기혼자의 서비스 이용률은 1.1~49.7%이었고, 미혼자는 0.9~53.2%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서비스별 이용도는 공통적으로 기타 서비스와 고용보험이 높은 편이었고, 이외에 기혼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영유아보육서비스 그리고 공적연금도 높은 편이었으나 미혼자는 저조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는 1.4~34.8%, 고등학교 0.6~47.6%, 그리고 대학 이상은 1.2~59.5%로 서비스 이용률은 편차를 보였으며 서비스 유형별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표 4-20〉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복지서비스 이용수준

(단위: %, 명)

구분	①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② 영유아보육서비스 ③ 아동청소년서비스 ④ 노인서비스 ⑤ 장애인서비스					⑥ 공적연금 ⑦ 고용보험 ⑧ 산재보험 ⑨ 기타					(분석대상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10.4	18.7	1.0	7.9	6.4	13.1	16.2	1.2	50.5	(481)	
거주지역											
도시	9.2	17.6	1.2	6.1	5.4	11.5	16.2	1.2	50.5	(426)	
농·어촌	20.0	27.3	-	21.8	14.5	25.5	16.4	1.8	50.9	(55)	
χ ²	6.151*	2.993				8.331**	.001		.004		
연령											
20~29세	3.9	7.8	1.3	-	3.9	1.3	7.8	1.3	51.9	(77)	
30~39세	25.0	39.8	1.6	4.7	4.7	6.3	25.0	0.8	66.4	(128)	
40~49세	7.4	22.3	0.8	6.6	7.4	4.1	19.8	0.8	57.0	(121)	
50~64세	2.7	3.6	0.9	10.8	7.2	18.0	14.4	2.7	35.1	(111)	
65세 이상	6.8	4.5	-	27.3	11.4	65.9	-	-	22.7	(44)	
χ ²	41.596***	67.112***		32.684***		133.412***	21.238***		39.141***		
결혼상태											
기혼	13.2	22.3	1.1	9.4	6.5	14.8	17.7	1.3	49.7	(372)	
미혼	0.9	6.4	0.9	2.8	6.4	7.3	11.0	0.9	53.2	(109)	
χ ²	13.591***	13.994***		5.133*	.000	4.106*	2.813		.40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8	8.7	-	21.7	13.0	34.8	7.2	1.4	26.1	(69)	
고등학교	11.3	18.5	1.2	7.1	6.0	11.3	17.9	0.6	47.6	(168)	
대학 이상	11.2	21.5	1.2	4.5	4.5	8.3	17.4	1.7	59.5	(242)	
χ ²	1.860	5.810		21.953***	6.647*	33.824***	4.676		24.858***		
취업여부											
취업	8.6	17.7	1.0	9.6	7.2	15.8	15.3	1.0	42.6	(209)	
비취업	11.8	19.5	1.1	6.6	5.9	11.0	16.9	1.5	56.6	(272)	
χ ²	1.261	.247		1.415	.329	2.353	.223		9.312**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중학교 이하는 공적연금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기타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서비스 이용이 높았고 나머지는 미미하였다.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은 공통적으로 기타 서비스 이용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영유아보육서비스, 고용보험, 그리고 임신·출산서비스 이용이 높은 편이었으며 이외에 고등학교는 공적연금 이용도 다소 높았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의 서비스 이용률은 1.0~42.6%이었고, 비취업은 1.1~56.6%로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다소 높았다. 공통적으로 영유아보육서비스, 공적연금, 고용보험, 기타 서비스 이용이 높았고, 이외에 비취업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도 높았으나, 나머지는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9개 서비스 이용수준은 전반적으로 영유아보육서비스, 공적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기타 서비스 이용이 높았으나, 가구주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이용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이용한 서비스의 도움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2.60~3.40점, 농·어촌은 2.50~4.00점으로 서비스 도움정도는 서비스 유형별로 편차를 보였다. 두 지역 모두 영유아보육서비스, 노인서비스,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등은 도움정도가 높았으며, 이외에 도시지역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및 아동청소년서비스가 높았고, 농어촌은 산재보험이 높았으나 나머지는 낮았다. 연령별로는 일정하지 않았으나 40대와 50대 연령층이 각각 2.65~4.00점과 2.38~4.00점으로 타 연령층에 비해 도움정도가 높았다. 서비스 유형별 도움정도는 영유아보육서비스, 노인서비스,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은 전 연령층에서 도움정도가 높았으며, 이외에 20대는 임신·출산 관련서비스, 아동청소년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등에서 높은 편이었다. 40대와 50대는 아동청소년서비스와 산재보험에서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기혼자의 서비스 도움정도는 2.58~3.31점, 미혼자는

2.00~4.00점으로 서비스 유형별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공통적으로 영유아보육서비스, 아동청소년서비스, 노인서비스,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등이 높았으며, 이외에 기혼은 산재보험이 높았고, 미혼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등이 높았다.

〈표 4-21〉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복지서비스 도움정도

(단위: 점, 명)

구분	①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② 영유아보육서비스 ③ 아동청소년서비스 ④ 노인서비스 ⑤ 장애인서비스 ⑥ 공적연금 ⑦ 고용보험 ⑧ 산재보험 ⑨ 기타									(분산대상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3.03	3.10	3.46	3.04	2.89	3.20	3.23	2.96	2.77	(481)
거주지역										
도시	3.00	3.15	3.40	3.00	2.78	3.27	3.26	2.60	2.68	(215)
농·어촌	2.91	3.20	-	3.17	2.50	3.57	3.44	4.00	2.57	(28)
t값	.513	-.336		-1.035	.876	-1.646	-1.022	-1.429	.909	
연령										
20~29세	3.33	3.00	4.00	-	3.33	3.00	3.17	2.00	2.72	(40)
30~39세	2.97	3.14	2.50	3.17	2.83	3.75	3.28	2.00	2.65	(85)
40~49세	3.00	3.26	4.00	3.00	2.67	3.20	3.21	4.00	2.65	(69)
50~64세	3.00	3.00	4.00	3.08	2.38	3.45	3.44	3.00	2.62	(39)
65세 이상	2.67	3.00	-	3.00	2.80	3.17	-	-	2.90	(10)
F값	.620	.467	1.800	.212	.889	1.771	.767	.944	.594	
결혼상태										
기혼	2.96	3.14	3.25	3.06	2.58	3.31	3.29	3.00	2.64	(185)
미혼	4.00	3.29	4.00	3.00	3.14	3.50	3.25	2.00	2.74	(58)
t값	-2.068*	-.639	-.701	.203	-1.717	-.809	.237	.913	-1.10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75	3.00	-	3.07	2.56	3.21	3.20	2.00	2.72	(18)
고등학교	3.00	3.13	3.00	3.00	2.40	3.32	3.27	4.00	2.57	(80)
대학 이상	3.00	3.19	3.67	3.09	3.00	3.50	3.29	2.75	2.71	(144)
F값	.424	.370	.600	.117	1.888	1.218	.067	1.136	1.409	
취업여부										
취업	2.94	3.08	3.50	3.00	2.60	3.30	3.34	3.00	2.75	(89)
비취업	3.00	3.21	3.33	3.11	2.81	3.37	3.24	2.75	2.62	(154)
t값	-.363	-1.057	.178	-.736	-.750	-.403	.895	.265	1.740	

주: 1) * p<.05, ** p<.01, *** p<.001; 2) 도움정도는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 학력소지자는 2.00~3.21점, 고등학교 2.40~4.00점 그리고 대학교 이하는 2.71~3.67점으로 중학교 이하보다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이 도움정도가 높았다. 영유아보육서비스, 아동청소년서비스,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움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나머지는 일정하지 않았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의 서비스 도움정도는 2.60~3.50점, 비취업자는 2.62~3.37점으로 서비스 유형별로 편차를 보였다. 공통적으로 영유아보육서비스, 아동청소년서비스, 노인서비스,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등은 서비스 도움정도가 높았으며, 이외에 비취업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도 높은 편이었다.

전반적으로 9개 서비스의 도움정도는 영유아보육서비스, 아동청소년서비스, 노인서비스, 공적연금, 고용보험 등이 높았는데 아동청소년 및 노인서비스는 이용대비 도움정도가 높은 편이었고, 기타 서비스 이용은 이용대비 도움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다. 중산층가족의 복지서비스 장애 요인

복지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소득계층별로는 공통적으로 서비스 지원수준의 미흡이 56.7~66.7%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저소득층이 타 소득계층에 비해 가장 높았다. 다음은 복지서비스 정보부족이 17.9~20.0%로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비율이 높았고, 이외에 고소득층은 서비스의 질 부족과 서비스의 신청 및 절차 등도 일부 지적하였다.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로 복지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공통적으로 서비스 지원수준의 미흡이 61.7~7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복지서비스 정보부족이 9.7~25.0%로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4-22〉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복지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원 수준의 미흡	서비스의 질 부족	이용하기 어려움	신청 및 선정 절차의 까다로움	복지 서비스 정보부족	기타	계(수)
전체	62.4	4.7	7.1	5.9	18.8	1.2	100.0(283)
소득계층							
저소득층	66.7	2.6	7.7	2.6	17.9	2.6	100.0(39)
중산층	62.4	4.0	7.9	5.9	18.8	1.0	100.0(101)
고소득층	56.7	10.0	3.3	10.0	20.0	-	100.0(30)
주관적 사회적 지위							
상	75.0	-	-	-	25.0	-	100.0(8)
중	61.7	8.0	4.9	5.6	16.7	3.1	100.0(162)
하	67.3	6.2	8.8	5.3	9.7	2.7	100.0(113)

주: 1) 산재보험을 이용한 적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복지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모두 지원수준의 미흡과 복지서비스 정보부족 등을 높은 비율로 지적되었다. 특히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 보다 복지서비스 정보부족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으며,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 보다 지원수준의 미흡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보다 지원수준의 미흡과 복지서비스 정보부족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은 남성 보다 서비스의 질 부족과 신청 및 선정절차의 부족 등을 지적한 비율이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는 타 연령층보다 복지서비스의 정보부족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65세 이상은 타 연령층에 비해 지원수준의 미흡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결혼상태별로는 기혼은 지원수준의 미흡을, 미혼은 복지서비스 정보부족을 복지서비스가 도움이 안되는 이유로 더 많이 지적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 이상은 고등학교 이하보다 지원수준의 미흡을 지적한 비율이 더 높았다. 취업여부, 가구형태, 가구원수 및 소득수준별로 모두 지원수준의 미흡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부가구, 2인가구, 비취업자, 300~4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에서 높은 비율이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복지서비스 정보부족은 1인 가구와 취업자, 200~300만원 소득수준에서 높았다.

〈표 4-23〉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복지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명)

특성	지원수준의 미흡	서비스의 질 부족	이용하기 어려움	신청 및 선정 절차의 까다로움	복지 서비스 정보 부족	기타	계(수)
전체	62.4	4.0	7.9	5.9	18.8	1.0	100.0(101)
거주지역							
도시	57.6	4.7	9.4	7.1	21.2	-	100.0(85)
농·어촌	87.5	-	-	-	6.3	6.3	100.0(16)
성별							
남성	63.6	2.3	9.1	2.3	20.5	2.3	100.0(44)
여성	61.4	5.3	7.0	8.8	17.5	-	100.0(57)
연령							
20~29세	50.0	-	-	20.0	30.0	-	100.0(10)
30~39세	71.8	5.1	15.4	-	7.7	-	100.0(39)
40~49세	55.6	3.7	-	11.1	29.6	-	100.0(27)
50~64세	52.9	5.9	11.8	5.9	17.6	5.9	100.0(17)
65세 이상	75.0	-	-	-	25.0	-	100.0(8)
결혼상태							
기혼	62.8	4.7	8.1	5.8	17.4	1.2	100.0(86)
미혼	60.0	-	6.7	6.7	26.7	-	100.0(1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3.6	9.1	9.1	-	18.2	-	100.0(11)
고등학교	56.4	5.1	5.1	10.3	23.1	-	100.0(39)
대학 이상	66.7	2.0	9.8	3.9	15.7	2.0	100.0(51)
취업여부							
취업	57.9	5.3	5.3	7.9	21.1	2.6	100.0(38)
비취업	65.1	3.2	9.5	4.8	17.5	-	100.0(63)
가구형태							
1인 가구	50.0	-	25.0	-	25.0	-	100.0(4)
부부가구	75.0	8.3	-	8.3	8.3	-	100.0(12)
부부+자녀	62.5	2.8	8.3	6.9	19.4	-	100.0(72)
기타가구	53.8	7.7	7.7	-	23.1	7.7	100.0(13)
가구원수							
1인	50.0	-	25.0	-	25.0	-	100.0(4)
2인	76.9	7.7	-	7.7	7.7	-	100.0(13)
3인 이상	60.7	3.6	8.3	6.0	20.2	1.2	100.0(84)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70.0	10.0	10.0	-	10.0	-	100.0(10)
100~200만원 미만	60.0	4.6	6.2	6.2	21.5	1.5	100.0(65)
200~300만원 미만	65.4	-	11.5	7.7	15.4	-	100.0(26)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2.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변화

가. 소득계층별 복지체감도 변화

2007년도 중산층가족의 9개 영역 즉 의료, 노인, 장애인, 보육, 빈곤, 실업, 성평등, 주택, 교육에 대한 복지체감도는 2.9~3.8점으로 고소득층의 3.0~3.8점과는 유사하였고, 저소득층의 2.6~3.6점에 비해서는 낮았다. 영역별로는 중산층가족은 의료서비스와 성평등 수준 향상 영역에서는 복지체감도가 높은 편이었고, 빈곤 예방 및 감소와 실업에 대한 대응 영역에서는 복지체감도가 낮았다. 고소득층은 중산층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저소득층은 의료서비스와 성평등 수준 향상외에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보육서비스 등에서 복지체감도가 높았다.

〈표 4-24〉 소득계층별 중산층가족의 복지서비스 체감도: 2007년도

(단위: 점, 명)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F값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2.6	2.9	3.0	2.8	33.685***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	2.9	3.2	3.3	3.1	36.479***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	2.9	3.4	3.4	3.2	54.749***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 제공	2.9	3.3	3.4	3.1	49.435***
빈곤 예방 및 감소	3.2	3.5	3.6	3.4	27.562***
실업에 대한 대응	3.6	3.8	3.8	3.7	9.091***
성평등 수준 향상	2.9	3.0	3.0	2.9	6.097**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 거주	3.1	3.3	3.3	3.2	11.037***
인재 육성 위한 학교교육	3.1	3.3	3.5	3.2	23.455***
(분석대상수)	(683)	(766)	(229)	(1,678)	

주: 1) * p<.05, ** p<.01, *** p<.001; 2) 복지서비스 체감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체감도가 높음.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결과

<표 4-25>는 2011년 5점 만점 기준의 소득계층별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보여준다. 중산층가족은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

(3.4점)과 빈곤예방 및 감소(3.7점),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교육(3.5점)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 보다 체감도가 낮았다. 그 외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유지(3.3점), 실업에 대한 대응(3.8점), 성평등 수준 향상(2.9점)은 저소득층 보다도 체감도가 낮았다.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로는 중층은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 제공(3.0점)은 상층이나 하층 보다 체감도가 낮았으며,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거주(3.2점)는 상층보다 체감도가 낮았다. 상층은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과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 제공이 중층이나 하층보다 체감도가 낮았으며, 하층은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거주는 상층보다 체감도가 낮았고,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교육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은 중층과 상층 보다 체감도가 낮았다.

2011년도 중산층가족의 9개 영역 즉 의료, 노인, 장애인, 보육, 빈곤, 실업, 성평등, 주택, 교육에 대한 복지체감도는 2.9~3.8점으로 고소득층과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저소득층의 2.9~3.5점보다는 다소 낮았다. 이는 4년 전의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는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가족은 의료서비스, 성평등 향상 및 다문화 영역에서 복지체감도가 높은 편이었고, 빈곤예방·감소와 실업대응 영역에서는 복지체감도가 낮았다. 고소득층은 중산층과 유사하였으며, 저소득층은 이외에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보육서비스 등에서 복지체감도가 높았다.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가 낮은 영역은 타 소득계층과 유사하였는데, 서비스 영역별 복지체감도 수준도 4년 전과 유사하여 복지체감도가 향상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표 4-25〉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중산층가족의 복지서비스 체감도: 2011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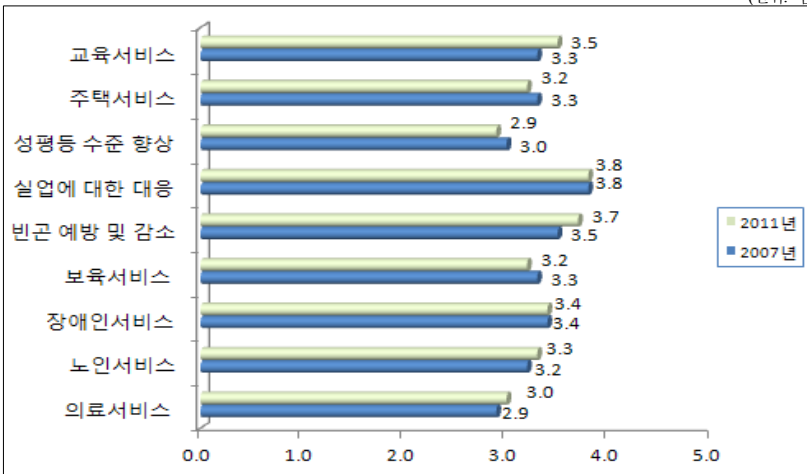
(단위: 점, 명)

구분	소득계층				주관적 사회적 지위				전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F값	상	중	하	F값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2.9	3.0	3.1	2.920	2.9	3.0	2.9	0.102	3.0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	2.9	3.3	3.3	11.445***	3.2	3.2	3.2	0.723	3.2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위한 서비스 제공	3.0	3.4	3.3	10.735***	3.4	3.3	3.2	0.743	3.3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 제공	3.1	3.2	3.3	1.120	3.4	3.3	3.3	0.573	3.2
빈곤 예방 및 감소	3.3	3.7	3.6	8.614***	3.6	3.6	3.6	0.023	3.6
실업에 대한 대응	3.5	3.8	3.8	6.032**	3.7	3.7	3.7	0.205	3.8
성평등 수준 향상	2.8	2.9	2.9	0.781	2.9	2.9	2.9	1.126	2.9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거주	3.1	3.2	3.3	2.308	3.0	3.2	3.2	1.455	3.2
인재육성 위한 학교교육	3.4	3.5	3.4	1.273	3.4	3.4	3.5	1.735	3.5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	2.9	2.9	3.0	0.425	2.9	2.9	3.0	0.529	2.9
(분석대상수)	(172)	(481)	(162)		(47)	(890)	(561)		(1,501)

주: 1) * $p<0.05$, ** $p<0.01$, *** $p<0.001$; 2) 복지서비스 체감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체감도가 높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그림 4-5] 소득계층별 복지서비스 체감도: 2007년과 2011년 비교

(단위: 점)



자료: 1)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결과; 2)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2007년 정부로부터 세금을 내는 만큼의 복지혜택 수혜정도를 소득계층별로 보면 중산층가족은 소득계층별 세금 수준에 대해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이 낮다는 인식이 74.6%로 높은데 비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수준이 높다와 적절하다는 인식이 각각 78.5%와 82.2%로 높아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높게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수준에 대해 높다는 의식은 각각 53.3%와 45.4%로 높은데 비해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수준은 낮다와 적절하다는 의식이 84.3%로 높아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타 소득계층에 비해 낮았다.

〈표 4-26〉 소득계층별 정부로부터 세금을 내는 만큼 복지혜택 수혜정도: 2007년도

(단위: %, 명, 점)

구분	저소득층 ¹⁾			중산층 ²⁾			고소득층 ³⁾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중산층이 내는 세금 수준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중산층이 내는 세금 수준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중산층이 내는 세금 수준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지나치게 높음	2.0	4.5	18.9	1.7	9.4	19.1	4.4	11.8	12.2
꽤 높음	6.6	28.7	38.1	6.4	34.0	39.9	6.1	41.5	33.2
적절한 편임	10.2	39.1	29.1	9.6	35.1	23.2	13.1	30.1	32.8
꽤 낮음	41.6	11.9	4.5	46.1	12.4	5.9	45.4	8.7	4.8
너무 지나치게 낮음	26.4	1.0	0.9	28.5	1.2	0.8	25.8	2.2	1.3
모름	13.2	14.8	8.5	7.7	7.9	11.1	5.2	5.7	15.7
계(수)	100.0 (683)	100.0 (683)	100.0 (683)	100.0 (764)	100.0 (764)	100.0 (764)	100.0 (229)	100.0 (229)	100.0 (229)
평균	4.0	2.7	2.2	4.0	2.6	2.2	3.9	2.5	2.4

주: 1) 저소득층이 생각하는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저소득층이 생각하는 중산층이 내는 세금 수준, 저소득층이 생각하는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2) 중산층이 생각하는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중산층이 생각하는 중산층이 내는 세금 수준, 중산층이 생각하는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3) 고소득층이 생각하는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고소득층이 생각하는 중산층이 내는 세금 수준, 고소득층이 생각하는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한편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수준에 대해 적절하다와 낮다는 인식이 78.2%로 높았고, 중산층이 내는 세금수준은 높다와 적절하다는 의식이 72.3%로 높아서 고소득층에 비해 중산층의 세금수준이 높다는 의식이 많았다. 이에 비해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수준에 대해 높다

와 적절하다는 의식이 86.1%이어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높았다.

소득계층별 평균은 중산층가족과 저소득층은 모두 2.2~4.0점, 고소득층 2.4~3.9점으로 분포를 잘 반영하고 있다.

2011년 중산층가족의 세금대비 복지수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8.7%로 고소득층의 9.3%와 저소득층의 15.7%에 비해 가장 저조하였고, 부정적인 인식은 중산층가족이 64.6%, 고소득층 71.0%, 저소득층이 59.9%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산층가족은 타 소득계층에 비해 세금대비 복지체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산층가족은 2007년에 복지혜택에 비해 세금수준이 높다는 의식이 43.4%이었고, 2011년에는 세금에 비해 복지혜택을 못 받는다는 의식이 64.6%로 4년간 세금대비 복지수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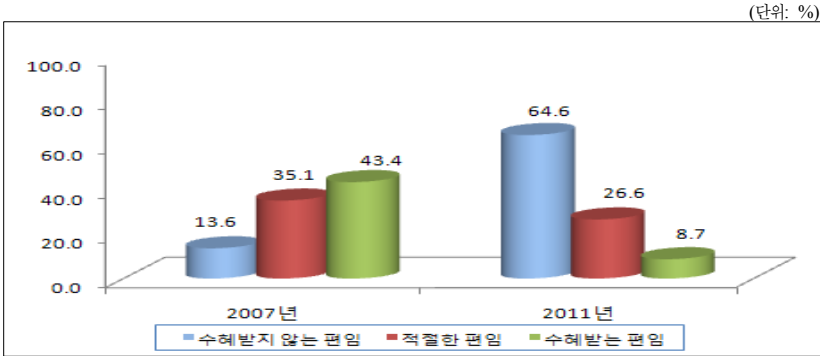
〈표 4-27〉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정부로부터 세금을 내는 만큼 복지혜택 수혜정도: 2011년도

(단위: %, 점, 명)

구분	소득계층			주관적 사회적 지위			전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상	중	하	
전혀그렇지 않음	25.0	29.5	30.9	21.3	25.3	26.7	25.7
그렇지 않음	34.9	35.1	40.1	48.9	35.3	37.6	36.6
보통	24.4	26.6	19.8	21.3	30.1	22.5	26.9
그럼	14.0	8.3	9.3	8.5	8.8	11.6	9.8
매우 그럼	1.7	0.4	-	-	0.6	1.6	0.9
계수	100.0 (172)	100.0 (481)	100.0 (162)	100.0 (47)	100.0 (890)	100.0 (561)	100.0 (1,501)
χ^2				18.576*			
평균	2.3	2.2	2.1	2.2	2.2	2.2	2.2
F값	3.092*			.116			

주: 1) * $p<0.5$, ** $p<0.01$, *** $p<0.001$;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그림 4-6] 중산층가족의 세금대비 복지수혜정도에 대한 인식: 2007년과 2011년 비교



자료: 1)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결과, 2)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나.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복지체감도 변화

2007년도의 소득계층별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5점 만점 기준의 평균 점수로 본 결과,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은 도시지역 2.9점, 도농복합·농촌은 2.7점으로 도시지역 거주자의 복지체감도가 낮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3.2점)가,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상에서(3.0점) 복지체감도가 낮았다.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유지는 30대, 대학이상, 취업자, 300~4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에서 복지체감도가 낮았고,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은 30대와 대학이상의 고학력층에서 복지체감도가 낮았다.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 제공은 30대와 대학이상의 고학력층, 200~400만원 미만의 소득층에서 복지체감도가 낮았다. 빈곤예방과 감소에 대한 복지체감도는 30대의 연령층과 대학이상의 학력층, 취업자, 200~4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성평등 수준 향상에 대한 복지체감도는 30대에서 가장 낮았다.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거주에 대한 복지체감도는 30대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층에서 낮았으며,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교육에 대한 복지체감도는 30대와 대학 이상의 학력층, 200~400만원의 소득수준에서 가장 낮았다.

〈표 4-28〉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복지체감도: 2007년도

(단위: 점, 명)

특성	① 아픈 사람에게 의로서비스 제공 ②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 ③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위한 서비스 제공 ④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 제공 ⑤ 빈곤 예방 및 감소 ⑥ 실업에 대한 대응 ⑦ 성평등 수준 향상 ⑧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 거주 ⑨ 인재 육성 위한 학교교육									(분석대상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2.9	3.2	3.4	3.3	3.6	3.8	3.0	3.3	3.3	(764)
거주지역										
도시	2.9	3.3	3.5	3.3	3.6	3.8	3.0	3.3	3.4	(626)
도농복합·농촌	2.7	3.0	3.2	3.1	3.4	3.7	3.0	3.2	3.1	(138)
t값	2.184**	3.144	3.086	2.757	2.361***	1.826	-0.031	1.060	3.266	
성별										
남성	2.9	3.3	3.4	3.3	3.6	3.8	3.0	3.3	3.4	(370)
여성	2.9	3.2	3.4	3.3	3.5	3.8	3.0	3.3	3.3	(394)
t값	0.580	1.735	0.294	0.410	0.892	0.565	-1.274	0.724	1.529	
연령										
20~29세	2.6	3.1	3.2	3.2	3.2	3.5	3.2	2.8	3.0	(11)
30~39세	3.2	3.5	3.8	3.6	3.8	3.8	3.3	3.5	3.7	(127)
40~49세	3.0	3.4	3.5	3.4	3.6	3.7	3.1	3.3	3.3	(227)
50~64세	2.8	3.1	3.4	3.2	3.6	3.9	3.0	3.3	3.3	(239)
65세 이상	2.6	2.9	3.0	3.0	3.3	3.7	2.7	3.1	3.1	(160)
F값	10.287***	10.902***	14.680***	13.094***	7.065***	1.795	8.764***	6.735***	7.325***	
결혼상태										
기혼	2.9	3.2	3.4	3.3	3.6	3.8	3.0	3.3	3.3	(727)
미혼	2.8	3.4	3.5	3.4	3.5	3.6	3.1	3.2	3.4	(36)
t값	0.296	-1.002	-0.600	-0.971	0.396	1.241	-0.586	0.340	-0.67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7	3.0	3.2	3.0	3.4	3.7	2.9	3.1	3.1	(276)
고등학교	3.0	3.3	3.5	3.3	3.6	3.8	3.1	3.4	3.4	(316)
대학 이상	3.0	3.5	3.7	3.5	3.7	3.8	3.1	3.4	3.6	(172)
F값	11.807***	23.499***	15.113***	19.046***	10.730***	0.702	2.563	8.775***	19.578***	
가구형태										
단독	2.7	3.0	3.2	3.1	3.4	3.6	3.0	3.2	3.2	(42)
모부자	3.4	3.2	3.4	3.6	4.2	4.0	3.8	3.6	3.6	(5)
소년소녀가장	-	-	-	-	-	-	-	-	-	-
기타		3.2	3.4	3.3	3.6	3.8	3.0	3.3	3.3	(717)
F값	1.430	1.098	1.409	1.102	2.037	1.573	2.230	0.828	0.506	
취업여부										
취업	2.9	3.3	3.4	3.3	3.6	3.8	3.0	3.3	3.3	(470)
비취업	2.9	3.2	3.4	3.3	3.5	3.8	3.0	3.2	3.3	(294)
t값	0.378	1.090*	-0.614	-0.144	0.334*	0.004	0.485	0.882	1.037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2.8	3.2	3.3	3.1	3.4	3.7	2.9	3.2	3.1	(209)
200~300만원 미만	2.9	3.2	3.4	3.3	3.6	3.8	3.1	3.3	3.4	(325)
300~400만원 미만	3.0	3.3	3.5	3.3	3.7	3.8	3.0	3.3	3.4	(230)
F값	1.791	1.175	2.556	5.293**	3.811*	1.452	3.439*	0.991	6.497**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01, *** p<0.001; 3) 복지체감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체감도가 높음.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4-29〉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복지체감도: 2011년도

(단위: 점, 명)

특성	① 아픈사람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②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 ③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④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 제공 ⑤ 빈곤 예방 및 감소 ⑥ 실업에 대한 대응 ⑦ 성평등 수준 향상 ⑧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 거주 ⑨ 인재 육성 위한 학교교육 ⑩ 사회통합 위한 다문화정책										(분석대상수)
	(1)	(2)	(3)	(4)	(5)	(6)	(7)	(8)	(9)	(10)	
전체	2.9	3.3	3.4	3.1	3.7	3.8	2.9	3.2	3.5	2.9	(481)
거주지역											
도시	3.0	3.3	3.3	3.3	3.6	3.8	2.9	3.2	3.5	2.9	(426)
농·어촌	2.8	3.1	3.1	2.8	3.3	3.7	2.8	3.0	3.2	2.7	(55)
t값	1.757	1.955	1.538	3.192	2.598	1.154	0.314	1.528	2.091	1.307	
성별											
남성	3.0	3.3	3.3	3.2	3.6	3.8	2.7	3.1	3.4	2.8	(255)
여성	3.0	3.3	3.3	3.3	3.6	3.8	3.0	3.2	3.4	2.9	(226)
t값	-0.528	-0.365	-1.001	-1.034	0.048	-0.107	-3.221*	-0.432	0.111	-0.439	
연령											
20~29세	3.1	3.5	3.6	3.2	3.9	3.8	3.0	3.3	3.5	3.0	(77)
30~39세	3.2	3.5	3.5	3.3	3.8	3.8	3.0	3.3	3.5	2.8	(128)
40~49세	3.0	3.3	3.3	3.3	3.6	3.8	2.9	3.3	3.4	2.9	(121)
50~64세	2.8	3.1	3.0	3.0	3.4	3.7	2.6	2.9	3.5	2.6	(111)
65세 이상	2.6	2.7	2.7	3.2	2.8	3.5	2.6	2.7	3.1	2.8	(44)
F값	5.274***	12.373***	11.560***	1.424	14.311***	1.359	4.648**	7.478***	2.005	2.564*	
결혼상태											
기혼	2.9	3.2	3.2	3.2	3.5	3.7	2.8	3.1	3.4	2.8	(372)
미혼	3.2	3.6	3.6	3.2	3.9	4.0	3.0	3.3	3.5	3.0	(109)
t값	-2.914	-3.689	-3.458	-0.137	-4.367***	-2.841*	-2.006**	-2.158	-0.713	-2.14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7	2.9	3.0	3.2	3.1	3.6	2.6	2.8	3.3	2.7	(69)
고등학교	3.0	3.3	3.3	3.2	3.6	3.8	2.8	3.1	3.4	2.8	(168)
대학 이상	3.0	3.4	3.4	3.2	3.7	3.8	2.9	3.3	3.5	2.9	(242)
F값	5.688***	8.748***	4.502*	0.030	13.595***	2.021	3.637**	6.516**	2.000	0.904	
취업여부											
취업	3.0	3.3	3.3	3.3	3.5	3.8	2.8	3.1	3.5	2.9	(209)
비취업	3.0	3.3	3.3	3.2	3.6	3.8	2.9	3.2	3.4	2.8	(272)
t값	0.274	-0.832	-0.737	0.827	-1.019	-0.072	-0.272	-0.312	1.020	0.571	
가구형태											
1인 가구	3.1	3.5	3.3	3.1	3.6	3.7	3.0	3.2	3.6	3.0	(21)
부부가구	2.5	3.0	2.9	3.2	3.1	3.7	2.8	2.9	3.3	2.7	(55)
부부+자녀	3.1	3.3	3.3	3.2	3.7	3.8	2.9	3.2	3.5	2.8	(340)
기타가구	3.0	3.3	3.4	3.3	3.5	3.9	2.7	3.0	3.3	3.0	(65)
F값	7.679***	2.077	3.402*	0.055	5.781**	0.460	0.707	2.868*	1.321	1.076	
가구원수											
1인	3.1	3.5	3.3	3.1	3.6	3.7	3.0	3.2	3.6	3.0	(21)
2인	2.6	3.2	3.0	3.2	3.3	3.7	2.8	2.9	3.3	2.8	(67)
3인 이상	3.0	3.3	3.3	3.2	3.6	3.8	2.9	3.2	3.4	2.8	(393)
F값	7.777***	1.008	3.967*	0.068	4.987**	0.221	0.263	2.598	0.774	0.515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8	3.2	3.0	3.0	3.4	3.8	2.8	3.2	3.5	2.7	(52)
10~200만원 미만	3.0	3.3	3.3	3.1	3.6	3.7	2.8	3.2	3.4	2.9	(306)
20~300만원 미만	3.0	3.4	3.3	3.1	3.6	3.9	2.9	3.1	3.6	2.7	(119)
F값	1.852	0.982	2.651	0.309	0.805	2.968	0.585	0.611	2.642	2.562	

주: 1) * p<.05, ** p<.01, *** p<.001; 2) 복지체감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체감도가 높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2011년도의 복지체감도를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보면,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복지체감도는 30대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층, 1인가구와 부부+자녀가구에서 낮게 나타났다.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유지에 대한 체감도는 30대 이하와 대학 이상의 학력층에서 낮았으며,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은 20대, 대학 이상의 학력층, 기타가구, 1인 및 3인 이상 가구에서 복지체감도가 낮았다. 빈곤예방 및 감소에 대한 복지체감도는 20대, 미혼, 대학 이상 학력층, 부부와 자녀가구에서 낮았으며, 실업에 대한 대응은 미혼집단에서 복지체감도가 낮았다.

그리고 성평등 수준 향상은 여성, 20~30대 연령층에서, 미혼, 대학 이상 학력층에서 복지체감도가 낮았다. 또한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거주는 20~40대 연령층에서, 대학 이상 학력층, 1인가구와 부부와 자녀가구에서 복지체감도가 낮았으며,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에 대한 복지체감도는 20대에서 가장 낮았으며, 이들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4-29 참조).

2007년 정부로부터 세금을 내는 만큼의 복지의 수혜정도를 소득계층별로 세금 대비 복지의 수혜정도가 적절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30 참조).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에 대해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 특성별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로는 도농복합·농촌(3.8점) 보다는 도시지역에서(4.1점), 미혼(3.6점)보다는 기혼(4.0점)이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낮다고 인식하였다.

중산층이 내는 세금수준에 대해서는 높다는 인식이 가장 높아 전체적으로 47.2% 이었다.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는 도시지역, 여성, 40대 연령층,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층, 비취업자, 300~4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평균 점수로는 남성, 20~30대 연령층, 기혼, 고등학교 이하 학력층, 취업자 및 비취업자, 모부자가구 등의 점수가 높아 중산층의 세금이 낮다고 생각하였으나 결혼상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나머지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표 4-30〉 중산층가주의 특성별 정부로부터 세금을 내는 만큼 복지혜택 수혜정도: 2007년도

(단위: %, 절, 명)

특성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중산층이 내는 세금 수준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계(수)
	높음	적절	낮음	평균	높음	적절	낮음	평균	높음	적절	낮음	평균	
전체	8.8	10.4	80.9	4.0	47.2	38.1	14.8	2.6	66.4	26.1	7.5	2.2	100.0(705)
거주지역													
도시	8.3	9.3	82.4	4.1	47.3	37.8	14.9	2.6	66.8	27.1	6.1	2.2	100.0(580)
도농복합·농촌	11.2	15.2	93.6	3.8	46.4	39.2	14.4	2.6	64.5	21.5	14.0	2.3	100.0(125)
$\chi^2(F값)$	5.433(2.222*)				(.037)				0.084(-1.134**)				
성별													
남성	8.4	9.8	81.8	4.1	46.5	36.5	17.1	2.6	65.7	26.0	8.3	2.2	100.0(347)
여성	9.2	10.9	79.9	4.0	47.8	39.6	12.6	2.6	67.0	26.1	6.8	2.2	100.0(358)
$\chi^2(F값)$	0.436(1.563)				(.892)				2.833(-.082)				
연령													
20~29세	-	44.4	55.6	3.7	22.2	66.7	11.1	2.9	66.7	33.3	-	2.1	100.0(9)
30~39세	10.6	11.5	77.9	3.9	48.7	36.8	14.5	2.5	70.0	22.7	7.3	2.2	100.0(113)
40~49세	9.9	8.0	82.1	4.1	51.9	31.3	16.8	2.5	71.1	22.3	6.6	2.2	100.0(212)
50~64세	8.0	9.8	82.1	4.1	42.4	40.1	17.5	2.7	63.0	29.2	7.9	2.2	100.0(224)
65세 이상	7.5	11.6	81.0	4.0	47.6	44.2	8.2	2.5	62.6	28.6	8.8	2.2	100.0(147)
$\chi^2(F값)$	14.504(1.556)				(1.537)				(.265)				
결혼상태													
기혼	8.3	10.1	81.5	4.0	47.1	38.0	14.9	2.6	66.2	26.4	7.4	2.2	100.0(672)
미혼	18.8	15.6	65.6	3.6	47.1	41.2	11.8	2.5	71.0	19.4	9.7	2.2	100.0(32)
$\chi^2(F값)$	(1.943**)				(.389)				0.309(.07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6	9.0	82.4	4.0	42.1	43.7	14.2	2.7	66.1	25.2	8.7	2.2	100.0(62)
고등학교	7.7	13.3	79.0	4.0	46.9	36.7	16.3	2.6	68.9	24.8	6.3	2.2	100.0(73)
대학 이상	11.0	7.4	81.6	4.0	55.2	31.9	12.9	2.4	61.9	30.2	7.9	2.3	100.0(570)
$\chi^2(F값)$	5.800(0.258)				(4.230*)				8.360(2.068)				
취업여부													
취업	8.4	10.2	81.4	4.0	47.1	36.3	16.6	2.6	65.8	26.0	8.2	2.2	100.0(431)
비취업	9.5	10.6	79.9	4.0	47.3	40.8	11.9	2.6	67.4	26.1	6.4	2.2	100.0(274)
$\chi^2(F값)$	0.316(0.557)				(.562)				3.421(.271)				
가구형태													
단독	11.1	16.7	72.2	3.9	39.5	47.4	13.2	2.7	62.9	25.7	11.4	2.3	100.0(36)
모부자	-	-	100.0	4.6	25.0	75.0	-	2.8	100.0	-	-	2.0	100.0(5)
소년소녀가장	-	-	-	-	-	-	-	-	-	-	-	-	-
기타	8.7	10.1	81.2	4.0	47.7	37.3	15.0	2.6	66.4	26.3	7.4	2.2	100.0(664)
$\chi^2(F값)$	(1.199)				(.199)				(.577)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4.8	8.0	87.2	4.1	43.2	44.3	12.4	2.6	70.6	23.5	5.9	2.1	100.0(188)
200~300만원 미만	8.9	12.2	78.9	4.0	45.4	39.4	15.2	2.6	66.2	25.0	8.8	2.2	100.0(303)
300~400만원 미만	12.1	9.8	78.0	4.0	53.0	30.9	16.1	2.5	62.8	30.1	7.1	2.2	100.0(214)
$\chi^2(F값)$	9.574*(2.428)				8.367(.880)				4.037(1.258)				

주: 1) * p<.05, ** p<.01, *** p<.001; 2) 세금수준이 '높음'은 지나치게 높음+꽤 높음을, '적절'은 적절한 편임, '낮음'은 꽤 낮음+너무 지나치게 낮음으로 재분류함; 3) 중산층가주가 생각하는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수준, 중산층이 내는 세금 수준,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에 대한 정도를 말함; 4)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4-31〉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정부로부터 세금을 내는 만큼 복지혜택 수혜정도: 2011년도

(단위: %, 절, 명)

특성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림	매우 그림	계(수)	평균	F(t)값
전체	29.5	35.1	26.6	8.3	0.4	100.0(481)	2.2	
거주지역								
도시	31.7	34.5	26.5	7.0	0.2	100.0(426)	2.1	(-3.457)
농·어촌	12.7	40.0	27.3	18.2	1.8	100.0(55)	2.6	
성별								
남성	31.0	32.9	25.5	9.8	0.8	100.0(255)	2.2	(0.369*)
여성	27.9	37.6	27.9	6.6	-	100.0(226)	2.1	
연령								
20~29세	23.4	28.6	42.9	5.2	-	100.0(77)	2.3	4.627**
30~39세	31.3	43.0	22.7	3.1	-	100.0(128)	2.0	
40~49세	33.9	40.5	19.8	5.8	-	100.0(121)	2.0	
50~64세	31.5	23.4	28.8	14.4	1.8	100.0(111)	2.3	
65세 이상	18.2	38.6	22.7	20.5	-	100.0(44)	2.5	
결혼상태								
기혼	30.1	37.4	22.8	9.1	0.5	100.0(372)	2.1	(-0.991)
미혼	27.5	27.5	39.4	5.5	-	100.0(109)	2.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9.0	29.0	21.7	20.3	-	100.0(69)	2.3	2.084
고등학교	27.4	38.1	25.6	7.7	1.2	100.0(168)	2.2	
대학 이상	31.4	35.1	28.1	5.4	-	100.0(242)	2.1	
취업여부								
취업	24.9	36.8	29.7	8.1	0.5	100.0(209)	2.2	(1.517)
비취업	33.1	33.8	24.3	8.5	0.4	100.0(272)	2.1	
가구형태								
1인 가구	33.9	28.6	28.6	9.5	-	100.0(21)	2.1	2.045
부부가구	25.5	32.7	25.5	12.7	3.6	100.0(55)	2.4	
부부+자녀	31.2	35.9	26.2	6.8	-	100.0(340)	2.1	
기타가구	23.1	35.4	29.2	12.3	-	100.0(65)	2.3	
가구원수								
1인	33.3	28.6	28.6	9.5	-	100.0(21)	2.1	2.776
2인	25.4	29.9	26.9	14.9	3.0	100.0(67)	2.4	
3인 이상	30.0	36.4	26.5	7.1	-	100.0(393)	2.1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3.5	34.6	36.5	13.5	1.9	100.0(52)	2.6	5.462**
100~200만원 미만	31.7	34.0	26.9	7.4	-	100.0(309)	2.1	
200~300만원 미만	30.8	38.3	21.7	8.3	0.8	100.0(120)	2.1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수준에 대해서는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66.4%이었다.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는 도시지역, 여성, 40대 연령층, 미혼, 고등학교 이하 학력층, 비취업자, 모부자가구, 저소득수준일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평균 점수로는 도시, 20대 연령층, 고등학교 이하 학력층, 모부자가구, 100~200만원 미만 집단이 2.0~2.2점으로 타 집단에 비해 비교적 저소득층의 세금수준이 높다고 인식하였다(표 4-30 참조).

이에 비해 2011년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세금대비 복지수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7.2%)보다 농어촌지역(20.0%)이 높았으며, 여성(6.6%)보다 남성(10.6%)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상태별로는 미혼보다 기혼이 세금을 내는 만큼 복지수혜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부부가구와 기타 가구에서 세금을 내는 만큼 복지수혜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취업자보다는 비취업자가, 그리고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높은 비율이었다. 평균 점수로는 1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에서 2.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표 4-31 참조).

제4절 시사점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산층가족의 귀속의식은 낮았으며 소득계층별 귀속의식도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중산층가족의 귀속의식은 상중하로 분류할 때 중층에 속한다는 비율이 65.3%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였고, 하층에 속한다는 비율도 32.0%로 3분의 1의 분포를 보였으며, 상층에 속한다는 의식은 약 3%

에 불과하여 귀속의식이 낮았고, 소득계층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둘째, 중산층가족은 현재 한국사회유형은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라는 인식이 높았고, 미래 한국사회는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가 많은 사회’를 지향하는 의식이 높았으며, 향후 복지사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재 한국사회유형에 대해 저소득층은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는 인식이고, 고소득층은 ‘가난한 사람이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라는 인식이 높았다. 미래 한국사회에 대하여 저소득층은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 사회’에 대한 인식이 높아서, 소득계층별 가치와 철학 등이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복지사회에 대한 인식은 모든 소득계층이 공통적으로 세금부담이 높고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로 선회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이러한 경향은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 높았다.

셋째,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득과 재산의 평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은 77~80%로 높았고, 소득격차 감소가 정부책임이라는 인식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족이 높았다.

우리나라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정도에 대해서 고소득층이 8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저소득층, 중산층 순으로 높아서 타 소득계층에 비해 중산층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소득격차 감소가 정부책임이라는 인식은 중산층(73%)과 고소득층(73%)이 높았고, 정부책임이 아니라는 인식은 저소득층(10%)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현재의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는 2.9~3.8점으로 중간 내외 정도로, 이는 4년전과 유사하여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는 향상되지 않았으며, 특히 빈곤예방·감소와 실업대응 영역에서 저조하였다.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는 고소득층(2.9~3.8점)보다는 높았으나, 저소득층(2.8~3.4점)보다는 저조하였고, 서비스 영역별 복지체감도도 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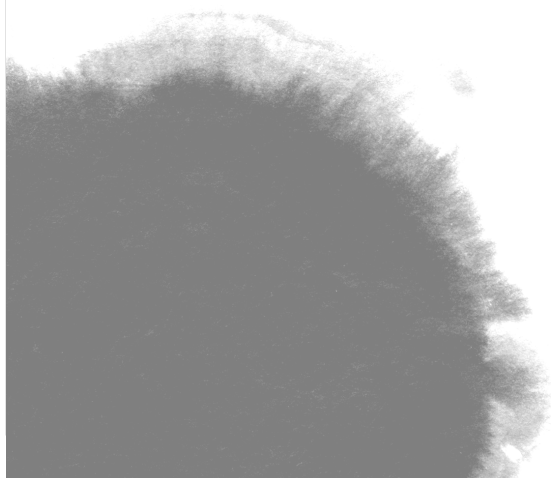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전과 유사하여 복지수준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중산층가족의 세금대비 복지수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65%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세금 수준이 높다는 인식이 43%로 세금 부담감이 높았다.

세금대비 복지수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고소득층이 71%, 저소득층이 60%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성향이 높았다. 그리고 세금 수준에 대해 고소득층은 세금 수준이 낮다(74.6%)는 인식이 높은데 비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세금수준이 높다는 인식이 높아서 고소득층에 비해 세금 부담감이 높았다.

05

중산층가족의 특성 및 복지욕구



제5장 중산층가족의 특성 및 복지욕구

제1절 중산층가족의 특성

4차 복지패널분석대상은 6,206가구로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은 751가구로 12.1%의 분포를 보였고, 중산층은 2,655가구로 42.8%, 저소득층은 2,800가구로 45.1%의 분포를 보였다²⁹⁾.

1. 중산층가족의 가구형태 및 가구규모

가구형태는 소득계층별로는 중산층가족은 부부 또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일반 가구가 88.1%로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었고, 이외에 1인 가구는 10.4%, 취약가구는 1.5%에 불과하였다. 고소득층은 일반가구 형태가 중산층보다 다소 높았고, 저소득층은 1인가구가 중산층보다 3.8배 높았으며, 취약가구도 중산층보다 다소 높았다.

가구규모는 중산층가족은 가구원수가 2인 이하가 35.9%이고 나머지 64.1%는 3인 이상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가구원수는 중산층가족은 3.09명, 고소득층은 3.18명으로 고소득층이 중산층보다 많았고, 저소득층 2.02명으로 중산층가족보다 적었다.

29) 소득계층의 구분은 중위소득 272만원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50~150%의 가구로 정의할 때, 고소득층은 중위소득의 150% 초과가구,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를 말함.

〈표 5-1〉 소득계층별 가구형태 및 가구규모

(단위: %, 명)					
특성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chi^2(F\>)$
전체	45.1	42.8	12.1		
가구형태					
단독가구	39.5	10.4	9.1	23.3	838.630***
모부자가구	2.4	1.4	0.5	1.8	
소년소녀가장가구	1.5	0.1	-	0.7	
기타가구	56.6	88.1	90.4	74.2	
가구원수					
1인	39.5	10.4	9.1	23.3	1205.604***
2인	36.4	25.5	21.2	29.9	
3인 이상	24.2	64.1	69.8	46.8	
계(수)	100.0 (2,800)	100.0 (2,655)	100.0 (751)	100.0 (6,206)	
평균 가구원수	2.02	3.09	3.18	2.62	(634.816***)
(분석대상수)	(2,800)	(2,655)	(751)	(6,206)	

주: * p<0.5, ** p<.01, *** p<.001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2. 중산층가족의 주거생활

주택유형을 소득계층별로 보면 중산층가족은 단독주택과 일반아파트가 76.9%로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었고, 아파트 거주는 고소득층이 54.4%, 단독주택은 저소득층이 67.6%로 높았다.

〈표 5-2〉 소득계층별 주택유형 및 소유형태

(단위: %, 명)					
특성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χ^2
주택유형					
단독주택	67.6	43.5	28.5	52.6	771.950***
다세대주택	6.5	9.7	5.9	7.8	
연립주택(빌라)	2.9	5.4	4.9	4.2	
일반아파트	14.1	33.4	54.4	27.2	
영구임대아파트	5.7	2.4	0.8	3.7	
기타	3.3	5.6	5.5	4.6	
주택소유형태					
자가	49.3	56.9	63.8	54.3	287.069***
전세	12.8	17.7	22.0	16.0	
전·월세	16.2	16.1	8.3	15.2	
월세	4.3	2.1	0.4	2.9	
기타	17.4	7.2	5.6	11.6	
계(수)	100.0(2,800)	100.0(2,655)	100.0(751)	100.0(6,206)	

주: * p<0.5, ** p<.01, *** p<.001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주택 소유형태에서 중산층가족은 자가 56.9%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전세·월세는 35.9%로 자가비율은 고소득층의 63.8%에 비해 중산층가족이 낮았고 저소득층의 49.3%에 비해 높았으며, 전세·월세 비율은 저소득층의 33.3%에 비해 중산층가족이 낮았다.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주택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5-3 참조). 거주지역별로는 도시, 농어촌지역 모두 단독주택, 일반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나 단독주택은 도시지역 보다는 농어촌지역이, 일반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농어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 지역간에 차이를 보였다. 소득수준별로는 300만원 미만은 단독주택, 일반아파트, 다세대주택 순으로 높았고, 300만원 이상은 일반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여성 가구주 모두 단독주택 비율이 높았으나 특히 여성가구주(49.5%)가 남성가구주(42.5%)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 이상은 단독주택의 비율이, 그리고 30~40대는 일반아파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65세 이상은 단독주택 비율이 62.8%나 되어 타 연령층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결혼상태별로는 모두 단독주택과 일반아파트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유배우는 사별·이혼·별거나 미혼보다 일반아파트 비율이 높았고, 사별·이혼·별거는 유배우나 미혼보다 단독주택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수준일수록 단독주택 비율이 높았고, 고학력층일수록 일반아파트 비율이 높았으며, 취업여부별로는 취업 가구주는 비취업 가구주 보다 일반아파트 비율이 높았고, 비취업 가구주는 취업 가구주 보다 단독주택 비율이 높았다.

〈표 5-3〉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주택유형

(단위: %, 명)

특성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빌라)	일반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기타	계(수)	χ^2
전체	43.5	9.7	5.4	33.4	2.4	5.6	100.0(2,586)	
거주지역								
도시	37.5	10.5	6.2	37.4	2.8	5.6	100.0(2,107)	178.930***
농·어촌	69.9	6.1	2.1	15.7	0.4	5.8	100.0(479)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58.7	7.0	4.2	19.8	3.7	6.6	100.0(545)	177.785***
200~300만원 미만	46.7	10.6	4.7	29.5	3.1	5.4	100.0(1,011)	
300~400만원 미만	34.1	10.3	8.0	40.5	1.0	6.0	100.0(671)	
400~500만원 미만	29.2	10.0	4.2	51.8	0.8	3.9	100.0(359)	
성별								
남성	42.5	9.8	5.5	35.3	1.8	5.3	100.0(2,190)	42.069***
여성	49.5	9.1	5.1	23.2	5.6	7.6	100.0(396)	
연령								
20~29세	44.8	17.2	-	22.4	1.7	13.8	100.0(58)	251.907***
30~39세	28.8	10.0	7.2	47.3	2.2	4.6	100.0(459)	
40~49세	31.6	11.8	5.2	45.5	1.8	4.2	100.0(671)	
50~64세	46.9	10.6	6.7	25.5	3.4	6.9	100.0(764)	
65세 이상	62.8	5.4	3.3	21.1	1.9	5.5	100.0(634)	
결혼상태								
유배우	41.7	9.9	5.3	37.0	1.5	4.7	100.0(1,994)	9 1.767***
사별·이혼·별거	50.8	7.8	6.3	21.5	6.1	7.6	100.0(396)	
미혼	48.4	11.1	5.3	20.5	3.2	11.6	100.0(19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0.2	9.2	5.9	15.7	3.4	5.6	100.0(827)	276.574***
고등학교	41.9	11.8	5.2	33.3	2.0	5.8	100.0(1,000)	
대학 이상	27.5	7.4	5.1	52.8	1.7	5.4	100.0(759)	
취업여부								
취업	42.3	10.3	5.5	34.6	1.9	5.5	100.0(2,104)	26.124***
비취업	48.9	6.9	5.2	28.3	4.6	6.2	100.0(481)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01$, *** $p<0.001$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주택소유형태를 보면,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보다 전세나 전·월세 비율이 27.6%pt 높았고,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자가소유 비율이 21.6%pt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전체적으로 자가소유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300만원 이상이 300만원 미만보다 높았고, 전세, 전·월세 비율은 300만원 미만이 300만원 이상 보다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가구주는 자가, 전세, 전·월세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나 여성가구주는 자가, 전·월세, 전세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남성 가구주는 여성가구주에 비해 자가소유 비율이 20.0%pt 높았고, 여성가 구주는 남성가구주에 비해 전·월세 비율이 14.9%pt 높았다.

〈표 5-4〉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주택소유형태

(단위: %, 명)

특성	자가	전세	전·월세	월세	기타	계(수)	χ^2
전체	56.9	17.7	16.1	2.1	7.2	100.0(2,655)	
거주지역							
도시	52.9	20.6	18.3	1.9	6.3	100.0(2,160)	141.056***
농·어촌	74.5	4.8	6.5	3.0	11.1	100.0(495)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52.4	12.2	21.3	4.1	10.0	100.0(559)	104.931***
200~300만원 미만	51.9	19.9	19.9	1.9	6.3	100.0(1,043)	
300~400만원 미만	62.4	19.1	10.8	1.5	6.3	100.0(687)	
400~500만원 미만	68.0	17.2	7.4	0.5	6.8	100.0(336)	
성별							
남성	60.0	17.7	13.8	1.9	6.6	100.0(2,248)	80.165***
여성	40.0	17.9	28.7	2.9	10.3	100.0(407)	
연령							
20~29세	4.9	23.0	42.6	11.5	18.0	100.0(61)	395.136***
30~39세	34.2	32.4	19.3	2.9	11.1	100.0(476)	
40~49세	49.1	22.3	18.8	2.9	6.9	100.0(695)	
50~64세	64.9	13.3	17.1	1.2	3.5	100.0(776)	
65세 이상	77.4	6.8	7.1	0.8	7.9	100.0(647)	
결혼상태							
유배우	62.6	17.4	13.0	1.2	5.9	100.0(2,049)	196.102***
사별·이혼·별거	44.2	16.0	25.4	3.5	10.9	100.0(405)	
미혼	24.1	25.1	29.2	8.7	12.8	100.0(19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7.9	10.1	14.0	1.8	6.2	100.0(840)	92.233***
고등학교	54.1	19.9	18.5	1.6	5.9	100.0(1,029)	
대학 이상	49.0	22.9	15.3	3.1	9.8	100.0(786)	
취업여부							
취업	55.6	19.3	16.5	2.2	6.5	100.0(2,162)	29.594***
비취업	63.0	10.8	14.4	1.6	10.2	100.0(492)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자가소유 비율이 높아졌고, 저연령층일수록 전세나 전·월세, 월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나 사별·이혼·별거는 자가소유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특히 유배우 자가소유 비율이 높았다. 이에 비해 미혼은 전·월세, 전세, 자가소유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기혼가구주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층일수록 자가소유 비율이 높았고, 취업여부별로는 취업가구주는 비취업 가구주에 비해 전세, 전·월세, 월세의 비율이 높았고, 비취업 가구주는 취업 가구주에 비해 자가소유 비율이 더 높았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소득계층별로 49.4~63.9%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고, 주관적인 경제적 인식별로도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인식별 주거환경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5-5〉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인식수준별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전체	2.9	12.4	31.2	48.1	5.4	100.0(5,999)		3.4	
소득계층									
저소득층	3.9	14.3	32.4	43.9	5.5	100.0(2,694)	72.262***	3.3	26.920***
중산층	2.3	11.2	31.8	49.9	4.9	100.0(2,576)		3.4	
고소득층	1.4	9.9	24.8	57.2	6.7	100.0(729)		3.6	
경제적 인식									
가난	5.4	18.7	35.9	36.5	3.5	100.0(2,764)	556.833***	3.1	267.561***
보통	0.7	7.1	27.6	58.1	6.4	100.0(3,136)		3.6	
부유	1.0	6.1	13.3	55.1	24.5	100.0(98)		4.0	

주: 1) * p<.05, ** p<.01, *** p<.001; 2) 평균이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주거환경 만족도는 거주지역,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가족이 도시지역보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가족은 상

대적으로 불만족도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젊은 연령층일수록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가 사별·이혼·별거나 미혼보다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 계층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비취업자의 주거환경 만족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주거환경은 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계층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5-6〉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전체	2.3	11.2	31.8	49.9	4.9	100.0(2,576)		3.4	
거주지역									
도시	2.4	12.3	32.3	48.5	4.5	100.0(2,093)	19.890**	3.4	(4.485***)
농·어촌	1.7	6.4	30.0	55.7	6.2	100.0(483)		3.6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1.6	10.7	29.9	52.6	5.1	100.0(551)	11.306	3.5	1.904
200~300만원 미만	2.6	12.6	32.1	48.3	4.3	100.0(1,012)		3.4	
300~400만원 미만	2.4	9.3	34.2	48.5	5.5	100.0(655)		3.5	
400~600만원 미만	2.0	11.2	29.6	52.5	4.7	100.0(358)		3.5	
성별									
남성	2.3	11.1	31.3	50.3	5.0	100.0(2,170)	2.662	3.5	(1.049)
여성	2.0	11.8	34.5	47.8	3.9	100.0(406)		3.4	
연령									
20~29세	1.7	8.3	45.0	45.0	-	100.0(60)	81.473***	3.3	15.585***
30~39세	2.8	11.0	36.1	46.8	3.2	100.0(462)		3.4	
40~49세	2.5	13.1	35.6	45.5	3.3	100.0(674)		3.3	
50~64세	2.8	13.1	31.8	46.6	5.7	100.0(749)		3.4	
65세 이상	1.0	7.3	23.5	61.2	7.1	100.0(631)		3.7	
결혼상태									
유배우	2.3	10.4	31.0	51.1	5.2	100.0(1,977)	18.339*	3.5	4.268*
사별·이혼·별거	2.0	14.9	32.0	46.2	5.0	100.0(403)		3.4	
미혼	2.1	11.9	39.9	44.6	1.6	100.0(193)		3.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8	11.0	28.8	53.4	5.0	100.0(817)	16.311*	3.5	2.246
고등학교	2.1	11.5	35.5	45.7	5.2	100.0(998)		3.4	
대학 이상	2.9	10.9	30.4	51.6	4.2	100.0(761)		3.4	
취업여부									
취업	2.3	11.2	33.3	48.5	4.7	100.0(2,110)	13.343*	3.4	(-2.347)
비취업	2.1	10.9	25.1	56.2	5.6	100.0(466)		3.5	

주: 1) * p<.05, ** p<.01, *** p<.001; 2) 평균이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3. 중산층가족의 경제 및 취업생활

가. 중산층가족의 재산 보유 실태

재산보유규모를 소득계층별로 보면 중산층가족이 11,113.1만원으로 고소득층의 36,798.7만원보다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였고, 저소득층의 6,931.2만원보다는 1.6배 높았다.

재산유형은 중산층가족은 부동산이 67.6%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도 4분의 1에 해당되었으며, 고소득층은 중산층과 유사하였으며 저소득층도 부동산은 중산층과 유사하였으나, 금융자산은 중산층의 절반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7〉 소득계층별 재산보유 규모 및 재산유형

(단위: 만원, 명, %)

특성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재산보유 규모(평균)	6,931.2	11,113.1	36,798.7	12,334.6
(분석대상수)	(2,800)	(2,655)	(751)	(6,206)
F값	94.931***			
재산유형				
부동산	68.9	67.6	67.9	68.0
금융자산	12.5	25.0	27.0	22.6
기타 재산	18.6	7.4	5.1	9.4
계(수)	100.0(2,800)	100.0(2,655)	100.0(751)	100.0(6206)

주: 1) 기타 재산에는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등이 포함됨; 2) * p<0.5, ** p<0.1, *** p<0.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재산보유 규모 및 재산유형을 살펴본 결과, 거주지역,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소득수준, 성별, 취업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지역별로는 재산보유 규모는 도시지역 보다 농어촌지역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저연령층 보다는 고연령층일수록, 사별·이혼

·별거나 미혼 보다는 유배우 중산층가족이, 그리고 저학력층일수록 재산보유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재산보유 규모 및 재산유형

(단위: 만원, 명)

특성	재산보유 규모		재산유형			
	평균	F(t)값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재산	계수
전체	11,113.05		67.6	25.0	7.4	100.0(2,655)
거주지역						
도시	9,930.8	(-4.399*)	64.3	28.5	7.2	100.0(2,160)
농·어촌	16,271.9		76.4	15.5	8.1	100.0(495)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7,670.9	1.997	68.0	26.4	5.6	100.0(559)
200-300만원 미만	11,500.9		69.3	24.5	6.2	100.0(1,043)
300-400만원 미만	12,222.4		69.8	21.1	9.1	100.0(687)
400-500만원 미만	13,182.7		59.1	31.6	9.1	100.0(336)
성별						
남성	11,670.5	(1.723)	67.1	24.9	8.0	100.0(2,248)
여성	8,034.1		71.2	26.0	2.9	100.0(407)
연령						
20~29세	1,655.8	11.026***	18.1	66.4	15.5	100.0(61)
30~39세	5,159.2		49.4	36.6	14.1	100.0(476)
40~49세	6,829.7		55.3	33.1	11.6	100.0(695)
50~64세	14,275.8		66.4	26.1	7.5	100.0(776)
65세 이상	17,192.8		78.5	17.5	4.0	100.0(647)
결혼상태						
유배우	12,175.6	4.905**	65.9	24.8	8.0	100.0(2,049)
사별·이혼·별거	9,483.2		73.7	22.7	3.6	100.0(405)
미혼	3,376.3		42.8	46.8	10.5	100.0(19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4,119.3	4.290*	69.5	24.3	6.2	100.0(840)
고등학교	10,649.8		70.0	21.6	8.4	100.0(1,029)
대학 이상	8,506.7		60.3	31.7	8.0	100.0(786)
취업여부						
취업	10,884.1	(-0.625)	66.6	24.8	8.6	100.0(2,162)
비취업	12,109.0		71.3	25.8	2.8	100.0(492)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기타 재산에는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등이 포함; 3) * $p<0.5$, ** $p<0.01$, *** $p<0.001$; 4)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재산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로는 부동산을 재산으로 보유한 비율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가족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가족보다 높았고, 200만원~400만원 미만의 소득층에서, 남성가구주 보다는 여성가구주가 부동산을 재산으로 보유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부동산 보다는 금융자산 비율이 높았고, 30대 이상은 금융자산 보다는 부동산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고령층으로 갈수록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와 사별·이혼·별거는 부동산이 재산유형에 주를 이루었으나 미혼은 부동산 보다는 금융자산의 비율이 높아 결혼상태별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별 재산유형으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등학교 이하에서 대학이상 보다 높았으며, 취업자 보다 비취업자의 비율이 높았다.

소득계층별 가구소득을 비교해 보면, 중산층가족은 200~400만원 미만이 79.0%인데 비해 저소득층은 2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이 100.0%, 고소득층은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70.0%이었다. 가구소비 수준은 중산층은 200~400만원 미만의 소비가 58.4%인데 비해 저소득층은 200만원 미만의 소비가 89.5%이었고, 고소득층은 400만원 이상이 62.2%이었다.

평균 소득액으로는 저소득층은 87.3만원, 중산층 282.7만원, 그리고 고소득층은 652.7만원이었으며, 평균 소비액은 저소득층은 109.4만원, 중산층 270.8만원, 고소득층 487.4만원으로 저소득층은 소득에 비해 소비가 더 많았으며,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소득이 소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계층별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이 저소득층보다 많았다. 소득대비 생활비 비율과 소득대비 최저생계비 및 생활비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은 고소득층과 중산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높아서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5-9〉 소득계층별 가구소득·소비 수준 및 주관적 최저생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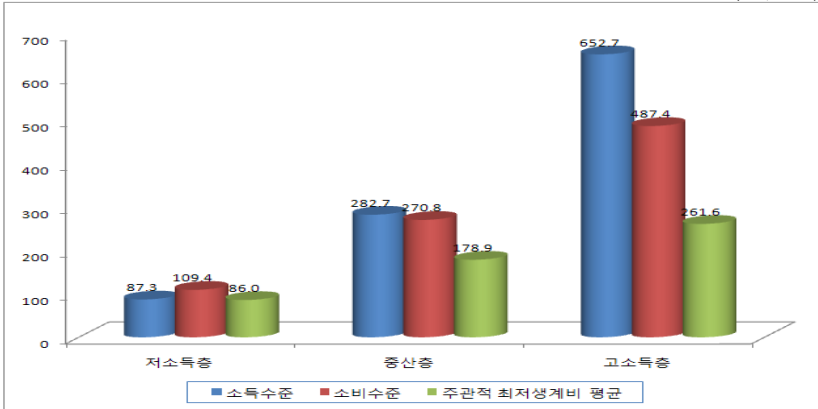
(단위: %, 만원, 명)

특성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4.6	-	-	29.0
100-200만원 미만	35.4	21.1	-	23.8
200-300만원 미만	-	39.3	-	18.4
300-400만원 미만	-	39.7	13.2	12.3
400-500만원 미만	-	-	16.8	7.4
500만원 미만	-	-	70.0	9.1
계(수)	100.0(2,776)	100.0(2,655)	100.0(751)	100.0(6,182)
χ^2	8214.227***			
평균	87.3	282.7	652.7	239.3
F값	3944.365***			
소비수준				
100만원 미만	59.2	2.4	0.4	27.8
100-200만원 미만	30.3	26.7	4.7	25.7
200-300만원 미만	7.7	36.2	13.8	20.6
300-400만원 미만	1.8	22.2	18.9	12.6
400-500만원 미만	0.5	9.0	21.2	6.7
500만원 미만	0.6	3.5	41.0	6.7
계(수)	100.0(2,800)	100.0(2,655)	100.0(751)	100.0(6,206)
χ^2	4924.826***			
평균	109.4	270.8	487.4	224.2
F값	3147.825***			
주관적 최저생계비 평균	86.0	178.9	261.6	147.0
(분석대상수)	(2,799)	(2,653)	(750)	
F값	684.036***			
경제수준				
소득대비 생활비 비율	125.3	95.8	74.7	93.7
소득대 최저생계비 비율	98.5	63.3	40.1	61.4
생활비대 최저생계비 비율	78.6	66.1	53.7	65.6
(분석대상수)	(2,800)	(2,655)	(751)	(6,206)

주: * p<0.5, ** p<.01, *** p<.001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5-1] 소득계층별 가구소득·소비 수준 및 주관적 최저생계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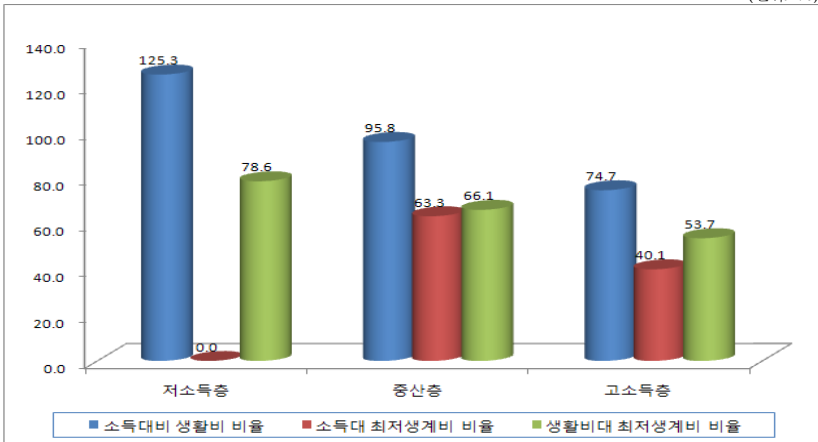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5-2] 소득계층별 가구소득·소비 수준 및 주관적 최저생계비 비율 비교

(단위: %)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가구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거주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에 비해 300만원 이상의 비율이 높은 반면,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3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가구주가 여성가구주 보다 가구소득 수준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와 65세 이상 연령층은 가구소득이 낮았으며, 40대

는 3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평균 가구소득을 비교해보면, 20대는 203.8만원, 65세 이상은 230.1만원인데 비해 40대는 318.3만원으로 20대에 비해서 114.5만원, 65세 이상에 비해서는 88.2만원이 더 많아 40대의 가구소득이 가장 많을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가 사별·이혼·별거나 미혼보다 가구소득이 많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의 가구 소득이 많았다.

〈표 5-10〉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가구소득 수준

(단위: %, 명, 만원)

특성	100~ 200만원 미만	200~ 300만원 미만	300~ 400만원 미만	400~ 500만원 미만	계(수)	χ^2	평균	F(t)값
전체	21.1	39.3	25.9	13.8	100.0(2,655)		282.7	
거주지역								
도시	19.4	38.9	27.0	14.7	100.0(2,160)	27.691***	287.2	(5.037)
농·어촌	28.3	40.8	21.0	9.9	100.0(495)		263.2	
성별								
남성	16.0	39.5	29.1	15.5	100.0(2,248)	269.408***	295.2	(18.035***)
여성	49.1	38.3	8.1	4.4	100.0(407)		263.2	
연령								
20~29세	55.7	36.1	8.2	-	100.0(61)	427.114***	203.8	101.139***
30~39세	13.2	45.6	29.2	12.0	100.0(476)		287.8	
40~49세	7.6	38.0	33.2	21.2	100.0(695)		318.3	
50~64세	16.4	37.6	28.7	17.3	100.0(776)		297.6	
65세 이상	43.6	38.3	13.8	4.3	100.0(647)		230.1	
결혼상태								
유배우	13.4	39.3	30.6	16.6	100.0(2,049)	379.821***	302.1	210.677***
사별·이혼·별거	47.4	37.3	9.6	5.7	100.0(405)		217.9	
미혼	45.6	43.1	10.3	1.0	100.0(195)		215.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6.8	36.5	18.2	8.5	100.0(840)	218.783***	247.7	94.663***
고등학교	15.3	43.1	27.9	13.8	100.0(1,029)		291.7	
대학 이상	11.8	37.3	31.4	19.5	100.0(786)		308.3	
취업여부								
취업	16.5	39.5	28.3	15.8	100.0(2,162)	178.109***	294.2	(14.278***)
비취업	41.3	38.6	15.2	4.9	100.0(492)		231.9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소득계층별로 가족수입만족도를 보면, 저소득층은 가족수입에 불만족도가 높았고, 중산층가족은 그저 그렇다, 고소득층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는 주관적인 경제적 의식에서는 더욱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소득과 경제적 의식에 따라 인식정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5-11〉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가족수입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전체	12.1	34.3	36.6	16.4	0.6	100.0(5,999)		2.6	
소득계층									
저소득층	19.7	42.2	30.8	7.0	0.2	100.0(2,694)	926.375***	2.3	483.082***
중산층	6.8	31.7	42.0	18.9	0.5	100.0(2,576)		2.8	
고소득층	2.5	14.3	38.5	42.5	2.2	100.0(729)		3.3	
경제적 의식									
가난	23.2	49.3	23.8	3.6	0.1	100.0(2,764)	1943.614***	2.1	1136.453***
보통	2.6	22.0	48.4	26.3	0.7	100.0(3,136)		3.0	
부유	-	7.1	19.4	61.2	12.2	100.0(98)		3.8	

주: 1) * p<.05, ** p<.01, *** p<.001; 2) 가족수입만족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가족수입만족도는 거주지역, 소득수준, 결혼상태, 교육수준, 취업여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가족이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의 경우 가족의 수입에 대해 그저 그렇다는 중립의견이 절반 수준이었으며, 40~50대 연령층에서는 가족의 수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취업여부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비취업자의 가족 수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12〉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가족수입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전체	6.8	31.7	42.0	18.9	0.5	100.0(2,576)		2.8	
거주지역									
도시	7.2	32.4	41.5	18.5	1.4	100.0(2,093)	10.984*	2.7	(-2.686)
농·어촌	5.2	28.8	44.1	20.7	1.2	100.0(483)		2.8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8.2	36.1	37.6	17.4	0.7	100.0(551)	53.065***	2.7	15.910***
200~300만원 미만	8.1	34.7	41.6	15.2	0.4	100.0(1,012)		2.7	
300~400만원 미만	5.5	26.7	45.3	22.0	0.5	100.0(655)		2.9	
400~500만원 미만	3.6	25.7	43.9	26.0	0.8	100.0(358)		3.0	
성별									
남성	6.6	31.5	42.3	19.0	0.6	100.0(2,170)	1.467	2.8	(1.066)
여성	7.9	33.0	40.4	18.2	0.5	100.0(406)		2.7	
연령									
20~29세	5.0	20.0	41.7	33.3	-	100.0(60)		3.0	16.187***
30~39세	3.5	24.9	50.0	21.6	-	100.0(462)		2.9	
40~49세	7.3	33.2	40.1	18.8	0.6	100.0(674)		2.7	
50~64세	8.9	38.2	40.7	11.6	0.5	100.0(749)		2.6	
65세 이상	6.5	28.5	39.8	24.2	1.0	100.0(631)		2.9	
결혼상태									
유배우	6.4	31.5	42.9	18.7	0.5	100.0(1,977)	19.865*	2.8	4.778**
사별·이혼·별거	8.9	36.5	36.5	17.1	1.0	100.0(403)		2.7	
미혼	6.7	23.8	45.1	24.4	-	100.0(193)		2.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2	36.1	40.6	15.4	0.6	100.0(817)	40.453***	2.7	16.678***
고등학교	7.7	31.9	43.2	16.8	0.4	100.0(998)		2.7	
대학 이상	5.3	26.8	41.9	25.4	0.7	100.0(761)		2.9	
취업여부									
취업	6.3	31.0	43.8	18.4	0.5	100.0(2,110)	18.616**	2.8	(1.430***)
비취업	9.4	34.8	33.9	21.0	0.9	100.0(466)		2.7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가족수입만족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가구소비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200~300만원 미만이 37.3%, 농어촌지역은 100~200만원 미만이 34.9%로 가장 높았다. 평균 가구소비규모는 도시지역이 276.2만원으로 농어촌지역의 247만원보다 더 많았다.

〈표 5-13〉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가구소비 수준

(단위: %, 명, 만원)

특성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계(수)	χ^2	평균	F(t)값
전체	2.4	26.7	36.2	22.2	9.0	3.5	100.0(2,655)		270.8	
거주지역										
도시	1.8	24.9	37.3	22.8	9.6	3.7	100.0(2,160)	44.391***	276.2	(5.127)
농·어촌	5.1	34.9	31.3	19.6	6.5	2.6	100.0(495)		247.0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10.6	73.2	13.6	1.8	0.9	-	100.0(559)		159.0	
200~300만원 미만	0.5	24.7	57.9	13.1	2.4	1.3	100.0(1,043)	1977.659***	245.5	807.030***
300~400만원 미만	-	5.8	34.2	44.1	11.6	4.2	100.0(687)		327.1	
400~500만원 미만	-	0.8	12.3	38.0	35.2	13.7	100.0(366)		407.7	
성별										
남성	1.0	23.0	37.4	24.4	10.3	3.9	100.0(2,248)	272.742***	283.3	(15.038***)
여성	10.3	47.2	29.5	9.8	1.7	1.5	100.0(407)		201.6	
연령										
20~29세	3.3	59.0	27.9	6.6	1.6	1.6	100.0(61)		197.4	
30~39세	0.4	23.1	45.2	20.0	7.6	3.8	100.0(476)	504.080***	276.4	103.857***
40~49세	0.6	10.8	38.4	32.4	14.4	3.5	100.0(695)		311.1	
50~64세	1.9	20.2	35.6	25.4	11.2	5.7	100.0(776)		292.7	
65세 이상	6.3	51.3	28.6	10.5	2.3	0.9	100.0(647)		203.9	
결혼상태										
유배우	0.6	20.0	38.2	25.8	11.3	4.1	100.0(2,049)	443.590***	290.8	154.193***
사별·이혼·별거	10.6	44.0	30.1	12.6	1.5	1.2	100.0(405)		207.2	
미혼	3.6	62.1	27.7	4.6	0.5	1.5	100.0(195)		193.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2	42.1	29.9	15.4	4.3	2.1	100.0(840)	270.896***	227.3	99.874***
고등학교	0.8	20.4	41.3	24.2	9.7	3.6	100.0(1,029)		283.7	
대학 이상	0.5	18.6	36.1	26.8	13.1	4.8	100.0(786)		300.4	
취업여부										
취업	1.4	22.9	37.6	24.1	10.0	4.0	100.0(2,162)	158.346***	282.1	(11.690**)
비취업	6.7	43.7	30.1	13.6	4.5	1.4	100.0(492)		22.08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수준도 높아져 100~2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은 평균 159만원의 가구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4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은 327.1만원, 400~5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은 407.7만원의 가구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소비수준의 분포가 높아서 평균 소비수준은 남성은 283.3만원으로 여성의 201.6만원 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까지는 소비수준이 높아지다가 50대 이상은 점차 가구소비 수준이 낮아졌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의 가구소비 수준이 사별·이혼·별거나 미혼 보다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비취업자 보다는 취업자의 가구소비 수준이 높았다(표 5-13 참조).

소득계층별로 가구소비생활 구조를 보면 중산층가족은 식료품, 교통통신 그리고 교육과 세금·사회보장 항목 지출이 53.5%로 과반수에 해당되었다. 소득계층별로 격차를 보이는 항목은 교육비, 교통통신비 및 세금·사회보장부담금으로 고소득층은 중산층에 비해 2~3배, 중산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4~5배까지 높게 나타났다.

〈표 5-14〉 소득계층별 가구소비생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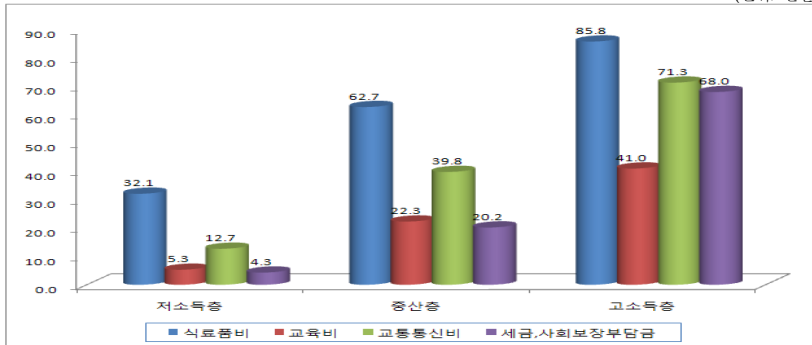
(단위: 만원, 명)

특성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평균	F값
식료품비	32.1	62.7	85.8	51.7	51.7	2240.597***
주거비	5.7	10.1	12.8	8.4	8.4	57.016***
피복신발비	2.4	7.8	16.3	6.4	6.4	1319.397***
보건의료비	9.8	14.5	18.6	12.9	12.9	56.559***
교육비	5.3	22.3	41.0	16.9	16.9	460.155***
(공교육비)	2.8	9.7	15.3	7.3	7.3	153.912***
(사교육비)	2.5	12.5	25.7	9.6	9.6	355.876***
교양오락비	2.2	7.7	20.9	6.8	6.8	779.034***
교통통신비	12.7	39.8	71.3	31.4	31.4	816.847***
세금·사회보장부담금	4.3	20.2	68.0	18.8	18.8	1531.490***
기타소비지출	34.9	85.9	152.7	71.0	71.0	1800.060***
(분석대상수)	(2,800)	(2,655)	(751)	(6,206)		

주: 1) 기타소비지출에는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사적이전 등이 포함됨; 2) * p<0.5, ** p<.01, *** p<.001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5-3] 소득계층별 가구소비생활 구조 비교

(단위: 만원)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소비생활구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5-15 참조).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와 농어촌지역 모두 식료품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통통신비, 교육비,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의 순으로 많았다. 이들 소비지출은 농어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이 더 많았으나 보건의료비만이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이 더 많았다. 소득수준별로도 소비지출비용이 높은 항목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대부분의 소비지출비용이 많아졌다.

가구주 성별로는 남성가구주는 식료품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순으로 소비지출이 많았으나 여성가구주는 식료품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등의 순으로 많았다. 대부분의 소비지출은 여성가구주 보다 남성가구주의 소비지출이 많았으나 주거비와 보건의료비는 남성가구주 보다 여성가구주의 소비지출이 많아 성별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모두 식료품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대의 식료품비 지출이 가장 많았다. 그 외 65세 이상의 연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교통통신비 지출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세 번째로 소비지출이 많은 항목은 20대는 주거비, 30대는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40~64세는 교육비였다. 65세 이상은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순으로 타 연령층과 차이를 보였다.

〈표 5-15〉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소비생활구조

(단위: 만원, 명)

특성	식료품비	주거비	피복 신발비	보건 의료비	교육비			교양 오락비	교통 통신비	세금·사회 보장 부담금	기타 소비 지출	(분석 대상수)
					소계	(공교육비)	(사교육비)					
전체	62.7	10.1	7.8	14.5	22.3	9.7	12.5	7.7	39.8	20.2	85.9	(2,655)
거주지역												
도시	64.5	10.5	8.1	14.0	23.6	9.9	13.7	8.0	40.3	21.4	85.7	(2,160)
농·어촌	54.7	8.0	6.2	16.5	16.6	9.0	7.6	6.2	37.5	14.7	86.8	(495)
t값	8.413	2.612	6.760**	-1.994**	4.531***	0.819	6.389***	3.345	1.537	7.921***	-0.428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40.6	9.8	4.3	17.0	2.4	(1.9)	(0.5)	4.4	20.5	7.0	53.1	(559)
200-300만원 미만	59.3	10.0	6.9	13.3	17.3	(8.5)	(8.7)	6.7	37.0	15.8	79.3	(1,043)
300-400만원 미만	73.6	10.5	9.6	13.8	31.3	(12.5)	(18.8)	9.6	50.0	26.4	102.4	(687)
400-500만원 미만	85.7	9.6	12.2	15.1	49.8	(19.9)	(29.9)	12.0	58.3	41.1	123.9	(366)
F값	534.647***	0.230	148.007***	3.600*	216.533***	55.274***	176.584***	49.588***	110.997***	361.061***	233.775***	
성별												
남성	65.5	9.4	7.9	14.3	24.0	9.8	14.1	8.1	42.5	22.0	89.7	(2,248)
여성	47.1	13.5	7.1	15.1	12.8	9.1	3.6	5.7	25.1	10.1	65.0	(407)
t값	15.030	-3.998***	1.957*	-0.578**	7.257***	0.594	12.694***	4.657***	10.959***	16.880***	9.386	
연령												
20-29세	45.2	14.3	8.7	4.7	5.3	4.4	1.0	8.1	39.1	12.1	60.0	(61)
30-39세	63.9	11.4	9.1	10.2	13.7	1.6	12.1	9.3	45.9	24.2	88.8	(476)
40-49세	72.9	10.1	8.6	9.5	40.1	10.4	29.7	8.4	44.1	27.1	90.5	(695)
50-64세	65.4	10.2	7.9	13.5	27.8	20.4	7.4	7.5	45.0	20.8	94.5	(776)
65세 이상	49.3	8.4	5.5	24.9	4.3	2.6	1.7	6.0	24.5	9.8	71.0	(647)
F값	110.118***	2.372	26.875***	55.090***	137.128***	86.072***	188.739***	7.351***	38.307***	81.357***	27.586***	
결혼상태												
유배우	66.6	9.3	8.1	15.0	25.5	10.3	15.2	8.1	42.8	22.6	92.7	(2,049)
사별·이혼·별거	50.2	12.3	6.1	14.8	15.0	9.9	5.1	5.5	26.8	10.0	66.4	(405)
미혼	47.9	12.8	7.8	7.8	3.3	2.7	0.6	8.2	35.7	15.6	53.9	(195)
F값	134.002***	5.951**	14.177***	9.307***	53.034***	10.419***	64.229***	10.008***	33.322***	77.315***	98.74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5.1	8.6	5.8	19.2	10.7	7.7	3.0	5.1	32.0	12.9	77.8	(840)
고등학교	66.6	10.3	8.2	12.1	26.8	12.1	14.7	7.7	41.8	20.5	89.7	(1,029)
대학 이상	65.7	1.3	9.3	12.4	28.7	8.8	20.0	10.4	45.6	27.5	89.6	(786)
F값	65.919***	4.004*	62.544***	28.429***	78.827***	9.863***	128.634***	50.247***	29.973***	118.816***	16.574***	
취업여부												
취업	65.2	10.1	8.0	12.4	24.9	10.3	14.6	7.9	42.6	22.2	88.8	(2,162)
비취업	51.5	10.0	6.6	23.6	10.7	7.3	3.4	6.6	27.5	11.4	72.9	(492)
t값	12.411*	0.024	4.194	-7.153***	10.066***	2.698**	15.551***	2.499	9.865**	13.773***	6.503	

주: 1) 기타소비지출에는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사적이전 등이 포함됨; 2)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3) * p<0.5, ** p<0.01, *** p<0.001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는 식료품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순으로, 고등학교 이상은 식료품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순이었으며, 교육비 중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는 식료품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순으로, 비취업자는 식료품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순으로 많았으며, 타 소비지출항목에 비해 보건의료비는 취업자보다 비취업자의 경우 더 많았다(표 5-15 참조)

〈표 5-16〉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주관적 최저생계비 평균

(단위: 만원, 명)

특성	주관적 최저생계비 평균	(분석대상수)	F(t)값
전체	178.9	(2,653)	
거주지역			
도시	180.6	(2,159)	(0.786*)
농·어촌	171.4	(494)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104.9	(559)	120.990***
200-300만원 미만	168.2	(1,042)	
300-400만원 미만	216.0	(687)	
400-500만원 미만	252.8	(365)	
성별			
남성	189.1	(2,246)	(15.232**)
여성	122.4	(407)	
연령			
20-29세	112.3	(61)	45.105***
30-39세	178.6	(476)	
40-49세	222.6	(694)	
50-64세	186.6	(775)	
65세 이상	129.2	(647)	
결혼상태			
유배우	195.8	(2,047)	70.725***
사별·이혼·별거	124.8	(405)	
미혼	114.5	(19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45.8	(839)	36.126***
고등학교	193.0	(1,028)	
대학 이상	195.8	(786)	
취업여부			
취업	187.2	(2,160)	(9.877*)
비취업	142.4	(492)	

주: 1) 주관적 최저생계비란 근근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말함; 2)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3) * p<0.5, ** p<0.01, *** p<0.001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178.9만원으로 각 특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 거주자(180.6만원)가 농어촌지역 거주자(171.4만원) 보다 많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최저생계비도 점차 많아져 100~200만원 미만은 104.9만원이었으나 300~400만원 미만은 216만원, 400~500만원 미만은 252.8만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가구주(189.1만원)가 여성가구주(122.4만원) 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40대(222.6만원)의 최저생계비가 가장 많았다. 또한 유배우가 사별·이혼·별거나 미혼 보다 많았고,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그리고 취업자가 비취업자 보다 주관적 최저생계비가 많았다.

중산층가족의 평균 가구소득수준은 282.7만원, 평균 가구소비수준은 270.8만원 그리고 주관적인 최저생계비 수준은 178.9만원으로 소득대비 소비는 약 96%로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행태를 보였다. 소득대비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약 63%로 소득의 37%는 삶의 질을 위해 활용 가능함을 의미하며, 소비대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약 66%로 가구소비의 34%는 최저생계수준을 초과하여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경제수준을 보면, 소득대비 생활비 비율은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 높았으나 소득대 최저생계비와 생활비대 최저생계비 비율은 도시지역 보다 농어촌지역이 더 높아 농어촌지역의 생활상의 어려움이 도시지역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별 소득대비 생활비 비율과 소득대 최저생계비 비율, 생활비 대 최저생계비 비율 모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여 그만큼 저소득층일수록 생계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가구주가 여성가구주에 비해 소득대비 생활비 비율, 소득대 최저생계비 비율, 생활비대 최저생계비 비율 모두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소득대비 생활비 비율은 50~64세가 98.4%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대 최저생계비 비율, 생활비대

최저생계비 비율은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소득 대비 생활비 비율, 소득대 최저생계비 비율, 생활비대 최저생계비 비율 모두 유배우가 사별·이혼·별거나 미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경제수준

(단위: %, 명)

특성	소득대비 생활비 비율	소득대 최저생계비 비율	생활비대 최저생계비 비율	(분석대상수)
전체	95.8	63.3	66.1	(2,655)
거주지역				
도시	96.2	62.9	65.4	(2,160)
농·어촌	93.8	65.1	69.4	(495)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97.5	64.3	66.0	(559)
200-300만원 미만	98.8	67.7	68.5	(1,043)
300-400만원 미만	95.6	63.2	66.0	(687)
400-500만원 미만	90.3	56.0	62.0	(365)
성별				
남성	96.0	64.1	66.7	(2,248)
여성	94.3	57.3	60.7	(407)
연령				
20~29세	96.9	55.1	56.9	(61)
30~39세	96.0	62.1	64.6	(476)
40~49세	97.7	69.9	71.6	(695)
50~64세	98.4	62.7	63.8	(776)
65세 이상	88.6	56.1	63.4	(647)
결혼상태				
유배우	96.3	64.8	67.3	(2,047)
사별·이혼·별거	95.1	57.3	60.2	(405)
미혼	89.5	53.1	59.3	(19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1.8	58.9	64.1	(840)
고등학교	97.3	66.2	68.0	(1,029)
대학 이상	97.4	63.5	65.2	(786)
취업여부				
취업	95.9	63.6	66.4	(2,162)
비취업	95.2	61.4	64.5	(492)

주: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 등이 포함됨.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교육수준별로는 소득대비 생활비 비율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소득대 최저생계비 비율과 생활비대 최저생계비 비율은 중학교나 대학이상의 학력수준보다 고등학교 학력수준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취업여부별로는 비취업자보다 취업자가 위의 세가지 비율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17 참조).

나. 중산층가족의 근로상태 및 취업생활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근로능력 정도를 보면,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근로가능 비율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이 근로가능 상태이다. 저소득층은 54.5%에 불과하였고 단순근로미약자와 근로불가능자는 28.5%나 되어 저소득층의 근로능력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근로무능력 사유로는 저소득과 중산층은 질병 또는 부상이, 고소득층은 중증장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근로지속 가능성은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72.6%와 87.6%로 비교적 안정적인 근로조건인 반면, 저소득층은 근로지속 가능성(41.3%)보다 직장사정에 따라 해고 가능한 비율(58.7%)이 더 높아 근로조건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지속 불가능 이유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임시직과 고용계약기간 만료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5-18〉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근로상태

(단위: %, 명)

특성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χ^2
근로능력정도					1174.923***
근로가능	54.5	90.4	97.7	75.1	
단순근로가능	17.0	3.8	0.7	9.4	
단순근로미약자	25.7	5.0	1.5	13.9	
근로불가능	2.8	0.8	0.1	1.6	
계(수)	100.0(2,800)	100.0(2,654)	100.0(751)	100.0(6,205)	
근로무능력사유					
중증장애	42.3	45.5	100.0	43.6	
질병 또는 부상	46.2	50.0	-	46.5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	11.5	4.5	-	9.9	
기타	-	-	-	-	
계(수)	100.0(78)	100.0(22)	100.0(1)	100.0(101)	
근로지속가능성					267.132***
계속 근로가능	41.3	72.6	87.6	69.3	
직장사정에 따라 해고 가능	58.7	27.4	12.4	30.7	
계(수)	100.0(492)	100.0(1,476)	100.0(493)	100.0(2,461)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고용계약기간 만료	28.7	26.2	32.8	27.7	
목시적·관행적으로 계약종료	26.0	17.8	18.0	20.9	
임시직	38.4	49.4	47.5	45.0	
현 업무 종료	4.8	5.4	1.6	4.9	
전임자 복귀	0.3	0.2	-	0.3	
특정 기간근무	1.7	1.0	-	1.2	
계(수)	100.0(289)	100.0(405)	100.0(61)	100.0(755)	

주: 1) * $p<0.5$, ** $p<0.01$, *** $p<0.001$;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근로능력은 거주지역, 성, 결혼상태,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 근로가능 비율이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가구주가 여성가구주 보다 근로가능 비율이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나 사별·이혼·별거보다 미혼이,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가 비취업자 보다 근로가능 비율이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근로가능 비율이 높았고,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근로가능 비율은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근로무능력의 주요 이유는 질병 또는 부상과 중증장애이었다.

〈표 5-19〉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근로능력 및 근로무능력 사유

(단위: %, 명)

특성	근로능력정도						근로무능력 사유				
	근로 가능	단순 근로 가능	단순 근로 미약자	근로 불가능	계(수)	χ^2	중증 장애	질병 또는 부상	노령 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기타	계(수)
전체	90.4	3.8	5.0	0.8	100.0(2,654)		45.5	50.0	4.5	-	100.0(22)
거주지역											
도시	91.1	3.3	4.7	0.9	100.0(2,160)	8.168	47.4	52.6	-	-	100.0(19)
농·어촌	87.7	5.7	6.1	0.6	100.0(494)	*	33.3	33.3	33.3	-	100.0(3)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77.1	8.4	13.1	1.4	100.0(559)		12.5	75.0	12.5	-	100.0(8)
200-300만원 미만	91.0	3.5	4.4	1.1	100.0(1,043)	176.388	63.6	36.4	-	-	100.0(11)
300-400만원 미만	96.4	2.3	1.0	9.1	100.0(686)	***	100.0	-	-	-	100.0(2)
400-500만원 미만	98.1	-	1.6	0.3	100.0(366)		-	100.0	-	-	100.0(1)
성별											
남성	92.8	2.8	3.6	0.8	100.0(2,247)	104.275	44.4	50.0	5.6	-	100.0(18)
여성	77.1	9.3	12.5	1.0	100.0(407)	***	50.0	50.0	-	-	100.0(4)
연령											
20-29세	100.0	-	-	-	100.0(61)		-	-	-	-	-
30-39세	99.6	-	0.4	-	100.0(476)		-	-	-	-	-
40-49세	99.4	0.3	0.1	0.1	100.0(695)		100.0	-	-	-	100.0(1)
50-64세	94.7	2.5	2.2	0.6	100.0(775)		80.0	20.0	-	-	100.0(5)
65세 이상	68.0	12.2	17.3	2.5	100.0(647)		31.3	62.5	6.3	-	100.0(16)
결혼상태											
유배우	92.6	3.0	3.6	0.8	100.0(2,049)	135.860	37.5	56.3	6.3	-	100.0(16)
사별·이혼·별거	75.6	9.1	14.1	1.2	100.0(405)	***	60.0	40.0	-	-	100.0(5)
미혼	98.5	1.0	0.5	-	100.0(195)		-	-	-	-	-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9.5	8.0	10.7	1.8	100.0(840)	170.607	40.0	53.3	6.7	-	100.0(15)
고등학교	94.7	2.0	2.8	0.4	100.0(1,028)	***	50.0	50.0	-	-	100.0(4)
대학 이상	96.4	1.5	1.7	0.4	100.0(786)		66.7	33.3	-	-	100.0(3)
취업여부											
취업	98.8	0.9	0.4	-	100.0(2,162)	941.287	-	-	-	-	-
비취업	53.9	16.5	25.2	4.5	100.0(492)	***	45.5	50.0	4.5	-	100.0(22)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결과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근로지속 가능성은 소득수준, 성, 연령 및 교육 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계속 근로가능한 비율이 낮았고, 직장사정에 따라 해고가능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가구에 비해 여성가구의 계속 근로가능성이 낮았고, 고연령층일수록 계속 근로가능성이 낮았다.

〈표 5-20〉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근로지속가능성 및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단위: %, 명)

특성	근로지속가능성				근로지속불가능사유						
	계속 근로 가능	직장 사정에 따라 해고 가능	계(수)	χ^2	고용 계약 기간 만료	목시적 ·관행 적으로 계약 종료	임시직	현 업무 종료	전임자 복귀	특정 기간 근무	계(수)
전체	72.6	27.4	100.0(1,476)		26.2	17.8	49.4	5.4	0.2	1.0	100.0(405)
거주지역											
도시	72.1	27.9	100.0(1,315)	1.336	25.3	18.0	50.1	5.4	-	1.1	100.0(367)
농·어촌	76.4	23.6	100.0(161)		34.2	15.8	42.1	5.3	2.6	-	100.0(38)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54.8	45.2	100.0(208)	76.209 ***	27.7	16.0	53.2	2.1	1.1	-	100.0(94)
200-300만원 미만	67.5	32.5	100.0(578)		23.4	16.5	50.5	8.0	-	1.6	100.0(188)
300-400만원 미만	79.7	20.3	100.0(438)		28.1	21.3	46.1	4.5	-	-	100.0(89)
400-500만원 미만	86.5	13.5	100.0(252)		32.4	20.6	41.2	2.9	-	2.9	100.0(34)
성별											
남성	74.6	25.4	100.0(1,295)	21.935	26.7	18.5	46.8	6.7	0.3	0.9	100.0(329)
여성	58.0	42.0	100.0(181)	***	23.7	14.5	60.5	-	-	1.3	100.0(76)
연령											
20-29세	87.5	12.5	100.0(56)	106.901 ***	28.6	-	71.4	-	-	-	100.0(7)
30-39세	94.5	15.5	100.0(420)		30.8	12.3	55.4	1.5	-	-	100.0(65)
40-49세	76.0	24.0	100.0(505)		19.8	16.5	55.4	8.3	-	-	100.0(121)
50-64세	60.4	39.6	100.0(381)		26.5	23.8	42.4	6.6	-	0.7	100.0(151)
65세 이상	46.5	53.5	100.0(114)		32.8	13.1	45.9	1.6	1.6	4.9	100.0(61)
결혼상태											
유배우	72.5	27.5	100.0(1,306)	0.005	26.2	19.5	47.1	5.8	0.3	1.1	100.0(359)
사별·이혼·별거											
미혼	72.8	27.2	100.0(169)		26.1	4.3	67.4	2.2	-	-	100.0(4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7.5	52.5	100.0(278)	146.600 ***	24.7	20.5	48.6	4.8	-	1.4	100.0(146)
고등학교	70.9	29.1	100.0(633)		23.4	21.2	48.9	6.5	-	-	100.0(184)
대학 이상	86.7	13.3	100.0(565)		36.0	4.0	52.0	4.0	1.3	2.8	100.0(75)
취업여부											
취업	72.6	27.4	100.0(1,476)		26.2	17.8	49.4	5.4	0.2	1.0	100.0(405)
비취업	-	-	-		-	-	-	-	-	-	-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01$, *** $p<0.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층일수록 계속 근로가능성이 높았고, 직장사정에 따른 해고가능성은 낮았다. 그러나 거주지역, 결혼상태, 취업여부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근로지속 불가능 사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 보다 임시직과 목시직 관행적인 계약종료 비율이 더 높았고,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고용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지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았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임시직으로 인한 근로지속 불가능 비율은 낮았으며, 고용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지속 불가능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가구주는 여성가구주에 비해 고용계약기간 만료와 목시직, 관행적인 계약종료, 그리고 여성가구주는 남성가구주에 비해 임시직이기 때문애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저연령층일수록, 미혼인 경우, 고학력층일수록, 그리고 취업자인 중산층 가구주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근로지속이 불가능한 비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취업률은 중산층가족은 81.5%로 고소득층 취업률(90.9%)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나 저소득층(41.8%)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다. 직종을 보면 중산층가족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7.0%)가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46.0%)가 주를 이루었고, 그 외 단순노무종사자(25.8%)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많아서 취업생활이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고소득층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 순으로 높은 비율이었으며, 특히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비율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 비해 높아 취업생활이 보다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종사상 지위는 저소득층은 자영업자, 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 순으로 높았고, 중산층은 상용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나 임시직 일용직 임금근로자도 상당수 되었다. 고소득층은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60.9%로 가장 많았다. 비경제활동 사유는 소득계층별로 모두 근로의사 없음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5-21 참조).

〈표 5-21〉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취업생활

(단위: %, 명)

특성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χ^2
취업여부					
취업	41.8	81.5	90.9	64.7	1198.552***
비취업	58.3	18.5	9.1	35.3	
계(수)	100.0 (2,800)	100.0 (2,654)	100.0 (751)	100.0 (6,205)	
직종					
관리자	0.6	2.3	9.7	3.0	1200.93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5	9.4	22.7	9.7	
사무종사자	2.0	12.0	20.9	10.6	
서비스·판매 종사자	11.5	16.0	15.5	14.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46.0	12.9	4.7	21.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3	14.1	8.2	10.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5.3	17.0	11.9	12.7	
단순노무종사자	25.8	16.3	6.4	17.4	
종사상지위					
상용직 임금근로자	10.1	43.3	60.9	36.8	850.826***
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	30.2	24.6	11.1	23.9	
고용주	1.3	3.5	13.1	4.5	
자영업자	57.5	28.1	14.6	34.3	
무급가족종사자	0.9	0.6	0.3	0.6	
계(수)	100.0 (1,178)	100.0 (2,160)	100.0 (683)	100.0 (4,021)	
비경제활동 사유					
근로무능력	4.9	4.9	1.7	4.8	
양육·가사·간병	4.5	9.0	3.3	5.4	
구직활동 포기	72.3	65.9	80.0	71.1	
근로 의사 없음	16.1	16.7	10.0	16.1	
기타	2.3	3.5	5.0	2.6	
계(수)	100.0 (1,540)	100.0 (431)	100.0 (60)	100.0 (2,031)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취업여부는 소득수준, 성, 연령, 결혼상태 및 교육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 거주자보다 농어촌지역 거주자의 취업률이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취업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여성가구주 보다는 남성가구주의 취업률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취업률은 낮아졌으며,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의 취업률(92.3%)이 가장 높았고, 사별·이혼·별거의 취업률은 59.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률도 높았다.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직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 가구주는 서비스·판매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각각 18.1%로 가장 높았고, 농어촌지역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가 48.3%로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가구주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여성가구주는 서비스 판매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0대는 사무종사자, 40대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50~64세은 단순노무직에 그리고 65세 이상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사별은 서비스 판매종사자, 미혼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는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높았으며, 고등학교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가, 그리고 대학이상은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표 5-22 참조).

〈표 5-22〉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취업여부 및 직종

(단위: %, 명)

특성	취업여부				직종									
	취업	비취업	계(수)	χ^2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차·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계(수)	χ^2
전체	81.5	18.5	100.0 (2,654)		2.3	9.4	12.0	16.0	12.9	14.1	17.0	16.3	100.0 (2,160)	
거주지역														
도시	80.8	19.2	100.0 (2,160)	3.036	2.6	10.5	12.4	18.1	4.6	15.8	17.8	18.1	100.0 (1,748)	579.374 ***
농·어촌	84.2	15.8	100.0 (494)		1.0	4.9	10.2	6.8	48.3	6.6	13.8	8.5	100.0 (412)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63.7	36.6	100.0 (559)	178.109 ***	0.8	5.6	5.6	16.5	24.9	10.6	12.9	23.0	100.0 (357)	160.537 ***
200-300만원 미만	81.8	18.2	100.0 (1,043)		1.7	8.6	10.7	16.4	13.7	14.9	15.0	19.0	100.0 (847)	
300-400만원 미만	89.1	10.9	100.0 (686)		3.3	11.2	14.3	13.0	9.1	15.3	21.0	12.7	100.0 (614)	
400-500만원 미만	93.4	6.6	100.0 (366)		3.5	12.3	17.5	19.6	5.3	13.5	19.3	9.1	100.0 (342)	
성별														
남성	85.1	14.9	100.0 (2,247)	130.954 ***	2.5	8.9	12.1	13.3	13.6	15.6	19.0	15.0	100.0 (1,911)	172.992 ***
여성	61.2	38.8	100.0 (407)		0.4	13.3	11.2	36.5	8.0	2.0	2.0	26.5	100.0 (249)	
연령														
20-29세	96.7	3.3	100.0 (61)	518.457 ***	-	26.3	21.1	22.8	-	3.5	7.0	19.3	100.0 (57)	813.528 ***
30-39세	96.0	4.0	100.0 (476)		3.3	19.4	21.6	15.8	1.1	14.9	14.5	9.4	100.0 (449)	
40-49세	95.5	4.5	100.0 (695)		3.0	9.8	17.5	18.3	2.3	18.7	19.2	11.3	100.0 (663)	
50-64세	82.6	17.4	100.0 (775)		1.4	4.2	4.3	16.6	14.0	15.4	21.6	22.5	100.0 (644)	
65세 이상	52.9	47.1	100.0 (647)		1.4	2.9	1.7	9.5	48.7	3.5	9.5	22.8	100.0 (347)	
결혼상태														
유배우	85.0	15.0	100.0 (2,049)	167.568 ***	2.7	9.1	12.3	13.7	14.6	15.2	17.8	14.5	100.0 (1,739)	168.478 ***
사별·이혼·별거	59.0	41.0	100.0 (405)		0.4	3.8	4.6	31.0	10.0	7.5	12.6	30.1	100.0 (239)	
미혼	92.3	7.7	100.0 (195)		0.6	20.6	18.9	17.2	0.6	11.7	15.6	15.0	100.0 (18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9.3	30.7	100.0 (840)	121.468 ***	0.7	1.5	0.3	13.4	31.74	10.1	14.9	27.4	100.0 (584)	845.155 ***
고등학교	86.4	13.6	100.0 (1,028)		1.9	3.5	8.9	15.7	8.5	20.1	24.2	17.3	100.0 (892)	
대학 이상	88.0	12.0	100.0 (786)		4.1	24.0	26.0	18.6	2.6	9.6	9.5	5.6	100.0 (684)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종사상 지위는 거주지역, 성별, 결혼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5-23>과 같다.

<표 5-23>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종사상지위

(단위: %, 명)

특성	상용직	임시직·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계(수)	χ^2
전체	43.3	24.6	3.5	28.1	0.6	100.0(2,167)	
거주지역							
도시	47.2	27.7	3.8	20.8	0.5	100.0(1,749)	248.531***
농·어촌	26.8	11.5	1.9	59.1	0.7	100.0(418)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26.1	31.5	0.8	40.7	0.8	100.0(356)	
200-300만원 미만	38.2	29.4	2.4	30.0	0.1	100.0(851)	
300-400만원 미만	51.5	19.9	4.5	23.3	1.1	100.0(618)	
400-500만원 미만	59.6	13.7	7.0	19.3	0.3	100.0(310)	
성별							
남성	44.6	22.7	3.7	28.4	0.6	100.0(1,922)	36.545***
여성	33.1	39.2	1.2	26.5	-	100.0(245)	
연령							
20-29세	74.6	20.3	1.7	3.4	-	100.0(59)	
30-39세	71.1	20.8	2.6	5.5	-	100.0(457)	
40-49세	52.3	23.6	5.3	18.5	0.3	100.0(664)	
50-64세	29.6	29.2	3.7	36.7	0.8	100.0(641)	
65세 이상	9.2	23.4	0.9	65.0	1.4	100.0(346)	
결혼상태							
유배우	44.1	21.1	4.1	30.0	0.7	100.0(1,751)	130.584***
사별·이혼·별거	23.8	43.4	0.9	31.9	-	100.0(235)	
미혼	60.9	33.0	1.1	5.0	-	100.0(17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6.2	31.0	1.4	51.0	0.3	100.0(580)	
고등학교	43.2	27.4	4.6	23.9	0.9	100.0(894)	
대학 이상	66.1	15.4	3.8	14.4	0.3	100.0(693)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 가구주는 상용직이, 농어촌지역 가구주는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 가구주는 상용직 비율이 높으나 여성가구주는 임시직·일용직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와 미혼은 상용직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미혼일 경

우 더 높았다. 사별·이혼·별거는 임시직·일용직 비율이 가장 높아 이들의 근로지속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용직과 고용주 비율은 높아졌고 임시직·일용직과 자영업자 비율은 낮아졌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상용직 비율이 높았고, 고연령층일수록 임시직·일용직과 자영업자 비율은 높았으며, 고학력층일수록 상용직과 고용주가, 그리고 저학력층일수록 임시직·일용직과 자영업자 비율은 높아졌다. 그러나 이들 소득수준과 연령,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계층별로 가구주의 직업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40.0%로 중립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뚜렷했으며 고소득층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관적인 경제적 의식에 따라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서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할수록 직업 만족도가 낮았고 부유하다고 생각할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았다.

〈표 5-24〉 소득계층 및 경제적 생활수준별 가구주의 직업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전체	6.4	18.8	39.1	31.6	4.1	100.0(5,995)		3.1	
소득계층									
저소득층	9.9	25.4	44.9	18.3	1.5	100.0(2,691)		2.8	
중산층	3.8	15.0	37.2	39.0	5.0	100.0(2,575)	730.720***	3.3	356.582***
고소득층	2.1	8.4	24.7	54.0	10.8	100.0(729)		3.6	
경제적 의식									
가난	11.3	27.3	41.7	18.1	1.6	100.0(2,763)		2.7	
보통	2.2	11.9	37.5	42.6	5.8	100.0(3,133)	855.900***	3.4	456.565***
부유	1.0	3.1	16.3	57.1	22.4	100.0(98)		4.0	

주: 1) * p<.05, ** p<.01, *** p<.001; 2) 직업만족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가구주의 직업 만족도는 소득수준, 성, 연령, 결혼상태 및 교육수준, 취업여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거주지역별

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3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의 직업 만족도가 비취업자보다 높았다(표 5-25 참조).

〈표 5-25〉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가구주의 직업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전체	3.8	15.0	37.2	39.0	5.0	100.0(2,575)		3.3	
거주지역									
도시	4.0	15.0	36.5	39.4	5.1	100.0(2,092)	2.640	3.3	(0.197)
농·어촌	3.1	14.9	40.0	37.3	4.8	100.0(483)		3.3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4.2	16.9	41.9	35.2	1.8	100.0(551)	96.278***	3.1	24.801***
200-300만원 미만	4.8	16.8	40.5	34.1	3.8	100.0(1,011)		3.2	
300-400만원 미만	3.5	12.1	32.1	45.8	6.6	100.0(655)		3.4	
400-500만원 미만	1.1	12.0	29.9	46.4	10.6	100.0(358)		3.5	
성별									
남성	4.1	14.9	35.9	39.6	5.3	100.0(2,169)	13.608**	3.3	(0.982***)
여성	2.2	15.0	43.8	35.7	3.2	100.0(406)		3.2	
연령									
20-29세	-	3.3	38.3	51.7	6.7	100.0(60)	96.495***	3.6	17.935***
30-39세	1.7	9.5	35.1	48.1	5.6	100.0(462)		3.5	
40-49세	3.7	15.3	30.6	43.6	6.8	100.0(674)		3.4	
50-64세	5.6	20.0	39.5	30.7	4.1	100.0(749)		3.1	
65세 이상	3.8	13.7	42.9	36.2	3.5	100.0(630)		3.2	
결혼상태									
유배우	3.7	15.0	36.0	40.0	5.3	100.0(1,976)	26.040**	3.3	10.722***
사별·이혼·별거	5.2	18.1	42.2	31.0	3.5	100.0(403)		3.1	
미혼	2.6	8.3	38.3	45.1	5.7	100.0(193)		3.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7	18.9	44.0	30.8	2.7	100.0(816)	94.587***	3.1	33.118***
고등학교	4.1	15.3	37.4	38.3	4.9	100.0(998)		3.3	
대학 이상	3.7	10.2	29.6	48.9	7.6	100.0(761)		3.5	
취업여부									
취업	2.9	13.8	36.0	41.7	5.6	100.0(2,109)	74.099***	3.3	(8.518)
비취업	8.2	20.4	42.5	26.8	2.1	100.0(466)		2.9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3) 가족수입만족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4. 중산층가족의 건강생활

소득계층별로 건강상태는 중산층가족은 건강하다가 65%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고소득층이 76%로 중산층보다 높았고, 저소득층은 28%로 중산층의 절반정도에 불과하였다. 만성질환 유병률은 45%로 거의 과반수가 질병이 있으며 의료이용상태는 평균 외래진료횟수는 년 12회, 평균 입원횟수는 0.2회, 평균 입원일수는 년 3일로 나타났다.

〈표 5-26〉 소득계층별 건강수준 및 보건의료행태

(단위: %, 점, 회, 일, 명)					
특성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chi^2(F값)$
전체	45.1	42.8	12.1	100.0	
건강상태					
아주 건강함	4.9	17.6	23.0	12.5	1160.145***
건강한 편임	23.0	47.2	53.4	37.1	
보통	26.6	19.9	16.9	22.6	
건강하지 않은 편임	38.4	13.6	6.0	23.9	
건강이 아주 안 좋음	7.1	1.6	0.7	4.0	
평균	3.20	2.35	2.08	2.70	(685.076***)
만성질환 유무					
만성질환 있음	74.2	45.4	39.7	57.7	576.787***
만성질환 없음	25.8	54.6	60.3	42.3	
의료기관 이용					
외래진료횟수(평균)	25.1	11.9	8.1	17.4	(182.369***)
입원횟수(평균)	0.3	0.2	0.2	0.2	(20.295***)
입원일수(평균)	6.0	3.1	1.6	4.2	(19.072***)
계(수)	100.0(2,800)	100.0(2,654)	100.0(751)	100.0(6,205)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종합·대학병원	16.5	15.5	14.6	15.9	83.147***
병·의원	74.6	80.5	81.5	77.7	
한방 병·의원	3.1	2.4	3.0	2.8	
보건소	5.6	1.3	0.7	3.3	
기타	0.2	0.2	0.2	0.2	
계(수)	100.0(2,488)	100.0(2,024)	100.0(567)	100.0(5,079)	
병원에 입원한 이유					
지병/질병	80.9	65.9	72.0	75.1	
사고	18.2	32.5	26.7	23.8	
건강검진	0.2	-	-	0.1	
기타	0.7	1.5	1.3	1.1	
계(수)	100.0(544)	100.0(323)	100.0(75)	100.0(942)	

주: 1) 병원입원이유의 기타에는 출산, 요양/휴식, 성·정형/교정 등이 포함됨; 2) * p<0.5, ** p<.01, *** p<.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5-27〉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건강상태 및 만성질환 유무

(단위: %, 명, 점)

특성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아주 건강함	건강한 편임	보통	건강 하지 않은 편임	건강이 아주 안 좋음	계(수)	평균	χ^2 (F/값)	만성 질환 있음	만성 질환 없음	계(수)	χ^2
전체	17.6	47.2	19.9	13.6	1.6	100.0 (2,654)	2.4		45.4	54.6	100.0 (2,654)	
거주지역												
도시	18.5	48.4	19.5	12.0	1.6	100.0 (2,160)	2.3	33.189*** (-4.980***)	43.7	56.3	100.0 (2,160)	13.660***
농·어촌	13.6	42.1	21.9	20.9	1.6	100.0 (494)	2.6		52.8	47.2	100.0 (494)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11.8	35.6	24.2	24.0	4.5	100.0 (559)	2.7	158.486*** (48.550***)	62.1	37.9	100.0 (559)	87.837***
200~300만원 미만	17.2	47.9	19.8	13.6	1.4	100.0 (1,043)	2.3		44.0	56.0	100.0 (1,043)	
300~400만원 미만	21.1	50.9	19.2	8.5	0.3	100.0 (686)	2.1		37.9	62.1	100.0 (686)	
400~500만원 미만	20.8	56.3	15.0	7.7	0.3	100.0 (366)	2.1		37.7	62.3	100.0 (366)	
성별												
남성	18.8	49.1	19.0	11.8	1.4	100.0 (2,247)	2.3	71.765*** (-7.807***)	43.2	56.8	100.0 (2,247)	27.386***
여성	10.8	37.1	25.3	23.8	2.9	100.0 (407)	2.7		57.2	42.8	100.0 (407)	
연령												
20~29세	26.2	59.0	14.8	-	-	100.0 (61)	1.9	589.414*** (173.658***)	29.5	70.5	100.0 (61)	488.139***
30~39세	34.5	54.2	8.2	2.7	0.4	100.0 (476)	1.8		22.1	77.9	100.0 (476)	
40~49세	26.0	53.8	15.0	5.0	0.1	100.0 (695)	2.0		27.1	72.9	100.0 (695)	
50~64세	10.5	47.7	25.3	15.4	1.2	100.0 (775)	2.5		50.2	49.8	100.0 (775)	
65세 이상	3.7	33.4	28.0	30.1	4.8	100.0 (647)	3.0		77.9	22.1	100.0 (647)	
결혼상태												
유배우	17.9	48.7	19.7	12.2	1.5	100.0 (2,049)	2.3	128.079*** (58.655***)	44.5	55.5	100.0 (2,049)	52.395***
사별·이혼·별거	7.9	39.5	25.2	25.2	2.2	100.0 (405)	2.7		58.3	41.7	100.0 (405)	
미혼	34.4	48.7	10.3	5.1	1.5	100.0 (195)	1.9		27.7	72.3	100.0 (195)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만성질환 유병률과 외래 및 입원 등 의료기관 이용횟수는 소득이 낮을수록 높았다. 중산층가족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는 주로 병·의원(80.5%)을 이용하였으며, 병·의원에 입원한 이유는 지병·질병과 사고가 많았다. 이용하는 의료기관 유형과 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없었다(표 5-26 참조).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건강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도시지역 거주자 보다 건강하지 못한 편이었으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가구주 보다는 여성가구주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40대 이하는 건강하지 못한 비율이 3.1~5.1%에 불과한데 비해 65세 이상은 34.9%로 연령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나 미혼에 비해 사별·이혼·별거가 건강하지 못한 비율이 27.4%로 가장 높았다.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만성질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도시지역 보다 농어촌지역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남성가구주 보다 여성가구주가, 고연령층일수록 그리고 사별·이혼·별거일수록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27 참조).

<표 5-28>은 의료기관 이용 및 주 이용의료기관 형태를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살펴 본 결과이다. 평균 의료진료횟수, 입원횟수 및 평균 입원일수는 중산층가족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모두 도시지역 보다는 농어촌지역이 많았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많았고,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많았다. 외래진료횟수는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의 2배 정도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보다 50세 이상의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평균 외래진료횟수, 입원횟수 및 입원일수가 많았으며, 사별·이혼·별거가 유배우나 미혼보다 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 저학력층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층보다 많았고,

취업자 보다는 비취업자의 경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5-28〉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의료기관 이용 및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단위: 회, 일, %, 명)

특성	의료기관 이용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외래진료횟수		입원횟수		입원일수		종합·대학 병·의원	병·의원	한방 병·의원	보건소	기타	계(수)
	평균	F(t)값	평균	F(t)값	평균	F(t)값						
전체	11.9		0.2		3.1		15.5	80.5	2.4	1.3	0.2	100.0(2,024)
거주지역												
도시	10.8	(-4.136	0.1	(-3.845	2.5	(-3.457	14.5	81.3	2.7	1.2	0.3	100.0(1,631)
농·어촌	16.5	***)	0.3	***)	5.8	***)	19.6	77.1	1.3	2.0	-	100.0(393)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20.6		0.3		6.9		24.3	69.0	3.4	2.8	0.4	100.0(465)
200-300만원 미만	11.0	36.203	0.1	14.714	2.7	12.142	13.9	82.7	1.9	1.2	0.4	100.0(779)
300-400만원 미만	7.9	***	0.1	***	1.4	***	12.9	84.6	2.0	0.6	-	100.0(505)
400-500만원 미만	8.4		0.1		1.6		10.2	86.2	2.9	0.7	-	100.0(275)
성별												
남성	10.4	(-6.069	0.2	(-2.942	2.9	(-1.951	15.1	81.3	1.9	1.4	0.3	100.0(1,672)
여성	20.3	***)	0.3	***)	4.6	**)	17.6	76.4	4.8	1.1	-	100.0(352)
연령												
20-29세	5.6		0.1		0.9		4.7	95.3	-	-	-	100.0(43)
30-39세	5.5		0.1		1.0		9.3	88.7	2.0	-	-	100.0(300)
40-49세	5.3	85.748	0.1	22.877	1.0	11.706	9.5	87.7	2.4	0.2	0.2	100.0(465)
50-64세	10.9	***	0.1	***	3.5		14.3	81.5	2.9	1.0	0.3	100.0(623)
65세 이상	25.4		0.3		6.7		25.5	68.5	2.4	3.4	0.3	100.0(593)
결혼상태												
유배우	10.9		0.2		2.7		14.8	81.6	1.9	1.5	0.2	100.0(1,556)
사별·이혼·별거	19.3	26.169	0.3	7.269	4.9	3.316*	19.6	73.6	5.0	1.2	0.6	100.0(341)
미혼	6.8	***	0.1	**	2.1		11.3	87.1	1.6	-	-	100.0(12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9.4		0.3		6.9		20.1	74.1	3.3	2.1	0.4	100.0(725)
고등학교	9.1	70.851	0.1	36.347	1.6	29.875	13.9	83.4	1.3	1.1	0.3	100.0(761)
대학 이상	7.2	***	0.1	***	1.0	***	11.5	84.9	2.8	0.7	-	100.0(538)
취업여부												
취업	9.2	(-8.606	0.1	(-5.997	1.7	(-4.860	11.7	84.8	2.3	1.0	0.1	100.0(1,588)
비취업	23.7	***)	0.4	***)	9.4	***)	29.4	64.7	2.8	2.5	0.7	100.0(436)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주지역별로는 병의원 이용률은 농어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높았다. 그러나 종합대학병원 이용률은 도시지역 보다 농어촌지역의 이용률이 높아 정밀검사를 요하는 질병이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농어촌지역 가구주에 더 많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병의원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률도 높아졌으나 두 번째로 이용률이 높은 종합대학병원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이용률을 보여 2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인 경우 24.3%나 되었다.

남성가구주, 저연령층, 미혼, 대학이상, 취업자가 병의원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종합대학병원 이용은 남성가구주 보다 여성가구주가, 40대 이하 연령층보다는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높았고, 특히 65세 이상은 25.5%나 되었다. 또한 유배우나 미혼보다 사별·이혼·별거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층보다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층에서, 그리고 취업자 보다는 비취업자의 이용률이 높아 특성별 다른 경향을 보였다.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질병/질병이 주를 이루었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고로 인한 입원은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이 더 많았고, 건강검진으로 인한 입원은 도시지역 거주자가 더 많았다. 소득수준별로는 100~200만원 미만은 질병/질병으로 인한 입원비율이 높았으며, 사고로 인한 입원은 300~400만원 미만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질병/질병은 여성가구주가, 사고로 인한 입원은 남성가구주가 높았고, 고연령층일수록 질병/질병으로 인한 입원, 30대 이하가 사고로 인한 입원비율이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보다 사별·이혼·별거와 미혼이 질병/질병으로 인한 입원비율이 높았고 유배우는 사별·이혼·별거보다 사고로 인한 입원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질병/질병,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사고로 인한 입원비율이 높았고, 비취업자는 취업자 보다 지병/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취업자는 비취업자 보다 사고로 인한 입원비율이 높았다(표 5-29 참조).

〈표 5-29〉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병원에 입원한 이유

(단위: %, 명)					
특성	지병/질병	사고	건강검진	기타	계(수)
전체	65.9	32.5	1.5	-	100.0(323)
거주지역					
도시	66.2	31.6	2.2	-	100.0(228)
농·어촌	65.3	34.7	-	-	100.0(95)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74.8	23.5	1.7	-	100.0(119)
200-300만원 미만	62.9	35.2	1.9	-	100.0(105)
300-400만원 미만	57.6	42.4	-	-	100.0(59)
400-500만원 미만	60.0	37.5	2.5	-	100.0(40)
성별					
남성	62.1	37.5	0.4	-	100.0(248)
여성	78.7	16.0	5.3	-	100.0(75)
연령					
20-29세	42.9	42.9	14.3	-	100.0(7)
30-39세	52.9	44.1	2.9	-	100.0(34)
40-49세	59.3	37.0	3.7	-	100.0(54)
50-64세	60.0	40.0	-	-	100.0(90)
65세 이상	76.8	22.5	0.7	-	100.0(138)
결혼상태					
유배우	62.5	36.2	1.3	-	100.0(232)
사별·이혼·별거	74.7	22.7	2.7	-	100.0(75)
미혼	73.3	26.7	-	-	100.0(1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8.9	30.5	0.6	-	100.0(164)
고등학교	63.5	34.6	1.9	-	100.0(104)
대학 이상	61.8	34.5	3.6	-	100.0(55)
취업여부					
취업	57.6	40.4	2.0	-	100.0(203)
비취업	80.0	19.2	0.8	-	100.0(120)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건강만족도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건강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만족도는 급격히 낮아졌다. 이는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지도가 가난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건강에 대한 만족도 낮게 나타났다.

〈표 5-30〉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가구주의 건강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전체	9.2	24.0	25.6	36.2	5.0	100.0(5,995)		3.0	
소득계층									
저소득층	15.7	35.5	24.1	22.4	2.3	100.0(2,691)	843.833***	2.6	470.770***
중산층	4.5	15.7	26.7	46.4	6.6	100.0(2,575)		3.4	
고소득층	1.6	10.7	27.4	51.6	8.6	100.0(729)		3.6	
경제적 의식									
가난	15.0	32.3	24.6	25.0	3.1	100.0(2,762)	582.548***	2.7	302.750***
보통	4.3	17.2	27.0	45.3	6.3	100.0(3,134)		3.3	
부유	3.1	7.1	13.3	62.2	14.3	100.0(98)		3.8	

주: 1) * p<.05, ** p<.01, *** p<.001; 2) 건강만족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건강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농어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의 건강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고연령층으로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낮았으며, 이는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 불만족도가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층일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의 건강만족도가 높았다.

〈표 5-31〉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건강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전체	4.5	15.7	26.7	46.4	6.6	100.0(2,575)		3.4	
거주지역									
도시	4.3	14.7	27.2	46.6	7.2	100.0(2,093)	15.312**	3.4	(3.167)
농·어촌	5.8	20.1	24.5	45.3	4.4	100.0(482)		3.2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9.8	23.2	24.3	37.2	5.4	100.0(551)	105.586***	3.1	28.622***
200-300만원 미만	4.1	16.7	27.5	45.2	6.6	100.0(1,012)		3.3	
300-400만원 미만	2.1	11.0	27.2	52.3	7.3	100.0(654)		3.5	
400-500만원 미만	2.2	10.1	27.4	53.1	7.3	100.0(358)		3.5	
성별									
남성	3.7	13.9	26.5	48.9	7.0	100.0(2,169)	70.004***	3.4	(7.480*)
여성	8.9	25.4	28.1	33.0	4.7	100.0(406)		3.0	
연령									
20-29세	-	3.3	28.3	55.0	13.3	100.0(60)	290.058***	3.8	72.095***
30-39세	0.7	7.4	23.9	55.7	12.4	100.0(461)		3.7	
40-49세	2.1	9.2	26.4	54.2	8.2	100.0(674)		3.6	
50-64세	4.8	16.2	30.6	43.8	4.7	100.0(749)		3.3	
65세 이상	10.1	29.5	24.4	33.4	2.5	100.0(631)		2.9	
결혼상태									
유배우	3.6	14.7	27.1	48.3	6.3	100.0(1,976)	103.068***	3.3	43.955***
사별·이혼·별거	9.9	25.6	26.3	33.3	5.0	100.0(403)		3.0	
미혼	3.1	6.2	23.3	53.9	13.5	100.0(193)		3.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1	25.5	26.9	35.4	3.2	100.0(817)	213.464***	3.0	105.519***
고등학교	3.2	12.5	29.7	48.6	6.0	100.0(998)		3.4	
대학 이상	1.4	9.5	22.6	55.3	11.2	100.0(760)		3.7	
취업여부									
취업	2.4	12.7	27.4	50.0	7.6	100.0(2,110)	239.572***	3.5	(13.007***)
비취업	14.4	29.5	23.7	30.1	2.4	100.0(465)		2.8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3) 건강만족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5. 중산층가족의 가족생활

가. 성역할 인식 및 가족관계

1) 가족 내 성역할 인식

가족 내 성역할 의식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서 2.9점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 3.0점, 중산층 2.9점, 고소득

층 2.8점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성 역할 의식에 있어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관적 경제생활 상태에서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모두 2.9점으로 나타났으며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평균은 2.8점이었다. 두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32〉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성역할 의식

(단위: 점, 명)

특성	평균	표준편차	(분석대상수)	F값
전체	2.9	0.42821	(8,975)	
소득계층				
저소득층	3.0	0.41163	(3,367)	105.136***
중산층	2.9	0.42427	(4,346)	
고소득층	2.8	0.45026	(1,262)	
경제적 의식				
가난	2.9	0.41897	(3,653)	8.980***
보통	2.9	0.43032	(5,170)	
부유	2.8	0.50362	(152)	

주: 1) 성역할 의식은 5점 척도로 구성된 5문항(여성이 전일제로 일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은 힘들어진다,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쁘다,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한다)의 총점을 더하여 5로 나눈 후 평균을 구하였음.; 2)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에 있어서 보수적인 경향을 가짐.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성역할 의식은 연령, 결혼상태 및 교육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의식 평균 점수는 2.9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64세 2.9점, 65세 이상 3.0점으로 고연령층 일수록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로는 이혼·별거·사별(3.0점)의 경우 유배우(2.9점) 또는 미혼(2.7점)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은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적이었으며 중학교 이하 3.0점, 고등학교 2.9점, 대학 이상 2.8점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비취업자에 비해 취업 중인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으며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65세이상, 이혼·별거·사별, 중학교 이하의 경우 가정 내 성역할 의식에서 보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33〉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성역할 의식

(단위: 점, 명)

특성	평균	표준편차	(분석대상수)	F(t)값
전체	2.9	0.42427	4,346	
성				
남성	2.9	0.42690	1,931	(0.749)
여성	2.9	0.42220	2,415	
연령				
20~29세	2.7	0.01910	525	30.361***
30~39세	2.8	0.01284	1,008	
40~49세	2.9	0.01359	972	
50~64세	2.9	0.01319	986	
65세 이상	3.0	0.05163	55	
결혼상태				
유배우	2.9	0.41390	3,035	86.065***
이혼·별거·사별	3.0	0.40478	485	
미혼	2.7	0.42887	82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0	0.01088	1,315	69.616***
고등학교	2.9	0.01074	1,556	
대학 이상	2.8	0.01123	1,475	
취업여부				
취업	2.9	0.41887	2,834	(4.055)
비취업	2.7	0.42960	119	

주: 성역할 의식은 5점 척도로 구성된 5문항(여성이 전일제로 일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은 힘들어진다,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쁘다,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가 구조득에 기여해야 한다)의 총점을 더하여 5로 나눈 후 평균을 구하였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전반적으로 65세 이상의 경우는 연령이 높기 때문에 성역할에 대한 보수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혼·별거·사별을 겪은 중산층이나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의 중산층의 경우는 성 역할의 개념이 인지되지 못하여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원만하고 평등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또는 부부평등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가족관계

소득계층별 가족관계 만족도는 소득이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할수록 높게 나타나 경제적인 안정성이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34〉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전체	1.7	4.5	21.1	59.5	13.3	100.0(5,996)		3.8	
소득계층									
저소득층	3.1	7.1	28.3	54.6	6.9	100.0(2,692)		3.6	
중산층	0.6	2.4	16.2	63.2	17.6	100.0(2,575)	433.978***	4.0	228.154***
고소득층	0.1	2.1	11.9	64.5	21.4	100.0(729)		4.1	
경제적 의식									
가난	3.3	7.4	28.7	52.4	8.1	100.0(2,762)		3.6	
보통	0.2	2.0	14.8	65.8	17.2	100.0(3,135)	498.339***	4.0	255.717***
부유	1.0	-	6.1	59.2	33.7	100.0(98)		4.2	

주: 1) * p<.05, ** p<.01, *** p<.001; 2) 평균이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가족관계 만족도는 거주지역, 소득수준, 성 및 취업여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도시지역의 경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농어촌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연령층일수록,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층일수록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5-35〉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전체	0.6	2.4	16.2	63.2	17.6	100.0(2,575)		4.0	
거주지역									
도시	0.7	2.7	16.5	61.6	18.5	100.0(2,092)	14.555**	4.0	(-0.267***)
농·어촌	0.4	1.2	14.5	70.2	13.7	100.0(483)		4.0	
소득수준							60.384***		13.426***
100-200만원 미만	1.8	2.7	19.5	64.7	11.3	100.0(550)		3.8	
200-300만원 미만	0.2	2.7	18.5	61.1	17.6	100.0(1,012)		3.9	
300-400만원 미만	0.5	2.0	11.3	66.7	19.5	100.0(655)		4.0	
400-500만원 미만	0.3	2.0	13.4	60.6	23.7	100.0(358)		4.1	
성별							19.117**		(4.147***)
남성	0.5	2.2	15.5	63.2	18.7	100.0(2,170)		4.0	
여성	1.2	3.7	19.8	63.5	11.9	100.0(405)		3.8	
연령									17.135***
20-29세	-	1.7	6.7	78.3	13.3	100.0(60)		4.0	
30-39세	0.6	2.8	8.7	61.0	26.8	100.0(462)		4.1	
40-49세	0.7	1.8	13.4	60.8	23.3	100.0(674)		4.0	
50-64세	0.7	2.9	20.3	63.2	13.0	100.0(749)		3.9	
65세 이상	0.5	2.2	20.6	66.0	10.6	100.0(630)		3.8	
결혼상태									31.719***
유배우	0.3	1.8	14.3	64.3	19.3	100.0(1,977)		4.0	
이혼·별거·사별	1.7	5.5	22.1	60.2	10.4	100.0(402)		3.7	
미혼	1.6	2.6	22.3	59.1	14.5	100.0(193)		3.8	
교육수준									41.040***
중학교 이하	1.1	3.1	21.0	64.8	10.0	100.0(816)		3.8	
고등학교	0.4	2.5	16.7	62.7	17.6	100.0(998)		4.0	
대학 이상	0.4	1.6	10.2	62.2	25.6	100.0(761)		4.1	
취업여부							24.239***		(4.704***)
취업	0.6	2.1	15.0	63.4	18.9	100.0(2,110)		4.0	
비취업	0.9	3.7	21.3	62.4	11.8	100.0(465)		3.8	

주: 1) * p<.05, ** p<.01, *** p<.001;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평균이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소득계층별로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를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았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관계만족도가 낮았다. 만족도 평균은 고소득층 5.7점, 중산층 5.3점, 저소득층 4.9점으로 분포를 반영한다. 경제적 의식수준별로도 소득계층과 유사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5-36〉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전체	9.5	22.7	67.8	100.0(7,954)		5.3	
소득계층					201.507***		557.827***
저소득층	13.7	27.6	58.7	100.0(2,562)		4.9	
중산층	8.4	21.9	69.7	100.0(4,105)		5.3	
고소득층	4.6	15.8	79.6	100.0(1,287)		5.7	
경제적 의식					322.810***		799.159***
가난	15.8	27.3	56.9	100.0(2,912)		4.9	
보통	6.0	20.2	73.8	100.0(4,872)		5.5	
부유	1.8	14.8	83.4	100.0(169)		6.0	

주: 1) 불만족은 매우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을 합한 비율임; 2) 만족은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을 합한 비율임; 3)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성, 연령,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 고용상태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반대로 고연령층일수록 불만족도가 높았다. 20~29세의 경우 평균 만족도는 5.6점인 것에 비해 50세 이상 응답자의 평균 만족도는 5.1점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층일수록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하였으며 대학이상의 경우 5.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부에서는 취업인 상태의 응답자가 비취업인 상태의 응답자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고용상태로는 상용근로자나 자영업자, 고용주가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임시근로자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학이상, 상용근로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타 응답자보다 높았지만 중학교이하, 미취업,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 및 고용상태 요인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여서, 배우자관계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및 고용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저학력·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중산층가족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37〉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χ^2	평균	F(t)값
전체	8.4	21.9	69.7	100.0(4,105)		5.3	
거주지역							
도시	8.8	21.4	69.7	100.0(3,269)	4.857	5.3	(-0.048***)
도농복합·농촌	6.7	23.4	69.9	100.0(836)		5.3	
성별							
남성	4.9	19.1	75.9	100.0(2,029)	93.490***	5.6	(3.108*)
여성	11.8	24.5	63.7	100.0(2,076)		5.1	
연령							
20~29세	6.6	18.0	75.4	100.0(61)	107.697***	5.6	29.591***
30~39세	6.0	13.2	80.8	100.0(906)		5.7	
40~49세	9.2	17.8	73.0	100.0(1,147)		5.4	
50~64세	9.9	28.7	61.4	100.0(1,162)		5.1	
65세 이상	11.3	30.2	58.5	100.0(53)		5.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2	28.9	60.9	100.0(1,348)	128.389***	5.0	87.248***
고등학교	8.9	22.2	68.9	100.0(1,659)		5.3	
대학 이상	5.5	12.7	81.9	100.0(1,098)		5.8	
취업여부							
취업	8.5	19.7	71.8	100.0(2,540)	18.468***	5.4	(3.450)
비취업	8.2	25.4	66.4	100.0(1,565)		5.2	
고용상태							
상용근로자	5.5	15.1	79.4	100.0(1,036)	113.894***	5.7	24.522***
임시근로자	15.6	19.4	65.0	100.0(463)		5.1	
일용근로자	12.6	27.2	60.2	100.0(294)		5.0	
고용주	9.2	20.7	70.1	100.0(87)		5.3	
자영업자	6.4	23.6	70.0	100.0(660)		5.3	
무급가족종사자	11.3	31.3	57.4	100.0(291)		5.0	

주: 1) 불만족은 매우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을 합한 비율임; 2) 만족은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을 합한 비율임; 3)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 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38 참조). 소득계층별로는 앞의 결과들과 유사하게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불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경제적 의식 수준에서도 유사하게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할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할수록 불만족도가 높았다. 두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38〉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전체	5.3	13.0	81.7	100.0(9,736)		5.7	
소득계층					225.220***		594.349***
저소득층	8.4	16.6	75.0	100.0(3,882)		5.4	
중산층	3.5	11.3	85.2	100.0(4,590)		5.8	
고소득층	2.4	8.2	89.4	100.0(1,264)		6.0	
경제적 의식					356.951***		738.262***
가난	9.0	17.6	73.4	100.0(4,106)		5.4	
보통	2.7	9.8	87.5	100.0(5,451)		5.9	
부유	2.8	4.5	92.7	100.0(178)		6.3	

주: 1) 불만족은 매우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을 합한 비율임; 2) 만족은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을 합한 비율임; 3)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며 고연령층일수록 불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50세 이상의 응답자에서는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5.7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일 경우 배우자와 이혼·사별·별거 중인 응답자보다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혼·별거·사별 중인 응답자 중 7.3%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대학이상의 경우 90.6%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다. 고용상태별로는 상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만족도가 높

았으며 임시근로자, 고용주에서 불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표 5-39〉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χ^2	평균	F(t)값
전체	3.5	11.3	85.2	100.0(4,590)		5.8	
거주지역							
도시	3.9	11.6	84.5	100.0(3,651)	8.848*	5.8	(-0.019***)
도농복합·농촌	2.1	10.1	87.8	100.0(939)		5.8	
연령					59.565***		43.081***
20~29세	1.9	9.6	88.5	100.0(52)		6.1	
30~39세	2.3	4.2	93.5	100.0(856)		6.3	
40~49세	3.4	10.4	86.2	100.0(1,191)		5.9	
50~64세	3.9	13.7	82.4	100.0(1,337)		5.7	
65세 이상	6.0	11.9	82.1	100.0(67)		5.7	
결혼상태					42.110***		(43.678***)
유배우	2.9	10.8	86.3	100.0(3,944)		5.9	
이혼·별거·사별	7.3	14.9	77.8	100.0(632)		5.5	
교육수준					47.328***		78.816***
중학교 이하	4.2	14.5	81.3	100.0(1,758)		5.6	
고등학교	3.5	10.8	85.7	100.0(1,754)		5.9	
대학 이상	2.4	7.0	90.6	100.0(1,078)		6.1	
고용상태					47.039***		15.717***
상용근로자	1.8	7.6	90.6	100.0(1,039)		6.1	
임시근로자	5.5	11.6	82.9	100.0(508)		5.8	
일용근로자	3.6	17.3	79.2	100.0(336)		5.7	
고용주	4.6	11.5	83.9	100.0(87)		5.8	
자영업자	3.5	13.1	83.4	100.0(734)		5.7	
무급가족종사자	3.0	9.9	87.1	100.0(303)		5.8	

주: 1) 불만족은 매우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을 합한 비율임; 2) 만족은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을 합한 비율임; 3)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전반적으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50세 이상, 이혼·별거·사별, 중학교이하,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로 나타났다. 고연령층 부모나 이혼·별거·사별을 겪은 부모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산층가족기능강화를 위해 부모자녀관계 제고를 위한 지원이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가족생활만족도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가족생활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계층별 가족생활만족도는 ‘만족’하는 비율은 고소득층이 82.4%, 중산층 76.2%, 저소득층이 61.5%로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불만족’으로 응답한 경우는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평균은 7점 만점에서 고소득층이 5.8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산층 5.5점, 저소득층 5.0점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의식수준별 가족생활만족도의 분포도 소득계층과 유사하였으며, 평균은 부유하다가 6.2점, 보통 5.6점, 가난하다가 4.9점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할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40〉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가족생활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전체	7.8	21.7	70.5	100.0(5,891)		5.3	
소득계층					204.239***		170.130***
저소득층	11.4	27.2	61.5	100.0(2,602)		5.0	
중산층	5.4	18.3	76.2	100.0(2,562)		5.5	
고소득층	3.3	14.3	82.4	100.0(727)		5.8	
경제적 의식					350.985***		253.464***
가난	13.3	27.3	59.4	100.0(2,677)		4.9	
보통	3.3	17.4	79.2	100.0(3,116)		5.6	
부유	-	7.2	92.8	100.0(97)		6.2	

주: 1) 불만족은 매우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을 합한 비율임; 2) 만족은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을 합한 비율임; 3) 가족생활만족도는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5-41〉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가족생활만족도

(단위: %, 명, 점)

특성	불만족	보통	만족	계(수)	χ^2	평균	F(t)값
전체	5.8	20.0	74.3	100.0(5,791)		5.5	
거주지역							
도시	6.4	19.8	73.8	100.0(4,676)	14.313**	5.4	(-1.784***)
도농복합·농촌	3.4	20.4	76.1	100.0(1,115)		5.5	
연령							
20~29세	6.9	19.5	73.6	100.0(663)	45.688***	5.4	15.350***
30~39세	4.2	16.7	79.1	100.0(1,288)		5.6	
40~49세	6.5	17.3	76.1	100.0(1,316)		5.5	
50~64세	6.4	24.5	69.1	100.0(1,367)		5.3	
65세 이상	9.0	19.4	71.6	100.0(67)		5.4	
결혼상태							
유배우	5.5	18.8	75.7	100.0(4,075)	21.163***	5.5	16.903***
이혼·별거·사별	8.0	24.2	67.8	100.0(652)		5.2	
미혼	5.6	21.6	72.9	100.0(1,061)		5.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3	24.1	69.6	100.0(1,803)	69.465***	5.3	54.802***
고등학교	6.4	21.3	72.3	100.0(2,089)		5.4	
대학 이상	4.6	14.6	80.8	100.0(1,899)		5.7	
취업여부							
취업	5.9	19.3	74.8	100.0(3,806)	14.070**	5.5	(4.130)
비취업	7.4	31.1	61.5	100.0(148)		5.1	
고용상태							
상용근로자	4.6	15.4	80.0	100.0(1,458)	53.528***	5.6	14.823***
임시근로자	7.8	22.1	70.0	100.0(741)		5.3	
일용근로자	9.2	24.5	66.4	100.0(437)		5.2	
고용주	7.6	19.6	72.8	100.0(92)		5.3	
자영업자	5.1	19.6	75.3	100.0(766)		5.4	
무급가족종사자	4.5	22.4	73.1	100.0(312)		5.4	

주: 1) 불만족은 매우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을 합한 비율임; 2) 만족은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을 합한 비율임; 3) 가족생활만족도는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가족생활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 거주자보다는 도농복합·농촌지역 거주자에서 가족생활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65세 이상 응답자 중 9.0%가 가족생활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사별일 경우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대학이상

고학력층의 가족생활만족도는 평균 5.7점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을 한 응답자가 비취업의 응답자보다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고용상태별로는 상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만족도가 낮았다(표 5-41 참조). 특히, 이혼·별거·사별을 경험한 응답자 또는 비취업자의 경우 가정생활만족도 평균이 각각 5.2점, 5.1점으로 타 응답자에 비해 훨씬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은 원인은 추후 심층 분석이 필요하지만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산층가족의 특성에 따라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달라야 할 것이다.

6. 중산층가족의 사회보장생활

가. 사회보험 가입수준

<표 5-42>는 소득계층별 사회보장수준을 보여준다. 연금가입률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크지 않아 저소득층이 97.5%,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99% 이상이였다. 그리고 연금 미가입이유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이었고, 고소득층은 연금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으로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여 저소득층은 78.4%에 불과하나 중산층은 98.1%, 고소득층은 99.6%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대부분이 가입한 상태이였다. 산재보험 가입률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여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가장 낮았다.

퇴직금 적용여부는 저소득층 25.3%만이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중산층은 56.2%, 고소득층은 78.6%로 소득계층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퇴직연금 가입여부는 저소득층은 전체가 미가입되었

고, 중산층은 4.8%, 고소득층은 11.9%가 가입하였다.

〈표 5-42〉 소득계층별 사회보장수준

(단위: %, 명)

특성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χ^2
연금가입여부					
가입	97.5	99.0	99.1	98.6	14.672**
미가입	2.5	1.0	0.9	1.4	
계(수)	100.0(1,076)	100.0(2,204)	100.0(700)	100.0(3,980)	
연금 미가입 이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85.2	50.0	-	62.3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	-	10.0	16.7	5.7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14.8	40.0	83.3	32.1	
기타	-	-	-	-	
모름	-	-	-	-	
계(수)	100.0(27)	100.0(20)	100.0(6)	100.0(53)	
건강보험가입여부					
가입	78.4	98.1	99.6	89.4	651.732***
미가입	21.6	1.9	0.4	10.6	
계(수)	100.0(2,800)	100.0(2,655)	100.0(751)	100.0(6,206)	
산재보험가입여부					
가입	40.9	70.3	83.5	67.1	208.797***
미가입	59.1	29.7	16.5	32.9	
계(수)	100.0(467)	100.0(1,374)	100.0(472)	100.0(2,313)	
고용보험가입여부					
가입	38.6	68.0	86.8	66.2	208.545***
미가입	61.4	32.0	13.2	33.8	
계(수)	100.0(381)	100.0(1,262)	100.0(403)	100.0(2,046)	
퇴직금 적용여부					
받을 것임	25.3	56.2	78.6	53.9	258.470***
받지 못할 것임	74.7	43.8	21.4	46.1	
계(수)	100.0(467)	100.0(1,341)	100.0(412)	100.0(2,220)	
퇴직연금 가입여부					
가입	-	4.8	11.9	5.1	64.717***
미가입	100.0	95.2	88.1	94.9	
계(수)	100.0(464)	100.0(1,326)	100.0(412)	100.0(2,202)	
개인연금 가입여부					
개인연금만 가입	0.8	6.6	14.8	5.0	1091.584***
종신보험만 가입	2.9	17.7	25.7	12.0	
개인연금, 종신보험 가입	0.3	2.7	10.9	2.6	
미가입	96.0	73.0	48.6	80.4	
계(수)	100.0(2,798)	100.0(2,653)	100.0(751)	100.0(6,202)	

주: 1) * p<0.5, ** p<.01, *** p<.001;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개인연금 가입여부는 저소득층은 4.0%가 가입상태이었으나 중산층은 27.0%, 고소득층은 51.4%가 가입된 상태이었으며, 이 중 개인연금과 종신보험을 모두 가입한 비율은 저소득층은 0.3%, 중산층 2.7%, 고소득층은 10.9%로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42 참조).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연금가입여부 및 연금 미가입 이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금가입률은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아 여성가구주의 가입률인 96.7%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나머지 특성별로는 모두 98%이상의 가입률을 보였다.

연금 미가입 이유는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농어촌지역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소득수준별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보다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가입필요성을 못 느껴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남성가구주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여성가구주는 가입필요성을 못 느껴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까지는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50세 이상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사별·이혼·별거는 가입필요성을 못 느껴서 인데 비해 미혼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가입필요성을 못 느껴서로 결혼상태별로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고등학교 이상은 가입필요성을 못 느껴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와 가입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가장 높았으며, 비취업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높았다.

〈표 5-43〉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연금가입여부 및 연금 미가입 이유

(단위: %, 명)

특성	연금가입여부				연금미가입 이유					
	가입	미가입	계(수)	χ^2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국민 연금에 대한 불신때문	가입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기타	모름	계(수)
전체	99.0	1.0	100.0(2,204)		50.0	10.0	40.0	-	-	100.0(20)
거주지역										
도시	99.1	0.9	100.0(1,814)		40.0	13.3	46.7	-	-	100.0(15)
농·어촌	98.7	1.3	100.0(390)		80.0	-	20.0	-	-	100.0(5)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98.9	1.1	100.0(375)		50.0	-	50.0	-	-	100.0(4)
200~300만원 미만	98.6	1.4	100.0(873)		54.5	9.1	36.4	-	-	100.0(11)
300~400만원 미만	99.7	0.3	100.0(620)		-	50.0	50.0	-	-	100.0(2)
400~500만원 미만	99.1	0.9	100.0(336)		66.7	-	33.3	-	-	100.0(3)
성별										
남성	99.4	0.6	100.0(1,934)		66.7	8.3	25.0	-	-	100.0(12)
여성	96.7	3.3	100.0(270)		25.0	12.5	62.5	-	-	100.0(8)
연령										
20~29세	98.1	4.8	100.0(52)		-	-	100.0	-	-	100.0(1)
30~39세	99.1	0.9	100.0(457)		25.0	25.0	50.0	-	-	100.0(4)
40~49세	99.2	0.8	100.0(643)		25.0	25.0	50.0	-	-	100.0(4)
50~64세	98.4	1.6	100.0(685)		72.7	-	27.3	-	-	100.0(11)
65세 이상	100.0	-	100.0(367)		-	-	-	-	-	-
결혼상태										
유배우	99.3	0.7	100.0(1,743)		66.7	8.3	25.0	-	-	100.0(12)
이혼·별거·사별	97.8	2.2	100.0(276)		33.3	-	66.7	-	-	100.0(6)
미혼	98.9	1.1	100.0(182)		-	50.0	50.0	-	-	100.0(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8.6	1.4	100.0(562)		75.0	12.5	12.5	-	-	100.0(8)
고등학교	99.0	1.0	100.0(900)	2.686	37.5	-	62.5	-	-	100.0(8)
대학 이상	99.5	0.5	100.0(742)		25.0	25.0	50.0	-	-	100.0(4)
취업여부										
취업	99.1	0.9	100.0(1,920)		47.1	5.9	47.1	-	-	100.0(17)
비취업	98.9	1.1	100.0(284)		66.7	33.3	-	-	-	100.0(3)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건강보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5-44 참조). 건강보험은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

보다 가입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가구주가 여성가구주 보다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와 미혼은 사별·이혼·별거보다 가입률이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비취업자 보다 취업자의 가입률이 높았다. 이들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산재보험 역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았고, 여성가구주 보다 남성가구주의 가입률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까지 높아지다가 40대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였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미혼이 사별·이혼·별거 보다 가입률이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았다. 이들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용보험은 도시지역 거주자의 가입률(97.5%)이 농어촌지역에 비해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았으며, 남성가구주가, 저연령층일수록 가입률이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와 미혼이 가입률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가입률이 높았다. 이들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퇴직금 받는 비율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가구주, 저연령층일수록, 미혼일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자인 경우 높았다. 퇴직연금 가입여부는 대부분(95.2%)이 미가입 상태이었으며, 교육수준을 제외한 타 특성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개인연금의 경우에도 미가입률이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남성가구주 보다는 여성가구주가, 연령이 높을수록, 유배우나 미혼 보다 사별·이혼·별거일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취업자일 경우 등에 미가입률이 더 높았다. 일부 가입한 경우는 종신보험, 개인연금, 개인연금 및 종신보험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표 5-44〉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3대보험 및 연금 가입여부

(단위: %, 명)

특성	건강보험 가입 여부				산재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계(수)	χ^2	가입	미가입	계(수)	χ^2	가입	미가입	계(수)	χ^2
전체	98.1	1.9	100.0(2,655)		70.3	29.7	100.0(1,374)		68.0	32.0	100.0(1,262)	
거주지역												
도시	98.2	1.8	100.0(2,160)	0.964	70.1	29.9	100.0(1,249)	0.410	97.5	32.5	100.0(1,144)	1.433
농·어촌	97.6	2.4	100.0(495)		72.8	27.2	100.0(125)		72.9	27.1	100.0(118)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96.1	3.9	100.0(559)	27.046***	62.4	37.6	100.0(197)	23.506***	62.4	37.6	100.0(173)	32.511***
200-300만원 미만	97.7	2.3	100.0(1,043)		66.0	34.0	100.0(544)		61.1	38.9	100.0(509)	
300-400만원 미만	99.4	0.6	100.0(687)		74.9	25.1	100.0(402)		73.1	26.9	100.0(372)	
400-500만원 미만	100.0	-	100.0(366)		79.2	20.8	100.0(231)		80.3	19.7	100.0(208)	
성별												
남성	98.8	1.2	100.0(2,248)	36.932***	73.4	26.6	100.0(1,205)	43.806***	70.9	29.1	100.0(1,099)	32.772***
여성	94.3	5.7	100.0(407)		48.5	51.5	100.0(169)		48.5	51.5	100.0(163)	
연령												
20-29세	100.0	-	100.0(61)	6.063	77.6	22.4	100.0(49)	42.633***	77.6	22.4	100.0(62)	47.143***
30-39세	99.2	0.8	100.0(476)		80.3	19.7	100.0(380)		77.8	22.2	100.0(553)	
40-49세	98.0	2.0	100.0(695)		68.7	31.3	100.0(463)		65.3	34.7	100.0(709)	
50-64세	97.4	2.6	100.0(776)		67.1	32.9	100.0(371)		64.5	35.5	100.0(611)	
65세 이상	98.1	1.9	100.0(647)		50.5	49.5	100.0(111)		35.8	64.2	100.0(11)	
결혼상태												
유배우	98.8	1.2	100.0(2,049)	37.243***	73.3	26.7	100.0(1,060)	45.505***	70.9	29.1	100.0(959)	35.305***
이혼·별거·사별	94.3	5.7	100.0(405)		46.7	53.3	100.0(152)		46.2	53.8	100.0(143)	
미혼	98.5	1.5	100.0(195)		72.7	27.3	100.0(161)		69.8	30.2	100.0(15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6.2	3.8	100.0(840)	27.468***	58.4	41.6	100.0(269)	38.425***	53.9	46.1	100.0(232)	50.975***
고등학교	98.5	1.5	100.0(1,029)		68.4	31.6	100.0(613)		64.6	35.4	100.0(568)	
대학 이상	99.6	0.4	100.0(786)		79.3	20.7	100.0(492)		79.2	20.8	100.0(462)	
취업여부												
취업	98.9	1.1	100.0(2,162)	37.784***	70.2	29.8	100.0(1,371)		67.9	32.1	100.0(1,260)	
비취업	94.7	5.3	100.0(492)		100.0	-	100.0(3)		100.0	-	100.0(2)	

〈표 5-44〉 계속

(단위: %, 명)

특성	퇴직금 적용여부				퇴직연금 가입여부				개인연금 가입여부					
	받은	받지 못함	계(수)	χ^2	가입	미가입	계(수)	χ^2	개인 연금	종신 보험	개인 연금+ 종신 보험	미가입	계(수)	χ^2
전체	56.2	43.8	100.0(1,341)		4.8	95.2	100.0(1,326)		6.6	17.7	2.7	73.0	100.0(2,653)	
거주지역														
도시	56.2	43.8	100.0(1,218)	0.026	5.0	95.0	100.0(1,205)	1.519	7.1	18.6	2.9	71.5	100.0(2,159)	13.652
농·어촌	56.9	43.1	100.0(123)		2.5	97.5	100.0(121)		4.7	14.0	1.8	79.6	100.0(494)	**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50.5	50.0	100.0(198)	37.114 ***	2.6	97.4	100.0(195)	5.568 ***	2.5	7.9	0.5	89.1	100.0(559)	193.562 ***
200-300만원 미만	49.2	50.8	100.0(541)		4.5	95.5	100.0(531)		5.4	15.3	1.9	77.4	100.0(1,043)	
300-400만원 미만	61.0	39.0	100.0(387)		4.7	95.3	100.0(385)		8.3	25.5	3.6	62.5	100.0(685)	
400-600만원 미만	71.2	28.8	100.0(215)		7.4	92.6	100.0(215)		13.4	24.9	6.3	55.5	100.0(366)	
성별														
남성	58.5	41.5	100.0(1,170)	18.619 ***	5.0	95.0	100.0(1,155)	1.448	6.9	18.9	2.9	71.3	100.0(2,246)	22.244 ***
여성	40.9	59.1	100.0(171)		2.9	97.1	100.0(171)		5.2	11.3	1.2	82.3	100.0(407)	
연령														
20-29세	71.4	28.6	100.0(62)	68.052 ***	2.1	97.9	100.0(47)	8.304 ***	4.9	18.0	1.6	75.4	100.0(61)	422.857 ***
30-39세	69.1	30.9	100.0(558)		6.5	93.5	100.0(369)		7.8	36.1	6.1	50.0	100.0(476)	
40-49세	56.4	43.6	100.0(720)		5.6	94.4	100.0(443)		10.8	25.2	4.5	59.6	100.0(695)	
50-64세	48.5	51.5	100.0(619)		3.1	96.9	100.0(356)		7.2	12.5	1.3	78.9	100.0(774)	
65세 이상	30.6	69.4	100.0(261)		1.8	98.2	100.0(111)		0.8	2.3	-	96.9	100.0(647)	
결혼상태														
유배우	58.4	41.6	100.0(1,025)	31.747 ***	5.1	94.9	100.0(1,016)	2.884	7.2	19.1	3.1	70.5	100.0(2,048)	38.738 ***
이혼·별거·사별	35.3	64.7	100.0(153)		2.0	98.0	100.0(151)		4.4	10.1	0.5	84.9	100.0(405)	
미혼	62.3	37.7	100.0(162)		5.1	94.9	100.0(158)		5.1	19.0	2.6	73.3	100.0(19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9.0	61.0	100.0(267)	82.359 ***	1.5	98.5	100.0(268)	15.706 ***	3.1	8.6	0.2	88.1	100.0(839)	201.454 ***
고등학교	51.8	48.2	100.0(597)		3.9	96.1	100.0(585)		8.0	17.2	2.6	72.2	100.0(1,028)	
대학 이상	71.5	28.5	100.0(477)		7.6	92.4	100.0(473)		8.7	28.1	5.3	57.9	100.0(786)	
취업여부														
취업	56.2	43.8	100.0(1,339)		4.8	95.2	100.0(1,324)		7.8	20.6	3.1	68.5	100.0(2,161)	119.013 ***
비취업	50.0	50.0	100.0(2)		-	100.0	100.0(2)		1.6	4.9	0.8	92.7	100.0(492)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01$, *** $p<0.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7. 중산층가족의 사회참여 생활

가.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먼저 소득계층별로는 중산층가족의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약 10%로 10명 중 1명에 해당되었으며 고소득층은 약 24%, 저소득층은 약 4%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사회참여 정도가 높았다. 경제적 의식수준별도 소득계층과 유사하게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5〉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여부

(단위: %, 명)

특성	하고 있다	하지 않는다	계(수)	χ^2
전체	9.9	90.1	100.0(12,412)	
소득계층				578.876***
저소득층	4.1	95.9	100.0(4,583)	
중산층	10.1	89.9	100.0(6,006)	
고소득층	24.1	75.9	100.0(1,823)	
경제적 의식				142.535***
가난	6.4	93.6	100.0(5,065)	
보통	12.2	87.8	100.0(7,042)	
부유	20.2	79.8	100.0(247)	

주: * p<0.5, ** p<0.1, *** p<0.01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여부는 소득,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및 고용상태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기부 및 자원봉사를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20~29세는 91.8%가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여 가장 저조하였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가 이혼·별거·사별 및 미혼에 비해 기부 및 자원봉사를 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부 및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반대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떨어졌다. 고용상태별로는 고용주(16.0%), 상용근로자(14.0%), 자영업자(10.0%) 순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이 높았으며, ‘하지 않는다’는 무급가족종사자(93.4%), 일용근로자(92.4%), 임시근로자(91.7%)의 경우 높았다.

〈표 5-46〉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여부

(단위: %, 명)

특성	하고 있다	하지 않는다	계(수)	χ^2
전체	10.1	89.9	100.0(6,006)	
거주지역				
도시	10.0	90.0	100.0(4,851)	0.158
농·어촌	10.4	89.6	100.0(1,155)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8.8	91.2	100.0(556)	37.818***
200-300만원 미만	10.4	89.6	100.0(1,034)	
300-400만원 미만	12.4	87.6	100.0(679)	
400-500만원 미만	21.4	78.6	100.0(365)	
연령				
20-29세	8.2	91.8	100.0(717)	18.807**
30-39세	10.1	89.9	100.0(1,335)	
40-49세	14.0	86.0	100.0(1,358)	
50-64세	10.9	89.1	100.0(1,406)	
65세 이상	11.8	88.2	100.0(68)	
결혼상태				
유배우	11.0	89.0	100.0(4,176)	12.282**
이혼·별거·사별	7.5	92.5	100.0(677)	
미혼	8.3	91.7	100.0(1,15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8	95.2	100.0(1,856)	93.831***
고등학교	10.8	89.2	100.0(2,158)	
대학 이상	14.2	85.8	100.0(1,992)	
고용상태				
상용근로자	14.0	86.0	100.0(1,508)	34.516***
임시근로자	8.3	91.7	100.0(771)	
일용근로자	7.6	92.4	100.0(459)	
고용주	16.0	84.0	100.0(94)	
자영업자	10.0	90.0	100.0(779)	
무급가족종사자	6.6	93.4	100.0(316)	

주: * p<0.5, ** p<.01, *** p<.001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 중에서도 고연령층, 유배우자, 대학이상의 고학력소지자, 고용주 및 상용근로자일 경우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저연령층, 미혼 및 이혼·별거·사별,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소지자, 임시·일용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일 경우는 참여율이 낮았다. 이는 고용 및 사회·경제적 상태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경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 사회적 관계 및 여가생활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수준이 높고 주관적인 경제적 의식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타 집단에 비해 비해 사회적 친분관계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47〉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전체	1.8	7.2	28.1	53.7	9.2	100.0(5,997)		3.6	
소득계층									
저소득층	3.3	10.5	32.9	46.8	6.5	100.0(2,693)	273.984***	3.4	138.374***
중산층	0.6	4.8	25.4	58.6	10.7	100.0(2,575)		3.7	
고소득층	0.3	3.7	20.3	62.1	13.6	100.0(729)		3.9	
경제적 의식									
가난	3.4	11.3	34.4	44.3	6.5	100.0(2,764)	429.777***	3.4	206.679***
보통	0.4	3.8	23.1	61.8	10.8	100.0(3,134)		3.8	
부유	-	2.0	10.2	59.2	28.6	100.0(98)		4.1	

주: 1) * p<.05, ** p<.01, *** p<.001; 2) 평균이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거주지역, 소득수준,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 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수준 별로는 대학이상의 고학력층, 취업상태별로는 취업계층이 비취업계층보다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표 5-48〉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전체	0.6	4.8	25.4	58.6	10.7	100.0(2,575)		3.7	
거주지역									
도시	0.7	5.3	26.1	87.8	10.1	100.0(2,092)	16.443**	3.7	(-4.240***)
농·어촌	-	2.7	22.2	61.7	13.5	100.0(483)		3.9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0.7	5.4	25.6	58.8	9.4	100.0(551)	27.981**	3.7	6.987***
200-300만원 미만	0.6	5.9	27.7	56.6	9.2	100.0(1,011)		3.7	
300-400만원 미만	0.8	3.5	21.4	60.5	13.9	100.0(655)		3.8	
400-500만원 미만	-	2.8	25.7	60.3	11.2	100.0(358)		3.8	
성별									
남성	0.6	4.7	24.9	58.6	11.3	100.0(2,169)	5.798	3.8	(2.043)
여성	0.7	5.2	27.8	58.6	7.6	100.0(406)		3.7	
연령									
20-29세	-	3.3	18.3	73.3	5.0	100.0(60)		3.8	2.910*
30-39세	0.6	3.0	23.6	62.1	10.6	100.0(462)		3.8	
40-49세	0.3	5.2	23.5	60.8	10.3	100.0(674)		3.8	
50-64세	0.9	5.3	30.4	52.7	10.5	100.0(749)		3.7	
65세 이상	0.5	5.1	23.3	59.1	12.0	100.0(630)		3.8	
결혼상태									
유배우	0.4	4.6	25.1	58.8	11.2	100.0(1,976)	13.406	3.7	3.267*
이혼·별거·사별	1.5	5.5	28.5	55.1	9.4	100.0(403)		3.7	
미혼	0.5	5.2	21.8	63.7	8.8	100.0(193)		3.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7	6.6	29.0	53.9	9.8	100.0(817)	29.998***	3.7	10.028***
고등학교	0.6	4.3	25.8	57.7	11.6	100.0(997)		3.8	
대학 이상	0.4	3.4	20.9	64.8	10.5	100.0(761)		3.8	
취업여부									
취업	0.4	4.1	24.9	59.7	10.9	100.0(2,109)	20.347***	3.8	(3.266***)
비취업	1.3	7.9	27.3	53.4	10.1	100.0(466)		3.6	

주: 1) 무응답 제외; 2) * $p<0.05$, ** $p<0.01$, *** $p<0.001$; 3) 평균이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4)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소득수준이 높거나 주관적인 경제적 의식이 부유하다고 생각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층과 부유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은 대체로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친 만족한다는 비율이 각각 46.6%와 57.2%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49〉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가구주의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전체	6.2	26.1	41.1	23.8	2.7	100.0(5,993)		2.9	
소득계층									
저소득층	8.7	30.5	42.9	16.5	1.4	100.0(2,691)	315.049***	2.7	147.284***
중산층	4.7	24.4	41.0	26.8	3.0	100.0(2,574)		3.0	
고소득층	2.5	16.2	34.8	40.4	6.2	100.0(728)		3.3	
경제적 의식									
가난	10.1	34.6	41.1	13.3	0.9	100.0(2,762)	607.126***	2.6	317.634***
보통	2.9	19.2	41.5	32.5	3.9	100.0(3,132)		3.2	
부유	3.1	9.2	30.6	43.9	13.3	100.0(98)		3.6	

주: 1) * p<.05, ** p<.01, *** p<.001; 2) 평균이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5-50〉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가구주의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χ^2	평균	F(값)
전체	4.7	24.4	41.0	26.8	3.0	100.0(2,574)		3.0	
거주지역									
도시	5.2	25.1	40.3	26.4	3.0	100.0(2,093)	9.191	3.0	(-2.324)
농·어촌	2.7	21.6	44.1	28.7	2.9	100.0(481)		3.1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3.1	25.3	42.2	27.6	1.8	100.0(550)	53.618***	3.0	11.920***
200~300만원 미만	5.9	27.9	41.5	22.5	2.2	100.0(1,011)		2.9	
300~400만원 미만	6.0	20.9	38.2	30.4	4.6	100.0(655)		3.1	
400~500만원 미만	1.7	19.8	43.0	31.6	3.9	100.0(358)		3.2	
성별									
남성	4.7	23.7	40.9	27.4	3.2	100.0(2,169)	6.676	3.0	(2.169)
여성	4.7	28.1	41.5	24.0	1.7	100.0(405)		2.9	
연령									
20~29세	3.3	13.3	43.3	38.3	1.7	100.0(60)	33.257**	3.2	5.312***
30~39세	5.2	23.4	40.3	29.0	2.2	100.0(462)		3.0	
40~49세	5.5	24.6	39.9	26.1	3.9	100.0(674)		3.0	
50~64세	6.0	26.8	42.1	22.7	2.4	100.0(749)		2.9	
65세 이상	2.2	23.2	41.3	29.9	3.3	100.0(629)		3.1	
결혼상태									
유배우	4.7	24.3	41.0	26.9	3.1	100.0(1,976)	18.989*	3.0	8.398***
이혼·별거·사별	5.5	28.6	41.5	22.6	1.7	100.0(402)		2.9	
미혼	3.6	16.6	40.9	35.2	3.6	100.0(193)		3.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3	26.9	45.3	22.0	1.6	100.0(815)	54.624***	2.9	12.836***
고등학교	4.7	26.5	40.5	24.6	3.7	100.0(998)		3.0	
대학 이상	5.3	19.2	37.2	35.0	3.4	100.0(761)		3.1	
취업여부									
취업	4.7	24.4	41.3	26.7	2.8	100.0(2,109)	0.870	3.0	(-0.363)
비취업	4.7	24.7	39.6	27.5	3.4	100.0(465)		3.0	

주: 1) * p<.05, ** p<.01, *** p<.001; 2) 평균이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여가생활 만족도는 소득수준, 연령, 결혼상태 및 교육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가생활만족도는 농어촌지역 거주자,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남성은 여성보다 여가생활만족도가 높았고, 대체로 연령이 적을수록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결혼상태가 미혼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생활 만족도가 높았으며, 취업자보다 비취업자가 높았다. 여가생활 불만족는 도시지역 거주자, 대체로 소득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50~64세 연령층, 결혼상태가 이혼·별거·사별로 해체상태인 경우 여가생활 불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소지자, 비취업자인 경우 불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제2절 중산층가족의 문제점 진단

1. 중산층가족의 갈등 및 문제해결 방식

가. 중산층가족의 갈등 및 어려움

중산층가족의 갈등문제는 소득계층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저소득층은 가구원의 건강(53.6%), 경제적 어려움(47.4%)이 중산층보다 심각하였으며, 고소득층은 각각 10.3%와 21.5%로 타 소득계층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경제적 의식수준별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구원의 건강,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등으로 인한 가족갈등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1〉 소득계층 및 경제수준별 가족 갈등문제(중복응답)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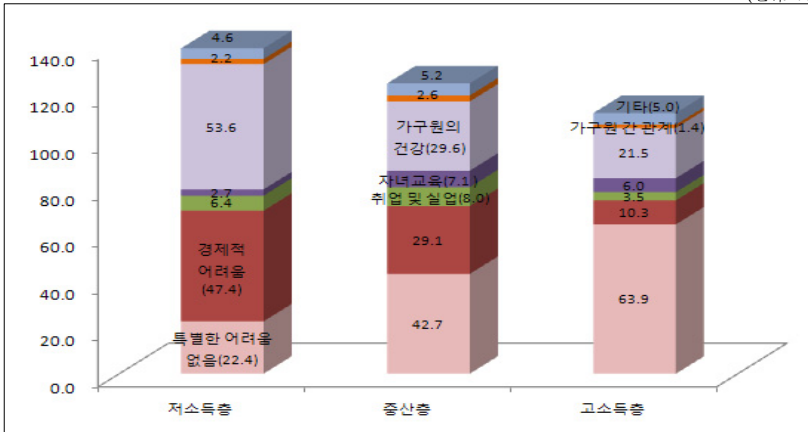
구분	소득계층			경제적 생활수준			전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가난	보통	부유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22.4	42.7	63.9	19.6	50.0	74.8	36.4
경제적 어려움	47.4	29.1	10.3	55.7	17.7	1.9	34.9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6.4	8.0	3.5	8.5	5.5	1.0	6.8
자녀교육 혹은 행동	2.7	7.1	6.0	4.4	5.5	5.8	5.0
가구원의 건강	53.6	29.6	21.5	48.1	31.4	16.5	38.8
가구원의 알코올	0.8	1.2	0.4	1.2	0.6	1.9	0.9
가족 내 폭력	0.1	0.1	-	0.1	0.1	-	0.1
가구원간 관계	2.2	2.6	1.4	2.4	2.2	1.0	2.3
가구원의 가출	0.4	0.3	-	0.3	0.3	-	0.3
주거관련 문제	1.6	1.4	1.6	1.9	1.2	1.0	1.5
기타	1.7	2.2	3.0	1.8	2.4	1.0	2.1
계수	100.0 (2,783)	100.0 (2,640)	100.0 (739)	100.0 (2,796)	100.0 (3,176)	100.0 (103)	100.0 (6,162)
χ^2	713.416***						

주: 1)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중복응답임; 2) * p<.05, ** p<.01, *** p<.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5-4〕 소득계층별 가족 갈등문제(중복 응답)

(단위: %)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중산층가족의 갈등문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은 경제적 어려움을, 도농복합·농촌지역은 가구원 건강이 가족갈등 문제로 지적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구형태로는 단독가구는 가구원의

건강, 모부자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소년소녀가장가구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원의 건강을 가족갈등문제로 지적하였다.

〈표 5-52〉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가족 갈등문제

(단위: %, 명)

특성	①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⑤ 가구원의 건강 ⑨ 가구원의 가출 ② 경제적 어려움 ⑥ 가구원의 알코올 ⑩ 주거관련 문제 ③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⑦ 가족 내 폭력 ⑪ 기타 ④ 자녀교육 혹은 행동 ⑧ 가구원간 관계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전체	42.7	29.1	8.0	7.1	29.6	1.2	0.1	2.6	0.3	1.4	2.2	100.0(2,640)
거주지역												
도시	44.0	29.6	8.6	7.2	26.9	1.1	0.1	2.7	0.3	1.7	2.1	100.0(2,147)
도농복합·농촌	36.9	27.0	5.3	6.7	41.4	1.4	-	2.0	0.6	-	2.4	100.0(493)
가구형태												
단독	52.0	23.2	7.4	0.7	28.4	1.1	-	2.6	-	1.5	3.3	100.0(271)
모부자	27.0	51.4	2.7	21.6	21.6	2.7	-	-	-	2.7	-	100.0(37)
소년소녀가장	33.3	66.7	-	-	66.7	-	-	-	-	-	-	100.0(3)
기타	41.8	29.4	8.1	7.6	29.8	1.2	0.1	2.6	0.4	1.3	2.1	100.0(2,329)
가구소득 수준												
100~200만원 미만	35.6	28.0	9.6	0.9	43.8	1.1	-	2.0	0.4	0.5	3.3	100.0(553)
200~300만원 미만	38.8	35.1	9.2	7.4	28.8	1.2	0.1	3.0	0.3	1.8	2.1	100.0(1,038)
300~400만원 미만	46.9	26.7	7.2	9.6	23.8	1.0	0.1	2.3	0.1	1.2	3.2	100.0(685)
400~500만원 미만	56.3	18.1	3.3	10.7	21.2	1.6	-	2.7	0.8	1.1	1.4	100.0(364)
경제적 생활수준												
가난	27.5	49.9	11.5	7.0	33.5	2.0	0.1	2.8	0.2	1.9	1.9	100.0(904)
보통	51.0	18.1	6.3	7.1	26.9	0.6	0.1	2.5	0.4	1.1	2.3	100.0(1,675)
부유	59.4	6.3	-	6.3	25.0	6.3	-	-	-	-	3.1	100.0(32)
성별												
남성	43.4	28.4	7.3	7.7	28.9	1.1	-	2.4	0.3	1.4	2.0	100.0(2,236)
여성	38.6	32.9	11.4	3.7	33.4	1.5	0.2	3.5	0.5	1.2	3.2	100.0(404)
연령												
20~29세	74.1	15.5	10.3	3.4	3.4	-	-	3.4	-	1.7	5.2	100.0(58)
30~39세	56.5	24.3	6.4	6.2	16.4	0.9	-	2.6	-	2.3	1.3	100.0(469)
40~49세	44.5	34.9	6.6	15.0	16.9	1.4	0.1	3.3	0.6	1.3	2.2	100.0(694)
50~64세	37.2	34.0	11.9	5.7	31.1	1.4	0.1	2.7	0.3	1.2	1.4	100.0(774)
65세 이상	34.3	21.7	5.6	1.2	53.3	0.9	-	1.6	0.5	0.9	3.7	100.0(645)
결혼상태												
유배우	43.5	28.2	7.0	7.8	29.7	1.2	0.1	2.2	0.3	1.4	1.5	100.0(2,037)
이혼·별거·사별	31.9	37.5	10.1	6.9	33.8	1.5	-	4.2	0.5	0.7	3.2	100.0(405)
미혼	57.3	9.4	31.7	2.3	21.9	5.9	22.7	1.6	13.5	13.0	16.5	100.0(19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2.5	29.2	8.8	2.7	46.9	1.6	-	2.3	0.5	1.1	2.6	100.0(838)
고등학교	41.0	32.7	9.3	9.3	24.1	1.3	0.2	3.1	0.1	1.5	2.2	100.0(1,022)
대학 이상	55.8	24.2	5.3	8.8	18.2	0.6	-	2.2	0.5	1.5	1.8	100.0(780)
취업여부												
취업	45.3	29.4	7.1	8.2	24.8	1.1	-	2.7	0.3	1.4	2.0	100.0(2,149)
비취업	31.2	28.0	11.6	2.2	50.2	1.4	0.2	1.8	0.4	1.0	3.1	100.0(490)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가구소득별로는 100~20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미만은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고, 이외에도 100~200만원 미만은 가구원의 건강문제를 응답하였다. 그리고 300~400만원 미만과 400~500만원 미만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다. 경제적 생활수준이 가난한 경우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남성·여성 가구주 모두 가구원의 건강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여성가구주의 경우 그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는 특별한 어려움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체로 30~64세 연령층은 경제적 문제를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결혼상태별로 보면, 유배우는 가구원의 건강을, 사별·이혼·별거는 경제적 어려움을, 그리고 미혼은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을 가족갈등문제로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아 결혼상태별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는 가구원의 건강을, 고등학교 이상은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하였으며, 가구주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비취업자는 가구원의 건강을 갈등문제로 응답하였다.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로 중산층가족의 어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계층별로는 중산층가족은 자녀보육·교육비용부담(33.1%)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주택마련, 생계, 보건의료비용 부담 순으로 높았다. 저소득층은 생계(34.9%)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다음은 보건의료 비용부담, 자녀보육·교육비용 부담 등이었다. 고소득층은 자녀보육·교육비용부담(30.9%)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보건의료비용 부담, 주택마련 등으로 높아서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인 사회적 지위가 상층인 경우 자녀보육·교육 비용부담, 생계 순으로, 중층인 경우는 자녀보육·교육 비용부담, 주택마련 순으로, 그리고 하층인 경우에는 생계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고 그 다음으로 자녀보육·교육 비용부담을 지적하여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가장 큰 어려움에 차이를 보였다.

〈표 5-53〉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귀택의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어려움 없음	생계	주택 마련	보건의 료비용 부담	자녀보 육·교 육비용 부담	구직 문제	노인 돌봄	기타	계(수)	χ^2
전체	17.8	16.7	12.9	12.5	29.4	5.5	4.1	1.1	100.0(1,498)	
소득계층										
저소득층	12.2	34.9	8.1	24.4	12.2	4.1	4.1	-	100.0(172)	109.971***
중산층	13.1	12.9	17.9	12.5	33.1	4.4	5.8	0.4	100.0(481)	
고소득층	27.2	8.0	10.5	11.7	30.9	6.2	5.6	-	100.0(162)	
주관적 사회적 지위										
상	31.9	14.9	-	10.6	38.3	4.3	-	-	100.0(47)	132.595***
중	21.0	9.7	11.8	11.5	34.6	6.0	4.3	1.2	100.0(890)	
하	11.6	28.0	15.7	14.3	20.5	4.8	4.1	1.1	100.0(561)	

주: * p<.05, ** p<.01, ***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여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농어촌지역 모두 자녀보육·교육 비용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도시지역이 높았다. 가구형태별로는 1인가구는 생계를, 부부가구는 보건의료 비용부담을, 그리고 부부+자녀고 구성된 가구와 기타가구는 자녀보육·교육 비용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가구원수에 따라서도 가장 큰 어려움에 차이를 보여 1인 가구는 생계를, 2인 가구는 보건의료 비용부담을, 3인 이상 가구는 자녀보육·교육 비용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으나 이들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수준별로는 모두 자녀보육·교육 비용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율도 높아졌다. 이외에 100만원 미만은 보건의료 비용부담을, 100~200만원 미만은 생계어려움을, 200~300만원 이상은 주택마련이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

여성가구주의 경우에도 남성가구주 보다 자녀보육·교육 비용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는 자녀보육·교육 비용부담을, 50대는 생계를, 65세 이상은 보건의료 비용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자녀보육·교육 비용부담을, 사별·이혼·별거는 보건의료 비용부담을, 미혼은 주택마련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표 5-54〉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귀댁의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특성	어려움 없음	생계	주택 마련	보건의료 비용 부담	자녀보육·교육비용 부담	구직 문제	노인 돌봄	기타	계(수)	χ^2
전체	13.1	12.9	17.9	12.5	33.1	4.4	5.8	0.4	100.0(481)	
거주지역										
도시	12.9	12.2	19.7	11.3	34.3	4.0	5.2	0.5	100.0(426)	
농·어촌	14.5	18.2	3.6	21.8	23.6	7.3	10.9	-	100.0(55)	
가구형태										
1인 가구	19.0	33.3	14.3	14.3	4.8	4.8	9.5	-	100.0(21)	
부부가구	21.8	16.4	14.5	29.1	3.6	9.1	3.6	1.8	100.0(55)	
부부+자녀	11.5	10.9	19.1	10.3	40.6	3.2	4.1	0.3	100.0(340)	
기타가구	12.3	13.8	15.4	9.2	27.7	6.2	15.4	-	100.0(65)	
가구원수										
1인	19.0	33.3	14.3	14.3	4.8	4.8	9.5	-	100.0(21)	
2인	22.4	16.4	16.4	23.9	6.0	7.5	6.0	1.5	100.0(67)	
3인 이상	11.2	11.2	18.3	10.4	39.2	3.8	5.6	0.3	100.0(393)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7.3	11.5	9.6	19.2	34.6	1.9	5.8	-	100.0(52)	
100-200만원 미만	12.9	14.2	17.8	12.3	31.4	4.9	6.1	0.3	100.0(309)	
200-300만원 미만	11.7	10.0	21.7	10.0	36.7	4.2	5.0	0.8	100.0(120)	
성별										
남성	15.3	11.8	19.6	12.5	28.2	5.9	6.3	0.4	100.0(255)	10.314
여성	10.6	14.2	15.9	12.4	38.5	2.7	5.3	0.4	100.0(226)	
연령										
20~29세	9.1	13.0	26.0	9.1	31.2	7.8	3.9	-	100.0(77)	
30~39세	9.4	14.1	24.2	5.5	42.2	2.3	2.3	-	100.0(128)	
40~49세	8.3	6.6	19.0	7.4	51.2	2.5	4.1	0.8	100.0(121)	
50~64세	18.9	19.8	10.8	18.0	16.2	4.5	11.7	-	100.0(111)	
65세 이상	29.5	9.1	-	38.6	2.3	9.1	9.1	2.3	100.0(44)	
결혼상태										
유배우	13.4	10.8	15.3	13.4	37.5	3.4	5.7	0.6	100.0(352)	
이혼·별거·사별	20.0	20.0	10.0	25.0	15.0	-	10.0	-	100.0(20)	
미혼	11.0	18.3	27.5	7.3	22.0	8.3	5.5	-	100.0(10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7.4	14.5	7.2	31.9	13.0	4.3	11.6	-	100.0(69)	
고등학교	16.1	16.7	15.5	8.9	32.7	4.2	5.4	0.6	100.0(168)	
대학 이상	9.9	9.9	22.3	9.1	39.3	4.5	4.5	0.4	100.0(242)	
취업여부										
취업	14.8	9.6	12.9	14.4	35.9	6.7	5.7	-	100.0(209)	17.187*
비취업	11.8	15.4	21.7	11.0	30.9	2.6	5.9	0.7	100.0(272)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는 보건의료 비용부담을, 고등학교 이상은 자녀보육·교육 비용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와 비취업자 모두 자녀보육·교육 비용부담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취업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나. 중산층가족의 문제해결방식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문제해결방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계층별로는 중산층가족의 문제해결방식은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가 3.7점으로 가장 높았고, 폭력에 근접할수록 점수가 낮아져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였고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비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경제적 의식수준별로도 소득계층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5-55〉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문제해결방식

(단위: 점, 명)

구분	소득계층			경제적 의식수준			전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가난	보통	부유	
항상 침착하게 문제 논의	3.5	3.7	3.8	3.4	3.8	3.9	3.6
F값	56.409***			99.810***			
의견충돌이 잦음	1.9	2.0	1.8	2.1	1.9	1.7	2.0
F값	7.555**			41.104***			
자주 서로를 비난	1.4	1.4	1.3	1.5	1.3	1.3	1.4
F값	6.450**			36.417***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짐	1.3	1.3	1.2	1.4	1.2	1.2	1.3
F값	9.950***			27.115***			
가끔 서로를 때림	1.2	1.1	1.1	1.2	1.1	1.1	1.1
F값	8.780***			18.035***			
(분석대상수)	(2,675)	(2,643)	(749)	(2,693)	(3,175)	(103)	(6,067)

주: 1) * p<.05, ** p<.01, *** p<.001; 2) 문제해결방식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정도가 높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5-56〉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문제해결방식

(단위: 점, 명)

특성	① 항상 침착하게 문제 논의 ② 의견충돌이 잦음 ③ 자주 서로를 비난 ④ 가끔 너무 화가나서 물건을 집어 던짐 ⑤ 가끔 서로를 때림					(분석대상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3.7	2.0	1.4	1.3	1.1	(2,643)
거주지역						
도시	3.7	2.0	1.4	1.3	1.1	(2,151)
도농복합·농촌	3.7	1.9	1.3	1.3	1.1	(492)
t값	2.076***	-0.150	-1.991**	-1.862**	-4.714***	
가구형태						
단독	3.7	1.6	1.2	1.2	1.1	(264)
모부자	3.4	1.9	1.4	1.5	1.3	(37)
소년소녀가장	4.3	1.7	1.0	1.3	1.0	(3)
기타	3.7	2.0	1.4	1.3	1.1	(2,339)
F값	2.154	2.692*	0.445	1.128	3.181*	
가구소득 수준						
100~200만원 미만	3.7	1.8	1.3	1.3	1.1	(551)
200~300만원 미만	3.6	2.1	1.4	1.3	1.2	(1,040)
300~400만원 미만	3.7	2.0	1.4	1.3	1.1	(687)
400~500만원 미만	3.7	2.0	1.3	1.3	1.1	(365)
F값	1.210	8.028***	2.980*	0.992	0.329	
경제적 생활수준						
가난	3.5	2.2	1.5	1.4	1.2	(900)
보통	3.8	1.9	1.3	1.3	1.1	(1,682)
부유	3.8	1.7	1.3	1.3	1.2	(32)
F값	24.052***	8.549***	7.902***	3.962*	2.061	
가구의 성별						
남성	3.7	2.0	1.4	1.3	1.1	(2,240)
여성	3.7	1.8	1.4	1.3	1.2	(403)
t값	-0.975	-0.957	0.303	-0.572	1.229**	
가구의 연령						
20~29세	3.6	1.8	1.3	1.2	1.1	(61)
30~39세	3.7	2.0	1.3	1.3	1.1	(474)
40~49세	3.7	2.1	1.4	1.3	1.1	(692)
50~64세	3.6	2.0	1.4	1.3	1.2	(770)
65세 이상	3.7	1.8	1.3	1.2	1.1	(646)
F값	1.146	1.204	3.684**	1.335	1.817	
가구의 결혼상태						
유배우	3.7	2.1	1.4	1.3	1.1	(2,048)
이혼·별거·사별	3.6	1.8	1.3	1.3	1.2	(400)
미혼	3.7	1.7	1.2	1.1	1.1	(189)
F값	1.533	20.059***	3.920*	5.595**	1.484	
가구의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6	2.0	1.4	1.3	1.2	(834)
고등학교	3.6	2.1	1.4	1.3	1.2	(1,026)
대학 이상	3.8	1.9	1.3	1.2	1.1	(783)
F값	10.500***	3.599*	3.766*	0.635	1.359	
가구의 취업여부						
취업	3.7	2.0	1.4	1.3	1.1	(2,154)
비취업	3.7	1.9	1.3	1.2	1.1	(488)
t값	-0.103	2.609	1.639**	3.548***	0.907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3) 문제해결방식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정도가 높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문제해결방식은 전반적으로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하는 방식이 평균 점수가 3.6~4.3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평균 점수가 1.1~2.2점으로 낮았다.

2. 배우자 폭력 경험

2008년 1년간 배우자로부터 언어폭력 또는 신체폭력을 당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7,999명 중 언어폭력, 신체폭력 위협, 신체폭력을 1번이라도 경험한 비율(폭력발생율)을 조사한 결과 24.9%로 나타났다. 이 중 언어폭력을 당한 경우는 24.7%, 신체폭력 위협을 받은 경우는 4.1%, 실제 신체 폭력을 당한 경우는 1.8%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중산층가족의 폭력발생율은 25.7%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저소득층 25.4%, 고소득층 21.3% 순이었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위협에서도 중산층이 가장 높았으나 실제로 신체폭력을 당한 비율은 저소득층이 약간 높았다.

〈표 5-57〉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배우자 폭력 발생율

특성	폭력발생율	언어폭력		신체폭력위협		신체폭력		계(수)
		유경험	무경험	유경험	무경험	유경험	무경험	
전체	24.9	24.7	75.3	4.1	95.9	1.8	98.2	100.0(7,999)
소득계층								
저소득층	25.4	25.1	74.9	4.2	95.8	1.9	98.1	100.0(2,591)
중산층	25.7	25.4	74.6	4.4	95.6	1.7	98.3	100.0(4,130)
고소득층	21.3	21.3	78.8	2.9	97.1	1.7	98.3	100.0(1,278)
χ^2		9.610**		5.920		0.132		
경제적 의식								
가난	31.6	30.1	69.9	5.4	94.6	2.7	97.3	100.0(2,940)
보통	23.1	21.8	78.2	3.4	96.6	1.3	98.7	100.0(4,890)
부유	18.2	13.0	87.0	1.2	98.8	-	100.0	100.0(169)
χ^2		79.883***		21.977***		23.806***		

주: 1) 폭력발생율은 7,999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언어폭력은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문항으로 신체폭력 위협은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가하였다”문항으로 신체폭력은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문항으로 분석함; 3) 폭력발생율은 언어폭력, 신체폭력 위협, 신체폭력 모두 포함하여 폭력발생율을 계산함; 4)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반면 경제적인 의식수준별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에서 폭력발생율이 31.6%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23.1%,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8.2% 순으로 폭력 발생이 높았다. 경제적인 의식수준이 낮을수록 모욕적·악의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신체폭력의 위협을 받거나 실제로 신체폭력을 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5-57 참조).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보면, 폭력발생율은 도시보다는 도농복합·농촌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49세에서 폭력발생율이 가장 높았으나 실제 신체 폭력을 당한 경우는 30~49세에서 많았다. 결혼상태별로 보면 폭력발생율은 유배우에서 많았지만 실제 신체폭력을 당한 경우는 이혼·별거·사별에서 5.9%로 높게 나타났다. 폭력발생율이 이혼·별거·사별을 한 응답자 보다 유배우 응답자에게서 많이 나타난 것은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폭력경험을 물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서 배우자로부터의 폭력경험이 적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교육수준으로는 중졸이하, 고등의 경우는 대학이상 보다 폭력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를 보면 비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배우자폭력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비취업자 중 배우자로부터 신체폭력을 당하는 경우는 4.2%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에서는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에게서 폭력발생율이 높았으며 일용근로자일 경우 배우자로부터 신체폭력을 당하는 경우는 4.4%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배우자로부터의 신체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이혼·별거·사별, 비취업자, 일용근로자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 변수가 폭력발생율과 연관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지만 고용특성이 배우자폭력과 관련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생활만족도와 부부생활만족도에서도 고용형태, 직종이 영향을 미쳤다.

〈표 5-58〉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배우자 폭력 발생율

(단위: %, 명)

특성	폭력 발생율	언어폭력		신체폭력 위험		신체폭력		계(수)
		유경험	무경험	유경험	무경험	유경험	무경험	
전체	25.7	25.4	74.6	4.4	95.6	1.7	98.3	100.0(4,130)
거주지역								
도시	25.5	25.2	74.8	4.6	95.4	1.8	98.2	100.0(3,289)
도농복합·농촌	26.7	26.2	73.8	3.8	96.2	1.5	98.5	100.0(841)
χ^2		0.301		0.977		0.238		
성별								
남성	24.1	23.8	76.2	4.1	65.9	1.6	98.4	100.0(2,035)
여성	27.3	27.0	73.0	4.8	95.2	1.9	98.1	100.0(2,095)
χ^2		5.690*		1.176		0.347		
연령								
20~29세	21.4	21.4	78.6	2.9	97.1	1.4	98.6	100.0(70)
30~39세	25.5	25.0	75.0	5.3	94.7	2.2	97.8	100.0(904)
40~49세	29.0	28.7	71.3	5.4	94.6	2.6	97.4	100.0(1,146)
50~64세	27.8	27.5	72.5	4.6	95.4	1.6	98.4	100.0(1,170)
65세 이상	20.8	18.9	81.1	3.8	96.2	1.9	98.1	100.0(53)
χ^2		6.515						
결혼상태								
유배우	25.9	25.6	74.4	4.4	95.6	1.7	98.3	100.0(4,055)
이혼·별거·사별	21.6	21.6	78.4	5.9	94.1	5.9	94.1	100.0(51)
χ^2		.42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6.8	26.5	73.5	3.7	96.3	1.2	98.8	100.0(1,357)
고등학교	27.6	27.4	72.6	5.5	94.5	2.3	97.7	100.0(1,669)
대학 이상	21.6	21.2	78.8	3.7	96.3	1.6	98.4	100.0(1,104)
χ^2		14.545**		7.774*		5.378		
취업여부								
취업	26.5	26.2	73.8	4.8	95.2	2.0	98.0	100.0(2,837)
비취업	31.0	31.0	69.0	5.6	94.4	4.2	95.8	100.0(71)
χ^2		0.809						
고용상태								
상용근로자	23.6	23.4	76.6	3.3	96.7	1.5	98.5	100.0(1,034)
임시근로자	32.6	32.2	67.8	6.2	93.8	1.9	98.1	100.0(466)
일용근로자	30.4	30.4	69.6	8.1	91.9	4.4	95.6	100.0(296)
고용주	20.7	20.5	79.5	8.0	92.0	3.4	96.6	100.0(87)
자영업자	25.3	24.9	75.1	3.6	96.4	2.0	98.0	100.0(664)
무급가족종사자	27.6	27.2	72.8	6.6	93.4	1.4	98.6	100.0(290)
χ^2		17.776**		20.200**		11.697*		

주: 1) 폭력발생율은 4,13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언어폭력은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문항으로 신체 폭력 위험은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신체적 폭력의 위험을 가하였다”문항으로 신체폭력은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문항으로 분석함; 3) 폭력발생율은 언어폭력, 신체폭력 위험, 신체폭력 모두 포함하여 폭력발생율을 계산함; 4)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배우자폭력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점은 ‘부부관계’에서 ‘고용특성’이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산층가족 중에서 실직자 및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부관계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3. 중산층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가. 현 경제생활 수준 및 미래 전망

소득계층별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2007년 말 기준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1%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보통’이거나 ‘부유’하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으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매우 가난’과 ‘가난’을 합친 비율이 64.6%에 이르는 등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경제적으로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동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59〉 소득계층별 경제수준 인지도(2007년 말 기준)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가난	가난	보통	부유	매우 부유	계수	평균	F값
전체	8.9	36.0	53.1	1.9	-	100.0(6,109)	2.5	
저소득층	15.4	49.2	34.5	0.8	-	100.0(2,736)	2.2	533.642***
중산층	4.4	29.6	64.6	1.4	-	100.0(2,626)	2.6	
고소득층	0.7	10.4	81.0	7.9	-	100.0(747)	3.0	

주: 1) * $p<0.5$, ** $p<0.1$, *** $p<0.01$;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2007년말 기준의 경제수준 인지도를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보면, 거주지역별로는 가난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 보다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남성이가구주 보다는 여성가구주가,

50~64세 연령층이, 사별·이혼·별거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취업자 보다는 비취업자가 가난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5-60〉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경제수준 인지도(2007년 말 기준)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가난	가난	보통	부유	매우 부유	계(수)	평균	F(t)값
전체	4.4	29.6	64.6	1.4	-	100.0(2,626)	2.6	
거주지역								
도시	4.8	30.6	63.2	1.3	-	100.0(2,140)	2.6	(-3.847***)
농·어촌	2.5	25.1	70.6	1.9	-	100.0(486)	2.7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5.9	31.1	61.0	2.0	-	100.0(556)	2.6	21.171***
200~300만원 미만	5.5	33.9	60.1	0.5	-	100.0(1,031)	2.6	
300~400만원 미만	3.6	27.1	67.6	1.6	0.1	100.0(675)	2.7	
400~500만원 미만	0.3	19.8	77.2	2.7	-	100.0(364)	2.8	
성별								
남성	4.1	28.3	66.2	1.4	-	100.0(2,220)	2.7	(3.388***)
여성	5.9	36.5	55.9	1.7	-	100.0(406)	2.5	
연령								
20~29세	5.0	18.3	73.3	3.3	-	100.0(60)	2.8	9.888***
30~39세	2.5	26.2	70.4	0.8	-	100.0(473)	2.7	
40~49세	4.3	30.4	63.6	1.4	0.1	100.0(690)	2.6	
50~64세	6.4	35.2	57.3	1.0	-	100.0(766)	2.5	
65세 이상	3.3	25.4	69.2	2.0	-	100.0(637)	2.7	
결혼상태								
유배우	3.6	27.8	67.1	1.5	-	100.0(2,025)	2.7	22.508**
이혼·별거·사별	8.4	39.5	50.6	1.5	-	100.0(403)	2.5	
미혼	4.6	27.7	67.2	0.5	-	100.0(195)	2.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7	34.3	58.5	1.6	-	100.0(829)	2.6	17.960***
고등학교	4.0	31.8	63.0	1.2	-	100.0(1,018)	2.6	
대학 이상	3.5	21.7	73.2	1.5	0.1	100.0(779)	2.7	
취업여부								
취업	3.7	29.5	65.5	1.2	-	100.0(2,152)	2.6	(2.058***)
비취업	18.8	35.6	45.8	-	-	100.0(59)	2.6	

주: 1) * p<0.5, ** p<0.1, *** p<.001;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5점 만점의 평균 점수를 볼 때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도시지역은 2.6점인데 비해 농어촌지역은 2.7점이었고, 3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은 2.6점이나 300~400만원 미만과 400~500만원 미만은 각각 2.7점과 2.8점이었다. 또한 남성가구주는 2.7점, 여성가구주 2.5점 그리고 20대는 2.8점이나 50~64세는 2.5점이었고, 유배우는 2.7점, 사별·이혼·별거는 2.5점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하가 2.6점이나 대학이상은 2.7점이었으며, 취업여부별로는 평균 인지도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8년 말 기준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2.3%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가난’과 ‘가난’을 합친 비율은 46.0%로 2007년 말보다 경제적인 생활수준이 조금은 더 나빠졌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 나타났으며, 고소득층의 경우 오히려 ‘매우 가난’과 ‘가난’을 합친 비율은 다소 낮아지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소폭 증가하였다.

〈표 5-61〉 소득계층별 경제수준 인지도(2008년 말 기준)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가난	가난	보통	부유	매우 부유	계수	평균	F값
전체	8.9	37.1	52.3	1.7	-	100.0(6,109)	2.5	
저소득층	15.6	51.1	32.7	0.6	-	100.0(2,736)	2.2	596.764 ***
중산층	4.1	30.4	64.3	1.2	-	100.0(2,626)	2.6	
고소득층	0.9	9.5	82.1	7.5	-	100.0(747)	3.0	

주: 1) * $p<0.5$, ** $p<.01$, *** $p<.001$;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경제수준 인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2008년에도 2007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대부분이 ‘보통’ 수준의 경제생활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전년보다는 ‘가난’해진 것으로 인식한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조금은 ‘부유’해진 것으로 인지하였다. 그러나

2007년과 2008년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교육수준 또는 취업여부별로도 2007년과 2008년 모두 경제적 생활 수준 인지도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다만 학력이 높은 경우 경제적 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62〉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경제수준 인지도(2008년 말 기준)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가난	가난	보통	부유	매우 부유	계수	평균	F(t)값
전체	4.1	30.4	64.3	1.2	-	100.0(2,626)	2.6	
거주지역								
도시	4.4	31.5	62.9	1.1	-	100.0(2,140)	2.6	(-3.490***)
농·어촌	2.9	25.1	70.6	1.4	-	100.0(486)	2.7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5.8	32.4	60.3	1.6	-	100.0(556)	2.6	16.807***
200~300만원 미만	4.7	35.1	59.4	0.9	-	100.0(1,031)	2.6	
300~400만원 미만	3.6	27.1	68.0	1.2	0.1	100.0(675)	2.7	
400~500만원 미만	1.1	19.8	77.7	1.4	-	100.0(364)	2.8	
성별								
남성	3.8	29.4	65.8	0.9	-	100.0(2,220)	2.6	(2.438***)
여성	5.7	35.5	56.4	2.5	-	100.0(406)	2.6	
연령								
20~29세	-	16.7	78.3	5.0	-	100.0(60)	2.9	(14.076***)
30~39세	1.9	25.6	71.2	1.3	-	100.0(473)	2.7	
40~49세	4.3	31.2	63.5	0.9	0.1	100.0(690)	2.6	
50~64세	6.4	35.9	57.2	0.5	-	100.0(766)	2.5	
65세 이상	3.1	27.6	67.3	1.9	-	100.0(637)	2.7	
결혼상태								
유배우	3.3	28.9	66.8	1.0	-	100.0(2,025)	2.7	21.780***
이혼·별거·사별	8.7	39.2	50.4	1.7	-	100.0(403)	2.5	
미혼	3.6	27.2	67.2	2.1	-	100.0(195)	2.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4	35.2	58.0	1.3	-	100.0(829)	2.6	16.992***
고등학교	3.8	31.9	63.1	1.2	-	100.0(1,018)	2.6	
대학 이상	3.1	23.1	72.7	1.0	0.1	100.0(779)	2.7	
취업여부								
취업	3.3	29.8	65.8	1.0	-	100.0(2,152)	2.7	(3.280***)
비취업	7.8	32.7	57.4	2.1	-	100.0(474)	2.5	

주: 1) * p<0.5, ** p<.01, *** p<.001;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2013년 이후의 향후 경제적 생활상태의 변화를 예상한 정도에 있어서는 ‘부유’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13.0%, ‘매우 부유’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0.9%로 증가하였다. 반면 ‘보통’일 것이라는 응답은 49.3%로 감소하였고, ‘매우 가난’과 ‘가난’해질 것이라는 응답도 36.8%로 감소하여 미래의 경제생활에 대해 낙관하는 방향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였으며, 경제적 생활상태의 변화에 대한 양극화 양상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은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63〉 소득계층별 경제적 생활상태 변화 예상 정도(2013년 이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가난	가난	보통	부유	매우 부유	계(수)	χ^2	평균	F값
전체	9.7	27.1	49.3	13.0	0.9	100.0(6,109)		2.7	
저소득층	18.5	40.1	36.6	4.6	0.1	100.0(2,736)		2.3	
중산층	3.0	19.3	59.4	17.1	1.3	100.0(2,626)	1281.370***	2.9	736.644***
고소득층	0.7	7.1	60.5	29.7	2.0	100.0(747)		3.3	

주: * $p<.05$, ** $p<.01$, *** $p<.001$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경제수준 인지도는 소득수준, 성, 연령 및 결혼 상태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도시지역에서 앞으로 2013년 이후 더 ‘부유’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의 경우 앞으로 ‘부유’해질 것으로 예상한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난’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 연령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소득수준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 중고령층은 은퇴 등으로 점차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그 원인을 고려할 수 있다.

〈표 5-64〉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경제수준 인지도(2013년 이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가난	가난	보통	부유	매우 부유	계(수)	χ^2	평균	F(t)값
전체	3.0	19.3	59.4	17.1	1.3	100.0(2,626)		2.9	
거주지역									
도시	3.3	19.1	58.8	17.5	1.3	100.0(2,140)	5.702	2.9	(0.098)
농·어촌	1.6	20.2	61.7	15.4	1.0	100.0(486)		2.9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4.9	27.9	55.6	10.8	0.9	100.0(556)	90.373***	2.8	27.587***
200-300만원 미만	3.6	19.9	58.6	17.4	0.6	100.0(1,031)		2.9	
300-400만원 미만	1.9	15.4	61.9	18.7	2.1	100.0(675)		3.0	
400-500만원 미만	0.5	11.5	62.6	23.1	2.2	100.0(364)		3.2	
성별									
남성	2.9	18.3	60.2	17.3	1.3	100.0(2,220)	9.532*	3.0	(2.289**)
여성	3.7	24.4	54.7	16.3	1.0	100.0(406)		2.9	
연령									
20-29세	-	8.3	65.0	21.7	5.0	100.0(60)	226.842***	3.2	54.568***
30-39세	0.4	7.8	61.9	27.9	1.9	100.0(473)		3.2	
40-49세	1.3	14.2	63.2	18.8	2.5	100.0(690)		3.1	
50-64세	4.8	23.0	54.8	16.8	0.5	100.0(766)		2.9	
65세 이상	4.9	29.8	58.2	7.1	-	100.0(637)		2.7	
결혼상태									
유배우	2.7	18.0	60.8	17.3	1.2	100(2,025)	56.109***	3.0	21.280***
이혼·별거·사별	5.7	28.3	51.4	14.4	0.2	100.0(403)		2.8	
미혼	0.5	13.8	61.5	20.5	3.6	100.0(195)		3.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2	30.0	53.9	10.6	0.2	100.0(829)	175.424***	2.7	86.793***
고등학교	2.6	17.7	61.9	16.7	1.2	100.0(1,018)		3.0	
대학 이상	1.3	9.9	61.9	24.5	2.4	100.0(779)		3.2	
취업여부									
취업	2.2	17.7	60.0	18.7	1.4	100.0(2,152)	62.216***	3.0	(7.368***)
비취업	6.8	26.4	56.3	9.9	0.6	100.0(474)		2.7	

주: * p<.05, ** p<.01, *** p<.001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나. 중산층가족의 저축 및 부채생활

소득계층별 저축규모는 중산층가족이 약 2,400만원으로 저소득층의 약 866만원에 비해 2.8배 정도 많았으며, 고소득층의 약 8,615만원에 비해 27.9%에 불과하였다. 부채규모는 중산층가족이 약 2,897만원, 저소득층은 약 1,609만원, 고소득층은 약 7,291만원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저축보다 부채의 규모가 더 크고, 고소득층은 부채보다 저축규모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소득계층별 부채형태는 중산층은 금융기관 대출이 가장 많았고, 전세 대출금이 그 다음 순이었으나 저소득층은 금융기관 대출, 일반사채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고소득층은 전세보증금이 가장 많았다.

평균 이자규모는 중산층이 가장 적었으며, 고소득층은 평균 이자규모가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5-65〉 소득계층별 저축·부채규모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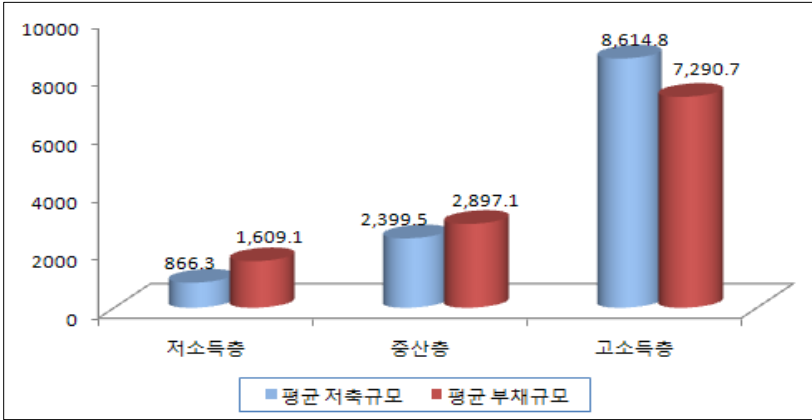
(단위: 만원, %, 명)

특성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F_{stat}/χ^2
평균 저축규모	866.3	2399.5	8614.8	2459.9	728.711***
평균 부채규모	1609.1	2897.1	7290.7	2847.7	26.938***
(분석대상수)	(2,800)	(2,655)	(751)	(6,206)	
부채형태					
금융기관대출	36.5	61.1	47.8	50.7	
일반사채	28.3	3.9	1.7	9.4	
카드빚	4.4	2.8	0.3	2.4	
전세 보증금	22.4	27.1	48.9	32.6	
기타 부채	8.4	5.1	1.3	4.8	
계(수)	100.0(2,800)	100.0(2,655)	100.0(751)	100.0(6,206)	
평균 이자규모	392.6	121.8	1690.6	433.8	2.243
(분석대상수)	(2,800)	(2,655)	(751)	(6,206)	

주: 1) * $p<0.5$, ** $p<0.1$, *** $p<0.01$;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5-5] 소득계층별 저축·부채규모 및 형태

(단위: 만원)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저축 및 부채규모 그리고 부채형태 및 이자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5-66 참조). 소득수준별로는 저축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부채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도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모든 소득수준에서 저축보다는 부채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저축규모와 부채규모 모두 여성가구주 보다 남성이 가구주가 컸으며, 남성이 가구주는 저축보다 부채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저축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부채규모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30~64세 연령층은 저축보다 부채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저축규모는 미혼보다는 유배우나 사별·이혼·별거상태의 기혼자들의 저축이 더 많았으며, 기혼 중에서는 사별·이혼·별거 보다는 유배우의 저축이 더 많았다. 부채 역시 유배우가 가장 많았으며, 사별·이혼·별거와 함께 저축보다 부채가 더 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저축과 부채 모두 고학력층일수록 많아졌으나 중학교 이하 보다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은 저축보다 부채가 더 많았다. 취업여부별로는 저축은 비취업자가 취업자 보다 더 많으나 부채는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더 많았다.

〈표 5-66〉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저축규모, 부채규모, 형태 및 이자규모

(단위: 만원, %)

특성	저축규모		부채규모		부채형태					이자규모	
	평균	F(t)값	평균	F(t)값	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	기타부채	평균	F(t)값
전체	2399.5		2897.1		61.1	3.9	2.8	27.1	5.1	121.8	
거주지역											
도시	2370.4	(-0.758)	2988.0	(1.750)	57.4	4.3	2.8	30.1	5.3	127.4	(1.653)
농·어촌	2526.5		2500.2		80.3	2.0	2.5	11.4	3.8	97.1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2027.8	31092 ***	2045.6	16.537 ***	54.9	3.6	3.9	33.1	4.5	59.7	12.629 ***
200~300만원 미만	1860.1		2473.8		62.8	3.6	4.0	24.5	5.0	104.9	
300~400만원 미만	2582.2		3506.1		61.8	3.0	1.8	26.9	6.5	169.8	
400~500만원 미만	4161.5		4260.6		61.6	6.2	1.5	27.2	3.6	174.4	
성별											
남성	2456.4	(1.670)	3095.3	(5.251 ***)	62.3	4.0	2.5	26.3	4.9	133.6	(6.938 ***)
여성	2085.0		1802.1		49.4	3.5	5.1	34.7	7.4	56.0	
연령											
20~29세	1099.3	7.119 ***	706.1	4.079 **	76.8	7.0	0.4	-	15.9	32.3	5.064 ***
30~39세	1886.7		2460.4		66.7	1.5	2.7	24.3	4.8	155.9	
40~49세	2262.7		3318.7		66.7	3.3	4.0	19.0	6.9	149.3	
50~64세	2431.5		2932.0		61.4	6.4	2.4	24.4	5.4	118.1	
65세 이상	3007.9		2930.2		50.1	3.1	1.8	42.5	2.4	79.8	
결혼상태											
유배우	2512.2	5.398 **	3181.9	13.179 ***	62.2	4.1	2.3	26.4	5.0	138.4	9.214 ***
이혼·별거·사별	2153.6		2229.0		54.7	2.4	5.0	31.9	6.3	64.0	
미혼	1579.8		1340.4		54.0	4.8	7.8	28.4	5.0	68.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38.6	3.003	2216.2	9.743 ***	53.4	3.5	3.3	34.8	5.0	64.5	17.734 ***
고등학교	2301.6		3087.8		62.1	4.7	3.4	24.5	5.3	131.2	
대학 이상	2699.6		3375.1		65.3	3.4	1.6	24.8	4.9	170.7	
취업여부											
취업	2233.3	(-3.186 ***)	2917.7	(0.380)	63.7	3.8	3.0	23.9	5.7	129.9	(2.378)
비취업	3129.7		2811.5		49.3	4.8	2.0	41.5	2.6	86.3	

주: 1) 중산층가족 2,655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 p<0.5, ** p<0.1, *** p<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 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부채형태는 전체 소득수준에서 금융기관 대출, 전세보증금 순으로 많았다. 이 중 전세보증금은 2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33.1%)을

차지하였으며, 400~500만원 미만의 고소득층은 금융기관 대출 외 일반사채로 인한 부채비율이 타 소득층에 비해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구주는 여성가구주 보다 금융기관 대출이, 여성가구주는 남성가구주 보다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부채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금융기관 대출 비율이 높았고, 65세 이상은 타 연령층에 비해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부채가 더 많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는 금융기관 대출이 사별·이혼·별거나 미혼보다 많았고, 사별·이혼·별거는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부채가 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층일수록 금융기관 대출이 많았고, 저학력층일수록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5-66 참조).

〈표 5-67〉 소득계층별 주거비출처 및 주거관련 부채

(단위: %, 만원, 명)

특성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주거비출처 ¹⁾				
자기돈(상속포함)	92.8	95.7	98.0	94.8
무상으로 받음	8.5	5.4	3.3	6.4
부모·형제·친척·친구에게 빌림	5.2	4.1	2.7	4.3
금융기관에서 빌림	18.4	34.8	39.1	28.6
사채	0.5	0.3	0.1	0.4
(분석대상수)	(2,192)	(2,409)	(706)	(5,307)
평균 주택관련 부채 규모	336.2	954.2	2105.6	851.9
F값	73.567***			
주거관련 대출상환 연체 횟수				
연체한적 없음	99.0	99.0	99.9	99.1
1회	0.1	0.2	-	0.2
2~3회	0.2	0.5	0.1	0.3
4회 이상	0.6	0.3	-	0.4
계(수)	100.0(2,192)	100.0(2,410)	100.0(706)	100.0(5,308)

주: 1) 주거비출처는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계산한 값임; 2) * p<0.5, ** p<0.1, *** p<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X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소득계층별 주거비 출처는 대부분 본인의 돈이었으나 특히 고소득층 일수록 본인 돈의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경우로 이 또한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의 비율이 높았다. 무상으로 받거나 부모·형제·친척·친구 등 사적인 관계망을 이용하는 경우는 고소득층 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높았다.

평균 주택관련 부채규모는 저소득층이 336.2만원, 중산층 954.2만원, 그리고 고소득층은 2,105.6만원으로 고소득층의 주택관련 부채가 가장 많았다. 이는 고소득층의 경우 저소득층 보다 주택규모가 크고 그에 따른 집값 또한 비싸서 그만큼 주택관련 부채도 많은 것이라 하겠다.

주거관련 대출상환 연체회수는 대다수가 연체한 적이 없었으며 연체한 비율은 1% 미만으로 이는 소득계층별로도 동일하였다.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주거비 출처는 본인 돈은 도시지역 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높은 비율이었고, 그 외 금융기관에서 빌림, 무상, 부모·형제·친구 등에게 빌리는 경우 등은 농어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의 비율이 더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비를 본인 돈으로 직접 충당한 경우가 많았고,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부모·형제·친구 등으로부터 차용한 경우도 타 소득수준 보다 높았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본인의 돈으로 충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 외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는 남성가구주가, 무상인 경우는 여성가구주가 더 높은 비율을 보여 성별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는 본인 돈으로 충당한 경우는 72.1%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이었으며,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그러나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는 타 연령층보다 높았고, 고연령층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5-68〉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주거비출처 및 주거관련 부채

(단위: %, 명, 만원)

특성	주거비출처 ¹⁾						주거관련 부채규모		주거관련 대출상환 연체횟수				
	자기 돈	무상	부모·형제·친구 등에게 빌림	금융기관에 빌림	사채	(분석 대상수)	평균	F(t)값	연체한적 없음	1회	2~3회	4회 이상	계(수)
전체	95.7	5.4	4.1	34.8	0.3	(2,409)	954.2		99.0	0.2	0.5	0.3	100.0(2,410)
거주지역													
도시	95.2	6.2	4.3	36.4	0.4	(1,984)	1061.0	(6.862 ***)	98.8	0.3	0.6	0.3	100.0(1,985)
농·어촌	98.1	1.9	3.1	27.1	-	(425)	454.1		99.5	-	-	0.5	100.0(425)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93.5	7.5	2.7	20.5	0.4	(479)	333.4		99.4	-	0.4	0.2	100.0(480)
200~300만원 미만	94.9	5.5	7.9	33.0	0.1	(957)	772.6	26.277 ***	98.9	0.1	0.5	0.5	100.0(957)
300~400만원 미만	97.3	4.6	4.6	42.3	0.5	(634)	1321.6		98.6	0.5	0.6	0.3	100.0(634)
400~500만원 미만	98.2	3.8	2.9	46.0	0.3	(339)	1660.6		99.4	0.3	0.3	-	100.0(339)
성별													
남성	96.6	4.4	3.7	37.1	0.3	(2,056)	1024.5	(3.704 ***)	99.0	0.2	0.4	0.4	100.0(2,057)
여성	96.0	11.3	5.9	21.2	-	(353)	544.5		98.6	0.3	1.1	-	100.0(353)
연령													
20~29세	72.1	27.9	7.0	14.0	-	(43)	437.7		100.0	-	-	-	100.0(43)
30~39세	91.7	11.3	5.6	37.3	-	(408)	1285.2	17.179 ***	99.3	-	0.7	-	100.0(409)
40~49세	97.3	4.8	4.1	41.5	-	(627)	1464.5		98.7	0.5	0.5	0.3	100.0(627)
50~64세	96.8	3.2	4.9	34.5	0.4	(740)	804.6		98.5	0.3	0.7	0.5	100.0(740)
65세 이상	97.3	3.2	1.7	27.9	0.7	(591)	408.3		99.5	-	0.2	0.3	100.0(591)
결혼상태													
유배우	96.6	4.4	3.9	38.3	0.4	(1,903)	1083.2	12.432 ***	98.9	0.2	0.5	0.4	100.0(1,904)
이혼·별거·사별	94.2	7.2	3.2	22.2	-	(347)	442.1		99.1	0.3	0.6	-	100.0(347)
미혼	87.6	15.0	7.8	19.0	-	(153)	516.8		99.3	-	0.7	-	100.0(15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96.8	3.6	3.5	29.8	0.5	(773)	493.2	29.185 ***	99.0	0.1	0.5	0.4	100.0(773)
고등학교	96.1	4.6	4.3	35.6	0.1	(952)	951.8		98.9	0.2	0.4	0.4	100.0(952)
대학 이상	94.0	8.6	4.4	39.3	0.3	(684)	1477.1		99.0	0.3	0.6	0.1	100.0(685)
취업여부													
취업	96.1	5.0	4.5	36.5	0.2	(1974)	1054.8	(5.711 ***)	98.9	0.3	0.5	0.3	100.0(1,975)
비취업	93.8	7.4	2.3	27.0	0.7	(434)	498.6		99.1	-	0.5	0.5	100.0(434)

주: 1) 주거비출처는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계산한 값임; 2) * p<0.5, ** p<0.1, *** p<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X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결혼상태별로는 주거비를 본인의 돈으로 충당한 경우는 유배우, 이혼·별거·사별, 미혼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도 유배우가 가장 많았다. 미혼의 경우 무상인 비율이 유배우나 이혼·별거·사별 보다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의 돈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점차 낮아졌으며, 그 외 금융기관에서 빌리거나 무상으로 또는 부모·형제·친구 등에게서 빌린 경우는 고학력층일수록 높은 비율이었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가 비취업자 보다 본인 돈으로 충당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주거관련 부채규모는 도시지역(1,061만원)이 농어촌지역(454만원)의 2.3배 정도였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도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 가구주보다 남성가구주가 약 2배 정도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20~40대가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가, 고학력층일수록, 그리고 취업자가 주거 관련 부채가 더 많았다. 주거관련 대출상환 연체횟수는 98% 이상이 연체한 적 없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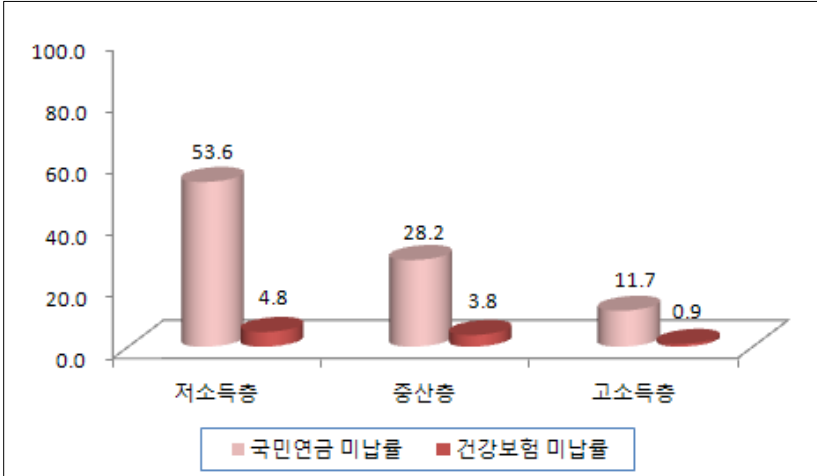
4. 사회보험료 미납생활 및 효과성

가. 사회보험료 미납

중산층가족의 사회보장의 불건전성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미납수준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우선 소득계층별 국민연금의 미납수준은 저소득층은 53.6%, 중산층 28.2%, 고소득층 11.7%로 소득계층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5-6] 소득계층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납율

(단위: %)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미납유형은 소득계층별로 납부예외자 비율이 각각 높으나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납부예외 사유로는 생활곤란, 실직·휴직·사업중단이었고 납부예외기간은 11.2~11.3개월로 소득계층별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미납이유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나 고소득층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평균 미납기간은 저소득층 10.2개월, 중산층 10.6개월인데 비해 고소득층은 10.9개월로 소득계층별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중산층가족의 사회보장의 불건전성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미납수준은 각각 28.2%와 3.8%이었고, 평균 미납기간은 5.2~10.6개월이었으며, 미납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과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불신 등 유용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9〉 소득계층별 국민연금 미납실태

(단위: %, 명, 개월)

특성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χ^2
국민연금납부 여부					223.662***
납부함	46.4	71.8	88.3	70.0	
납부하지 않음	53.6	28.2	11.7	30.0	
계(수)	100.0(522)	100.0(1,583)	100.0(515)	100.0(2,620)	
미납유형					10.289**
납부예외자	91.8	85.9	78.3	87.4	
보험료 미납	8.2	14.1	21.7	12.6	
계(수)	100.0(280)	100.0(447)	100.0(60)	100.0(787)	
납부예외 사유					
실직·휴직·사업중단	35.8	27.7	25.5	30.6	
3개월 이상 입원	0.8	0.5	2.1	0.7	
생활곤란	62.6	71.0	68.1	67.7	
학업(재학)	0.4	0.3	-	0.3	
기타(자연재해·교도소 수감 등)	0.4	0.5	4.3	0.7	
납부예외 기간					
3개월 이하	4.3	4.9	2.2	4.5	
4~6개월	3.9	2.1	6.5	3.1	
7~9개월	2.7	1.6	-	1.9	
10~12개월	89.1	91.4	91.3	90.5	
계(수)	100.0(257)	100.0(383)	100.0(47)	100.0(687)	
평균	11.2	11.3	11.3	11.2	
F값	0.145				
미납이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92.6	67.7	30.8	69.5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	7.4	29.2	61.5	27.6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걱정 없음	-	3.1	7.7	2.9	
기타	-	-	-	-	
모름	-	-	-	-	
미납기간					
3개월 이하	11.1	7.7	-	7.6	
4~6개월	7.4	7.7	15.4	8.6	
7~9개월	7.4	4.6	-	4.8	
10~12개월	74.1	80.0	84.6	79.0	
계(수)	100.0(27)	100.0(65)	100.0(13)	100.0(105)	
평균	10.2	10.6	10.9	10.5	
F값	0.296				

주: 1) * $p < 0.5$, ** $p < 0.1$, *** $p < 0.001$;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5-70>은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국민연금 미납실태를 살펴본 결과이다. 소득수준별 국민연금 미납수준을 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미납률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가구주 보다 여성가구주의 미납률이 더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사별의 미납수준(48.5%)이 유배우나 미혼보다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하가 대학이상 보다 미납률이 높았고, 취업자(25.8%)가 비취업자(72.8%)의 미납률이 2.8배나 높았다.

미납유형은 보험료 미납보다는 납부예외자 비율이 높았고, 특히 남성가구주 보다 여성가구주가 높았으며, 취업자의 보다는 비취업자의 비율이 높았다. 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납부예외 사유로는 생활곤란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가구주 보다는 여성가구주가, 고연령층일수록, 유배우나 미혼보다는 사별·이혼·별거일 경우,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비취업자 보다는 취업자의 경우 높았다. 그러나 이들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평균 납부예외 기간은 도시지역(11.2개월) 보다는 농어촌지역(12개월)이, 여성가구주(11.0개월) 보다는 남성가구주(11.3개월)가, 20대(7.4개월) 보다는 30대 이상(11.1개월~11.5개월)에서, 그리고 비취업자(9.3개월) 보다는 취업자(11.6개월)가 더 길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국민연금의 미납사유를 중산층가구주의 특성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미납자의 약 68%가 미납사유로 지정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는 거주지역별로는 농어촌지역 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일수록, 남성가구주 보다 여성가구주가, 고연령층일수록, 유배우 보다는 사별·이혼·별거가,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층 보다는 고등학교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비취업자 보다는 취업자가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도시지역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

록, 남성가구주가, 30대 연령층에서, 유배우나 미혼에서, 고등학교 학력층에서, 비취업인 경우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5-70〉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국민연금 미납실태

(단위: %, 명, 개월)

특성	국민연금 납부 여부				미납유형			
	납부함	납부하지 않음	계(수)	χ^2	납부 예외자	보험료 미납	계(수)	χ^2
전체	71.8	28.2	100.0(1,583)		85.9	14.1	100.0(447)	
거주지역								
도시	71.3	28.7	100.0(1,378)	1.312	86.6	13.4	100.0(396)	1.446
농·어촌	75.1	24.9	100.0(205)		80.4	19.6	100.0(51)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62.0	38.0	100.0(200)	40.853***	86.8	13.2	100.0(76)	3.370
200-300만원 미만	66.1	33.9	100.0(631)		86.0	14.0	100.0(214)	
300-400만원 미만	77.7	22.3	100.0(480)		88.8	11.2	100.0(107)	
400-500만원 미만	81.6	18.4	100.0(272)		78.0	22.0	100.0(50)	
성별								
남성	73.1	26.9	100.0(1,411)	12.154***	84.4	15.6	100.0(379)	4.467*
여성	60.5	39.5	100.0(172)		94.1	5.9	100.0(68)	
연령								
20-29세	86.7	13.3	100.0(45)		83.3	16.7	100.0(6)	1.707
30-39세	76.7	23.3	100.0(407)		89.5	10.5	100.0(95)	
40-49세	67.7	32.3	100.0(579)		86.1	13.9	100.0(187)	
50-64세	71.1	28.9	100.0(551)		83.6	16.4	100.0(159)	
65세 이상	100.0	-	100.0(1)		-	-	-	
결혼상태								
유배우	74.6	25.4	100.0(1,241)	38.897***	83.8	16.2	100.0(315)	5.545
이혼·별거·사별	51.5	48.5	100.0(167)		87.7	12.3	100.0(81)	
미혼	71.1	28.9	100.0(173)		96.0	4.0	100.0(5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9.8	30.2	100.0(301)	11.131**	87.9	12.1	100.0(91)	3.300
고등학교	68.6	31.4	100.0(710)		83.0	17.0	100.0(223)	
대학 이상	76.7	23.3	100.0(572)		89.5	10.5	100.0(133)	
취업여부								
취업	74.2	25.8	100.0(1,502)	83.807***	84.3	15.7	100.0(388)	6.432*
비취업	27.2	72.8	100.0(81)		96.6	3.4	100.0(59)	

〈표 5-70〉 계속

(단위: %, 명, 개월)

특성	납부예외 사유						납부예외 기간						
	실직·휴 직·사업 중단	3개월 이상 입원	생활 곤란	학업 (재학)	기타	계(수)	3개월 이하	4~6 개월	7~9 개월	10~ 12개월	계(수)	평균	F(통)값
전체	27.7	0.5	71.0	0.3	0.5	100.0(383)	4.9	2.1	1.6	91.4	100.0(384)	11.3	
거주지역													
도시	28.9	0.6	69.6	0.3	0.6	100.0(342)	5.5	2.3	1.7	90.4	100.0(343)	11.2	(-5.238 ***)
농·어촌	17.1	-	82.9	-	-	100.0(41)	-	-	-	100.0	100.0(41)	12.0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33.3	-	66.7	-	-	100.0(66)	6.1	3.0	3.0	87.9	100.0(66)	11.0	0.951
200~300만원 미만	29.5	1.1	68.9	0.5	-	100.0(183)	6.0	1.6	1.6	90.8	100.0(184)	11.2	
300~400만원 미만	24.2	-	75.8	-	-	100.0(95)	3.2	3.2	1.1	92.6	100.0(95)	11.4	
400~500만원 미만	17.9	-	76.9	-	5.1	100.0(39)	2.6	-	-	97.4	100.0(35)	11.7	
성별													
남성	28.2	0.3	70.5	0.3	0.6	100.0(319)	4.4	2.5	0.9	92.2	100.0(320)	11.3	(0.897 *)
여성	25.0	1.6	73.4	-	-	100.0(64)	7.8	-	4.7	87.5	100.0(64)	11.0	
연령													
20~29세	40.0	-	60.0	-	-	100.0(5)	20.0	20.0	20.0	40.0	100.0(5)	7.4	4.986 **
30~39세	33.3	-	66.7	-	-	100.0(84)	4.7	3.5	3.5	88.2	100.0(85)	11.1	
40~49세	25.5	0.6	72.0	0.6	1.2	100.0(161)	3.7	1.9	0.6	93.8	100.0(161)	11.5	
50~64세	26.3	0.8	72.9	-	-	100.0(133)	6.0	0.8	0.8	92.5	100.0(133)	11.3	
65세 이상												-	
결혼상태													
유배우	25.1	0.4	73.4	0.4	0.8	100.0(263)	4.2	2.3	0.8	92.8	100.0(264)	11.4	0.475
이혼·별거·사별	23.9	-	76.1	-	-	100.0(71)	7.0	1.4	2.8	88.7	100.0(71)	11.1	
미혼	45.8	2.1	52.1	-	-	100.0(48)	6.3	-	4.2	89.6	100.0(48)	11.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8.8	-	81.3	-	-	100.0(80)	5.0	-	-	95.0	100.0(80)	11.5	0.648
고등학교	26.1	0.5	73.4	-	-	100.0(184)	4.9	1.6	2.2	91.4	100.0(185)	11.3	
대학 이상	36.1	0.8	60.5	0.8	1.7	100.0(119)	5.0	4.2	1.7	89.1	100.0(119)	11.1	
취업여부													
취업	23.3	0.3	75.5	0.3	0.6	100.0(326)	2.1	1.2	1.5	95.1	100.0(327)	11.6	(4.099 ***)
비취업	52.6	1.8	45.6	-	-	100.0(57)	21.1	7.0	1.8	70.2	100.0(57)	9.3	

〈표 5-70〉 계속

(단위: %, 명, 개월)

특성	미납이유						미납기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국민 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	국민 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적정 없음	기타	모름	계(수)	3개월 이하	4~6 개월	7~9 개월	10~ 12개월	계(수)	평균	F(값)
전체	67.7	29.2	3.1	-	-	100.0(65)	7.7	7.7	4.6	80.0	100.0(65)	10.6	
거주지역													
도시	68.5	29.6	1.9	-	-	100.0(54)	7.4	9.3	5.6	77.8	100.0(54)	10.5	(-0.607)
농·어촌	63.6	27.3	9.1	-	-	100.0(11)	9.1	-	-	90.9	100.0(11)	11.1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80.0	10.0	10.0	-	-	100.0(10)	-	10.0	20.0	70.0	100.0(10)	10.5	0.027
200~300만원 미만	73.3	23.3	3.3	-	-	100.0(30)	13.3	3.3	-	83.3	100.0(30)	10.6	
300~400만원 미만	64.3	35.7	-	-	-	100.0(14)	7.1	7.1	7.1	78.6	100.0(14)	10.5	
400~500만원 미만	45.5	54.5	-	-	-	100.0(11)	-	18.2	-	81.8	100.0(11)	10.8	
성별													
남성	65.6	31.1	3.3	-	-	100.0(61)	8.2	6.6	3.3	82.0	100.0(61)	10.7	(0.911)
여성	100.0	-	-	-	-	100.0(4)	-	25.0	25.0	50.0	100.0(4)	9.3	
연령													
20~29세	100.0	-	-	-	-	100.0(1)	-	-	100.0	-	100.0(1)	7.0	0.768
30~39세	50.0	40.0	10.0	-	-	100.0(10)	10.0	10.0	10.0	70.0	100.0(10)	10.1	
40~49세	66.7	33.3	-	-	-	100.0(27)	3.7	7.4	3.7	85.2	100.0(27)	11.0	
50~64세	74.1	22.2	3.7	-	-	100.0(27)	11.1	7.4	-	81.5	100.0(27)	10.4	
65세 이상	-	-	-	-	-	-	-	-	-	-	-	-	
결혼상태													
유배우	67.3	28.8	3.8	-	-	100.0(52)	9.6	1.9	1.9	86.5	100.0(52)	10.9	1.741
이혼·별거·사별	81.8	18.2	-	-	-	100.0(11)	-	27.3	18.2	54.5	100.0(11)	9.4	
미혼	-	100.0	-	-	-	100.0(2)	-	50.0	-	50.0	100.0(2)	8.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4.5	36.4	9.1	-	-	100.0(11)	-	-	-	100.0	100.0(11)	12.0	1.508
고등학교	71.8	52.6	2.6	-	-	100.0(39)	12.8	5.1	2.6	79.5	100.0(39)	10.4	
대학 이상	66.7	33.3	-	-	-	100.0(15)	-	20.0	13.3	66.7	100.0(15)	10.1	
취업여부													
취업	68.3	28.6	3.2	-	-	100.0(63)	7.9	6.3	4.8	81.0	100.0(63)	10.7	(0.991)
비취업	50.0	50.0	-	-	-	100.0(2)	-	50.0	-	50.0	100.0(2)	8.5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국민연금의 평균 미납기간은 도시지역 보다는 농어촌지역에서, 400~500만원 미만의 고소득층에서, 남성가구주, 40대 연령층, 유배우, 중학교 이하 저학력층, 취업자에게서 보다 길었으나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5-70 참조).

건강보험 미납실태는 소득계층별로는 건강보험료 미납경험은 저소득층이 4.8%로 중산층(3.8%)나 고소득층(0.9%)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미납이유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인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많았으나 고소득층은 납기기한을 잊어버려서가 가장 많아 소득계층별 차이를 보였다. 평균 미납기간은 저소득층 6.0개월, 중산층 5.2개월, 고소득층 3.8개월로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미납기간이 길었다. 그러나 미납이유나 미납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71〉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미납실태

(단위: %, 명, 개월)

특성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χ^2
건강보험미납 여부					
미납한 적 있음	4.8	3.8	0.9	3.8	22.799***
미납한 적 없음	95.2	96.2	99.1	96.2	
계(수)	100.0(2,171)	100.0(2,596)	100.0(743)	100.0(5,510)	
미납이유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	3.9	5.2	20.0	4.9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85.3	80.2	-	80.8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	-	1.0	20.0	1.0	
제도에 대한 불신때문	-	2.1	-	1.0	
납기기한을 잊어버려서	10.8	10.4	60.0	11.8	
기타	-	1.0	-	0.5	
미납기간					
3개월 이하	42.7	55.2	60.0	49.0	
4~6개월	21.4	16.7	-	18.6	
7~9개월	7.8	5.2	40.0	7.4	
10~12개월	28.2	22.9	-	25.0	
계(수)	100.0(103)	100.0(96)	100.0(5)	100.0(204)	
평균	6.0	5.2	3.8	5.5	
F값	1.451				

주: 1) * p<0.5, ** p<.01, *** p<.001;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건강보험 미납여부는 소득수준, 연령, 결혼상태 및 교육수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미납이유와 미납기간은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72 참조).

연령별로는 40대가 건강보험 미납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이하나 대학이상 학력층 보다 고등학교 학력층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이외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200~3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에서, 여성가구주가, 유배우 보다는 사별·이혼·별거인 경우, 비취업자 보다 취업자의 건강보험료 미납경험이 더 많았으나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보험료의 미납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경제적 이유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는 도시지역에서, 200~300만원 미만의 소득층에서, 남성가구주, 5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유배우가, 고등학교 이하에서, 그리고 비취업자의 경우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건강보험료의 평균 미납기간은 지역별로는 농어촌지역(3.7개월) 보다 도시지역(5.3개월)이 더 길었고, 소득수준별로는 300~4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에서 가장 길었다(6.0개월). 또한 남성가구주(5.1개월) 보다는 여성가구주(5.5개월)의 미납기간이 더 길었고, 30대(3.3개월) 보다는 40대 이상의 연령층(5.2~5.5개월)에서, 유배우(5.1개월)나 미혼(4.9개월) 보다는 이혼·별거·사별(5.7개월)이, 고등학교 학력수준(5.4개월)에서, 비취업자 보다 취업자(5.2개월)가 미납기간이 더 길었다. 그러나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5-72〉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건강보험 미납실태

(단위: %, 명, 개월)

특성	미납여부				미납이유						
	미납 한적 있음	미납 한적 없음	계수	χ^2	건강 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	건강 보험료를 별로 납부할 돈이 없어서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	납기 기한을 잊어 버려서	기타	계수
전체	3.8	96.2	100.0(2,596)		5.2	80.2	1.0	2.1	10.4	1.0	100.0(96)
거주지역											
도시	4.2	95.8	100.0(2,114)	3.784	3.5	81.2	1.2	2.4	11.8	-	100.0(85)
농·어촌	2.3	97.7	100.0(482)		18.2	72.7	-	-	-	9.1	100.0(11)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4.1	95.9	100.0(535)	9.273 ***	4.8	76.2	4.8	-	14.3	-	100.0(21)
200~300만원 미만	5.0	95.0	100.0(1,016)		2.0	82.0	-	2.0	12.0	2.0	100.0(50)
300~400만원 미만	2.3	97.7	100.0(682)		18.8	75.0	-	6.3	-	-	100.0(16)
400~500만원 미만	2.8	97.2	100.0(363)		-	88.9	-	-	11.1	-	100.0(9)
성별											
남성	3.8	96.2	100.0(2,215)	0.019	6.1	81.7	1.2	1.2	8.5	1.2	100.0(82)
여성	3.9	96.1	100.0(381)		-	71.4	-	7.1	21.4	-	100.0(14)
연령											
20~29세	-	100.0	100.0(61)	32.451 ***	-	-	-	-	-	-	-
30~39세	2.8	97.2	100.0(472)		-	84.6	-	-	15.4	-	100.0(13)
40~49세	6.4	93.6	100.0(676)		9.3	72.1	-	4.7	11.6	2.3	100.0(43)
50~64세	4.9	95.1	100.0(754)		2.9	85.3	2.9	-	8.8	-	100.0(34)
65세 이상	0.9	99.1	100.0(633)		-	100.0	-	-	-	-	100.0(6)
결혼상태											
유배우	3.8	96.2	100.0(2,019)	0.044	4.1	85.1	1.4	2.7	6.8	-	100.0(74)
이혼·별거·사별	4.0	96.0	100.0(379)		14.3	64.3	-	-	14.3	7.1	100.0(14)
미혼	3.6	96.4	100.0(192)		-	71.4	-	-	28.6	-	100.0(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	97.8	100.0(804)	14.441 **	5.9	76.5	5.9	-	11.8	-	100.0(17)
고등학교	5.5	94.5	100.0(1,011)		3.7	83.3	-	3.7	9.3	-	100.0(54)
대학 이상	3.2	96.8	100.0(781)		8.0	76.0	-	-	12.0	4.0	100.0(25)
취업여부											
취업	4.0	96.0	100.0(2,131)		6.0	78.3	1.2	2.4	10.8	1.2	100.0(83)
비취업	2.8	97.2	100.0(464)		-	92.3	-	-	7.7	-	100.0(13)

〈표 5-72〉 계속

(단위: %, 명, 개월)

특성	미납기간						
	3개월 이하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계(수)	평균	F(값)
전체	55.2	16.7	5.2	22.9	100.0(96)	5.2	
거주지역							
도시	52.9	17.6	5.9	23.5	100.0(85)	5.3	(1.289)
농·어촌	72.7	9.1	-	18.2	100.0(11)	3.7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52.4	19.0	9.5	19.0	100.0(21)	5.2	0.612
200~300만원 미만	58.0	14.0	4.0	24.0	100.0(50)	5.1	
300~400만원 미만	37.5	25.0	6.3	31.3	100.0(16)	6.0	
400~500만원 미만	77.8	11.1	-	11.1	100.0(9)	3.8	
성별							
남성	57.3	15.9	4.9	22.0	100.0(82)	5.1	(-0.353)
여성	42.9	21.4	7.1	28.6	100.0(14)	5.5	
연령							
20~29세	-	-	-	-	-	-	1.135
30~39세	69.2	30.8	-	-	100.0(13)	3.3	
40~49세	48.8	20.9	4.7	25.6	100.0(43)	5.4	
50~64세	55.9	8.8	8.8	26.5	100.0(34)	5.5	
65세 이상	66.7	-	-	33.3	100.0(6)	5.2	
결혼상태							
유배우	56.8	17.6	2.7	23.0	100.0(74)	5.1	0.176
이혼·별거·사별	42.9	14.3	21.4	21.4	100.0(14)	5.7	
미혼	71.4	-	-	28.6	100.0(7)	4.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8.8	5.9	17.6	17.6	100.0(17)	4.9	0.303
고등학교	51.9	18.5	3.7	25.9	100.0(54)	5.4	
대학 이상	60.0	20.0	-	20.0	100.0(25)	4.7	
취업여부							
취업	56.6	14.5	6.0	22.9	100.0(83)	5.2	(0.078)
비취업	46.2	30.8	-	23.1	100.0(13)	5.1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X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나. 사회보험 문제점 및 보장수준

소득계층별로 본 건강보험 문제점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경우는 저소득층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 보다 높은 비율이었으나 그 외에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보험의 적용범위가 좁거나, 월보험료의 부담 등은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5-73〉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문제점 및 효과성

(단위: %, 점, 명)

특성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χ^2
건강보험의 문제점					
특별한 문제점 없음	70.1	62.6	57.2	64.8	65.721***
보험의 적용범위 좁음	15.6	21.7	25.5	19.8	
월보험료 부담	14.3	15.5	16.6	15.2	
기타	0.1	0.2	0.7	0.2	
건강보험료 대비 보장정도					
전혀 보장되지 않음	3.4	8.0	13.4	6.9	387.162***
별로 보장되지 못함	14.9	30.8	38.0	25.5	
보통	23.3	19.4	17.1	20.6	
대체로 보장됨	47.5	34.9	25.7	38.6	
매우 보장됨	10.9	6.9	5.8	8.3	
평균	3.5	3.0	2.7	3.2	
F값	177.487***				
건강보험의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음	0.9	1.0	1.3	1.0	173.006***
별로 만족하지 않음	4.6	7.2	9.3	6.3	
보통	18.6	29.5	31.2	24.8	
대체로 만족함	59.1	51.6	48.3	54.6	
매우 만족함	16.8	10.7	9.9	13.4	
평균	3.9	3.6	3.6	3.7	
F값	73.976***				
계수	100.0 (2,799)	100.0 (2,655)	100.0 (751)	100.0 (6,205)	

주: 1) * p<0.5, ** p<0.01, *** p<0.001; 2) 건강보험의 만족도는 5점 척도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건강보험료 대비 보장정도에서 전혀 또는 별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경우는 저소득층(18.3%) 보다는 중산층(38.8%)이나 고소득층(51.4%)이

높은 비율이었고, 반대로 대체로 또는 매우 보장된다는 경우는 저소득층(58.4%)이 중산층(41.8%)이나 고소득층(31.5%)보다 높게 나타났다. 5점 만점의 평균 점수로 볼 때도 고소득층 2.7점, 중산층 3.0점에 비해 저소득층은 3.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이었다.

건강보험의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저소득층(75.9%)이 중산층(62.3%)이나 고소득층(58.2%) 보다 높았으며, 평균 만족도도 저소득층이 3.9점으로 가장 높았다.

5. 중산층가족의 비취업 및 고용지원

가. 중산층가족의 비취업 문제

중산층가족의 비경제활동 사유는 성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나머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주지역별로는 근로의사 없음은 도시지역 보다는 농어촌지역이 높았고 양육·가사·간병과 근로무능력은 농어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각각 근로의사 없음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나 소득수준별 일관성 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성가구주는 여성가구주 보다 근로의사 없음이 더 높은 비율이었으며, 양육·가사·간병은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보다 19.1%pt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의사 없음 비율이 높아졌고, 결혼상태별로는 이혼·별거·사별의 경우 근로의사 없음과 양육·가사·간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이상 보다는 고등학교 이하에서 근로의사 없음 비율이 높았고, 양육·가사·간병은 고등학교 학력층에서, 그리고 근로무능력은 고등학교 이상보다 중학교 이하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5-74〉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 명)

특성	근로무능력	양육·가사·간병	근로 의사 없음	기타	계(수)	χ^2
전체	4.9	9.0	65.9	20.2	100.0(431)	
거주지역						0.986
도시	5.0	9.4	64.9	20.7	100.0(362)	
농·어촌	4.3	7.2	71.0	17.4	100.0(69)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3.8	8.2	72.3	15.8	100.0(184)	
200~300만원 미만	6.5	11.2	58.6	23.7	100.0(169)	
300~400만원 미만	3.5	5.3	70.2	21.1	100.0(57)	
400~500만원 미만	4.8	9.5	57.1	28.6	100.0(21)	
성별						51.404 ***
남성	6.0	2.5	66.4	25.1	100.0(283)	
여성	2.7	21.6	64.9	10.8	100.0(148)	
연령						
20~29세	-	-	100.0	-	100.0(2)	
30~39세	-	14.3	42.9	42.9	100.0(14)	
40~49세	5.9	5.9	47.1	41.2	100.0(17)	
50~64세	4.7	16.0	51.9	27.4	100.0(106)	
65세 이상	5.1	6.5	72.9	15.4	100.0(292)	
결혼상태						
유배우	5.7	4.5	65.9	23.9	100.0(264)	
이혼·별거·사별	3.2	16.7	67.3	12.8	100.0(156)	
미혼	-	11.1	44.4	44.4	100.0(9)	
교육수준						4.775
중학교 이하	5.8	9.6	66.3	18.3	100.0(240)	
고등학교	3.4	10.2	66.9	19.5	100.0(118)	
대학 이상	4.1	5.5	63.0	27.4	100.0(73)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01$, *** $p<0.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결과

나. 중산층가족의 고용지원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20명 이상인 4개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율은 전반적으

로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참여율은 노인일자리 1.5%, 자활공동체 1.2%, 공공근로 0.8%, 실업자 직업훈련 0.2%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증가하였다.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 실업자 직업훈련 모두 ‘저소득층’ 또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계층의 참여율이 고소득층 또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75〉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정부의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

(단위: %, 명)

구분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있다	없다	계(수)	있다	없다	계(수)
전체	0.4	99.6	100.0(6,060)	0.8	99.2	100.0(6,060)
소득계층						
저소득층	0.8	99.2	100.0(2,691)	1.5	98.5	100.0(2,691)
중산층	0.2	99.8	100.0(2,621)	0.3	99.7	100.0(2,621)
고소득층	-	100.0	100.0(748)	-	100.0	100.0(748)
χ^2	12.922**			29.701***		
경제적 의식						
가난	0.7	99.3	100.0(2,765)	1.0	99.0	100.0(2,765)
보통	0.3	99.7	100.0(3,175)	0.7	99.3	100.0(3,175)
부유	-	100.0	100.0(103)	-	100.0	100.0(103)
χ^2	6.763*			3.577		
구분	자활공동체			실업자 직업훈련		
	있다	없다	계(수)	있다	없다	계(수)
전체	0.7	99.3	100.0(6,060)	0.2	99.8	100.0(6,060)
소득계층						
저소득층	1.2	98.8	100.0(2,691)	0.2	99.8	100.0(2,691)
중산층	0.3	99.7	100.0(2,621)	0.2	99.8	100.0(2,621)
고소득층	-	100.0	100.0(748)	-	100.0	100.0(748)
χ^2	24.302***					
경제적 의식						
가난	1.2	98.8	100.0(2,765)	0.2	99.8	100.0(2,765)
보통	0.3	52.8	100.0(3,175)	0.2	99.8	100.0(3,175)
부유	-	100.0	100.0(103)	-	100.0	100.0(103)
χ^2	19.122***					

주: 1) * p<.05, ** p<.01, *** p<.001;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고용지원프로그램의 도움정도를 보면, 고용지원프로그램은 생계유지(78.8%)와 사회참여로 인한 심리적 안정(77.8%) 그리고 자존감 향상(65.3%)에는 도움이 되는 편이나, 구직·창업 및 직업능력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못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하나라도 참여한 이후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구직이나 창업, 직업능력 개발에 있어서는 기대 이하로 큰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 회복에는 긍정적인 면이 작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생계유지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아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구직/창업, 직업능력개발보다는 단기적인 차원의 소득 지원에 그 역할에 조금 더 집중되는 편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참여자가 많지 않아 제한적인 특성을 가진다.

〈표 5-76〉 정부의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의 도움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구직 또는 창업에 도움	8.5	22.9	22.9	36.4	9.3	100.0(118)
직업능력 개발에 도움	10.2	35.6	28.8	22.0	3.4	100.0(118)
사업참여로 인한 심리적 안정에 도움	1.7	7.7	12.8	62.4	15.4	100.0(117)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향상에 도움	0.8	10.2	23.7	53.4	11.9	100.0(118)
생계유지에 도움	3.4	5.9	11.9	40.7	38.1	100.0(118)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6. 중산층가족의 양육문제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보육기관 이용률과 이용기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계층별로 중산층가족의 보육기관 이용률은 약 76%, 고소득층은 약 91%, 저소득층은 약 60%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보육기관 이용률이 높아서 중산층의 24%정도는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경제적 의식수준에 있어서도 가난한 경우 보다 보통이나 부유하다고 느끼는 경우 보육기관 이용률이 높았다.

이용기관 유형은 민간학원 및 사교육은 소득계층이 높거나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많이 이용하였으며, 보육시설은 중산층과 경제적 생활수준이 보통인 경우 높았고,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은 저소득층과 경제적 생활수준이 가난한 경우에 높아 소득계층별 이용기관 유형에 차이를 보였다.

〈표 5-77〉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아동가구의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률

(단위: %, 명)

구분	소득계층			경제적 의식			전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가난	보통	부유	
이용률	60.1	75.5	90.8	68.5	77.4	82.9	73.9
(분석대상수)	(587)	(1,307)	(318)	(869)	(1,273)	(42)	(2,212)
χ^2	98.553***			20.967***			
이용기관 유형							
보육시설	24.6	29.3	20.4	25.0	28.1	22.9	26.7
민간학원 및 사교육	47.0	54.5	66.8	50.9	57.1	65.7	55.1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27.8	13.4	8.0	23.4	11.1	11.4	15.5
기타	0.6	2.8	4.8	0.7	3.8	-	2.7
계(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53)	(987)	(289)	(595)	(986)	(35)	(1,629)
χ^2	77.264***			56.038***			

주: * p<.05, ** p<.01, *** p<.001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사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률은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가구주의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 보다는 고등학교 이상에서 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외에 거주지역별로는 도농복합·농촌지역 보다는 도시지역이, 가구 형태별로는 기타가구가, 취업 보다는 비취업 가구에서, 남성가구주의 경우, 40대 연령층, 사별·이혼·별거 보다 유배우나 미혼가구에서, 경제적

생활수준이 보통인 경우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78〉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아동가구의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률

(단위: %, 명)

특성	이용률		이용기관 유형					χ^2
	비율	χ^2	보육시설	민간학원 및 사교육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기타	계(수)	
전체	75.5		29.3	54.5	13.4	2.8	100.0(987)	
거주지역								
도시	76.0	0.908	29.3	53.5	14.1	3.1	100.0(861)	5.610
도농복합·농촌	72.4		29.4	61.1	8.7	0.8	100.0(126)	
가구형태								
단독	-		-	-	-	-	-	
모부자	71.4		16.0	64.0	20.0	-	100.0(25)	
소년소녀가장	66.7		-	50.0	50.0	-	100.0(2)	
기타	75.6		29.7	54.3	13.1	2.9	100.0(960)	
취업여부								
취업	75.2	0.892	30.1	54.8	12.1	3.1	100.0(918)	21.207***
비취업	79.8		18.8	50.7	30.4	-	100.0(69)	
가구소득 수준								
100~200만원 미만	65.6	26.743***	33.3	42.9	23.8	-	100.0(21)	12.545
200~300만원 미만	68.3		31.4	51.4	15.6	1.6	100.0(366)	
300~400만원 미만	79.0		28.0	57.6	11.4	3.0	100.0(361)	
400~500만원 미만	83.7		27.6	55.6	12.1	4.6	100.0(239)	
성별								
남성	75.8	0.900	30.4	54.3	12.4	2.9	100.0(934)	19.716***
여성	70.8		9.4	58.5	30.2	1.9	100.0(53)	
연령								
20~29세	50.0		66.7	33.3	-	-	100.0(3)	
30~39세	67.7		51.8	38.1	3.1	7.0	100.0(257)	
40~49세	81.6		25.2	58.4	14.7	1.7	100.0(531)	
50~64세	69.8		6.4	69.9	23.1	0.6	100.0(156)	
65세 이상	78.7		25.0	50.0	25.0	-	100.0(40)	
결혼상태								
유배우	76.1		30.7	53.7	12.6	3.1	100.0(915)	
이혼·별거·사별	69.5		8.8	67.6	23.5	-	100.0(68)	
미혼	80.0		50.0	25.0	25.0	-	100.0(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5.7	8.584*	17.5	60.2	21.4	1.0	100.0(103)	27.784***
고등학교	77.4		27.0	57.4	13.9	1.7	100.0(467)	
대학 이상	76.2		34.8	49.9	10.8	4.6	100.0(417)	
경제적 생활수준								
가난	73.5	2.050	26.1	54.6	18.4	0.9	100.0(337)	
보통	76.8		31.2	54.0	10.9	3.8	100.0(631)	
부유	66.7		33.3	55.6	11.1	-	100.0(9)	

주: 1) 중산층가족의 아동가구는 1,307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3)

* p<0.5, ** p<0.01, *** p<0.001; 4)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이용기관 유형별로는 가구주의 취업여부와 성별, 교육수준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가구주가 취업중인 경우에 비취업중인 경우 보다 민간학원 및 사교육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비취업중인 경우는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주 성별로는 남성가구주는 여성가구주에 비해 보육시설 이용률만이 높았고, 여성가구주는 남성가구주에 비해 민간학원 및 사교육과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가구주의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민간학원 및 사교육과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5-78 참조).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보육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계층별로는 월평균 사교육비 및 보육비용은 중산층가족은 37만원, 고소득층은 67만원, 저소득층은 19만원으로 소득계층 간에 2배 정도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의식수준별로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26만원, 보통인 경우 45만원,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65만원으로 경제적 의식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5-79〉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보육비

(단위: 만원, 명)

구분	소득계층			경제적 의식			전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가난	보통	부유	
사교육비	16.47	29.16	57.32	20.20	37.16	55.53	31.39
F값	160.827***			66.839***			
보육비	2.87	7.61	10.01	5.31	7.87	9.41	7.01
F값	20.506***			6.092**			
(분석대상수)	(361)	(1,001)	(295)	(602)	(1,005)	(37)	(1,644)

주: * p<.05, ** p<.01, *** p<.001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5-80〉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보육비

(단위: 만원, 명)

특성	사교육비	F(t)값	보육비	F(t)값	(분석대상수)
전체	29.2		7.6		(1,001)
거주지역					
도시	29.5	(0.960)	8.1	(3.176***)	(872)
도농복합·농촌	27.1		4.7		(129)
가구형태					
단독	-	1.909	-	0.424	-
모부자	19.3		9.2		(26)
소년소녀가장	26.5		-		(2)
기타	29.4		7.6		(973)
취업여부					
취업	29.9	(4.516**)	8.0	(5.265***)	(931)
비취업	19.5		2.7		(70)
가구소득 수준					
100~200만원 미만	10.3	33.519***	5.8	2.210	(21)
200~300만원 미만	21.0		6.4		(371)
300~400만원 미만	31.3		7.7		(367)
400~500만원 미만	40.1		9.4		(242)
성별					
남성	29.5	(2.588*)	7.8	(1.893**)	(978)
여성	22.2		3.6		(53)
연령					
20~29세	1.0	24.920***	9.3	28.598***	(4)
30~39세	17.3		14.6		(264)
40~49세	35.5		0.9		(534)
50~64세	29.1		3.3		(159)
65세 이상	25.1		-		(40)
결혼상태					
유배우	29.6	1.918	7.9	2.596	(928)
이혼·별거·사별	24.7		4.2		(69)
미혼	12.3		0.5		(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1.2	7.734***	2.6	18.384***	(105)
고등학교	28.3		6.1		(473)
대학 이상	32.1		10.6		(423)
경제적 생활수준					
가난	23.2	13.312***	7.1	1.297	(339)
보통	31.9		7.9		(642)
부유	37.0		14.0		(10)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가구주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여 취업자(29.9만원)가 비취업자(19.5만원) 보다 더 많았으며, 남성가구주(29.5만원)가 여성가구주(22.2만원) 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에서 35.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경제적 생활수준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타 집단보다 사교육비가 높았다. 이들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외에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도농복합·농촌지역보다 많았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모부자가구나 소년소녀가장가구 보다 기타가구가 더 많았고, 가구주의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가 사별·이혼·별거나 미혼가구주일 경우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월평균 보육비는 도시지역, 취업가구주, 남성가구주, 30대 연령층, 고학력층일수록 타 집단에 비해 보육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7. 중산층가족의 정신건강 문제

가. 우울정도

조사시점으로 부터 지난 1주일간의 우울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5-81>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일반적인 정서 상태로 볼 수 있는 ‘16점 이하’는 82.5%였으며 우울증이 의심되는 ‘17~30점대’는 14.1%, 보다 심한 단계인 ‘31~40점대’는 2.4%이며 극심한 우울증을 겪는 경우는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우울정도가 심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저소득층의 약 30%가 17점 이상으로 다수가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정서 상태였다. 경제적 의식수준별로도 소득계층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81〉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계산된 우울정도

(단위: %,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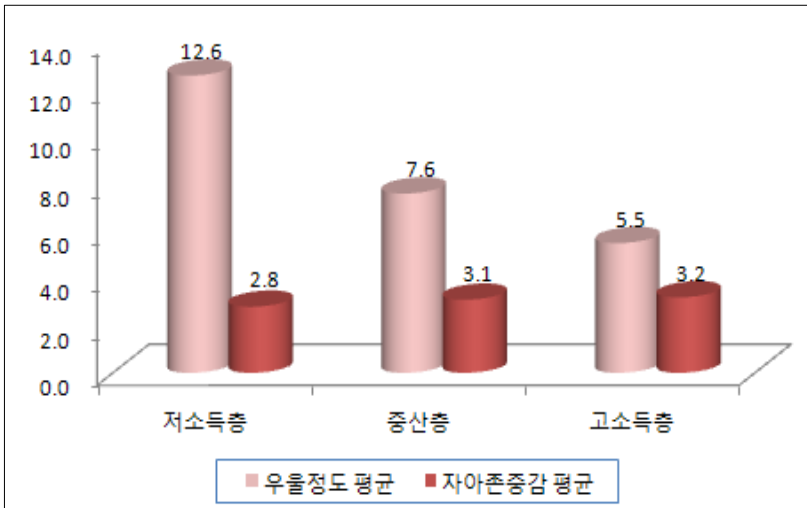
특성	16점 이하	17~ 30점	31~ 40점	41~ 60점	계(수)	χ^2	평균	F값
전체	82.5	14.1	2.4	1.0	100.0(11,369)		9.1	
소득계층								
저소득층	70.7	22.8	4.6	1.9	100.0(4,105)	671.303***	12.6	532.657***
중산층	87.7	10.5	1.2	0.6	100.0(5,563)		7.6	
고소득층	94.0	5.2	0.6	0.2	100.0(1,701)		5.5	
경제적 의식								
가난	71.0	22.5	4.4	2.1	100.0(4,551)	716.824***	9.9	114.550***
보통	90.0	8.7	1.0	0.3	100.0(6,589)		6.5	
부유	94.7	4.4	0.4	0.4	100.0(228)		5.5	

주: 1) 우울척도는 CESD-11을 사용함. 하위 11문항의 응답을 점수화(1:극히 드물다, 2: 가끔있었다, 3: 종종 있었다, 4:대부분 그랬다)하고 총점을 더한 값에 20/11을 곱한 값을 범주화함. 16점보다 높은 경우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 2) * $p<0.5$, ** $p<0.1$, *** $p<0.01$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5-7〕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계산된 우울정도

(단위: 점)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우울정도는 거주지역, 성, 결혼상태 및 교육수준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도농복합·농촌보다는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우울정도가 높았다.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나 미혼의 경우보다 이혼·별거·사별일 경우 우울정도

가 월등히 높았으며 이들 중 약 25%(17점 이상)가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정도는 높았으며 중학교 이하에서는 17.0%(17점 이상)가 우울증이 의심되었다. 이외에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자에 비해 비취업자가 우울정도가 높았으며 약 20%(17점 이상)정도가 우울증이 의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82〉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우울정도

(단위: %, 명, 점)

특성	16점 이하	17~ 30점	31~ 40점	41~ 60점	계(수)	χ^2	평균	F(t)값
전체	87.7	10.5	1.2	0.6	100.0(5,563)		7.6	
거주지역								
도시	87.3	10.7	1.2	0.8	100.0(4,489)	9.868*	7.7	(2.277***)
도농복합·농촌	89.4	9.5	1.1	-	100.0(1,074)		7.1	
성별								
남성	90.8	7.8	0.8	0.5	100.0(2,623)	45.154***	6.6	(-8.680***)
여성	84.9	12.8	1.6	0.7	100.0(2,940)		8.5	
결혼상태								
유배우	89.5	9.2	0.9	0.4	100.0(3,923)	100.525***	7.0	73.621***
이혼·별거·사별	75.9	20.5	2.1	1.5	100.0(614)		11.2	
미혼	87.9	9.4	1.9	0.9	100.0(1,023)		7.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3.0	14.5	1.5	1.0	100.0(1,716)	55.994***	9.3	60.607***
고등학교	88.8	9.5	1.3	0.4	100.0(2,004)		7.3	
대학 이상	90.9	7.8	0.9	0.4	100.0(1,843)		6.3	
취업여부								
취업	90.0	8.9	0.9	0.2	100.0(3,654)	26.208	7.0	(-3.716)
비취업	80.7	14.3	2.9	2.1	100.0(140)		10.1	

주: 1) 우울척도는 CESD-11을 사용함. 하위 11문항의 응답을 점수화(1:극히 드물다, 2: 가끔있었다, 3: 종종 있었다, 4:대부분 그랬다)하고 총점을 더한 값에 20/11을 곱한 후 나온 값을 범주화함. 16점보다 높을 경우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 2) * $p<0.5$, ** $p<0.1$, *** $p<0.001$;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 중에서도 도시거주자, 여성, 이혼·별거·사별, 저학력소지자, 비취업자인 경우 우울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산층가족의 건강성 제고를 위해 우울정도가 월등히 높았던 집단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가 개입되어야 할 것이다.

나. 자아존중감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자아존중감(자존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자존감은 5점 만점에서 평균 3.0점으로 ‘4점대(높음)’ 51.0%, ‘3점대(중간)’ 46.5%, ‘2점대(낮음)’ 2.5%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많아질수록 자존감 점수가 높았으며 고소득층의 70.4%가 ‘4점대(높음)’로 나타났다.

〈표 5-83〉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자아존중감 수준

(단위: %, 명, 점)

특성	낮음 (2.00)	중간 (3.00)	높음 (4.00)	계(수)	χ^2	평균	F값
전체	2.5	46.5	51.0	100.0(11,935)		3.0	
소득계층					885.032***		229.897***
저소득층	5.1	59.7	35.2	100.0(4,419)		2.8	
중산층	1.2	41.6	57.2	100.0(5,776)		3.1	
고소득층	0.3	29.3	70.4	100.0(1,740)		3.2	
경제적 의식					975.722***		253.522***
가난	5.1	59.6	35.3	100.0(4,890)		2.8	
보통	0.7	38.2	61.1	100.0(6,811)		3.1	
부유	-	15.5	84.5	100.0(232)		3.3	

주: 1) 자아존중감 척도는 Rogen Berg Self Esteem Scales을 사용함. 하위 10문항의 응답을 점수화(1:대체로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대체로 그렇다 4:항상 그렇다)함. 총점에 10을 나눈 값을 범주화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 2) * p<0.5, ** p<.01, *** p<.001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자아존중감은 경제적 의식수준별로도 소득계층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한 응답자의 84.5%가 ‘4점대(높음)’로 나타났다. 소득이 많을수록 사회적 욕구의 결핍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안정된 소득은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아상 성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결과 모두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자아존중감 수준은 성, 연령, 결혼상태 및 교육

수준, 취업여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도농복합·농촌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자존감이 비교적 높았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았다.

〈표 5-84〉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자아존중감 수준

(단위: %, 명, 점)

특성	낮음 (2.00)	중간 (3.00)	높음 (4.00)	계(수)	χ^2	평균	F(값)
전체	1.2	41.6	57.2	100.0(5,776)		3.1	
거주지역							
도시	1.2	42.1	56.7	100.0(4,661)	3.634	3.0	(24.903***)
도농복합·농촌	0.9	39.6	59.6	100.0(1,115)		2.9	
성별							
남성	1.0	39.7	59.3	100.0(2,711)	9.491**	3.0	(49.325***)
여성	1.3	43.3	55.4	100.0(3,065)		2.9	
연령							
20~29세	0.6	36.3	63.1	100.0(662)	52.510***	3.2	49.386***
30~39세	0.7	34.4	64.9	100.0(1,286)		3.2	
40~49세	0.7	40.3	59.0	100.0(1,309)		3.1	
50~64세	1.1	45.3	53.6	100.0(1,364)		3.0	
65세 이상	4.5	46.3	49.3	100.0(67)		3.0	
결혼상태							
유배우	0.9	40.2	58.9	100.0(4,055)	128.124***	3.1	429.113***
이혼·별거·사별	3.5	57.7	38.8	100.0(655)		2.8	
미혼	0.8	37.0	62.3	100.0(1,063)		3.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4	50.0	47.6	100.0(1,802)	200.110***	2.9	621.709***
고등학교	0.7	44.5	54.9	100.0(2,078)		3.0	
대학 이상	0.6	30.5	68.9	100.0(1,896)		3.2	
취업여부							
취업	0.6	38.5	60.9	100.0(3,799)	29.746***	3.1	(39.997***)
비취업	4.0	47.7	48.3	100.0(149)		3.0	
고용상태							
상용근로자	0.3	34.5	65.2	100.0(1,456)		3.2	55.868***
임시근로자	0.9	37.8	61.3	100.0(739)		3.1	
일용근로자	0.9	49.7	49.4	100.0(435)		3.0	
고용주	2.2	41.3	56.5	100.0(92)		3.2	
자영업자	0.5	39.3	60.2	100.0(766)		3.0	
무급가족종사자	0.3	40.2	59.5	100.0(311)		3.0	

주: * p<0.5, ** p<0.01, *** p<0.001;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연령별로는 저연령일수록 자존감이 높고 고연령이 될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9세, 30~39세의 자존감 평균은 3.2점인 반면 50~64세, 65세 이상의 경우는 평균 3.0점을 보였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및 미혼일 경우, 이혼·별거·사별에 비해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혼·별거·사별인 응답자의 평균 자존감은 2.8점으로 타 응답자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점수를 보였다.

교육수준으로는 고학력일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의 응답자는 평균 3.2점을 보였다. 취업중인 자는 비취업자에 비해 자존감 점수가 높았으며 평균점수는 각각 3.1점, 3.0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상태가 안정된 경우 자존감이 높아서 상용근로자(3.2점), 고용주(3.2점)일 경우 자존감이 높았으며 일용근로자(3.0점), 자영업자(3.0점), 무급가족종사자(3.0점)일 경우 비교적 낮은 자존감을 보였다.

농촌거주자, 여성, 고연령층, 이혼·별거·사별, 저학력소지자, 비취업자, 일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일 경우 비교적 낮은 자존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상태 중 이혼·별거·사별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자존감 평균은 2.8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결혼 생활에 대한 실패감과 거절감이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제3절 중산층가족의 복지욕구

1. 사회문제 해결 우선순위

국민이 낸 세금을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쓴다고 할 때 어디에 주로 쓰여야 하는지 1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1,675명 중 ‘노후생활 문제’에 사용해야 한다가 35.9%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강 및 의료문제’ 18.1%, ‘빈곤문제’ 10.4%, ‘실업문제’ 10.0%등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전 계층에서 ‘노후생활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건강 및 의료문제’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각 계층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빈곤문제’를 꼽았고 중산층의 경우 ‘실업문제’, 고소득층은 ‘교육문제’라고 답하였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산층가족은 국가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사회문제로 ‘노후생활문제’, ‘건강 및 의료문제’라는 응답이 많아서 장애인 및 아동 등 특정 계층에 대한 문제보다는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노후생활, 건강 및 의료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5-85〉 소득계층별 1순위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단위: %, 명)

특성	노후 생활 문제	건강 및 의료 문제	실업 문제	교육 문제	아동 양육 문제	장애인 문제	주거 문제	빈곤	기타	계(수)	χ^2
전체	35.9	18.1	10.0	7.5	7.0	7.3	3.3	10.4	0.4	100.0 (1,675)	33.554**
소득계층											
저소득층	38.1	15.8	8.9	6.7	5.9	8.3	2.6	13.3	0.3	100.0 (683)	
중산층	35.1	18.5	11.1	7.6	7.5	7.7	3.4	8.7	0.4	100.0 (763)	
고소득층	32.3	23.6	9.2	9.6	8.7	3.1	5.2	7.4	0.9	100.0 (229)	

주: * p<0.5, ** p<.01, *** p<.001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1순위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 성별에서 ‘노후생활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건강 및 의료문제’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노후생활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50세 이상의 응답자들은 40%가 넘게 노후생활문제를 지적하였다. 반면, 저연령층은 ‘실업문제’, ‘아동양육문제’, ‘빈곤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6〉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1순위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단위: %, 명)

특성	노후 생활 문제	건강 및 의료 문제	실업 문제	교육 문제	아동 양육 문제	장애인 문제	주거 문제	빈곤	기타	계(수)
전체	35.1	18.5	11.1	7.6	7.5	7.7	3.4	8.7	0.4	100.0(763)
거주지역										
도시	34.4	18.1	11.4	7.8	7.8	8.2	3.8	8.2	0.3	100.0(625)
도농복합·농촌	38.4	20.3	10.1	6.5	5.8	5.8	1.4	10.9	0.7	100.0(138)
성별										
남	34.3	18.9	12.2	7.6	6.5	8.4	3.0	8.6	0.5	100.0(370)
여	35.9	18.1	10.2	7.6	8.4	7.1	3.8	8.7	0.3	100.0(393)
연령										
20~29세	36.4	-	45.5	-	-	-	-	18.2	-	100.0(15)
30~39세	22.8	28.3	7.9	10.2	12.6	6.3	3.9	7.9	-	100.0(205)
40~49세	33.2	19.5	9.7	11.5	8.8	5.3	6.2	5.3	0.4	100.0(383)
50~64세	40.2	17.2	13.8	4.2	5.0	8.4	2.1	8.8	0.4	100.0(469)
65세 이상	40.0	12.5	9.4	5.6	5.6	11.9	1.3	13.1	0.6	100.0(603)
결혼상태										
유배우	36.0	19.1	10.2	8.0	7.7	7.4	3.3	7.7	0.5	100.0(659)
이혼·별거·사별	32.8	9.0	17.9	3.0	9.0	13.4	4.5	10.4	-	100.0(67)
미혼	25.0	25.0	16.7	5.6	-	2.8	2.8	22.2	-	100.0(3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0.6	15.2	12.3	2.9	5.4	10.5	2.5	9.8	0.7	100.0(276)
고등학교	31.7	18.1	10.8	10.8	10.2	6.7	2.9	8.6	0.3	100.0(315)
대학 이상	32.6	24.4	9.9	9.3	5.8	5.2	5.8	7.0	-	100.0(172)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X2값을 제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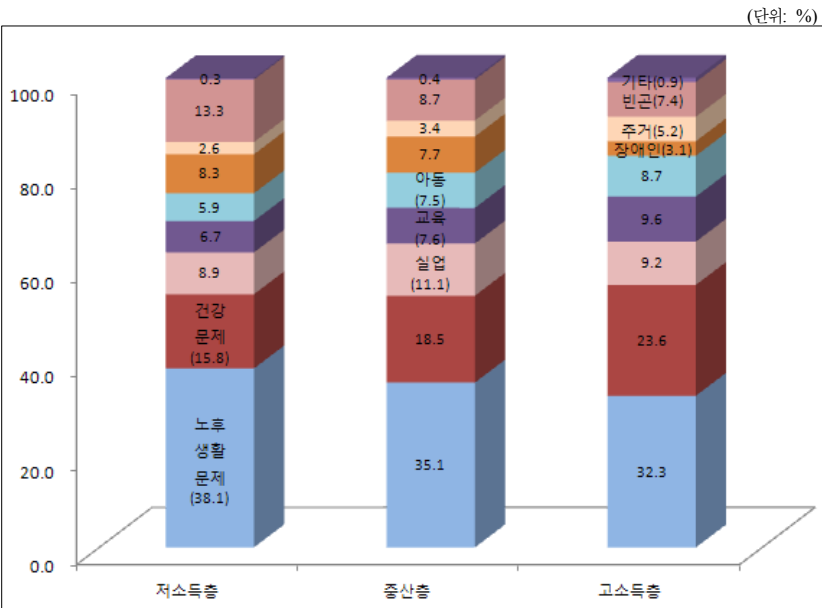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결혼 상태별로는 대부분 ‘노후생활 문제’와 ‘건강 및 의료문제’를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미혼의 경우는 ‘빈곤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22.2%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일수록

‘노후생활 문제’에 대한 비율이 높았으나 고학력으로 갈수록 ‘건강 및 의료문제’에 비율이 다소 높았다.

전반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 1순위는 대체적으로 ‘노후생활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건강 및 의료 문제’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연령, 미혼 등의 응답자 특성에 따라 ‘실업문제’, ‘빈곤문제’를 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림 5-8] 소득계층별 1순위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국민이 낸 세금을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쓴다고 할 때 어디에 주로 쓰여야 하는지 2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1,666명 중 ‘건강 및 의료문제’에 사용해야 한다가 2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후생활 문제’ 20.8%, ‘장애인문제’ 11.8%, ‘빈곤문제’ 9.6%,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건강 및 의료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후생활 문제’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각 계층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저소득층, 중산층의 경우 모두 ‘장애인 문제’를 꼽았고 고소득층은 ‘실업문제’라고 답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87〉 소득계층별 2순위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단위: %, 명)

특성	노후 생활 문제	건강 및 의료 문제	실업 문제	교육 문제	아동 양육 문제	장애 인문 제	주거 문제	빈곤	기타	계(수)	χ^2
전체	20.8	25.3	9.2	9.1	8.9	11.8	5.1	9.6	0.2	100.0 (1,666)	22.133
소득계층											
저소득층	21.1	26.7	6.9	8.5	9.0	13.1	4.9	9.6	0.3	100.0 (679)	
중산층	21.6	25.3	10.0	8.9	8.4	11.8	4.9	8.9	0.1	100.0 (760)	
고소득층	17.2	21.6	13.2	11.5	10.1	7.5	6.6	11.9	0.4	100.0 (227)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2순위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거주지역 및 성별에서 ‘건강 및 의료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노후생활 문제’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이전의 논의된 결과와 유사하게 고연령층일수록 ‘노후생활문제’, ‘건강 및 의료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응답한 반면 저연령층일 경우 ‘교육문제’, ‘아동양육문제’, ‘장애인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일수록 ‘건강 및 의료문제’에 대한 비율이 높았으나 타 문제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자의 경우 ‘건강 및 의료문제’와 ‘노후생활 문제’를 꼽았지만 비취업자의 경우는 ‘실업문제’(25.0%)도 주요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정리하면, 국민이 낸 세금을 통해 해결해야 할 2순위의 문제로는 ‘건강 및 의료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노후생활문제’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문제’나 ‘실업문제’, ‘교육문제’, ‘빈곤문제’등도 10% 내외의 비율을 보였다.

〈표 5-88〉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2순위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단위: %, 명)

특성	노후 생활 문제	건강 및 의료 문제	실업 문제	교육 문제	아동 양육 문제	장애인 문제	주거 문제	빈곤	기타	계(수)
전체	21.6	25.3	10.0	8.9	8.4	11.8	4.9	8.9	0.1	100.0(760)
거주지역										
도시	22.0	23.9	11.6	9.5	8.2	10.4	5.3	9.0	0.2	100.0(623)
도농복합·농촌	19.7	31.4	2.9	6.6	9.5	18.2	2.9	8.8	-	100.0(137)
성별										
남	18.7	26.0	10.3	9.8	9.8	9.5	5.7	10.3	-	100.0(369)
여	24.3	24.6	9.7	8.2	7.2	14.1	4.1	7.7	0.3	100.0(391)
연령										
20~29세	18.2	-	9.1	9.1	9.1	27.3	27.3	-	-	100.0(11)
30~39세	22.0	22.8	10.2	11.0	14.2	7.9	4.7	6.3	0.8	100.0(127)
40~49세	19.9	23.9	8.8	13.7	6.6	10.2	7.5	9.3	-	100.0(226)
50~64세	24.8	25.6	10.1	6.3	6.7	13.4	3.8	9.2	-	100.0(238)
65세 이상	19.0	30.4	11.4	4.4	8.9	13.9	1.3	10.8	-	100.0(15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0.4	28.1	10.9	5.5	8.8	13.1	3.6	9.5	-	100.0(274)
고등학교	23.5	24.1	9.8	11.1	7.0	10.8	5.4	7.9	0.3	100.0(315)
대학 이상	19.9	22.8	8.8	10.5	10.5	11.7	5.8	9.9	-	100.0(171)
취업여부										
취업	21.1	25.2	9.9	8.7	8.7	11.2	5.7	9.5	-	100.0(507)
비취업	25.0	20.0	25.0	5.0	10.0	5.0	-	10.0	-	100.0(20)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의료, 연금 등의 사회보험이나 육아나 양로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가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있다. 어느 방안으로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를 ①번~⑤번까지 범주화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1,675명 중 ‘전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 ①의 입장은 26.7%였으며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④는 24.7%로 나타났다. 의견의 중간③을 기준으로 파악하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은①+② 44.1%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은④+⑤ 36.6%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46.0%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④+⑤)라고 응답하였으며 고소득층의 경우 59.0%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①+②)라고 응답하였다. 중산층의 경우는 46.4%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①+②), 33.4%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④+⑤)고 응답하여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산층가족은 바람직한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으로 약 46%인 거의 과반수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라고 응답하였고, 약 33%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표 5-89〉 소득계층별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모든 국민 대상 ←—————→ 가난한 사람들 대상					계(수)	χ^2
	①	②	③	④	⑤		
전체	26.7	17.4	19.3	24.7	11.9	100.0(1,675)	67.946***
소득계층							
저소득층	24.3	12.3	17.4	30.2	15.8	100.0(683)	
중산층	26.2	20.2	20.2	22.7	10.7	100.0(763)	
고소득층	35.4	23.6	21.8	14.8	4.4	100.0(229)	

주: 1)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할수록 ①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할수록 ⑤로 응답함; 2) * p<0.5, ** p<.01, *** p<.001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 설문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대한 견해는 거주지역 및 교육수준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나머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거주자의 경우 48.9%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①+②)’라고 답한 반면, 도농복합·농촌 거주자의 41.3%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④+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①+②)’고 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④+⑤)’는 의견은 남·여 모두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①+②)’는 입장이 많았으며, 특히 20~29세에서(63.7%)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실수가 적어서 대표성은 낮다. 한편 고연령층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④+⑤)’는 의견이 많았는데 65세 이상의 경우 ‘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⑤)의 의견이 18.1%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의 경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①+②)’는 의견이 많았으나 유배우의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④+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일수록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①+②)’고 답하였으며 대학 이상(58.1%)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중학교 이하에서는 43.9%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④+⑤)’라고 응답하였다. 고용상태별로 살펴보면 고용주,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의 경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①+②)’라는 응답이 높았으나,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④+⑤)’라는 응답이 많았다.

〈표 5-90〉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에 관한 의견

(단위: %, 명)

특성	모든 국민 대상 ← → 가난한 사람들 대상					계(수)	χ^2
	①	②	③	④	⑤		
전체	26.2	20.2	20.2	22.7	10.7	100.0(763)	
거주지역							
도시	27.0	21.9	19.4	21.3	10.4	100.0(1,283)	30.462***
도농복합·농촌	22.5	12.3	23.9	29.0	12.3	100.0(392)	
성별							
남성	28.4	19.7	18.6	22.7	10.5	100.0(370)	
여성	24.2	20.6	21.6	22.6	10.9	100.0(393)	
연령							
20~29세	45.5	18.2	36.4	-	-	100.0(11)	
30~39세	34.6	24.4	18.9	17.3	4.7	100.0(127)	
40~49세	25.2	25.7	20.8	20.8	7.5	100.0(226)	
50~64세	25.1	16.3	23.8	22.2	12.6	100.0(239)	
65세 이상	21.3	15.0	13.8	31.9	18.1	100.0(160)	
결혼상태							
유배우	25.0	20.5	20.5	23.4	10.6	100.0(659)	
이혼·별거·사별	32.8	17.9	17.9	19.4	11.9	100.0(67)	
미혼	33.3	19.4	19.4	16.7	11.1	100.0(3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9.6	16.7	19.9	29.0	14.9	100.0(276)	31.442***
고등학교	29.2	19.7	22.2	18.7	10.2	100.0(315)	
대학 이상	31.4	26.7	16.9	19.8	5.2	100.0(172)	
고용상태							
상용근로자	26.4	20.3	24.7	19.0	9.5	100.0(231)	
임시근로자	32.0	22.0	14.0	20.0	12.0	100.0(50)	
일용근로자	22.4	19.0	13.8	29.3	15.5	100.0(58)	
고용주	31.3	25.0	12.5	25.0	6.3	100.0(16)	
자영업자	21.9	20.2	17.5	29.8	10.5	100.0(114)	
무급가족종사자	20.0	17.5	20.0	32.5	10.0	100.0(40)	

주: 1)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할수록 ①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할수록 ⑤로 응답함; 2)* $p<0.5$, ** $p<0.1$, *** $p<0.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 설문 원자료

이전에 논의되었던 복지재원 마련방안과 연관해서 살펴보면 ‘복지 재원을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남성, 미혼, 상용근로자, 고용주는 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에서도 가난한 사람들보다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복지재원 마련방안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기업이 세금을 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도농복합·농촌거주자, 여성, 이혼·별거·사별, 중학교 이하,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들은 복지서비스 대상을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3. 중산층가족의 정책욕구

가. 정부지출확대 희망 정책

복지영역별 정부지출확대에 대한 희망 정도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노인생활지원과 장애인 생활지원이 각각 약 78~86%, 80~83%로 높았고, 다음은 빈곤층 생활지원,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교육, 건강보험 및 보건, 주거지원, 국민연금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산층가족의 지출확대 희망영역은 전반적으로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중산층가족은 타 소득계층에 비해 주거지원과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그리고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에 대한 지출확대 희망이 높았고 고소득층은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 그리고 교육, 빈곤층 생활지원, 노인생활지원 및 장애인 생활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지출확대가 높게 나타났다.

〈표 5-91〉 소득계층별 영역에 따른 정부지출 희망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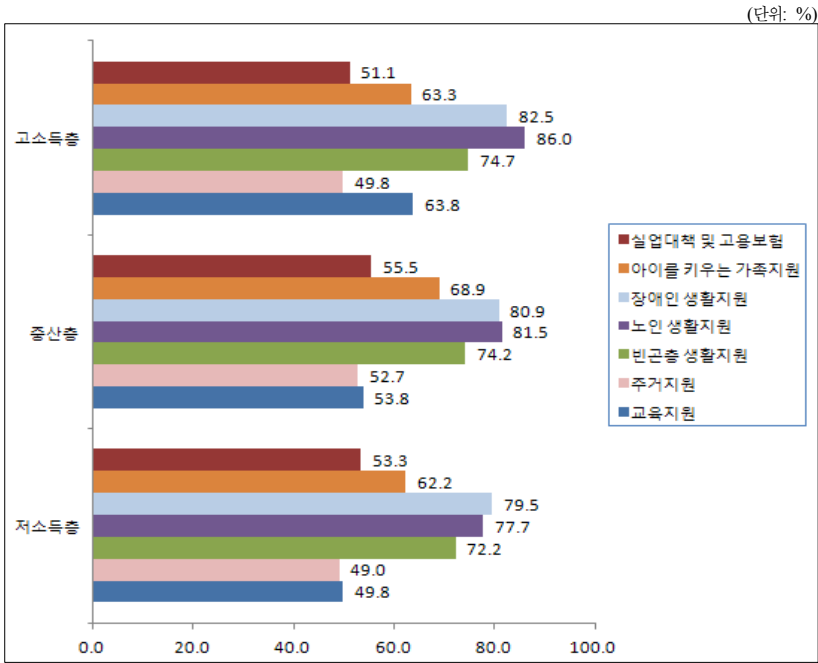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χ^2
건강보험 및 보건					27.753***
지출 확대	49.5	50.3	59.0	51.1	
지출 유지	33.2	31.5	27.1	31.6	
지출 축소	14.5	17.9	14.0	16.0	
국민연금(노령연금)					33.900***
지출 확대	44.5	44.3	47.6	44.8	
지출 유지	36.3	29.8	27.5	32.1	
지출 축소	13.9	23.0	23.6	19.4	
교육					42.208***
지출 확대	49.8	53.8	63.8	53.5	
지출 유지	34.0	27.3	18.3	28.8	
지출 축소	10.7	15.8	17.0	13.9	
주거지원					11.321
지출 확대	49.0	52.7	49.8	50.8	
지출 유지	34.8	29.4	34.5	32.3	
지출 축소	11.7	15.1	13.1	13.5	
빈곤층 생활지원					6.813
지출 확대	72.2	74.2	74.7	73.4	
지출 유지	19.9	18.3	16.6	18.7	
지출 축소	7.0	6.7	6.1	6.7	
노인 생활지원					10.298
지출 확대	77.7	81.5	86.0	80.6	
지출 유지	15.8	14.5	10.5	14.5	
지출 축소	5.6	3.5	3.1	4.3	
장애인 생활지원					4.461
지출 확대	79.5	80.9	82.5	80.6	
지출 유지	16.1	14.9	12.7	15.1	
지출 축소	2.9	2.9	4.4	3.1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9.674
지출 확대	62.2	68.9	63.3	65.4	
지출 유지	28.4	24.2	27.9	26.4	
지출 축소	6.9	5.7	6.6	6.3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실업급여)					30.301***
지출 확대	53.3	55.5	51.1	54.0	
지출 유지	31.3	33.0	33.2	32.4	
지출 축소	8.2	9.7	12.7	9.5	
계(수)	100.0(683)	100.0(766)	100.0(229)	100.0(1,678)	

주: 1) '지출확대'는 훨씬 더 많이 지출+좀 더 지출, '지출유지'는 현재수준으로 지출, '지출축소'는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로 재정의함; 2) * p<.05, ** p<.01, *** p<.001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5-9] 소득계층별 '영역에 따른 정부지출 희망정도' 비교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복지영역에 따른 정부지출 정도 희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92 참조). 건강보험을 희망하는 비율은 도농복합·농촌보다 도시지역에서, 남성가구주, 50대 이상, 미혼보다 유배우나 사별·이혼·별거 중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부자가구, 취업자, 300~4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에서 정부지출 확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을 희망하는 비율은 사별·이혼·별거나 미혼보다 유배우가,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 보다는 대학이상의 학력층에서 정부지출 확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외 도농복합·농촌 지역, 여성가구주, 65세 이상 고령층, 모부자가구, 비취업자, 200~3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에서 정부지출 확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영역에서의 정부지출 확대를 희망하는 비율은 도농복합·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이, 그리고 40대 연령층에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로는 여성가구주가,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학력층이, 가구형태로는 모부자가구가, 비취업자, 300~4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에서 정부지출 확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주거지원의 정부지출에 대해서도 확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전체 특성별로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우선 거주지역별로는 도농복합·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에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에 있어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 연령층에서, 미혼, 고등학교 학력층, 모부자가구, 취업자, 200~3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 등에서 주거지원 정부지출 확대를 희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빈곤층 생활지원에 있어서는 정부지출 확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64~92%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교육, 주거지원의 정부지출 확대 희망비율 보다도 높았다. 특성별로는 도농복합·농촌보다 도시지역에서, 여성가구주, 40대 연령층, 유배우, 고등학교 학력층, 모부자가구, 200~300만원 미만의 소득층이 지출확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노인생활지원에 있어서 정부지출 확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빈곤층 생활지원의 지출확대 비율보다 더 높았다. 특성별로는 도시지역, 여성가구주, 50~64세 연령층, 유배우, 대학이상의 고학력층, 모부자가구, 취업자, 200~4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 등에서 지출확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생활지원에 관한 정부지출 정도 희망도 노인생활지원에 관한 정부지출 정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92〉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영역에 따른 정부지출 정도 희망’

(단위: %, 명)

특성	건강보험			국민연금			교육			계(수)
	지출 확대	지출 유지	지출 축소	지출 확대	지출 유지	지출 축소	지출 확대	지출 유지	지출 축소	
전체	50.5	31.6	18.0	45.6	30.7	23.7	55.5	28.2	16.3	100.0(763)
거주지역										
도시	50.6	30.7	18.7	44.8	29.8	25.4	57.3	26.0	16.6	100.0(625)
도농복합·농촌	50.0	35.5	14.5	49.6	34.6	15.8	47.4	37.8	14.8	100.0(138)
χ^2	1.952			5.637			7.596*			
성별										
남성	51.4	30.3	18.4	44.7	31.1	24.2	53.5	29.8	16.7	100.0(370)
여성	49.6	32.8	17.6	46.5	30.3	23.2	57.4	26.6	15.9	100.0(393)
χ^2	0.579			0.234			1.256			
연령										
20~29세	36.4	54.5	9.1	20.0	60.0	20.0	27.3	54.5	18.2	100.0(11)
30~39세	49.6	35.4	15.0	42.7	22.6	34.7	52.4	27.0	20.6	100.0(127)
40~49세	49.3	28.6	22.0	44.8	26.2	29.0	60.7	21.4	17.9	100.0(227)
50~64세	52.7	28.0	19.2	45.5	32.5	22.1	56.7	29.4	13.9	100.0(239)
65세 이상	50.3	36.5	13.2	51.0	38.9	10.2	50.7	35.3	14.0	100.0(159)
χ^2	11.396						15.990*			
결혼상태										
유배우	51.0	30.3	18.7	47.4	28.9	23.7	56.1	27.1	16.8	100.0(659)
이혼·별거·사별	50.7	35.8	13.4	39.3	45.9	14.8	54.7	34.4	10.9	100.0(67)
미혼	38.9	47.2	13.9	22.9	37.1	40.0	48.6	34.3	17.1	100.0(36)
χ^2	5.752			16.626**			3.19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7.1	35.0	17.9	47.0	37.3	15.7	54.8	29.9	15.3	100.0(274)
고등학교	51.7	28.1	20.2	43.5	28.1	28.4	58.8	23.5	17.7	100.0(317)
대학 이상	53.5	32.6	14.0	47.3	24.9	27.8	50.6	34.1	15.3	100.0(172)
χ^2	5.772			18.300**			6.855			
가구형태										
단독	47.6	42.9	9.5	25.0	52.5	22.5	53.8	35.9	10.3	100.0(42)
모부자	60.0	20.0	20.0	50.0	25.0	25.0	60.0	40.0	-	100.0(5)
소년소녀가장	-	-	-	-	-	-	-	-	-	-
기타	50.6	31.0	18.4	46.8	29.5	23.7	55.6	27.7	16.8	100.0(716)
취업여부										
취업	50.7	30.5	18.8	43.0	31.5	25.6	52.9	30.0	17.1	100.0(469)
비취업	50.0	33.3	16.7	49.8	29.4	20.8	59.8	25.2	15.0	100.0(294)
χ^2	0.925			3.790			3.466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45.5	39.2	15.3	42.4	37.4	20.2	51.5	32.8	15.7	100.0(209)
200~300만원 미만	51.5	33.3	15.1	47.1	31.2	21.7	53.6	30.4	16.0	100.0(324)
300~400만원 미만	53.5	22.2	24.3	46.5	23.9	29.6	61.8	20.9	17.3	100.0(230)
χ^2	19.659***			12.085*			8.913			

〈표 5-92〉 계속

(단위: %, 명)

특성	주거지원			빈곤층 생활지원			노인 생활지원			계(수)
	지출 확대	지출 유지	지출 축소	지출 확대	지출 유지	지출 축소	지출 확대	지출 유지	지출 축소	
전체	54.2	30.2	15.6	74.8	18.4	6.7	81.9	14.6	3.5	100.0(763)
거주지역										
도시	55.6	28.3	16.2	75.4	17.7	6.9	82.1	14.1	3.8	100.0(625)
도농복합·농촌	48.1	39.1	12.8	72.3	21.9	5.8	81.2	16.7	2.2	100.0(138)
χ^2	6.165*			1.421			1.413			
성별										
남성	54.1	29.9	15.9	74.7	18.5	6.8	81.3	15.2	3.5	100.0(370)
여성	54.3	30.4	15.2	74.9	18.4	6.6	82.4	14.0	3.6	100.0(393)
χ^2	0.077			0.007			0.213			
연령										
20~29세	54.5	36.4	9.1	63.6	18.2	18.2	54.5	27.3	18.2	100.0(11)
30~39세	55.2	31.2	13.6	70.9	22.8	6.3	76.4	19.7	3.9	100.0(127)
40~49세	57.0	27.4	15.7	79.6	14.2	6.2	84.6	11.5	4.0	100.0(227)
50~64세	53.9	30.2	15.9	75.3	19.6	5.1	86.6	11.8	1.7	100.0(239)
65세 이상	50.0	33.1	16.9	71.3	19.4	9.4	77.4	18.2	4.4	100.0(159)
χ^2	2.854			10.114						
결혼상태										
유배우	54.2	29.3	16.5	75.6	18.2	6.3	82.4	14.3	3.3	100.0(659)
이혼·별거·사별	53.0	34.8	12.1	71.6	19.4	9.0	79.1	17.9	3.0	100.0(67)
미혼	58.3	36.1	5.6	69.4	19.4	11.1	77.8	13.9	8.3	100.0(36)
χ^2	4.38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3.4	29.9	16.7	71.9	21.5	6.7	81.7	15.4	2.9	100.0(274)
고등학교	58.1	27.7	14.2	78.9	14.8	6.3	81.4	15.1	3.5	100.0(317)
대학 이상	48.5	35.1	16.4	72.1	20.3	7.6	83.1	12.2	4.7	100.0(172)
χ^2	4.527			5.380			1.788			
가구형태										
단독	56.1	34.1	9.8	64.3	23.8	11.9	76.2	19.0	4.8	100.0(42)
모부자	80.0	-	20.0	100.0	-	0.0	100.0	-	-	100.0(5)
소년소녀가장	-	-	-	-	-	-	-	-	-	-
기타	53.9	30.2	15.9	75.3	18.3	6.5	82.1	14.4	3.5	100.0(716)
취업여부										
취업	55.1	29.4	15.5	76.1	17.9	6.0	81.9	14.9	3.2	100.0(469)
비취업	52.8	31.5	15.7	72.9	19.2	7.9	81.8	14.0	4.1	100.0(294)
χ^2	0.430			1.397			0.518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54.5	33.2	12.4	72.6	21.2	6.3	80.4	16.3	3.3	100.0(209)
200~300만원 미만	55.4	29.4	15.2	76.5	16.7	6.8	82.5	14.5	3.1	100.0(325)
300~400만원 미만	52.4	28.6	18.9	74.6	18.4	7.0	82.5	13.2	4.4	100.0(228)
χ^2	4.062			1.709			1.487			

〈표 5-92〉 계속

(단위: %, 명)

특성	장애인 생활지원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실업급여)			계(수)
	지출 확대	지출 유지	지출 축소	지출 확대	지출 유지	지출 축소	지출 확대	지출 유지	지출 축소	
전체	82.0	15.1	2.9	69.7	24.4	5.8	56.5	33.6	9.8	100.0(763)
거주지역										
도시	83.2	13.9	2.9	70.0	23.9	6.1	57.4	33.5	9.1	100.0(625)
도농복합·농촌	76.6	20.4	2.9	68.6	27.0	4.4	52.6	34.1	13.3	100.0(138)
χ^2	3.774			1.073			2.497			
성별										
남성	81.3	14.9	3.8	71.4	22.3	6.3	54.8	34.1	11.2	100.0(370)
여성	82.7	15.2	2.1	68.2	26.4	5.4	58.2	33.2	8.6	100.0(393)
χ^2	2.030			1.808			1.715			
연령										
20~29세	54.5	27.3	18.2	72.7	27.3	-	72.7	18.2	9.1	100.0(11)
30~39세	80.2	16.7	3.2	79.5	15.0	5.5	46.0	40.5	13.5	100.0(127)
40~49세	83.2	13.7	3.1	69.6	25.1	5.3	56.3	32.6	11.2	100.0(227)
50~64세	85.5	13.6	0.9	67.8	26.7	5.5	59.7	34.3	6.0	100.0(239)
65세 이상	78.5	17.7	4.4	64.7	27.6	7.7	59.5	29.7	10.8	100.0(159)
χ^2				10.060			12.692			
결혼상태										
유배우	82.3	15.0	2.8	69.3	25.1	5.6	56.2	33.8	10.0	100.0(659)
이혼·별거·사별	81.5	13.8	4.6	71.9	18.8	9.4	58.5	32.3	9.2	100.0(67)
미혼	80.6	16.7	2.8	74.3	22.9	2.9	61.1	30.6	8.3	100.0(36)
χ^2							0.45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1.6	15.4	2.9	67.2	28.0	4.8	59.3	30.7	10.0	100.0(274)
고등학교	84.3	13.1	2.6	70.6	22.8	6.6	58.5	33.4	8.0	100.0(317)
대학 이상	78.4	18.1	3.5	72.4	21.8	5.9	48.5	38.6	12.9	100.0(172)
χ^2	2.729			3.609			7.057			
가구형태										
단독	77.5	17.5	5.0	67.5	25.0	7.5	52.4	35.7	11.9	100.0(42)
모부자	100.0	-	-	80.0	20.0	-	100.0	-	-	100.0(5)
소년·소녀가장	-	-	-	-	-	-	-	-	-	-
기타	82.1	15.0	2.8	69.8	24.4	5.8	56.5	33.8	9.8	100.0(716)
취업여부										
취업	82.0	15.5	2.6	69.8	24.2	6.0	56.1	33.8	10.2	100.0(469)
비취업	82.1	14.5	3.4	69.7	24.8	5.5	57.2	33.4	9.3	100.0(294)
χ^2	0.580			0.100			0.184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85.6	11.5	2.9	68.9	24.8	6.3	59.5	29.8	10.7	100.0(206)
200~300만원 미만	80.1	17.1	2.8	72.1	22.9	5.0	54.6	36.7	8.6	100.0(323)
300~400만원 미만	81.4	15.5	3.1	67.1	26.3	6.6	56.5	32.7	10.8	100.0(228)
χ^2	3.124			1.887			3.253			

주: 1) ‘지출확대’는 훨씬 더 많이 지출+좀 더 지출, ‘지출유지’는 현재수준으로 지출, ‘지출축소’는 조금 덜 지출+훨씬 덜 지출로 재정의함; 2)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3) * p<0.5, ** p<.01, *** p<.001; 4)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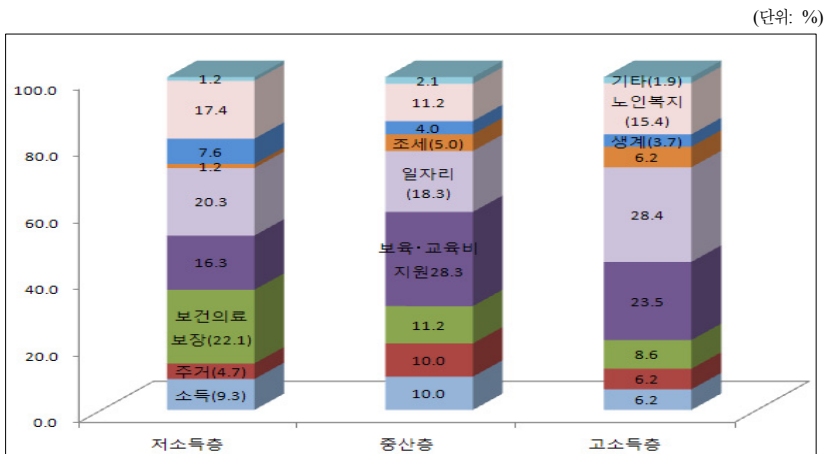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자녀양육 가족지원 지출확대 희망은 도시지역, 30대 연령층, 미혼자, 대학이상 고학력층, 모부자가구, 취업자, 200~300만원 미만 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관련 정부지출에 관해서는 56.5%가 지출확대를 희망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 여성가家主, 20대 연령층, 미혼, 중학교 이하 학력층, 모부자가구, 비취업자, 100~200만원 미만 저소득수준에서 지출확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나.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 증진 정책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보육·교육비 지원과 일자리정책 그리고 노인복지 등에 정책욕구가 높았고, 저소득층은 보건의료, 일자리, 노인복지 그리고 보육·교육비 지원에 정책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5-10] 소득계층별 정부가 중산층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정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로는 상층과 하층의 경우에는 일자리 정책을, 그리고 중층인 경우에는 보육·교육비 지원정책을 우선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 지적하였다.

〈표 5-93〉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정부가 중산층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정책

(단위: %, 명)

구분	소득 보장 정책	주거 보장 정책	보건 의료 보장 정책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	일자리 정책	조세 정책	노인 복지 정책	기타	생계 보장 정책	계(수)	χ^2
전체	9.1	8.1	13.0	24.8	20.7	4.4	13.4	1.8	4.7	100.0(1,498)	
소득계층											
저소득층	9.3	4.7	22.1	16.3	20.3	1.2	17.4	1.2	7.6	100.0(172)	49.677 ***
중산층	10.0	10.0	11.2	28.3	18.3	5.0	11.2	2.1	4.0	100.0(481)	
고소득층	6.2	6.2	8.6	23.5	28.4	6.2	15.4	1.9	3.7	100.0(162)	
주관적 사회적 지위											
상	6.4	4.3	8.5	19.1	34.0	10.6	2.1	4.3	10.6	100.0(47)	61.506 ***
중	8.4	7.2	12.6	28.8	20.1	6.2	11.8	1.5	3.5	100.0(890)	
하	12.5	9.8	12.1	17.5	21.7	3.0	15.2	2.1	6.1	100.0(561)	

주: * p<0.5, ** p<0.1, ***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최우선 시행할 정책은 교육수준과 취업여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 학력층은 일자리 정책, 보건의료 보장정책, 노인복지정책을,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의 학력층은 보육·교육비 지원정책, 일자리 정책을 희망하였으며 그 외 고등학교 학력층은 보건의료 보장정책을, 대학 이상의 학력층은 소득보장정책을 지적하여 교육수준별 차이를 보였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는 보육·교육비 지원정책, 보건의료 보장정책, 일자리 정책 순으로, 비취업자는 보육·교육비 지원정책, 일자리 정책, 주거보장 정책 순으로 희망하였다.

이외에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보육·교육비 지원정책, 일자리 정책, 보건의료 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순으로, 농어촌지역은 보육·교육

비 지원정책 외에 노인복지정책을 우선으로 시행할 정책으로 지적하여 지역 간 차이를 보였다. 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는 보육·교육비 지원정책, 일자리 정책, 노인복지정책을, 여성가구주는 보육·교육비 지원정책, 일자리 정책, 보건의료 보장정책을 우선으로 지적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는 보육·교육비 지원정책, 일자리 정책, 보건의료 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순으로 희망하였고, 특히 일자리 정책은 타 연령층보다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30대는 보육·교육비 지원정책, 주거보장정책, 일자리 정책 순으로, 40대 역시 보육·교육비 지원정책을 우선으로 시행할 정책으로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 정책, 노인복지정책 순이었다. 50~64세 연령층에서는 일자리 정책과 노인복지정책을, 65세 이상은 노인복지정책과 보건의료 보장정책 순으로 지적하여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는 보육·교육비 지원정책, 일자리 정책, 노인복지정책 순으로, 사별·이혼·별거는 일자리 정책, 보육·교육비 지원정책, 보건의료 보장정책을, 미혼은 일자리 정책, 보육·교육비 지원정책, 주거보장정책 순이었다.

가구형태별로는 1인 가구는 일자리 정책, 보건의료 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을, 부부가구는 노인복지정책, 보건의료 보장정책, 일자리 정책을, 부부+자녀가구와 기타가구는 보육·교육비 지원정책, 일자리 정책 외에 각각 주거보장정책과 소득보장정책을 우선 시행할 것을 희망하여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가구원수별로는 1인 가구는 일자리 정책, 보건의료 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 순으로, 2인 가구는 노인복지정책, 보건의료 보장정책, 보육·교육비 지원정책 순으로, 3인 이상 가구는 보육·교육비 지원정책, 일자리 정책, 주거보장정책 순으로 지적하였다.

〈표 5-94〉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정부가 중산층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정책

(단위: %, 명)

특성	소득 보장 정책	주거 보장 정책	보건 의료 보장 정책	보육·교육·복지 지원 정책	일자리 정책	조세 정책	노인 복지 정책	생계 보장 정책	기타	계(수)	χ^2
전체	10.0	10.0	11.2	28.3	18.3	5.0	11.2	4.0	2.1	100.0(481)	
거주지역											
도시	10.3	10.6	11.0	28.2	18.3	5.2	10.1	4.5	1.9	100.0(426)	9.533
농·어촌	7.3	5.5	12.7	29.1	18.2	3.6	20.0	-	3.6	100.0(55)	
성별											
남성	11.4	10.2	10.2	23.9	17.6	5.5	12.9	5.5	2.7	100.0(255)	11.467
여성	8.4	9.7	12.4	33.2	19.0	4.4	9.3	2.2	1.3	100.0(226)	
연령											
20~29세	9.1	11.7	11.7	27.3	24.7	1.3	6.5	6.5	1.3	100.0(77)	
30~39세	10.2	15.6	10.2	39.8	14.8	3.1	2.3	2.3	1.6	100.0(128)	
40~49세	9.1	8.3	5.8	39.7	15.7	8.3	10.7	2.5	-	100.0(121)	
50~64세	12.6	6.3	12.6	12.6	23.4	5.4	15.3	7.2	4.5	100.0(111)	
65세 이상	6.8	4.5	25.0	4.5	11.4	6.8	36.4	-	4.5	100.0(44)	
결혼상태											
유배우	10.2	8.8	10.8	31.5	15.9	5.7	11.6	2.8	2.6	100.0(352)	
이혼·별거·사별	10.0	5.0	15.0	15.0	25.0	5.0	15.0	5.0	5.0	100.0(20)	
미혼	9.2	14.7	11.9	20.2	24.8	2.8	9.2	7.3	-	100.0(10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8	8.7	18.8	11.6	23.2	7.2	17.4	2.9	4.3	100.0(69)	30.676*
고등학교	11.9	10.7	13.7	28.6	14.3	3.6	11.3	3.0	3.0	100.0(168)	
대학 이상	9.9	9.5	7.4	33.1	19.4	5.4	9.5	5.0	0.8	100.0(242)	
가구형태											
1인 가구	14.3	4.8	23.8	-	28.6	4.8	9.5	9.5	4.8	100.0(21)	
부부가구	7.3	7.3	21.8	9.1	10.9	3.6	30.9	1.8	7.3	100.0(55)	
부부+자녀	9.7	10.6	10.3	32.9	18.8	5.0	8.2	3.2	1.2	100.0(340)	
기타가구	12.3	10.8	3.1	29.2	18.5	6.2	10.8	7.7	1.5	100.0(65)	
가구원수											
1인	14.3	4.8	23.8	-	28.6	4.8	9.5	9.5	4.8	100.0(21)	
2인	7.5	9.0	17.9	11.9	9.0	6.0	29.9	3.0	6.0	100.0(67)	
3인 이상	10.2	10.4	9.4	32.6	19.3	4.8	8.1	3.8	1.3	100.0(393)	
취업여부											
취업	8.6	8.1	17.2	27.8	16.7	2.9	14.4	2.9	1.4	100.0(209)	22.690**
비취업	11.0	11.4	6.6	28.7	19.5	6.6	8.8	4.8	2.6	100.0(272)	
소득수준											
100~200만원 미만	9.1	11.1	10.8	30.5	15.5	4.4	11.9	2.2	4.4	100.0(361)	14.088
200~300만원 미만	12.5	6.7	12.5	21.7	26.7	6.7	9.2	1.7	2.5	100.0(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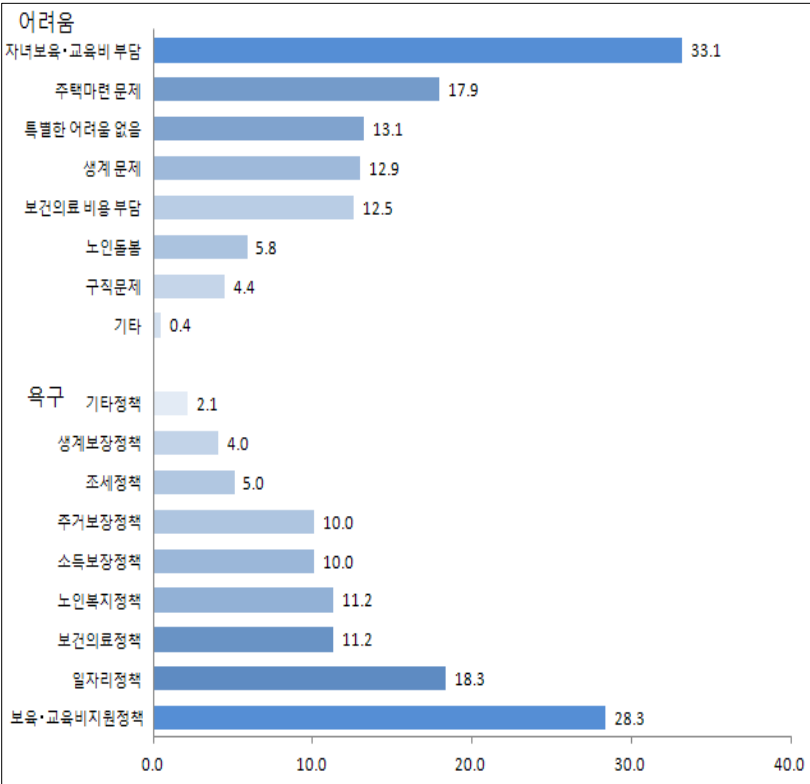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소득수준별로는 100~200만원 미만은 주거보장정책, 보육·교육비 지원정책, 노인복지정책, 200~300만원 미만은 소득보장정책, 보건의료보장정책,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그러나 교육수준과 취업여부 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5-11〕 중산층가족의 어려움과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욕구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4. 중산층의 복지체감 증진을 위한 복지 재원 마련

국가가 노인, 아동, 장애인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1,673명 중 38.8%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32.9%, '기업이 세금, 기부금등을 내서' 21.6%,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해서' 4.2%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은 저소득층 43.4%, 중산층 37.5%, 고소득층 29.4%가 동의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복지재원을 고소득층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복지재원을 국민의 세금, 기업의 기부금,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마련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중산층의 경우 복지재원 마련방안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37.5%,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32.0%, '기업이 세금, 기부금등을 내서' 22.4%등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95〉 소득계층별 노인, 이혼,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제공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단위: %, 명)

특성	서비스 이용자가 요금부담	국민의 세금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부과	기업의 세금 및 기부금	종교단체 등의 기부금	기타	계수	χ^2
전체	4.2	32.9	38.8	21.6	1.5	1.0	100.0(1,673)	31.342**
소득계층								
저소득층	2.9	33.3	43.4	19.4	0.6	0.4	100.0(682)	
중산층	4.7	32.0	37.5	22.4	2.2	1.2	100.0(763)	
고소득층	6.6	34.6	29.4	25.4	1.8	2.2	100.0(228)	

주: * p<0.5, ** p<.01, *** p<.001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 설문 원자료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재원마련 방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산층가족 중에서 도농복합·농촌에 거주(41.3%), 여성(40.5%), 이혼·별거·사별(46.3%), 중학교 이하 학력소지자(40.9%), 임시근로자(42.0%)와 무급가족종사자(42.5%)등의 경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5-96〉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노인, 아동,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제공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단위: %, 명)

특성	서비스 이용자가 요금부담	국민의 세금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부과	기업의 세금 및 기부금	종교단체 등의 기부금	기타	계(수)
전체	4.7	32.0	37.5	22.4	2.2	1.2	100.0(763)
거주지역							
도시	4.0	32.6	36.6	22.9	2.4	1.2	100.0(625)
도농복합·농촌	8.0	29.0	41.3	20.3	1.4	-	100.0(138)
성별							
남	3.8	37.3	34.3	20.5	2.7	1.4	100.0(370)
여	5.6	27.0	40.5	24.2	1.8	1.0	100.0(393)
결혼상태							
유배우	4.4	32.3	37.3	22.3	2.6	1.1	100.0(659)
이혼·별거·사별	4.5	23.9	46.3	23.9	-	1.5	100.0(67)
미혼	11.1	41.7	22.2	22.2	-	2.8	100.0(3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1	31.5	40.9	19.6	2.2	0.7	100.0(276)
고등학교	3.2	34.0	34.9	24.8	2.2	1.0	100.0(315)
대학 이상	7.0	29.1	36.6	22.7	2.3	2.3	100.0(172)
고용상태							
상용근로자	4.3	32.0	35.9	22.9	2.2	2.6	100.0(231)
임시근로자	4.0	34.0	42.0	18.0	-	2.0	100.0(50)
일용근로자	5.2	34.5	39.7	20.7	-	-	100.0(58)
고용주	-	56.3	25.0	12.5	6.3	-	100.0(16)
자영업자	4.4	35.1	39.5	18.4	2.6	-	100.0(114)
무급가족종사자	5.0	27.5	42.5	17.5	7.5	-	100.0(40)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x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즉 본인 부담보다는 특정 계층에 의해 재원조달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37.3%), 미혼(41.7%), 고등학교 학력소지자(34.0%), 고용주(56.3%)와 자영업자(35.1%)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기업이 세금, 기부금을 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24.2%)과 고등학교 학력소지자(24.8%)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요금을 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은 미혼(11.1%)과 대학이상 학력소지자(7.0%)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

을 보였다.

정리하면 대부분의 중산층은 ‘돈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한다’라는 입장으로 소득재분배를 통한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남성, 미혼,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주,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마련해야한다’의 의견이 많아 복지재원 마련에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응답자 특성 중 ‘미혼’과 ‘고용주’의 경우 ‘국민의 세금’이나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율이 높아 서비스의 수급자의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제4절 시사점

중산층가족의 특성 및 복지욕구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산층가족 형태는 약 88%가 핵가족이었고, 주택유형은 77%가 단독주택과 일반아파트에 거주하며, 자가비율은 57%에 불과하여 핵가족으로 인한 가족돌봄의 공백이 예상되고 주거환경이 불안정함을 시사한다.

둘째, 중산층가족의 재산보유 규모는 11,113.1만원 정도였고, 소득대비 소비는 96%로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소비지출구조는 교육비, 교통통신비 및 세금·사회보장부담금이 높았다.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보육·교육비용 부담이 가장 높았고, 또한 주택마련, 생계, 보건의료비용으로 인한 부담도 높았다.

전반적으로 중산층가족은 소득대비 소비생활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주로 교육 및 교통통신비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양육부

터 주택마련, 보건의료 생활 등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체감하여 이는 부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산층가족의 빈곤화를 예방하고 가족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가계부담 경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중산층 가구주의 근로가능성과 근로지속성은 각각 90%, 73%로 중산층의 5분의 1 정도는 근로가 가능함에도 근로를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비경제활동사유는 근로의사가 없는 경우 외에 구직활동의 어려움과 집안일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산층 가구주의 취업은 82%로 높은 편이나,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외에 자영업자와 임시직·일용직도 많아서 종사상 지위가 불안정한 편이었다. 이와 같이 일부 중산층 가족은 근로환경과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서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산층가족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안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과 가족돌봄의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며 건전한 고용시장을 위해 구조적인 개선부터 중산층 가구주의 특성에 적합한 괜찮은 일자리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산층가족의 육체적 건강은 65%로 과반수를 약간 초과하였고, 만성질환 유병률은 45%로 거의 과반수가 질병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건강으로 우울정도는 도시지역 거주, 결혼해체 그리고 비취업인 경우 높아서 우울정도가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정신적 치료가 요구된다. 한편 중산층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10%로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의 자원확보와 중산층가족의 사회현대책임 측면에서 사회참여 의식이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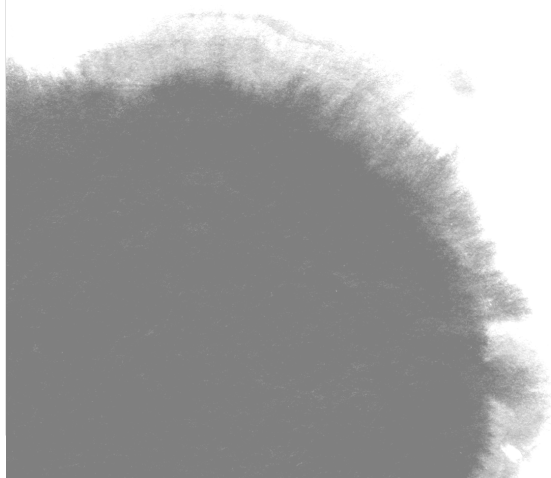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다섯째, 중산층 가족은 노후소득보장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68~99%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저조하였고,

퇴직금 적용은 56%로 과반수에 불과하였으며, 퇴직연금 가입률은 5%로 극히 미미하였다. 또한 개인연금 가입률도 27%에 불과하여 퇴직금 및 개인연금 등 개인보장수준은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사회보험의 미납으로 사회보장의 불건전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미납수준은 각각 28%와 4%이었고, 평균 미납기간은 5.2~10.6개월이었으며, 미납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과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불신 등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불건전한 사회보장생활은 중산층 가족의 노후 빈곤을 초래하므로 건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중산층가족은 국가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사회문제로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노후생활, 건강 및 의료문제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바람직한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으로 거의 과반수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또한 정부지출확대 희망 영역으로는 주거지원과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그리고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등이 높았다. 따라서 중산층 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영역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막대한 예산과 세금을 동반하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06

중산층가족의 기준 및 복지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6장 중산층가족의 기준 및 복지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1절 전문가조사 응답자의 특성

전문가조사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 남성은 41.3%, 여성은 58.7%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40대 연령층이 46.2%로 거의 과반수이며, 30대와 50대가 49.0%로 절반이고, 20대와 60세 이상은 4.8%로 미미하였다. 성별로도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교 학력소지자는 14.4%이었고, 대학원 이상은 85.5%로 다수가 해당되었다. 남성은 대학교 학력소지자가 18.6%, 대학원 이상은 81.4%이었고, 여성은 각각 11.5%와 88.5%로 남성이 여성보다 대학교 학력 소지자가 다소 많았고 여성은 대학원 이상이 많았다.

전공분야는 사회복지학이 3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타(행정학·심리학·유아교육 등), 경제학, 사회학, 가족학(가정학), 정치외교학 순으로 많았다. 남성은 경제학이 3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타, 사회복지학, 사회학, 가족학 순이었고, 여성은 사회복지학이 4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족학(가정학), 기타, 사회학, 경제학, 정치외교학 순이었다. 전문가유형은 연구기관 종사자가 4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교수 및 학계종사자, 공무원,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순으로 많았다. 남성은 전체보다 공무원의 분포가 높았고, 여성은 전체보다 관련기관 업무담당자의 분포가 높았다. 현재하는 업무 또는 연구종사 기간은 5년 미

만이 16.5%이었고, 5~10년 미만은 29.1%, 10년 이상은 54.4%이었다. 남성은 전체보다 10년 이상이 다소 높았으며, 여성은 전체보다 10년 미만이 높았다.

〈표 6-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특성	남성	여성	전체	χ^2
전체	41.3	58.7	100.0(104)	
연령				
20-29세	-	6.6	3.8	
30-39세	25.6	19.7	22.1	
40-49세	44.2	47.5	46.2	
50-59세	30.2	24.6	26.9	
60세 이상	-	1.6	1.0	
교육수준				
고등학교	-	-	-	
(전문)대학교	18.6	11.5	14.4	1.070
대학원 석사	11.6	11.5	11.5	
대학원 박사	69.8	77.0	74.0	
전공분야				
사회학	16.3	13.1	14.4	
사회복지학(가족복지학)	20.9	45.9	35.6	
경제학	32.6	4.9	16.3	
정치외교학	-	1.6	1.0	
가족학(가정학)	2.3	18.0	11.5	
기타	27.9	16.4	21.2	
전문가유형				
교수 및 학계 종사자	25.6	26.2	26.0	
연구기관 종사자	46.5	42.6	44.2	9.061*
공무원	25.6	11.5	17.3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2.3	19.7	12.5	
현 업무/연구 종사기간				
1년 미만	2.3	1.7	1.9	
1-3년 미만	4.7	8.3	6.8	
3-5년 미만	4.7	10.0	7.8	
5-10년 미만	27.9	30.0	29.1	
10년 이상	60.5	50.0	54.4	
계(수)	100.0(43)	100.0(61)	100.0(104)	

주: 1) 전공분야의 기타에는 아동학, 통계학, 행정학, 심리학, 유아교육학 등을 포함; 2) * $p<0.5$, ** $p<.01$, *** $p<.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제2절 중산층가족의 기준 및 범위

중산층가족의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소득수준(100.0%)이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재산규모(94.2%), 직업(77.9%), 교육수준(68.3%), 주관적 계층귀속의식(58.7%), 문화생활 참여도(44.6%)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평균점수는 3.43점~4.71점으로 동일한 순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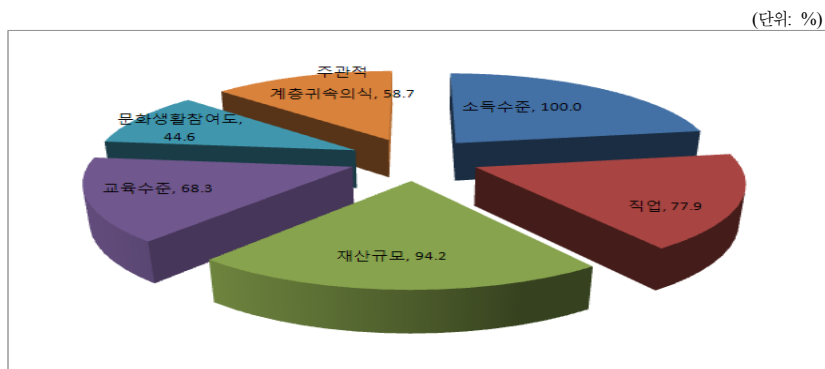
〈표 6-2〉 중산층가족 기준의 중요도

(단위: %, 명, 점)

특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수)	평균
소득수준	-	-	-	28.8	71.2	100.0(104)	4.71
직업	1.0	3.8	17.3	57.7	20.2	100.0(104)	3.92
재산규모	-	1.0	4.8	45.2	49.0	100.0(104)	4.42
교육수준	1.0	8.7	22.1	51.0	17.3	100.0(104)	3.75
문화생활 참여도	1.0	8.7	45.6	35.9	8.7	100.0(104)	3.43
주관적 계층귀속의식	1.0	7.7	32.7	45.2	13.5	100.0(104)	3.63

주: 중요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그림 6-1〕 중산층가족 기준의 중요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조사 결과임.

전문가유형별로 중산층가족 기준의 중요도는 모든 전문가에서 공통적으로 전체와 유사하였다. 교수 및 학계종사자는 50.0~100.0%로 전체보다 직업, 재산규모, 교육수준 그리고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의 중요도가 높았다. 연구기관 종사자는 37.0~100.0%로 전체보다 교육수준과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에 대한 중요도가 높았다. 그리고 공무원은 38.9~100.0%로 전체보다 재산규모에 대한 중요도가 높았고, 관련기관 업무담당자는 전체보다 직업과 문화생활참여도가 높았다. 평균점수는 3.22~4.78점으로 전문가유형별 분포를 반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유형별 중산층가족 기준은 전체와 유사하였으나 중요도는 전문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3〉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 기준의 중요도

(단위: %, 점, 명)

특성	전문가 유형				전체	$\chi^2(F값)$
	교수 및 학계 종사자	연구기관 종사자	공무원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소득수준 비율 평균	100.0 4.78	100.0 4.78	100.0 4.61	100.0 4.46	100.0 4.71	(2.241)
직업 비율 평균	85.2 4.22	76.1 3.76	66.7 3.78	84.6 4.08	77.9 3.92	(2.434)
재산규모 비율 평균	96.3 4.33	93.5 4.52	94.4 4.33	92.3 4.38	94.2 4.42	(0.112)
교육수준 비율 평균	74.1 4.11	71.7 3.65	50.0 3.44	69.2 3.77	68.3 3.75	3.455 (2.548)
문화생활 참여도 비율 평균	50.0 3.54	37.0 3.30	38.9 3.28	69.2 3.85	44.7 3.43	4.823 (1.923)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 비율 평균	66.7 3.85	63.0 3.67	38.9 3.22	53.8 3.54	58.7 3.62	4.104 (2.155)
(분석대상수)	(27)	(46)	(18)	(13)	(104)	

주: 1)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chi^2값$ 을 제시하지 않음; 2) 중요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중산층가족의 적절한 소득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기타를 제외하고 중위소득의 80~150% 범위가 52.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위소득의 70~150%, 중위소득의 50~150%, 중위소득의 50~200%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산층가족의 소득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OECD 기준인 중위소득의 50~150%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유형별로는 연구기관 종사자와 공무원은 전체와 유사하였고, 교수 및 학계종사자와 관련기관 업무담당자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교수 및 학계종사자는 중산층가족의 적절한 소득기준으로 전체보다 중위소득의 50~150%라는 응답이 약간 많았고, 연구기관종사자와 공무원은 중위소득의 80~150%를 많이 응답하였고, 관련기관 업무담당자는 중위소득의 70~150%와 중위소득의 80~150%라는 비율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전문가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소득 기준은 OECD 기준보다 높게 생각하였고, 분포는 전문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6-4〉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중위소득 기준

특성	전문가 유형				전체
	교수 및 학계 종사자	연구기관 종사자	공무원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중위소득의 50~150% (151~453만원)	19.2	13.3	11.1	7.7	13.7
중위소득의 70~150% (212~453만원)	19.2	22.2	22.2	38.5	23.5
중위소득의 80~150% (242~453만원)	50.0	55.6	55.6	38.5	52.0
중위소득의 50~200% (151~604만원)	3.8	2.2	5.6	7.7	3.9
기타	7.7	6.7	5.6	7.7	6.9
계(수)	100.0 (26)	100.0 (45)	100.0 (18)	100.0 (13)	100.0 (102)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x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제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중산층가족의 적절한 직업유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사무종사자가 9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관리직, 서비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판매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직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중산층가족의 적절한 직업유형으로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그리고 관리직이 적절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높았다.

〈표 6-5〉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직업유형

(단위: %, 명)

특성	전문가 유형				전체	χ^2
	교수 및 학계 종사자	연구기관 종사자	공무원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관리직	69.6	73.8	66.7	69.2	71.0	2.018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91.7	81.4	86.7	69.2	83.2	
사무종사자	100.0	97.7	100.0	76.9	96.0	
서비스종사자	58.3	53.7	43.8	69.2	55.3	
판매종사자	33.3	19.0	21.4	36.4	25.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6.4	31.7	13.3	36.4	30.3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36.4	32.5	14.3	41.7	31.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8.6	27.5	33.3	33.3	29.5	
단순노무직	-	-	7.1	9.1	2.3	
계(수)	100.0 (26)	100.0 (42)	100.0 (17)	100.0 (10)	100.0 (95)	

주: 통계청의 직업분류를 기준으로 ‘관리직’에는 고위직, 관리직,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에는 교수, 교사, 의사, 약사, 토목기술자, ‘사무종사자’에는 경영, 회계, 법률, 금융, ‘서비스종사자’에는 경찰 및 소방, 이마용, 운송, 음식점, ‘판매종사자’에는 영업직, 매장판매, 노점상, ‘농림어업숙련 종사자’에는 농축산, 임업, 어업 숙련직,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에는 식품가공, 목재, 금속, 운송기계, 전기전자, 영상 기능직,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에는 식품가공기계, 섬유신발기계, 화학기계등 조작, ‘단순노무직’에는 제품 생산직, 판매·서비스 단순직, 제조·건설 단순직, 경비·청소·가사도우미 등이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전문가유형별로 중산층가족의 적절한 직업유형은 공통적으로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그리고 관리직 순으로 높아서 전체와 유사하였으나 나머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교수 및 학계종사자와 관련기관 업무담당자는 적절한 직업유형으로 전체보다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그리고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라는 응답이 많았고 이외에 관련기관 업무담당자는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와 단순노무직도 많았다. 그리고 연구기관종사자는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공무원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비율이 전체보다 높았다.

전반적으로 전문가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적절한 직업유형은 전체와 유사하였고, 나머지는 전문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중산층가족의 적절한 재산규모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3억 이상~4억 미만이 2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2억 이상~3억 미만, 4억 이상~5억 미만, 5억 이상~6억 미만 순으로 높았고, 나머지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중산층가족의 적절한 재산규모로 전문가의 과반수 이상은 3억 이상~6억 미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가유형별로 중산층가족의 적절한 재산규모 기준은 공통적으로 3억 이상~6억 미만에 응답이 높으나 그 정도는 차이를 보였다. 교수 및 학계종사자는 3억 이상~6억 미만이 50.0%로 전체보다 다소 낮았고, 1억 이상~3억 미만은 34.6%로 높아서 타 전문가에 비해 재산규모 기준이 낮은 편이었다. 연구기관 종사자는 각각 54.3%와 23.9%로 전체보다 낮았고, 6억 이상~10억 미만 비율은 15.1%로 높아서 타 전문가에 비해서 재산규모 기준이 가장 높았다. 공무원은 3억 이상~6억 미만이 77.8%로 3분의 2 이상이 응답하였으며, 6억 이상~10억 미만은 16.7%로 비교적 재산규모 기준이 높은 편이었다.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는 3억 이상~6억 미만은 53.9%로 전체보다 낮았고, 1억 이상~3억 미만은

30.8%로 높아서 비교적 재산규모 기준이 낮은 편이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적절한 재산규모 기준은 3억 이상~6억 미만에 집중되어 있으나 그 정도는 전문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6〉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재산규모 기준

(단위: %, 명)

특성	전문가 유형				전체
	교수 및 학계 종사자	연구기관 종사자	공무원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1억 이상~2억 미만	15.4	-	-	15.4	5.8
2억 이상~3억 미만	19.2	23.9	5.6	15.4	18.4
3억 이상~4억 미만	11.5	15.2	50.0	23.1	21.4
4억 이상~5억 미만	23.1	21.7	5.6	15.4	18.4
5억 이상~6억 미만	15.4	17.4	22.2	15.4	17.5
6억 이상~7억 미만	7.7	4.3	5.6	-	4.9
7억 이상~8억 미만	-	4.3	-	-	1.9
8억 이상~10억 미만	-	6.5	11.1	-	4.9
기타	7.7	6.5	-	15.4	6.8
계(수)	100.0(26)	100.0(46)	100.0(18)	100.0(13)	100.0(103)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중산층가족의 적절한 교육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4년제 대학졸업이 75.7%로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었고, 2년제 대학졸업은 12.6%이었으며, 나머지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중산층가족의 적절한 교육 기준으로 전문가의 상당수가 4년제 대학졸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가유형별로 중산층가족의 적절한 교육 기준은 공통적으로 4년제 대학졸업이 가장 높았으나 그 정도는 차이를 보였다. 교수 및 학계종사자는 4년제 대학졸업이 전체보다 높았고, 연구기관 종사자는 4년제 대학졸업이 다소 낮은 반면 나머지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공무원은 4년제 대학졸업이 전체와 타 전문가에 비해 높았다. 그리고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는 4년제 대학졸업이 전체보다 낮은 반면 대학원 석사가 전체보다 2.7배 높아서 타 전문가에 비해 교육 기준이 높은 편이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적절한 교육 기준은 4년제 대학졸업에 집중되며 그 정도는 전문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7〉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교육수준 기준

(단위: %, 명)

특성	전문가 유형				전체
	교수 및 학계 종사자	연구기관 종사자	공무원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고등학교 졸업	-	6.7	5.6	7.7	4.9
2년제 대학 졸업	18.5	15.6	-	7.7	12.6
4년제 대학 졸업	81.5	68.9	88.9	69.2	75.7
대학원 석사	-	6.7	5.6	15.4	5.8
대학원 박사	-	-	-	-	-
기타	-	2.2	-	-	1.0
계(수)	100.0(27)	100.0(45)	100.0(18)	100.0(13)	100.0(103)

주: 1) 고등학교,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졸업에는 중퇴와 재학이 포함됨;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x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중산층가족의 적절한 문화생활참여도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한 달에 1~2회가 70.2%로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었고, 다음은 1년에 2~3번 이상이 14.4%로 많았고 나머지는 미미하였다.

전문가 유형별로 중산층가족의 적절한 문화생활참여도 기준은 공통적으로 한 달에 1~2회가 많았으나 그 정도는 차이를 보였다. 교수 및 학계종사자와 연구기관 종사자는 1년에 2~3번 이상이라는 응답이 전체와 타 전문가에 비해 높아서 문화생활참여도가 소극적인 성향을 보였다. 공무원은 1주일에 1회와 한 달에 1~2회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전체와 타 전문가에 비해 높아서 적극적인 성향을 보였다.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도 공무원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전문가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적절한 문화생활참여도 기준은 한 달에 1~2회에 집중되며 그 정도는 전문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6-8〉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문화생활참여정도 기준

(단위: %, 명)

특성	전문가 유형				전체
	교수 및 학계 종사자	연구기관 종사자	공무원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1주일에 2번 이상	-	-	-	7.7	1.0
1주일에 1회	-	8.7	16.7	15.4	8.7
한 달에 1~2회	70.4	67.4	77.8	69.2	70.2
1년에 2~3번 이상	22.2	15.2	5.6	7.7	14.4
1년에 1회	3.7	2.2	-	-	1.9
기타	3.7	6.5	-	-	3.8
계(수)	100.0(27)	100.0(46)	100.0(18)	100.0(13)	100.0(104)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중산층가족의 사회적 귀속의식의 최저 계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중하가 51.0%로 과반수에 해당되었고, 다음은 중중, 하상 순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미미하였다. 중산층가족의 사회적 귀속의식의 최고 계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상하가 49.5%로 거의 과반수에 해당되었고, 다음은 중상이 35.0%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비율이 낮았다. 따라서 중산층가족의 사회적 귀속의식의 최저부터 최고계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하상부터 상하까지 폭넓은 범위를 보였다.

전문가 유형별로 중산층가족의 사회적 귀속의식의 최저계층 기준은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를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중하에 집중되었고,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는 중하와 중중이 동일하였다. 중하기준은 교수 및 학계 종사자와 공무원이 전체보다 높았고, 중중은 공무원이 높았다.

중산층가족의 사회적 귀속의식의 최고계층 기준은 교수 및 학계 종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상하에 집중되었고, 교수 및 학계 종사자는 중상이 중하보다 다소 높았다. 중상기준은 교수 및

학계 종사자와 공무원이 전체보다 높았고, 상하는 연구기관 종사자만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전문가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사회적 귀속의식의 최저부터 최고계층은 주로 하상부터 상하까지 포괄적인 범위를 보였고 그 정도는 전문가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표 6-9〉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최저·최고 계층 기준

특성	전문가 유형				전체
	교수 및 학계 종사자	연구기관 종사자	공무원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최저계층					
하하	-	-	-	7.7	1.0
하중	-	-	-	7.7	1.0
하상	19.2	15.6	-	23.1	14.7
중하	53.8	48.9	66.7	30.8	51.0
중중	26.9	26.7	33.3	30.8	28.4
중상	-	6.7	-	-	2.9
상하	-	-	-	-	-
상중	-	2.2	-	-	1.0
상상	-	-	-	-	-
계(수)	100.0(26)	100.0(45)	100.0(18)	100.0(13)	100.0(102)
최고계층					
하하	-	-	-	-	-
하중	-	-	-	-	-
하상	-	2.2	-	7.7	1.9
중하	-	4.4	-	-	1.9
중중	-	-	5.6	-	1.0
중상	44.4	31.1	38.9	23.1	35.0
상하	40.7	57.8	50.0	38.5	49.5
상중	14.8	4.4	5.6	15.4	8.7
상상	-	-	-	15.4	1.9
계(수)	100.0(27)	100.0(45)	100.0(18)	100.0(13)	100.0(103)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X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제3절 중산층가족의 복지정책 방향 및 수요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산층가족의 복지정책 중요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요도를 5점 척도로 분석하였을 때, 일·가정양립정책의 중요도는 평균 4.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소득보장정책, 보건의료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이 모두 4.3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거정책 4.2점, 조세정책 4.1점 순으로 나타났다.

각 정책들의 중요도 점수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그 중 일·가정양립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일·가정양립정책이 취업여성을 노동시장으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중산층 가족 내 소득원 이탈을 방지하여서 중산층가족의 유지·보호를 위해 필요도가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6-10〉 중산층가족의 복지정책의 중요도

(단위: %,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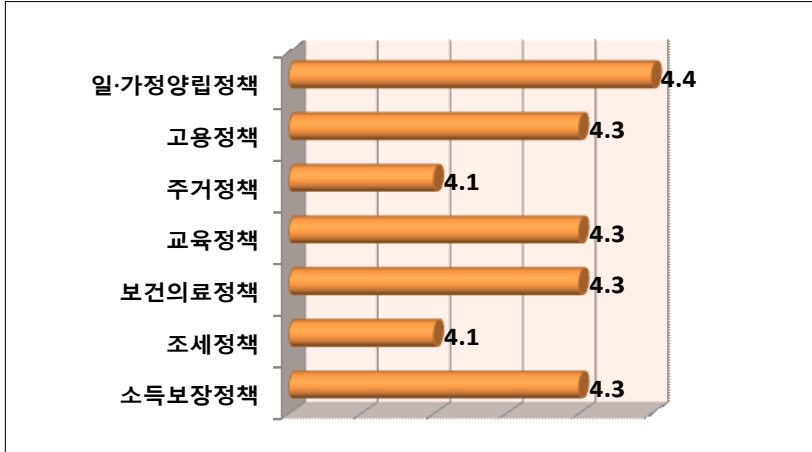
특성	중요도 매우 낮음	중요도 낮음	보통	중요도 높음	중요도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소득보장정책	-	3.0	11.9	35.6	49.5	100.0(104)	4.3
조세정책	-	3.9	16.7	43.1	36.3	100.0(104)	4.1
보건의료정책	-	1.0	7.8	48.0	43.1	100.0(104)	4.3
교육정책	-	2.0	13.7	39.2	45.1	100.0(104)	4.3
주거정책	-	3.9	14.7	44.1	37.3	100.0(104)	4.2
고용정책	-	2.9	12.7	40.2	44.1	100.0(104)	4.3
일·가정양립정책	-	-	7.8	45.1	47.1	100.0(104)	4.4

주: 중요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그림 6-2] 중산층가족의 복지정책의 중요도 평균 점수

(단위: 점)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제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복지정책의 중요도를 전문가 유형별로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를 ‘중요하다(④ + ⑤)’를 범주화하고 이를 응답한 비율을 분석하였다. 평균의 경우는 5점 척도의 중요도 평균을 구하였다.

정책별로 전문가유형의 응답을 살펴보면 소득보장정책을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타전문가보다 교수 및 학계 종사자에서 가장 높았으며 25명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중요도 평균은 4.6점으로 나타났다. 조세정책은 연구기관종사자의 86.7%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중요도 평균은 4.3점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정책은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점수는 4.3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 주거 및 고용정책은 교수 및 학계 종사자의 88.9~92.6%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은 4.3~4.5점의 범위를 보였다. 일·가정양립정책은 전문가 대부분이 90% 넘게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평균점수는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에서 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교수 및 학계 종사자의 경우 소득보장정책을 중산층 가족 복지정책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연구기관 종사자에서는 일·가정양립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공무원 및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모두 보건의료정책을 가장 중요도가 높은 정책으로 응답하였다.

〈표 6-11〉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복지정책의 중요도

(단위: %, 점, 명)

특성	전문가 유형				전체	χ^2 (F값)
	교수 및 학계 종사자	연구기관 종사자	공무원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소득보장정책						
비율	100.0	72.7	88.9	91.7	85.1	
평균	4.6	4.1	4.3	4.3	4.3	(2.432)
조세정책						
비율	77.8	86.7	61.1	83.3	79.4	1.788
평균	4.2	4.3	3.6	4.1	4.1	(3.090*)
보건의료정책						
비율	96.3	84.4	94.4	100.0	91.2	1.618
평균	4.6	4.2	4.3	4.4	4.3	(2.623)
교육정책						
비율	88.9	82.2	83.3	83.3	84.3	0.193
평균	4.5	4.2	4.2	4.0	4.3	(1.208)
주거정책						
비율	88.9	82.2	72.2	75.0	81.4	0.768
평균	4.3	4.2	4.0	3.9	4.2	(0.746)
고용정책						
비율	92.6	77.8	88.9	83.3	84.3	1.040
평균	4.5	4.1	4.2	4.3	4.3	(1.443)
일·가정양립정책						
비율	92.6	93.3	88.9	91.7	92.2	0.117
평균	4.4	4.3	4.4	4.6	4.4	(0.668)
(분석대상수)	(25)	(42)	(16)	(11)	(94)	

주: 1) * $p<0.5$, ** $p<0.01$, *** $p<0.001$;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중요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우리나라 가족복지증진을 위해 수행되는 정책 중 다음의 정책이 현재 중산층 가족 복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효과성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던 정책으로는 보건의료정책이 3.4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보장정책 3.1점, 조세정책 3.0점, 교육정책 2.9점, 고용정책 2.8점, 주거정책 2.7점, 일·가정양립정책 2.7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의 경우 전문가의 10.6%가 ‘효과성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반면 고용정책 및 일·가정양립정책은 약 10%가 ‘효과성이 매우 낮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효과성 평균은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으로 월등히 효과성이 높은 정책은 없는걸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요도가 대부분 4점대인 것과 비교할 때, 각 정책의 중요도는 높지만 실제적으로 실행된 정책의 효과성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정책 중요도는 높다고 조사되었지만 효과성 평균이 낮은 편에 속한 주거정책, 고용정책, 일·가정양립정책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6-12〉 중산층가족의 복지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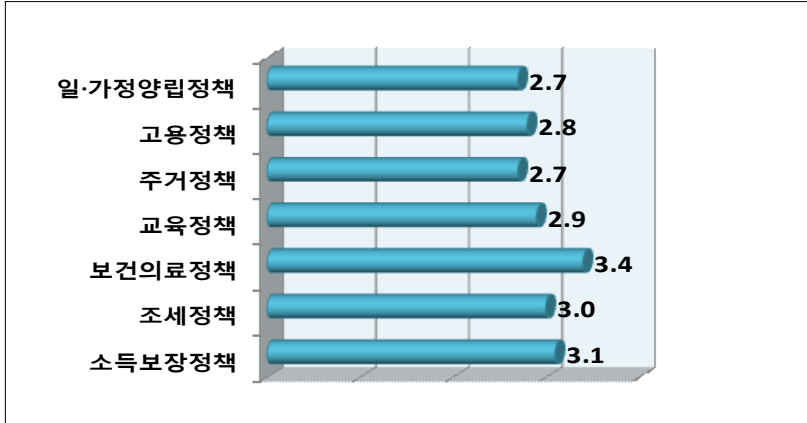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소득보장정책	1.9	24.0	45.2	20.2	8.7	100.0(104)	3.1
조세정책	1.9	25.0	47.1	20.2	5.8	100.0(104)	3.0
보건의료정책	-	16.3	34.6	38.5	10.6	100.0(104)	3.4
교육정책	5.8	31.7	33.7	20.2	8.7	100.0(104)	2.9
주거정책	8.8	36.3	34.3	16.7	3.9	100.0(104)	2.7
고용정책	9.7	28.2	42.7	14.6	4.9	100.0(104)	2.8
일·가정양립정책	9.6	34.6	32.7	18.3	4.8	100.0(104)	2.7

주: 효과성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정책 효과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그림 6-3] 중산층가족의 복지정책의 효과성 점수

(단위: 점)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정책별로 효과성을 살펴보면, 먼저 효과성이 ‘높다(④)’ ‘매우 높다(⑤)’를 ‘높다(④+⑤)’로 보고 이에 대한 응답률을 분석하였다. 또한 평균은 효과성을 5점 척도로 하며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보장정책은 공무원의 44.4%가 효과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효과성 평균은 3.3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였다. 조세정책은 교수 및 학계종사자 33.3% 효과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3.1점을 보였다. 보건의료정책의 경우는 교수 및 학계종사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관련기관 업무담당자들 중 60%가 넘는 응답자들이 효과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평균 점수도 3.5점 이상 대를 보였다. 교육정책은 공무원의 44.4%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3.1점을 보였다. 주거정책은 모든 전문가의 20% 내외 정도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고용정책은 공무원의 29.4%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관련기관 담당자는 7.7%만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일·가정양립정책은 교수 및 학계종사자의 25.9%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2.7점을 보였다.

〈표 6-13〉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복지정책의 효과성

(단위: %, 점, 명)

특성	전문가 유형				전체	$\chi^2(F값)$
	교수 및 학계 종사자	연구기관 종사자	공무원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소득보장정책						
비율	40.7	17.4	44.4	23.1	28.8	7.146
평균	3.2	3.0	3.3	3.2	3.1	(0.667)
조세정책						
비율	33.3	26.1	11.1	30.8	26.0	
평균	3.1	3.0	2.8	3.4	3.0	(1.260)
보건의료정책						
비율	63.0	32.6	61.1	61.5	49.0	8.926*
평균	3.6	3.2	3.7	3.6	3.43	(2.941*)
교육정책						
비율	40.7	17.4	44.4	23.1	28.8	7.146
평균	3.2	2.7	3.1	3.1	2.9	(1.285)
주거정책						
비율	22.2	19.6	17.6	25.0	20.6	
평균	2.7	2.7	2.7	2.8	2.7	(0.035)
고용정책						
비율	14.8	21.7	29.4	7.7	19.4	
평균	2.7	2.8	2.8	2.9	2.8	(0.068)
일·가정양립정책						
비율	25.9	21.7	22.2	23.1	23.1	
평균	2.7	2.7	2.8	2.9	2.7	(0.072)
(분석대상수)	(17)	(15)	(11)	(8)	(51)	

주: 1) * $p<0.5$, ** $p<0.1$, *** $p<0.01$;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효과성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정책 효과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제4절 중산층가족의 정책욕구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소득보장분야에서 우선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39.8%가 ‘연금·퇴직금의 내실화’라고 응답하였으며 ‘중산층 대상 수당확대’ 27.2%, ‘경제위기시 사회안전망 강화’ 24.3%, ‘가계부채 완화’ 8.7%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소득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의 경우 비정규직, 소규모사업장, 자영업자들은 사회보험 가입율이 낮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수급비도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안 된다는 비판이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금·퇴직금의 내실화’가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여겨진다. 연금 및 퇴직금의 내실화를 통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될 위험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현재 소득보장을 위한 수당제도로써 공무원 등 특정집단에 해당하는 가족수당과 저소득층을 위한 양육수당 등의 수혜자 범위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것도 우선되어야 할 소득보장정책으로 분석되었다.

〈표 6-14〉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소득보장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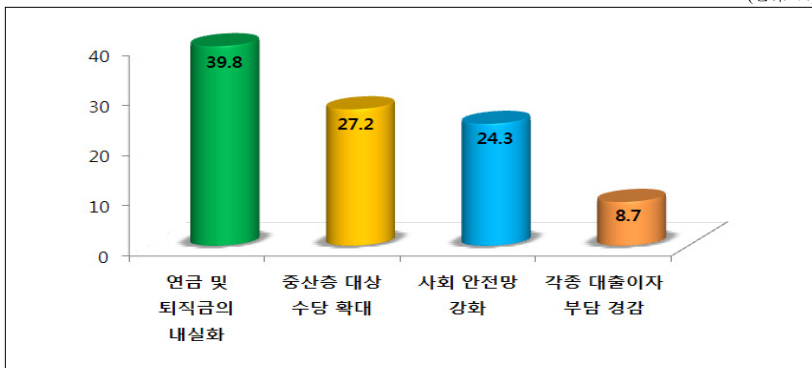
(단위: %, 명)

특성	전문가 유형				전체
	교수 및 학계 종사자	연구기관 종사자	공무원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연금·퇴직금의 내실화	34.6	52.2	27.8	23.1	39.8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 확대(가족수당, 양육 수당 등)	38.5	21.7	33.3	15.4	27.2
경제위기시 사회 안전망 강화	19.2	19.6	33.3	38.5	24.3
각종 대출이자 부담 경감으로 가계부채 완화	7.7	6.5	5.6	23.1	8.7
계(수)	100.0(26)	100.0(46)	100.0(18)	100.0(13)	100.0(103)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그림 6-4〕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소득보장정책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조세정책은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46.5%가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소득공제 한도상향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소득세율 인하 24.8%,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폐지, 증부세·재산세 인하 등 비과세 혜택이 11.9%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세율 인하보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소득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중산층 가족의 노후생활대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조세정책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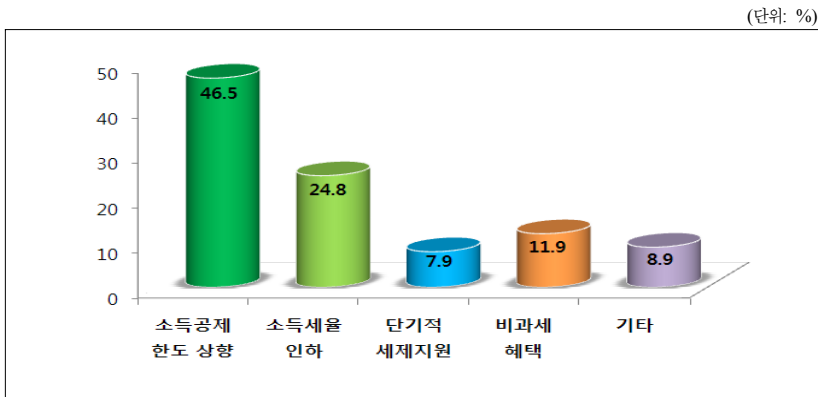
〈표 6-15〉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조세정책

(단위: %, 명)

특성	전문가 유형				전체
	교수 및 학계 종사자	연구기관 종사자	공무원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소득공제 한도 상향	34.6	45.5	72.2	38.5	46.5
소득세율 인하	26.9	27.3	11.1	30.8	24.8
경기회복 위한 단기적 세제지원	23.1	-	5.6	7.7	7.9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폐지, 증부세·재산세 인하 등 비과세 혜택	7.7	13.6	5.6	23.1	11.9
기타	7.7	13.6	5.6	-	8.9
계(수)	100.0(26)	100.0(44)	100.0(18)	100.0(13)	100.0(101)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그림 6-5〕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조세정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보건의료정책은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71.6%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건의료 서비스 범위 확대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10.8%, 국공립병원 확충으로 서비스 접근성 제고는 8.8%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험료의 경감 보다 보험료를 낸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기본적인 정책이므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6-16〉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보건의료정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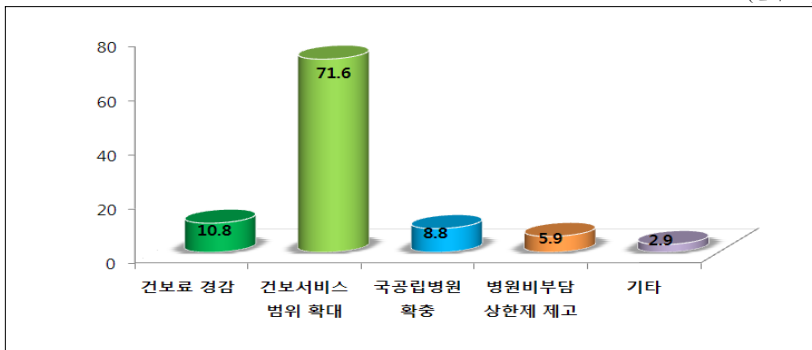
특성	전문가 유형				전체
	교수 및 학계 종사자	연구기관 종사자	공무원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7.7	11.1	11.1	15.4	10.8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건의료 서비스 범위 확대	76.9	68.9	72.2	69.2	71.6
국공립병원 확충으로 서비스 접근성 제고	11.5	8.9	5.6	7.7	8.8
병원비 부담 상한제 제고	3.8	6.7	5.6	7.7	5.9
기타	-	4.4	5.6	-	2.9
계(수)	100.0(26)	100.0(45)	100.0(18)	100.0(13)	100.0(102)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그림 6-6〕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보건의료정책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77.2%가 공교육의 질 제고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대학교 등록금 반값 조정 9.9%, 영유아 무상보육·교육비 전면 확대가 9.9% 등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에서 분석한 「2010 한국중산층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의 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2010년 1분기 중산층 가정이 사교육에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12만 3천원으로 최근 2년간 11.8%가 증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사교육비의 증가는 고정된 소득에서 소비를 크게 하여 중산층가족의 보호·유지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교육의 질 향상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

〈표 6-17〉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교육정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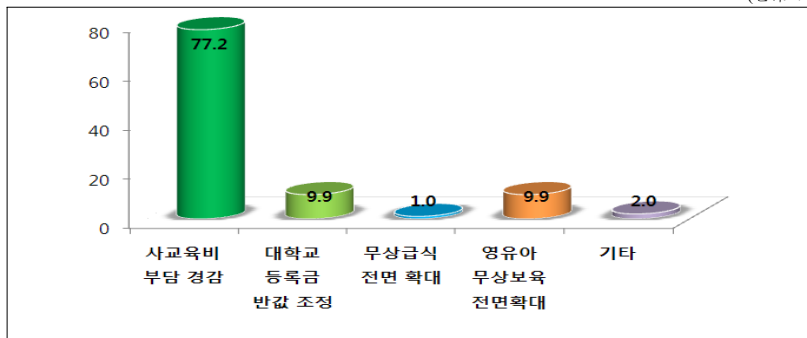
특성	전문가 유형				전체
	교수 및 학계 종사자	연구기관 종사자	공무원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공교육의 질 제고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84.0	86.7	66.7	46.2	77.2
대학교 등록금 반값 조정	4.0	2.2	11.1	46.2	9.9
초중고교생 무상급식 전면 확대	4.0	-	-	-	1.0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비 전면 확대	8.0	6.7	22.2	7.7	9.9
기타	-	4.4	-	-	2.0
계(수)	100.0(25)	100.0(45)	100.0(18)	100.0(13)	100.0(101)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그림 6-7〕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교육정책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주거정책은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33.7%가 ‘공공임대 및 전세주택의 입주기준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및 상환부담 완화’ 28.8%, ‘주택거래 지원 확대 관련 금융·세제상 지원’ 20.2%, ‘주택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16.3%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무주택 저소득층으로 제한되어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만 중산층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shift)이 공급되고 있지만 공급물량도 많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중산층가족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주거정책으로 저소득층에게만 해당되는 공공임대 및 전세주택의 입주기준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6-18〉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주거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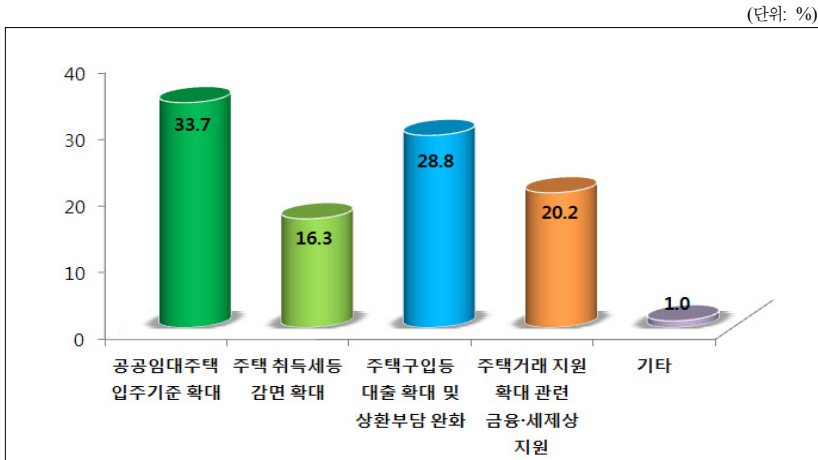
(단위: %, 명)

특성	전문가 유형				전체
	교수 및 학계 종사자	연구기관 종사자	공무원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공공임대 및 전세주택의 입주기준을 중산층까지 확대	29.6	34.8	33.3	38.5	33.7
주택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확대	11.1	26.1	5.6	7.7	16.3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및 상환부담 완화	29.6	21.7	38.9	38.5	28.8
주택거래 지원 확대 관련 금융·세제상 지원	25.9	17.4	22.2	15.4	20.2
기타	3.7	-	-	-	1.0
계(수)	100.0 (27)	100.0 (46)	100.0 (18)	100.0 (13)	100.0 (104)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그림 6-8]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주거정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고용정책은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46.1%가 ‘중장년층의 고용안정화’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의 정년보장’과 ‘실직 중산층의 재취업지원 확대’가 각각 23.5%등으로 나타났다.

강신욱 외(2011)의 연구에서도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고용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조사한 결과 ‘청년실업을 줄이는 것’이라는 응답이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29.4%, ‘정년연장’ 17.7%, 고용보험 확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산층을 위한 고용정책은 고용보험 금액 및 수급기간 확대보다는 고용상태의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산층가족 중 노동시장에서 탈락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표 6-19〉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고용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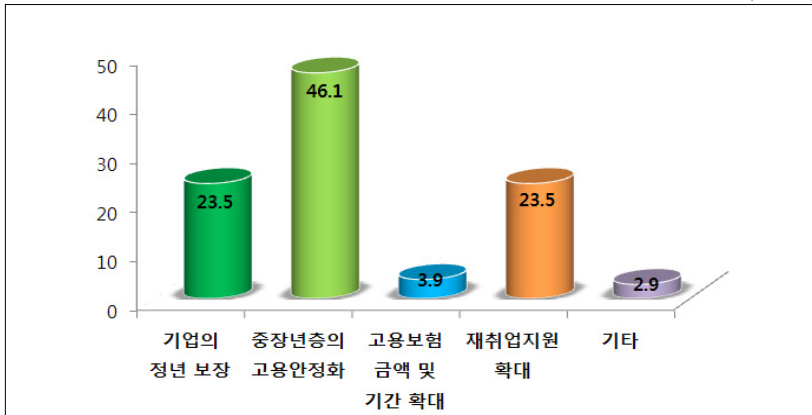
(단위: %, 명)

특성	전문가 유형				전체
	교수 및 학계 종사자	연구기관 종사자	공무원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기업의 정년 보장	22.2	27.3	22.2	15.4	23.5
중장년층의 고용안정화(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강화)	55.6	31.8	44.4	76.9	46.1
고용보험(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확대	7.4	4.5	-	-	3.9
실직 중산층의 재취업지원 확대 (교육·훈련·생계비 지원 제고)	14.8	29.5	33.3	7.7	23.5
기타	-	6.8	-	-	2.9
계(수)	100.0(27)	100.0(44)	100.0(18)	100.0(3)	100.0(102)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그림 6-9]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고용정책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일·가정양립 정책은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61.5%가 ‘유연근무제 확대 등 직장 내 가정친화 분위기 조성’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유급육아 휴직 기간 확대 및 급여제고 등 실효성 확보’ 19.2%, ‘중산층의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8.7%,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확대’ 7.7%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의 노동과 자녀양육의 이중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일·가정양립정책은 실제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전문가 조사결과를 근거로 일·가정양립정책 중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은 직장 내 가정친화 분위기 조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유급육아 휴직 및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등 현실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6-20〉 전문가 유형별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일·가정양립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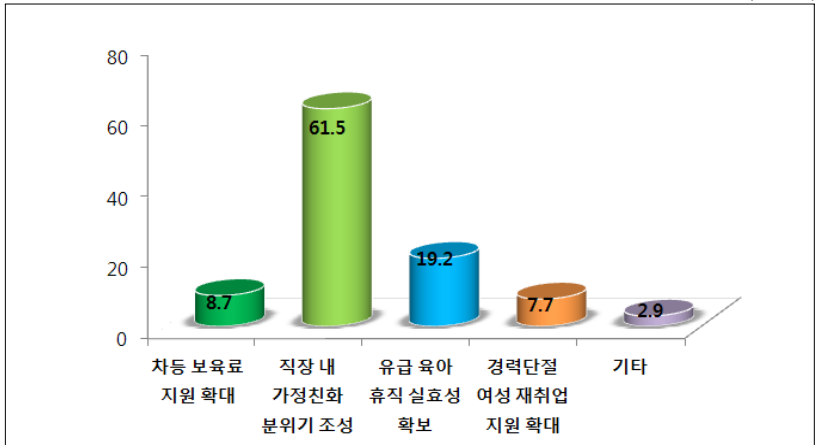
(단위: %, 명)

특성	전문가 유형				전체
	교수 및 학계 종사자	연구기관 종사자	공무원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중산층의 차등 보육료 지원 확대	3.7	4.3	22.2	15.4	8.7
유연근무제 확대 등 직장 내 가정친화 분위기 조성	70.4	58.7	50.0	69.2	61.5
유급 육아 휴직 기간 확대 및 급여제고 등 실효성 확보	22.2	21.7	11.1	15.4	19.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확대	-	10.9	16.7	-	7.7
기타	3.7	4.3	-	-	2.9
계(수)	100.0(27)	100.0(46)	100.0(18)	100.0(13)	100.0(104)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제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그림 6-10〕 중산층가족의 우선되어야 할 일·가정양립정책

(단위: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제감도 증진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결과임.

제5절 시사점

전문가조사 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산층의 기준은 정부와 연구자 그리고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중산층가족의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소득수준이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재산규모, 직업,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귀속의식, 문화생활 참여도 순으로 중요도가 높았다. 전반적으로 전문가가 제시한 중산층 기준은 현재 중산층의 특성보다 높았고, 기존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기준보다도 높은 수준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다수의 중산층 설정은 보통 소득기준으로 활용도가 높으나 이는 중산층일 경우 적용되는 기준이며 중산층가족의 기준은 경제적 지표인 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산층가족의 기준은 중산층 가족의 특성이 반영된 복합적인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정확한 기준은 실제에 근접한 특성과 욕구를 도출하고 이러한 경험적 자료가 누적될 때 실효성 있는 정책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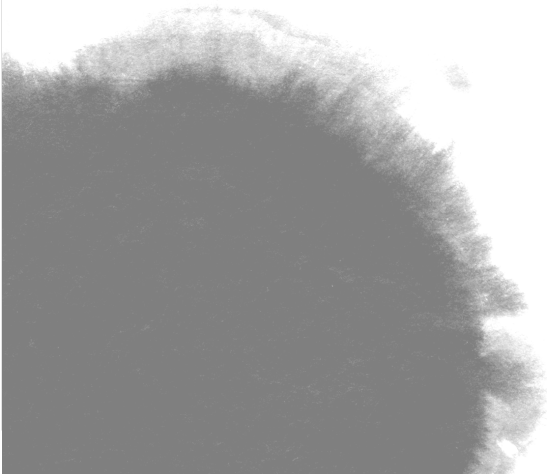
둘째, 중산층가족의 복지정책 중요도는 일·가정양립정책이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정책도 중요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정책 효과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일·가정양립정책은 중요도에 비해 효과성이 저조하게 나타나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셋째,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의 특성은 기존 제도의 내실화, 지원수준 및 지원대상 확대 그리고 서비스의 다양화, 지원기준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함을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은 예산상의 한계로 인해 우선순위가 요구되며 중산층가족 입장에서도 욕구에 대응하여 시급성이 차별되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복지정책은 일부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제외하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인 정책이 주로 이루어져왔으며 중산층가족은 복지수혜의 배제집단으

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는 시대에 무한대 욕구가 증대되면서 중산층가족의 빈곤화로 더 많은 복지비용의 초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의 실천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며 중산층가족의 지속적인 누적으로 사회동력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07

중산층가족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제7장 중산층가족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제1 절 중산층가족 정책의 패러다임 및 방향

최근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새로운 경제적 위협이 대두되고, 가계 부채의 확대, 물가상승 및 실업률 상승 등이 지속되면서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유입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취약계층 또는 저소득층 가족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복지정책이 제공되고 있어 중산층을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합적인 가족복지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대상자 범위 제한으로 인하여 중산층 및 맞벌이 가족의 복지체감도가 낮고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욕구가 무한대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가족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중산층은 경기회복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의 경쟁력 확보, 둘째, 한계중산층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와 함께 직업교육·훈련 강조, 셋째, 저학력자, 미숙련자, 여성, 고연령자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중산층탈락방지를 위해 지원한다. 넷째로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고용, 교육, 사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체제에서 중산층이 더 튼튼하고 경제사회적 효과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편적 복지 제공을 모색한다. 다섯째, 중산층 유지·복원을 위해서는 고용능력 제고와 병행하여

주거비·사교육비 경감 등 통합적인 사회서비스를 지원한다. 여섯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한계중산층 또는 위기중산층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제공한다. 일곱번째, 중산층가족의 가족생활주기별로 차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중산층가족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2절 중산층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

1. 중산층의 다양성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

이병훈과 신재열(2011)의 연구에 보면 자영자 집단을 상층, 하층, 특고 종사자로 구분할 경우, 종속적 자영자인 특고 종사자들이 상층·하층 자영자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계층의식을 보이며, 하층과 상층자영자 집단 사이에도 이질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집단의 이질적 구성을 무시하고 동질적 특성으로 간주하는데서 오는 위험성과 분석오류를 지적한다. 또한 기획예산처(2002)의 중산층 생활안정대책에 대한 논의에서도 주거생활안정 대책,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대책, 실업대책과 기초생활보장대책으로 대별하여 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부분이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 또는 하위중산층집단에 대한 정책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중산층가족은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50% 미만의 가구에 포함되는 가족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 50%가구와 150%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욕구도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 중산층가족의 전 생활주기에 걸쳐 일가정의 양립과 가족돌봄은 중요한 욕구로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정책으로는 아이돌보미와 보육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사업³⁰⁾은 가구

30) 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2011년 9월 아이돌보미이용자현황을 살펴보면, 한 달 동안

소득 50%미만가구(가형)이 저소득층의 기준이다. 소득 50% 주변가족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는 생계지원책일 것이다. 아이돌보미 수당은 시간당 5,000원이며, 가형은 시간당 천원, 나형은 4천원을 개인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다형은 5천원을 개인이 전액 부담한다. 실제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형의 경우 가형과의 비용차이가 너무 커서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비록 이용자중 가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다형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있는 제도이다.³¹⁾

이 사업은 '가족돌봄의 사회화'와 '일가정 양립'의 정책효과를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으나 상당히 제한적이다. 가족돌봄의 사회화 측면에서는 이용시간의 제한 때문에 맞벌이가족이 하루 8시간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일가정양립 측면에서는 서비스 수요자들이 희망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지원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응급상황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중산층가족의 일가정양립과 가족돌봄의 강화 측면에서 응급적 이용에 대응하여 이용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균형적인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서 돌보미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보육서비스의 현실화 측면에서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일정한 가격의 보육료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산층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은 중산층가족의 위기 및 소득 수준 요인별로 정책대상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도출하고 이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총 150가정(1,029건)이 이용하였다. 이중 가형(소득 50%미만)이 50%, 나형(소득 50-100%미만) 15%, 다형(100%이상)이 35%임.

- 31) 아이돌보미 사업이 다형에게 유리한 이유는 아이돌보미들에게 제공하는 8시 이후 야간 활동비용 1,000원과 야간 교통비 등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형에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시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정상 가나형은 1년 240시간~9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예산 등의 문제로 720시간 선에서 지원이 이루어짐.

2. 다양한 가족생활주기를 포괄하는 중산층정책 확대

우리나라의 중산층가족 정책인 휴먼뉴딜(박성쾌·김종천, 2010; 문형표, 2009; 관계부처 합동, 2009)의 핵심은 ‘생애주기마다 처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와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가족형성의 일반적인 가족발달주기와 자녀출산을 기준으로 가족생활주기를 살펴보면 결혼과 신혼기, 영유아기가족, 학동기와 청소년기가족, 중년기 및 노년기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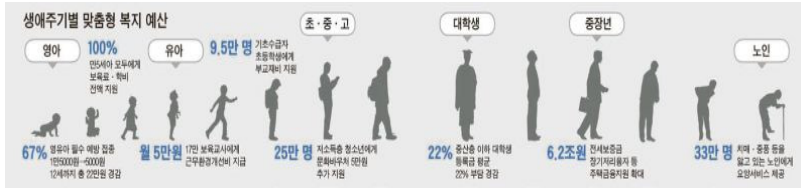
가. 중년기에 중점을 둔 정책 확대 및 예산 재편

우리나라 보건·복지·노동분야의 예산중³²⁾에서 보육·가족·여성분야는 3.3%에 불과하여 타 영역에 비해서 가장 낮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 예산을 통해 실제 가족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2012년 예산에서 가족생활주기별 맞춤형 복지예산안은 [그림 7-1] 과 같다. 맞춤형복지예산은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확대, 만 5세 아동의 무상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에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시 내는 본인부담금 등에 주로 사용된다.

또한 맞춤형 복지의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각 가족생활주기별 중요한 정책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장년은 주택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노동정책은 제한적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취업자 중에서 40대와 50대의 연령층은 48%로 거의 과반수에 이른다(통계청, 2011. 3/4분기).

32) 2011년 보건·복지·노동분야의 예산은 92조로 2010년보다 6.4%가 증가하였으며, 세부 예산은 공적연금 31.4조, 주택 19조, 노동 12.8조, 기초생활보장 8조, 보건 7.8조, 노인 장애인 6조, 보훈 4.1조, 보육·가족·여성 3조로 구성됨.

[그림 7-1]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예산



자료: 중앙일보, 2011. 9. 28, E 2, E3면

중장년층은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대이면서 가족에서도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다. 그럼에도 노동시장의 불안전성과 평등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타 연령층에 비해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세대이다.

따라서 중장년기의 중산층가족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및 일가정 양립에서 오는 스트레스 대처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예산지원이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생애주기별 일가정양립정책 재편

세계적으로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은 노동시간, 휴가 및 보육정책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 맞벌이가족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므로 맞벌이가족이 아닌 대다수의 가족은 이 정책에서 제외된다. 통계청의 사회조사결과(2009)에 의하면 조사기간 동안 맞벌이부부는 40.1%이었으며, 전 연령층에서 균형적으로 분포하였다³³⁾. 이와 같이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대상은 전 연령에 걸쳐서 다양함에도 실제로 일가족양립을 위한 보육정책의 대상은 맞벌이가족 중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되는데 이는 일가정양립정책이 출산장려정책의 틀 내에서 제공되기

33) 맞벌이 부부의 연령분포는 15~29세가 34.4%, 30~39세 39.3%, 40~49세 48.1%, 50~59세 43.1%, 60세 이상이 24.7%로 조사됨(통계청, 2009).

때문으로 핵가족 형태의 맞벌이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령층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가족양립정책은 일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중심의 정책에서 다양한 생활주기를 고려한 정책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3. 중산층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기능 확대

우리 사회는 가족해체, 다문화가족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라는 다양한 구조적 환경으로 인해 가족문제는 가족의 구조가 아니라 관계적 특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단절과 경제적 가치에 기초한 가족관계, 결혼의 상품화로 인한 도구적인 가족가치의 추구,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의존성의 증가로 인한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적응성의 약화,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 책임의식 약화, 가족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개인주의적인 가치관과 이기주의적 태도 등이 건강한 가족관계와 시민의식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누적되고 있다.

현재의 중산층정책들은 소득불평등, 고용불안정성, 저출산·고령화사회 및 불안정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대응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중산층 정책인 ‘휴먼뉴딜정책’은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고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미래의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족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요인에 대응하여 경제, 노동, 의료 등의 정책과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책은 가족원들이 생애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책들이다. 그럼에도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주요한 가족정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정책대상이 전 생애주기별 가족 대상이 아니고 대부분이 구조적

및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을 대상으로 정책이 수행되고 있으며 콘텐츠도 가족상담 및 교육이 수행되고는 있으나 일부 생활주기에 편중되며, 사전예방적 접근보다는 사후치료적인 정책에 집중되어서 전 생애주기에 걸쳐 건강한 가족생활을 지향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노출된다.

따라서 불안정한 사회안전망을 대신하는 가족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가족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또 다른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로 중산층가족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족관련 인프라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일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재검토되고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충과 프로그램의 확대 등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제3 절 중산층가족의 고용관련 대책

1. '중·장년층의 고용안정화를 위한 퇴직제도의 실효화 및 경력개발 강화

본 연구의 전문가조사 결과 고용분야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은 '중장년층의 고용안정화'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1순위도 '노후생활 문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산층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고용보장은 중산층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다.

중장년층의 갑작스런 실직은 빈곤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고용안정화를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퇴직제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중·장년층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근로기간 연장, 점진적 퇴직제도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정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일례로 현재 실시 중인 임금피크제의 경우 ‘임금피크를 선택하게 되면 대부분 평소 본인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단순 업무를 맡게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방하남은 "현재 금융권 임금피크제는 직원을 위한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지 못한 채 인력 구조조정 차원에서만 접근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매일경제 2011년 11월 29일).

다양한 퇴직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활발하게 생산되는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산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각 업무 및 직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퇴직제도가 강구되어야 하며 현재 정책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퇴직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년층의 고용안정화를 위해서는 보다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현직에 있을 때 전문적이고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직업훈련 학교’도 실직자를 대상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상태인 50~60대의 중장년층을 위해서 현재의 고용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다 좋은 고용상태로의 이직 및 승진을 위해서는 경력개발 위주의 교육과 훈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빈곤층의 직업교육훈련과는 차별적으로 경력개발 위주의 맞춤형 직업훈련이 설계되어야 하며 중간관리자 이상의 지위에서의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2. 빈곤진입위기에 있는 ‘한계중산층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본 연구결과, 중산층가족 내에서도 ‘고연령층 가구주’, ‘저학력층 가구주’, ‘여성 가구주’, ‘이혼·별거·사별 가구주’, ‘임시·일용근로자 상태의 가구주’는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취약한 특성을 보였다. 이들은 중산층가족이지만 빈곤의 경계에 서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하락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층과 유사한 인적 특성을 가진 이들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이 미비하여 교육·훈련의 기회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성공 패키지를 실시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교육 및 상담에 이르는 전반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이다. 2012년에는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자를 5만명에서 7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2011, 기획예산처).

반면 본 연구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2008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한 경험에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모든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1% 미만이었다. 이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산층가족이 매우 적으며 관련 프로그램도 매우 미비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만 해당하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한계중산층까지 확대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계중산층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일정부분 동일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즉 직업의 숙련정도를 높이고 관련분야의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한계중산층은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핵심중산층으로 상향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3. '고학력·고숙련 중산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

본 연구결과, 중산층가족은 비교적 고학력·고숙련의 인력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태에 있어 비취업상태이거나 일용·임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중산층가족은 언제든지 저소득층으로 하락할 수 있는 위기를 가진다. 따라서 중산층가족

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이 요구된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현재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사업일자리란 단순 노동에 대해 저임금 소득을 제공하여 빈곤층을 계속 빈곤층에 머무르게 하고 중산층 진입에 한계를 갖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중산층을 육성하고 현재의 중산층을 유지·보호하기 위해서 ‘괜찮은 일자리 창출’은 필수적인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지자체 사업으로 전라북도는 2012년 일자리 창출분야에 2011년보다 330억원(10.4%) 증가한 3,515억원을 투자해 ‘괜찮은 일자리’를 2011년보다 1,000개 많은 1만 2천개를 만들 예정이다. 그 예로는 RFT 산업, 자동차산업, 탄소산업, 조선산업, 인쇄전자산업, 뿌리산업, 태양광산업, 풍력산업, LED산업 등 분야별 신산업 기반 조성 및 100개 기업유치 등으로 보고하였다(전북신문, 2011년 11월 17일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산층을 두텁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기존 영세자영업 중심의 서비스업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육성 산업을 선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4. ‘여성·고연령·저학력 중산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본 연구에서 중산층가족의 특성별로 ‘근로지속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여성 가구주’, ‘고연령층 가구주’, ‘저학력층 가구주’인 경우 계속 근로가능성이 낮았고 해고가능성도 높았다. 중산층가족을 보호·유지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인적특성에 맞는 일자리가 창출되어 ‘다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의 두 가지 이점을 가진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지만 아직까지 몇몇 직종을 제외하고는 고용의 지속성 및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공공형 일자리가 아닌 경쟁력 있는 시장형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한계중산층을 대상으로 취업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경력단절여성, 단시간 근무가능 여성, 고연령자, 저학력자, 미숙련자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중산층이 적성 및 능력에 맞는 유연한 고용형태 및 고용시간으로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제안되어야 한다.

제4절 중산층가족의 소득관련 대책

1. 위기 중산층가족의 기능제고를 위한 한시적 지원강화

본 연구에서 중산층 가구주의 근로지속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계속 근로 가능한 비율은 낮았고, 직장사정에 따라 해고가능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학력소지자, 이혼·별거·사별, 고연령층, 임신·일용근로자에 속하는 중산층 가구주의 경우 우울감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가족관계 만족도도 높지 않은 편이었다. 이렇듯 다양한 위험요소를 가진 중산층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경우 가족기능과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가계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내용은 다소 상이하지만 유사한 정책으로는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한돌봄 정책을 들 수 있다. ‘무한돌봄사업’은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경기

도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수혜기간이 정해져 있는 현행 정부의 ‘긴급 복지 지원제도’ 만으로는 실제로 위기 상황을 벗어나도록 돕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제도가 가지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가 2008년부터 시행되어 왔다(무한돌봄센터 홈페이지).

따라서 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이러한 사업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제위기 속에서 중산층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단위 정책으로 확대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다. 위기에 처한 중산층가족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거 및 교육비용, 의료비 등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중앙부처 단위의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중산층의 보호·유지를 위한 연금 및 퇴직금의 점진적 내실화

본 연구결과, 가족 갈등문제 1순위로 ‘경제적 어려움’이 분석되었다. 또한 전문가조사 결과 소득보장분야에서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연금·퇴직금의 내실화’로 나타났다. 중간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중산층에서도 갑작스런 소득원의 실직 및 부재 등은 빈곤 진입에 처할 위험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위기 시 빈곤 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의 보강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 사회안전망은 저소득층 대상 공공부조와 정규직 근로자 위주의 사회보험으로 이루어져 경제위기 시 중산층의 빈곤예방과 탈빈곤 지원에 제한이 있다(함인희, 2009).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이 소득보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국민연금 미납 이유로 29.2%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라고 답하였다.

연금 및 퇴직금이 국민들에게 소득보장제도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사각지대 해소 및 급여 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김경혜(2009)는 실직 시 작동하는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한계 중산층에 대한 적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현황이라고 언급하였다. 대표적 소득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의 경우 비정규직, 소규모사업장, 자영업자들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급여 수준도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안 된다는 비판이 많다. 따라서 중산층의 보호·유지를 위해 저소득층에게만 해당하는 사회안전망을 중산층까지 확대해야 하며 급여수준을 현실화 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의 역할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제5절 중산층가족의 일·가정양립정책

1. 일·가정양립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법적 보장제도로의 전환

일·가정양립정책은 취업여성을 노동시장으로부터 보호하고 중산층 가족 내 소득원 이탈 방식을 돕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가정양립정책은 저출산 시대의 대안일 뿐만 아니라 중산층 계층의 유지·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지원이다.

일·가정양립제도 중 법적 보장제도는 산전후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등이 있으며 자율적 제도는 수유실/수유시간 보장, 탄력/재택근무제, 기관 내(인근) 보육시설 운영, 보육시설이용 보조금 지원제도등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연구소의 제도 운영률은 비교적 높지만 대학이나 민간기업 연구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이 이공계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보다 인원수가

많다고 볼 때 민간기업 연구소에서의 일·가정양립 문제는 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율적 제도인 정책들을 점차 법적 보장제도로 전환하여 기관 형태와 상관없이 일·가정양립 정책 및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2. 육아휴직제도의 대상 확대 및 수준제고로 실효성 확보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결과, 중산층가족 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일·가정양립정책이 분석되었다. 하지만 일·가정양립정책의 대표적인 육아휴직의 지원 대상에 대한 논의가 많다. 신윤정 외(2010)는 육아휴직 사용이 보장되는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 대다수 비정규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성 근로자 중 다수가 계약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로 하고 있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산층가족 내 비정규직 여성에게도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출산 후 계속 고용장려금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3. 직장 내 유연근무제 및 기업 가족친화인증제 활성화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 일·가정양립정책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유연근무제 확대 등 직장 내 가정친화 분위기 조성’이 분석되었다. 취업여성의 노동과 자녀양육의 이중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유연근무제는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시간제근로 등이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하지만 각 기업 및 기관에서 유연근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있는 기관은 많지 않아 적극적인 장려가 시급하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가정양립정책이 정착되어야 할 때 직장 내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가족친화인증제는 기업의 참여가 낮고 정책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여성가족부, 2010).

제6절 중산층가족의 자녀양육정책

1. 자녀양육기 중산층가족의 양육비 실효성 확보

가. 보육·교육비의 전면적 확대

본 연구 결과, 중산층가족은 자녀 보육·교육비 부담을 가정 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지원을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중산층가족의 보육기관 이용률은 저소득층보다 높았으며, 저소득층에 비해 월평균 보육비용도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가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육비 지원이 일부 소득계층에 한정됨에 따라 자녀양육을 경험하는 상당수의 중산층가족은 여전히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정부는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만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매달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기획재정부, 2011). 5세아의 무상교육비 지원은 보육의 공공성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만 3~4세아 교육비와 중

일반비 지원은 여전히 소득하위 70% 이하에 속하는 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맞벌이가족의 경우는 양부모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해서 25%를 감액하여 유아에게 교육비가 지원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따라서 자녀양육기 중산층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의 범위를 저소득층이나 특수한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 위주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동양육 지원에 대한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재정적 지원을 높여야 할 것이다(신윤정 외, 2010). 특히 양육비 지원 정책을 한계중산층 또는 위기에 처한 중산층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육·교육비 지원 수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형태의 지원은 자녀양육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나 노동시간에 미치는 대체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중산층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육정책은 맞벌이가족에게 노동 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최성은, 2009).

나. 양육수당의 실효성 확보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다른 성격의 제도로써 소득의 재분배나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는 아동복지적 성격이 아닌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아기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시간과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녀양육 환경은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보호에 적극적 역할을 하기 보다는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변질되었고, 부모는 비용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이로 인해 자녀가 부모와 보낼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아동이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환으로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양육수당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보건복지부, 2010). 양육수당은 2011년 만 2세까지 확대하여 연령별로 차등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지만 아직 3~4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지원 수준 또한 보육료 지원에 비해 형평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양육수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대상을 만 2세에서 점진적으로 3~4세까지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보육료 지원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2. 자녀양육기 중산층가족의 보편적 제도 도입 및 강화

가. 보편적 수당제도의 도입

본 연구결과,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는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가 3.2점으로 저소득층에 비해 낮았고, 타 영역에 비해서도 저조한 편이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만큼의 복지혜택의 수혜정도는 8.7%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이 높았다. 아동양육시기의 중산층가족은 자녀보육·교육비용 부담외에 주택마련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에 대한 정부 지출확대 희망은 다른 정책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이는 아동양육시기의 중산층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아동육성의 기반 마련 측면에서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U 국가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 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족수당 또는 아동수당이라는 명칭 하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현금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연령은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과의

중복을 피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자녀수 및 자녀 연령에 따라 아동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신윤정 외, 2010).

또한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이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 또는 포기할 경우 자녀양육기간에 비례하는 노후연금을 지급하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부모수당을 지급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

나. 자녀양육비의 소득공제를 통한 소득 보전

우리나라의 자녀양육비의 세제 감면 정책 방향은 주로 자녀의 연령과 자녀수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1명당 150만원씩 종합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교육비 항목으로 1명당 300만원의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는 2명의 자녀수가 있을 경우 연 10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연 10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연 200만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법제처 홈페이지).

이와 같이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에 유리하도록 세제체계를 개편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함께 세액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지원수준이 높으며, 선진국의 근로여건이나 보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격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공제지원액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생애주기별 자녀양육서비스

가. 중산층가족의 취학 자녀를 위한 보육·교육 기반 마련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상 일과 양육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시기이다. 지금까지의 보육정책은 주로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발전되어왔지만, 향후 일하는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 하에서 취학아동의 보육문제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홍승아 외, 2010).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운영시간이 점차 연장되고 있으며 참여학생의 유형 가운데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변종임 외, 2009). 초등돌봄교실은 운영시간에 따라 일반형, 종일형, 엄마품 온종일형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엄마품 온종일형’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6시 30분부터 8시 30분, 오후에는 정규수업 후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이러한 초등돌봄교실은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한 돌봄서비스 구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의 교육서비스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 측면에서도 이용 학부모들에게 호응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중산층가족의 현재 사회에 대한 복지인식은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고 생각하였으나, 미래에는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에 계층 상향이동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계층이동이 점차 낮아지는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교육은 미래 세대의 인적자본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이동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전 계층이 사교육에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소득

계층이 높아질수록 교육비 지출이 높아졌고, 중산층 가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분석에 있어서도 전체의 77%가 공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따라서 공교육의 질을 강화시키는 것은 계층 간에 이동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길이며 찌그러진 중산층(squeezed middle)을 늘리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공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해 근본적으로는 창의·인성 교육 중심으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고, 보육과 교육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의 대안으로 ‘초등돌봄교실’의 질적 제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관이 보유한 양질의 프로그램의 반영과 위탁 운영을 통한 초등과정을 중등과정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교과영역 프로그램 개발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중산층가족의 취학 자녀의 발달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대

취학 자녀를 둔 가족의 자녀양육서비스는 제공 수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부 보육과 교육에만 집중되어서 상당히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아동청소년 발달은 건강한 미래세대를 육성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사회적인 목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개성과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중산층의 복지서비스 인지도에 있어서 위기청소년지원 서비스에 대해 과반수가 알지 못하였으며, 전반적인 아동청소년 서비스의 이용률은 다른 복지서비스에 비해 가장 낮았다. 한편 자녀양육기의 중산층가족의 갈등문제는 타 연령층에 비해서 자녀교육 또는 행동에 대해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러 가지의 위험요인이 누적되는 사회 환경 하에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발달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서 성장기에 있는 아동 청소년을 둘러싼 성, 건강, 안전 및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또래집단 간의 관계 등에 있어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확대해야한다. 일환으로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에 집중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YSNet)나 Wee프로젝트를 보편적인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올바르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한다. 아울러,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활용한 다양한 관계증진 프로그램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 중산층가족의 성인자녀를 위한 정책 간 연계

중산층가족의 성인자녀는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여러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성인이행기가 늦춰지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이행이나 가족 형성 또한 지연되는 추세다. 이는 고스란히 미혼인 성인이행기 자녀를 둔 부모세대에게도 경제적·심리적인 가족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인이행기 자녀를 위한 서비스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는 건강한 미래세대를 육성하고 자립 기반을 확충한다는 측면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구직자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나 공공부문에서의 인턴제도, 창업 지원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1). 그러나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일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과 더 나아가 일자리 간 격차(미스 매칭)로 인한 자발적인 실업도 크다는 점에서 가족정책이 고용정책과 연계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출산제고 측면에서 성인자녀의 결혼지연과 관련하여 결혼자금 마련, 생애최초 주택 마련에 있어서의 금융서비스 등의 현물정책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측면에서 결혼과 가족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의식변화에 중점을 둔 정책도 병행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7절 중산층가족의 가족돌봄서비스

1. 지역사회 돌봄망 확충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0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현재 전국 23개소에서 시행 중이며, 자녀들의 안전한 놀이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부모·자녀에게 육아정보 제공 및 정보나눔 기회 제공, 도서·장난감·교구 등을 비치하고 대여하여 이웃 간 돌봄 나눔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있는 기존의 보육인프라(보육정보센터, 보건소, 주민센터 등)나 유휴시설(경로당, 아파트 내 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육아모와 아이가 함께 놀이, 쉼터, 음악 및 미술활동 등의 프로그램 운영, 육아정보 제공, 심리상담, 도서 장난감 대여 등의 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아동보호 및 발달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조기중재 및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가정방문, 조기교육 및 문해력 프로그램, 사회성 및 의사소통 발달지원, 부모역할 교육 프로그램, 아동영양 등 5가지 사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부모와 가족의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발달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 돌봄 관련 자원과 서비스, 정보 등을 수집하여 맵을 작성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제공 한다. 특히 공공·민간, 이용 연령, 프로그램, 이용시간 등에 따라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돌봄망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여성가족부, 2010).

2. 돌봄서비스의 내실화, 홍보 및 신규서비스 발굴

보건복지부의 돌봄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은 크게 노인종합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아동가족지사업 등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공공재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수단이자 해당 가구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바우처 지원대상을 서민·중산층까지 포괄하도록 대폭 확대하였지만, 아직까지 중산층의 이용수준은 미비한 편이다. 본 연구 결과, 복지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지원수준이 미흡하다는 의견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적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돌봄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또한 중산층가족의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시장성이 검증된 유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재정투자를 확대해 전국적으로 확산을 추진하고, 잠재수요가 크고 시장성 있는 신규 사회서비스도 발굴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중산층가족의 유효수요 제고를 위해 바우처 사용의 본인 부담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같은 세제 지원안도 추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2010).

3. 가족 내 돌봄 지원 강화

최근 아동양육 지원은 돌봄의 사회화 관점에서 보육시설 중심의 양육이나 금전적 지원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돌봄의 일차적 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므로 가족 내 돌봄과 관련된 부모역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

는 건강한 미래세대를 양육하는데 근본이 되는 부모역할에 중점을 두어 막대한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예방적 측면의 사회투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중산층가족의 부모역량 강화

본 연구결과, 중산층가족의 가족관계만족도 평균은 4.0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평균은 5.8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산층가족의 응집력은 가족기능강화와 관련이 높고, 가족응집력은 부모자녀 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와 밀접하다. 따라서 중산층가족의 응집력 강화를 위해서 부모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산층가족의 다양한 특성과 자녀의 발달단계 등에 따른 맞춤형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자녀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의 관점에서 부모권을 실현하고 세력화할 수 있는 부모연대를 구축하고 부모옴브즈만을 제도화 한다. 또한 부모의 역할과 자녀돌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각종 위원회에 부모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부모역량을 제고한다.

나. 예비부모 및 출산부부의 역량 강화

중산층가족의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5.3점으로 저조한 편이었고 미미한 비율이나 가족원간의 관계가 중산층가족의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는 중산층가족의 응집력과 기능강화를 위해서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준비가 사전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전단계로 예비부부, 대학생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부모로서의 역량

을 강화하되, 결혼 전 준비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예비부모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여성가족부, 2010).

미국국립 건강결혼정보센터는 아동가족국이 지원하는 국립센터로서 건강한 결혼에 대한 정보와 연구자료, 홍보 프로그램 등을 일반에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정보포털시스템을 통해 자녀돌봄과 관련된 정부 정책 및 서비스,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부모역할을 지원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10).

다. 중산층가족의 돌봄노동의 성별공유 인식 확대

전통적으로 돌봄노동은 여성이 전담해왔다.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전형적인 성역할 분담이 희미해지고 있지만, 돌봄노동은 여전히 여성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는 돌봄노동이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닌 남녀 모두에게 공평한 양육 책임임을 인지하고 확산시키고자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위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부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중산층가족의 성역할의식은 평균 2.9점으로 다소 보수성을 보였다. 중산층가족의 가족관계 증진 및 합리적인 돌봄역할 분담을 위해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동등한 양육문화를 조성하는 교육, 이벤트 등의 다양한 기회가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라. 위기 중산층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보듬사업의 확대

여성가족부의 가족보듬사업은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사회적 재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사건을 경험한 개인 및 가족의 외상적인 피해를 최

소화하는 과정에서 총 1년간 긴급 가족돌봄지원, 가족기능회복을 위한 가족돌봄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가족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지만 위기를 경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후적인 개입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동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 가족들은 누구나 그러한 위기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본 연구결과, 중산층가족은 문제해결방식에 있어서 의견충돌이 잦으며, 배우자 폭력 발생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나 생활만족도 역시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 하에서 중산층가족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중산층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가족보듬사업은 각종 위기에 대응하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위기중산층가족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8절 중산층가족의 주택정책

1. 중산층가족의 주거권 보호

가. 자가소유 중산층가족의 정책적 보호

본 연구결과, 중산층가족의 자가비율은 절반수준으로 다수가 주거가 불안정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의 하나로 주거비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산층가족의 존재론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주택의 사회·문화적 기능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는 주택공급을 통한 자가소유의 가구확충도 중요하나 자가 소유의 중산층가족을 대상으로 정책적 보호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가 소유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자산 가치 보존을 위해서는 집값 폭등의 억제와 주택 보유를 통한 과도한 불로소

득의 원천적 환수 등 투기 억제 조치가 요구된다(장세훈, 2006).

나. 고용과 주거를 통합한 중산층가족의 지원

본 연구결과, 중산층가족의 소비생활구조에서 주거비는 10.1%로 적지 않은 분포를 보였고, 실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주택마련이 17.9%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중산층가족의 과중한 주거비는 건강이나 교육 등 필수적 가계지출을 위해 주거비를 위축시킴으로써 이들의 자립과 자활능력 배양 기회를 저해할 수 있다. 중산층가족의 거처의 안정은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정착, 나아가 취업촉진으로 이어져 중요한 사회적 투자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산층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고용과 주거를 통합한 정책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위기중산층가족의 주거복지정보 통합 제공

중산층가족의 자가비율은 56.9%로 나머지 43.1%는 전세·월세 또는 기타 형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주택은 주거생활의 안정화와 관련이 높고, 주거생활은 가족의 응집력 및 가족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산층가족의 보호유지를 위해서는 주거생활의 안정화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거를 상실했거나 위기에 처한 중산층 가족의 주거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위해 주거복지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주거자원의 연계를 체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중앙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위기중산층가족을 대상으로 신속한 주거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2. 중산층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한 현금 외 지원방안

우리나라에서의 주택은 주거수단 외에도 일종의 자산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무리해서라도 주택을 소유하려는 경향이 높다. 본 연구결과, 중산층가족은 부채가 저축보다 높으면서 부채규모도 훨씬 높았다. 부채 형태를 보면,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이 높았고 주거비 출처에 있어서도 금융기관 대출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산층가족이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크며, 대출이란 경로를 통해 이루어져서 가계부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전문가 의견 분석에 있어서도 중산층 가족에게 우선되어야 할 주거정책으로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및 상환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이 공공임대주택의 자격 요건 완화에 이어 많았다.

따라서 중산층가족의 가계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금융서비스와 조세 혜택이 맞물려 작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2012년 정부의 주택 정책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의 구매자금 지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장기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 공급하고,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을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며, 전월세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예정에 있다(기획재정부, 2011).

3. 무주택 중산층가족을 위한 주거권 보장

가. 공공임대 및 전세주택 입주기준 완화

본 연구결과, 중산층가족의 주택소유형태는 절반이 전월세로 다수가 주거가 불안정하였고,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비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산층가족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 및 전세주택의 공급을 무주택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택정책이 4인 가구에서 1~2인 서민 가구 중심으로 급격히 바뀌면서 4인 규모의 중산층가족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시프트) 규모를 작은 크기로 변경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있으며, 정부 역시 보금자리주택을 소형 위주로 재편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중산층가족은 3인 이상 가구가 과반수 이상으로 절반 이상이 무주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무주택 3인 이상 중산층가족은 공공주택 공급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전문가들 역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4인 중산층 가구를 고려한 종합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중산층가족의 중장기적인 주거생활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고, 유효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균형 있는 주택 공급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제9절 중산층가족의 특수욕구서비스

1. 중·고령 중산층가족의 고용정책

가.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일자리는 경제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면서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 있으나 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 재취업서비스는 대체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한되어서 다양한 계층의 욕구가 충

죽되지 못하며 소득보장 기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령층의 직업계층이나 소득계층에 따라 상이한 자원 및 욕구를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확장이 필요하다(이소정, 2011).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고학력의 대상자들이 경력단절 후 본래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학력자에 맞는 맞춤형 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학력자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면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중산층가족의 내적 안정성을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함인희 외, 2009).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주체가 되어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부문에서 할 수 없는 한계점을 민간기업 차원의 일자리 확대로 보완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형태를 통해 고령자의 특성과 장점을 고려한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하여 고령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을 통해 전기노년층(65세 이전)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교육과 자격증 취득 등 평생교육을 제공토록 하면 기업은 중산층 복원의 사회적 역할 수행과 함께 고령자 고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중년여성의 일자리 지원

최근 중년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점차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취업과 실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소득은 불안정해지는 반면, 교육·주택·노후 소득대비 등을 비롯한 가계지출은 증대되면서 부차적으로만 여겨졌던 여성의 소득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취업조건이 취약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통해 경력과 학력에 따라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알선, 취업 사후 관리 등 one-stop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생에게는 교육기간동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밑반찬이나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훈련생 선발에 있어서 저소득층, 여성가장,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이 여성의 취업이 비교적 쉬운 사회서비스 직종으로 한정되어 있어 여성의 진로 계발에 있어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년 여성들이 경력단절 이후 가지는 일자리는 대부분이 열악한 일자리에 편중되어 있다. 본 연구의 전문가의 의견분석 결과,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고용정책으로는 중·고령층 고용안정화에 있다는 의견과 맥을 같이한다. 이처럼, 중년여성의 일자리는 노동시장 참여 유형이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저임금,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아 소득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중산층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핵심 일자리부터 ‘괜찮은 일자리’로 변화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중년 여성의 일자리 문제가 경력단절과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청·장년 여성들이 자녀양육을 위해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녀양육 정책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2. 영세자영업 중산층가족의 지원 정책

본 연구결과, 중산층 가구주의 취업은 81.5%이고, 종사상지위는 자영업자가 23.8%로 5분의 1을 초과하며,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산층가족의 붕괴 배경에는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상 자영업자의 큰 비중이 차지하여 경쟁이 심한 가운데, 자영업의 80.2%가 생계유지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매업 및 숙박·음식업 등 창업이 쉬운 업종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 반면 이러한 업종들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3년

이내 폐업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박희석, 2011). 이에 따라 정부는 경영 악화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 저리의 금융지원서비스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있고, 이는 2013년 말에 소멸할 예정에 있다(서동국 외, 2011). 이 밖에도 교육·훈련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나 전직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훈련 지원서비스는 일시적인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영세자영업 중산층가족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근시안적인 자영업 육성이 아닌 체계화된 교육과 관리체계의 정착을 통해 소득 안정화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창업, 사업계획개발, 마케팅전략, 재정과 세법 등에 관한 사전교육과 지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중간점검과 수요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재교육 과정이 정착되어 보다 확고한 시스템 속에서 직업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각종 브랜드 체인을 통해 동네시장까지 잠식해가는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본연의 경쟁력만으로 살아남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 강화 못지 않게 영세업자들 간의 협업을 이끌어내서 그 지역에서의 특색있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소비자들에게 이점을 잘 살려 홍보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행보로 서울시는 올해 말부터 ‘자영업 협업사업’을 실시하여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잘 운영된다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서울특별시, 2011).

이와 더불어 영세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커서 이들에게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영세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분의 각 3분의 1

을 지원할 예정이나(기획재정부, 2011) 여전히 영세자영업자는 그 대상에서 누락되었다. 이들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영세자영업자에게도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을 유인할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참고 문헌

- 강성진 외(2010). **중산층의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혜규(2008).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도 혁신, **보건복지포럼, 2008년 1월호**, pp.14-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혜규·김보영·엄태영·김은지·정세정(2010).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홈페이지(2011) (<http://www.moohan.or.kr>)
- 경향신문(2011). **프랑스 부자들도 세금 더 내겠다**. 2011월 8월 24일 2면.
- 고경환(2007). 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정책과제: 규모, 구조, 기능측면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07년 9월호**, pp.21-3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용안정부(2011) **내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내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0).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이렇게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홈페이지(2011) (<http://eduzone.kedi.re.kr>)
- 관계부처 합동(2009).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미래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자료.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2010.4.) 홈페이지(<http://contents.archives.go.kr/>)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2010. 4.). **법률정보**. (<http://likms.assembly.go.kr>)
- 기획예산처(2002). 외국의 중산층·서민생활안정대책과 그 시사점. **재정포럼**, 68, 71-76.
- 기획재정부 등(2009. 11. 5).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 (www.korea.kr/expdoc/viewDocument.)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 김경신 외(2007). **통합적 가족정책을 위한 과제 및 지표개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
- 김미숙·정경희(2010). 2010년 복지서비스정책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159, pp.54-65.
- 김병조(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제34집 여름호 한국사회학회**.
- 김승권(2004). 한국 가족정책의 동향과 발전방안. **보건복지포럼**, 91, 6-32.
- 김승권 외(2003). **가정복지 종합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천·안현미(2003). 참여정부 가족정책의 기본 구성요소의 분석과 발전방향모색, **한국가족복지학**, 12, pp.35-63.
- 김승권(2004). 한국 가족정책의 동향과 발전방안, **보건복지포럼**, 91, 6-32.
- 김용기 외(2010).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삼성경제연구원 Issue Paper 2010. 8.
- 김유경·조애저·최현미·이주연(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현(2009). **지속가능발전과 일가족 양립정책**. 제2회 국정과제세미나
- 김현우(2010). 한국의 녹색일자리 현황과 전망. **환경과 생명**, 63,

110-122.

김혜경(2003). 가족정책과 양성평등. **국회도서관보** 40(10), 56-62.

남준우(2007).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변화의 추이, **노동 정책연구**, 7(4), 한국노동연구원.

남은영(2011). **한국사회 변동과 중산층의 소비문화**. 나남.

노동부(2007). **제4차(2008~2012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안)**.

노동부(2010). **보도자료**

드림스타트 사업안내(2010. 12). **드림스타트 리플렛**. 보건복지부.

류상영·강석훈(1999). **중산층의 변화실태와 정책방향**. 삼성경제연구소.

문형표(편)(2009). **휴먼뉴딜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개발연구원.

미래기획위원회(2009. 3. 22).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보도자료. (www.future.go.kr/)

매일경제(2011). **금융권 임금피크제 왜 실패했나**. 2011년. 11월. 29일

민승규·이갑수·김근영·손민중(2006a).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CEO Infomation** 574,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김용기·이갑수·김근영 외(2006b).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민현주(2011). 중산층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지위 변화 및 전망, **한국사회 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학술대회**. 한국사회학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말순(1998). 결혼준비프로그램이 예비부부의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성쾌·김종천(2010). 한국 수산업의 선진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해양 정책연구**, 25(2), 111-150.

- 박양호(2010).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제4회 국정과제공동세미나.
- 박희석(2011). **2011년 3/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방하남(2009). 휴먼뉴딜 노동: 일과 가정 양립 가능하게. **미래정책포커스**.
- 백진아(2001).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생활의 변화와 가족주의, **사회발전연구 제7집**.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http://oneclick.law.go.kr>).
- 법제처 종합법률정보센터(2011). **다문화가족지원법**. (www.moleg.go.kr/main)
- 변종임·조순옥·최종철·박현정·김인숙·박효진·노희진(2009). **2009년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조사 및 성과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변희순(1992). 국가정책과 여성, **여성연구**, 9(3).
- 변희순(2008). 가족정책의 방향정립과 가족영향평가의 시행, **젠더리뷰**, 8, pp.4-27.
- 변희순·원영애(2000). **최근 가족해체 실태와 복지대책**. 한국여성개발원.
- 변희순(2008). 가족정책의 방향정립과 가족영향평가의 시행, **젠더리뷰**, 8, pp.4-27.
- 보건복지부(2011).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1). **임신에서 육아까지 정부지원정책 가이드: 행복한 우리아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1.2.24). **보도자료 MB 정부, “더 나은 복지정책”을 위한 복지정책간담회**.
- 보건복지부(2010). **보건복지백서**.

-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관(2009). **2009 가족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육료 전액지원(무상보육)대상 확대에 따른 선정기준 개편 및 집중신청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2008).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보완판: 함께 가는 가족 2010**. 여성가족부.
- 서동국·임언선·허원(2011). 2011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쟁점. **현안보고서 제128호** 국회입법조사처.
- 서문희·김은설·장혜경·박수연(2008).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강화 방안**. 노동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울특별시(2011). **내부자료**.
- 석상훈(2008). 외환위기 이후 소득이동에 대한 연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송다영(2011). 보육서비스 정책 개편 쟁점에 관한 연구: 돌봄에 관한 자유선택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모색. **한국사회복지학**, 63(3), 285-307.
- 송혜림·성미애·박정윤·진미정(2009). 경제적 위기 상황과 가족정책의 대응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5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광영(2008). 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구조 변화와 불평등 체제. **시민과 세계 제13호** 참여사회연구소.
- 신윤정·정경희·김수봉·손창균·이수형·이지혜(2009).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 체감도 및 우선순위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아이돌보미지원사업체제도(2001). **아이돌보미지원사업 홈페이지** (www.idolbom.or.kr)
- 양준호(2006). 일본의 소득양극화 현상과 시사점, **SERI 경제 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양춘(2002). 한국사회 계층연구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학 제36집 1호**, 한국사회학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10).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녹색뉴딜 정책
평가: 녹색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 2010년도 국정감사자료집.

여성가족부(2011).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0).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조직개편.

여성가족부(2009). 2001-2010 여성(가족)부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여성가족부(2009). 정책가이드

여성가족부 국제협력팀(2006). 세계여성정책동향. 여성가족부.

여성부 국제협력담당관실(2005). 2005 3월 세계여성 정책보고. 여성부

염철현(2008). 미국의 Head Start와 한국의 We Start 운동의 비교, 분석 및 그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18(2), 47-67. (p.53).

염철현(2008). 미국의 Head Start와 한국의 We Start 운동의 비교, 분석 및 그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18(2), 47-67. (p.61) 재인용, 원자료: 이봉주(2006). 아동발달과 각국의 start programs.

위스타트(2011). 위스타트사업내용 홈페이지 (www.westart.or.kr)

유경준·최바울(2008).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KDI 재정·사회정책동향 2008 상반기**.

유영주(1996). 한국의 여성 및 가족정책의 변화: 문제와 전망, **여성가족생활연구**, 9, pp.89-114.

유팔무·김원동·박경숙(2005).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한림과학원
총서 111.

윤홍식(2004).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복지동향**, 1, pp.40-42.

이동훈(2007). 대한민국 중산층, 그들은 누구인가? 삼성경제연구소

- 이병훈·신재열(2011). 자영자의 계층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학술대회**. 한국사회학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소정(2011).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노후설계 지원서비스의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숙중 외(2009). 2009 국민 계층의식조사.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 이재열(2006). 한국의 사회통합과 중산층 육성의 과제. 한국사회학회 중산층 역할과 사회발전 제1차 포럼. pp.151~180.
- 이정우·이성림(2001).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1997년 위기 전후의 소득 분배와 빈곤, **국제경제연구**, 7(2). 한국국제경제학회.
- 이진숙(2004). 가족정책의 방향성과 통합적인 시행방안, **가족정책의 방향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
- 이혜숙(2004).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경상남도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임성은(2010). 영국과 미국의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정책. **보건복지포럼**, 161, 83-103.
- 장명선·이옥경(2008).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미혜(2006). 중산층의 양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 **한국사회학회 기타 간행물**. 한국사회학회.
- 장혜경 외(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장혜경(2002). 한국의 여성정책, **한국여성학**, 18(1), pp.206-209.
- 전북신문(2011). 전북도 내년 권장은 일자리 창출 중점 투자. 2011년 11월 17일
- 전준구(2006).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고객만족, 후속행동과의 인과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8(2), 통권 제17호, pp.105-139.

정영금(2008).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 본 일-가정 균형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pp.1-14.

정현숙(2009). 개인, 가족, 사회: 혁명적 변화에 대한 가족의 대응.

2009년 제45차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초연설 자료

정현숙(2007). **가족생활교육**. 서울: 신정.

정현숙·옥선화(2009). **가족관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정현숙·유계숙(2001). **가족관계**. 서울: 신정.

정현숙·박세경·장선영(2010).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지원모델 개발 연구**.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정혜정·공미혜·전영주·정현숙(2009). **가족과 젠더**. 서울: 신정.

정현숙(2009). 개인, 가족, 사회: 혁명적 변화에 대한 가족의 대응.

2009년 제45차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초연설 자료

정혜정·공미혜·전영주·정현숙(2009). **가족과 젠더**. 서울: 신정.

조동기(2006).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인구학**, 29(3), pp.89~109.

조병구·조운영·김정호(2007).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한국개발원.

조선일보(2011. 3. 5). **복지체감도 왜 떨어지나: 복지에산 3분의 1일 건보료...노인과 중증환자 지원 물려**. 신문기사.

조주은(2009). **일·가정 양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조홍식·김인숙·김혜란·김혜련·신은주(2002).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11). **2010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11). **2010년도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사업 실적보고서**.

중앙일보(2010). **다문화 가정 성공모델 찾아나서야**. 2010년 4월 29일 20면.

- 중앙일보(2011). **벨기에의 다비능**. 2011년 8월 29일 16면.
- 중앙일보(2011). **균형재정, 복지, 성장 3차방정식, 박재완 해법은 “일 자리예산”**. 2011년 9월 28일 E2-E3면.
- 초의수(2008). 한국 가족정책의 재평가-최근 한국가족 변화 경향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집**, 19, pp.163-210.
- 최경수(2008). 사회통합의 과제와 저소득층 소득향상, **KDI정책포럼 제 191호**, 2008-03. 한국개발연구원.
- 최진욱(2008). 참여정부 정부혁신 체감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2), pp.97-117.
- 최진욱·구교준·김태은(2007).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6(1), pp.73-96.
- 최진희(2009). 일본 아동복지의 현황과 대응에 관한 내용 및 문의: 2009년 아동복지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8월호, 66-75.
- 최효미(2008). 중산층의 사회계층 소속감에 대한 분석: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사례, **노동리뷰 제10호** 한국노동연구원.
- 태원유(2009). **실업위기의 뇌관, 중고령자 고용불안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 통계청(2011), **국가통계포털**. 3/4분기.
- 통계청(2011). **2010 혼인·이혼통계**.
- 통계청(2009), **국가통계포털: 사회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보건복지정책 수요분석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보건복지 issue & Focus**. 48, 1-8.
- 한준·이상봉(2011). 중산층의 소득 및 자산 변동, **한국사회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학술대회**. 한국사회학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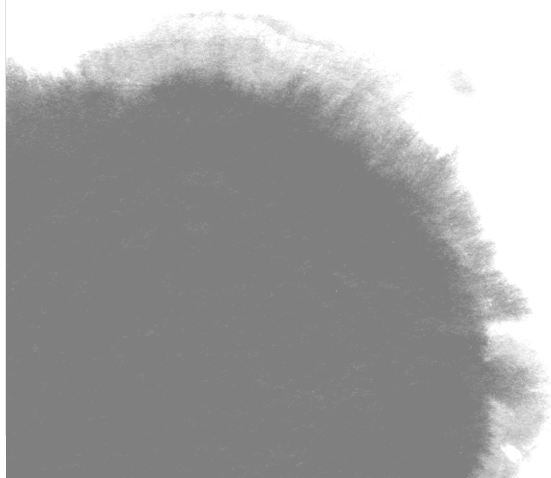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 함인희·최유정·나영선(2009). **중산층 복원을 위한 일자리 정책 과제-중산층 저변 확대 및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홍두승(2005).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학교출판부.
- 홍두승(2006). 한국사회발전과 중산층의 역할, **한국사회학회 중산층 역할과 사회발전 제1차 포럼**. pp.2~17.
- 홍석표·원종옥·백화중·김성일·홍미(2003). **경제위기 전후의 중산·서민층 생활실태 변화와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승아·김은지·이영미(2010).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xelrod, R.(1973). Schema Theory: An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Perception and Cogn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7(4), pp.1248-1266.
- Bailey, B.(2009). *Sexual revolutions*. In A. S. Skolnick & J. H.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15th ed.)*(pp. 125-141). Boston: Allyn & Bacon Pub.
- Bradbury, K.(1986). *The shrinking Middle Class*. New England Economic Review.
- Cherlin, A. J.(2009). *American marriage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In A. S. Skolnick & J. H.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15th ed.)*(pp. 171-192).Boston: Allyn & Bacon Pub.
- Diduck, A. & O'Donovan, K. (Eds.)(2006). *Feminist perspectives on family law*. Oxford, UK, Routledge-Caendish.
- Duncan, Greg J. et al(1991). Whither the Middle Class? A Dynamic View. *Economics Working Paper Archive 56*, Levy Economics Institute.

- Gallagher, M.(2002. 4. 23.). "Marriage and Public Policy: What Can Government Do?", *Policy Brief*.
- Gerson K.(2009). *What do women and men want?. In A. S. Skolnick & J. H.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15th ed.)*(pp. 109-114). Boston: Allyn & Bacon Pub.
- Diduck, A. & O'Donovan, K. (Eds.)(2006). *Feminist perspectives on family law*. Oxford, UK, Routledge-Caendish.
- Giele, J.(2003). *Decline the family: Conservative, liberal, and feminist view*. In A. Skolnick & J.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pp. 57-75). Boston: Allyn & Bacon Pub.
- Goode W. J.(2009). *The theoretical importance of the family*. In A. S. Skolnick & J. H.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15th ed.)*(pp. 13-25). Boston: Allyn & Bacon Pub.
- Goode, W. J. (1982). *The family*. NY: Prentice-Hall.
- Kamerman, S. B., and Kahn, A. J.(ed.)(1978). *Family Policy: Government and Families in Fouteen Countries*. N. Y.: Columbia University Press.
- Kamerman, S. B., & Kahn, A. J. (1976). *Social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Policies and program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Grabka, Markus M. and Joachim R. Frick(2008). The Shrinking German Middle Class: Signs of Long-Term Polarization in Disposable Income?. Weekly Report, DIW Berlin,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vol. 4(4).
- Hochberg, J.(1956). Perception: Toward the Recovery of a Definition. *Psychological Review*, 63(6), pp.400-405.

- Horrigan, M & S. Haugen(1988). The Declining Middle-class Thesis: A Sensitivity Analysis'. *Monthly Labor News* 111.
- Law, K. S., & Wong, C(1999). Multidimensional Constructs in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An Illustration Using the Job Perception and Job Satisfaction Constructs. *Journal of Management*, 25(2), pp.143-160.
- Lawrence, R.(1984). *Sectoral Shifts and the Size of the Middle Class*, The Brooking Review.
- McDonald, P.(2003). Family Policy. In Demeny, P & McNicloe, J(Eds). *Encyclopedia of population*. Thomson.
- OECD(1995).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evidence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 OECD.
- Olson, D., & Defrain, J.(2000). *Marriage and the family: Diversity and strength(3rd ed.)*. Mountain View: Mayfield Publishing Co.
- Skolnick, A.(2009). *Grounds for marriage: How relationships succeed or fail*. In A. S. Skolnick & J. H. Skolnick(Eds.)(15th ed.), *Family in transition*(pp. 192-201). Boston: Allyn & Bacon Pub.
- Skolnick, A. S., & Skolnick, J. H. (Eds.)(2009). *Family in transition(15th ed.)*. Boston: Allyn & Bacon Pub.
- Thurow, L.(1984), *The Disappearance of the Middle Class*. The New York Times, 1984.
- The European Commission(1999). Family and Work Survey. *The European Observatory on the Social Situation Demography, and Family*. Luxembourg.

- Wilcox, W. B.(2005). *Why Marriage Matters: Twenty-Six Conclusions from the Social Sciences (2nd, ed.)*. Institute for American Values.
- Williams, B., Sawyer, S. C., & Wahlstrom, C. (2006). *Why have families at all? Four benefit*. pp.17-18
- Zimmerman, S. L.(1995). *Understanding Family Policy: Theory and Application*. Thousand Oaks, CA: Sage.

부 록





부록

『중산증가족의 복지 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

지역 번호		조사료 번호				조사원 번호	

조사지	전화조사일시	2011년 6월 ____ 일	☐ ① 조사원료	☐ ② 조사미완	
조사지역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경기	☐ ⑨ 강원	☐ ⑩ 충북
	☐ ⑪ 충남	☐ ⑫ 전북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지역특성	☐ ① 대도시 ☐ ② 중소도시 ☐ ③ 농어촌지역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중산층 가족의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 마련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이 평소 갖고 계시는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및 의견과약을 위한 전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 결과는 복지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체감도와 희망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현 정부의 복지정책 발전 과정에 국민들의 현실적 의견을 반영하는데이용될 것입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본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통계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소요 시간은 약 8분 정도로,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솔직히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응답자 일반 특성 >>

본 전화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지역 및 일반특성을 일정비율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사대상자 성별 : ☐ ① 남성 ☐ ② 여성	1. ☐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만 나이)? ☐ ① 20~29세 ☐ ② 30~39세 ☐ ③ 40~49세 ☐ ④ 50~59세 ☐ ⑤ 60~69세 ☐ ⑥ 70세 이상	2. 만 세 2-1. ☐
3. 귀하의 교육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재학, 중퇴, 졸업 포함)? ☐ ① 무학 ☐ ② 초등학교 ☐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 ☐ ⑤ 대학교 ☐ ⑥ 대학원	3. ☐
4. 귀하의 취업여부 및 고용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비취업(구직활동) ☐ ② 비취업(비구직활동) ☐ ③ 자영업자 ☐ ④ 고용주 ☐ ⑤ 임금가족종사자 ☐ ⑥ 상용근로자 ☐ ⑦ 일용근로자 ☐ ⑧ 임시근로자 ☐ ⑨ 미취업자(주부, 군인, 노인) ☐ ⑩ 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4.

<<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항 >>

5. 귀하께서 현재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귀하는 다음 영역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이용하고 계시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 영역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 여부		도움 정도					이용 여부	도움 정도
	이용	이용 안함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해당 없음		
5-1.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① 임신·출산진료비, ②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③ 난임부부 지원, ④ 신혼부부 주택지원, ⑤ 기타) 무엇: _____	①	②	①	②	③	④	⑧	5-1-1 ☐	5-1-2 ☐
5-2. 영유아보육 서비스 (① 직장보육시설, ② 예방접종, ③ 보육·교육비, ④ 양육수당, ⑤ 돌봄서비스, ⑥ 다자녀가정 보육지원, ⑦ 기타) 무엇: _____	①	②	①	②	③	④	⑧	5-2-1 ☐	5-2-2 ☐
5-3. 아동청소년 서비스 (① 드림스타트, ② CYS-net, ③ WEE 센터, ④ 멘토 지원, ⑤ 아동학대 예방·보호서비스, ⑥ 아동·청소년 폭력(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보호서비스, ⑦ 게임중독 예방치료, ⑧ 기타) 무엇: _____	①	②	①	②	③	④	⑧	5-3-1 ☐	5-3-2 ☐
5-4. 노인서비스 (⑥ 무임승차권, ① 노인의치보철, ② 취업·창업지원, ③ 퇴직연금, ④ 기초노령연금, ⑤ 농지연금, ⑥ 노인장기요양보험, ⑦ 치매, ⑧ 노인일자리, ⑨ 노인돌봄서비스, ⑩ 기타) 무엇: _____	①	②	①	②	③	④	⑧	5-4-1 ☐	5-4-2 ☐
5-5. 장애인서비스 (① 장애인연금, ② 활동보조지원, ③ 경증장애수당, ④ 장애아동수당, ⑤ 교통관련지원(지하철승차권, 주차, 고속도로 통행요금), ⑥ 통신비지원, ⑦ 기타) 무엇: _____	①	②	①	②	③	④	⑧	5-5-1 ☐	5-5-2 ☐
5-6. 공적연금 (① 국민연금, ② 공무원·군인·교원연금, ③ 보훈연금, ④ 별정직·우체국연금 등) 무엇: _____	①	②	①	②	③	④	⑧	5-6-1 ☐	5-6-2 ☐
5-7. 고용보험 (① 실업급여, ② 직업능력개발급여, ③ 산전후휴가급여, ④ 육아휴직급여 등) 무엇: _____	①	②	①	②	③	④	⑧	5-7-1 ☐	5-7-2 ☐
5-8. 산재보험 (① 장해급여, ② 유족급여, ③ 요양급여, ④ 휴업급여, ⑤ 간병급여, ⑥ 기타) 무엇: _____	①	②	①	②	③	④	⑧	5-8-1 ☐	5-8-2 ☐
5-9.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①	②	①	②	③	④	⑧	5-9-1 ☐	5-9-2 ☐
5-10. 기타(① 일자리, ② 소득공제, ③ 면세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⑧	5-10-1 ☐	5-10-2 ☐

<< 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문항 >>

6. 귀하가 이용한 복지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는 무엇입니까?		
☐ ① 지원수준(양적) 미흡 ☐ ② 서비스의 질 부족 ☐ ③ 이용하기 어려움 ☐ ④ 신청 및 선정절차의 까다로움 ☐ ⑤ 복지서비스 정보 부족 ☐ ⑥ 기타(_____)	6.	
7. 귀하가 생각하는 귀택의 가장 큰 어려움 은 무엇입니까?		
☐ ④ 어려움 없음 ☐ ① 생계 ☐ ② 주택마련 ☐ ③ 보건의료비용 부담 ☐ ④ 자녀보육·교육비용 부담 ☐ ⑤ 구직문제 ☐ ⑥ 노인돌봄 ☐ ⑦ 기타(_____)	7.	
8. 귀하는 세금을 내는 만큼 복지혜택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8.	
9. 귀하는 현 정부가 중산층의 복지제감 증진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득보장정책 ☐ ② 주거보장정책 ☐ ③ 보건의료보장정책 ☐ ④ 보육·교육비 지원정책 ☐ ⑤ 일자리정책 ☐ ⑥ 조세정책(소득공제·면세) ☐ ⑦ 노인복지정책 ☐ ⑧ 기타(_____) ☐ ⑨ 생계보장정책	9.	

<< 복지서비스 인지도에 관한 문항 >>

10. 귀하께서는 중산층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음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복지서비스 영역	인지정도				인지 정도
	전혀 모름	모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10-1. 육아휴직 제도(배우자 포함)	①	②	③	④	10-1.
10-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	①	②	③	④	10-2.
10-3. 0~4세 영유아가구 무상보육	①	②	③	④	10-3.
10-4. 위기청소년 지원제도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CYS-Net) 또는 학생상담지원센터(Wee 센터)	①	②	③	④	10-4.
10-5. 대학생 등록금 대출제도(돈돈학자금 제도)	①	②	③	④	10-5.
10-6. 기초노령연금제도	①	②	③	④	10-6.
1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①	②	③	④	10-7.
10-8.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인하	①	②	③	④	10-8.
10-9. 장애인활동지원제도	①	②	③	④	10-9.
10-10. 보금자리주택	①	②	③	④	10-10.

<< 복지서비스 체감도에 관한 문항 >>							
1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음의 각 정책영역에서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사회정책	체감정도						인지 정도
	매우 잘하고 있다	잘 하고 있는 편이다	보통/ 그저 그렇다	잘 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 하고 있다	모름	
11-1.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11-1. ☐
11-2. 노인들이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11-2. ☐
11-3.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11-3. ☐
11-4.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11-4. ☐
11-5. 빈곤 예방 및 감소	①	②	③	④	⑤	⑥	11-5. ☐
11-6. 실업에 대한 대응	①	②	③	④	⑤	⑥	11-6. ☐
11-7.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11-7. ☐
11-8. 모두가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11-8. ☐
11-9.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11-9. ☐
11-10.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	①	②	③	④	⑤	⑥	11-10. ☐

▶ 마지막으로 귀하의 일반 특성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월평균 가구 소득(세금공제 전의 금액) 12. 만원							
☐ ① 소득없음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200만원 미만 ☐ ③ 200~300만원 미만 ☐ ④ 300~400만원 미만 ☐ ⑤ 400~500만원 미만 ☐ ⑥ 500만원 이상 ☐ ⑨ 무응답							12-1. ☐
13. 결혼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유배우 ☐ ② 별거 ☐ ③ 이혼 ☐ ④ 사별 ☐ ⑤ 미혼							13. ☐
14. 가구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인 가구 ☐ ② 부부가구 ☐ ③ 부부+자녀 ☐ ④ 한부모+자녀 ☐ ⑤ 3세대 가구 ☐ ⑥ 조부모+손자녀 ☐ ⑦ 기타가구()							14. ☐
15. 총 가구원 수(본인 포함) 15. 명							
16. 주택소유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자가 ☐ ② 전세(坪) ☐ ③ 전월세(坪) ☐ ④ 월세(坪) ☐ ⑤ 기타()							16. ☐ 16-1.
17. 귀하께서 판단할 때 귀하가족의 사회적 지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상 ☐ ② 상중 ☐ ③ 상하 ☐ ④ 중상 ☐ ⑤ 중중 ☐ ⑥ 중하 ☐ ⑦ 하상 ☐ ⑧ 하중 ☐ ⑨ 하하 ☐ 99 무응답							17.

● 질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연구 전문가 조사

전문가 유형		응답자 일련번호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중산층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관련 전문가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문가(학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 등)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정부의 중산층가족 관련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부디 비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 조사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번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연구실

담당자 : 김정숙 연구원/ loved722@khsa.re.kr

남주영 연구보조원/ joo1nim@hanmail.net / 02-380-8149, 팩스/ 02-384-308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중산층가족(가구주 기준)을 대표하는 **직업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문항	예	아니오
9-1 관리직(고위직, 관리직)		
9-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교수, 교사, 의사, 약사, 토목기술자)		
9-3 사무종사자(경영, 회계, 법률, 금융)		
9-4 서비스종사자(경찰 및 소방, 이미용, 운송, 음식점)		
9-5 판매종사자(영업직, 매장판매, 노점상)		
9-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축산, 임업, 어업 숙련직)		
9-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식품가공, 목재, 금속, 운송기계, 전기전자, 영상 기능직)		
9-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식품가공기계, 섬유산업기계, 화학기계등 조작)		
9-9 단순노무직(제품 생산직, 판매·서비스 단순직, 제조·건설 단순직, 경비·청소·가사도우미)		

10.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중산층가족을 구분하는 **재산규모(금융·부동산·주택)의 기준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억 이상~2억 미만 ② 2억 이상~3억 미만 ③ 3억 이상~4억 미만
 ④ 4억 이상~5억 미만 ⑤ 5억 이상~6억 미만 ⑥ 6억 이상~7억 미만
 ⑦ 7억 이상~8억 미만 ⑧ 8억 이상~10억 미만 ⑨ 기타(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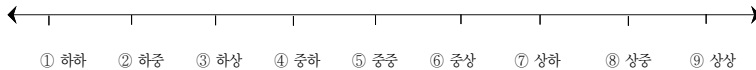
11.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산층가족(가구주 기준)의 **교육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중퇴·재학포함) ② 2년제 대학 졸업(중퇴·재학포함) ③ 4년제 대학 졸업(중퇴·재학포함)
 ④ 대학원 석사 ⑤ 대학원 박사 ⑥ 기타(_____)

12.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산층가족(가구주 기준)의 **문화생활참여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주일에 2번 이상 ② 1주일에 1회 ③ 한 달에 1~2회
 ④ 1년에 2~3번 이상 ⑤ 1년에 1회 ⑥ 기타(_____)

13. 다음은 주관적인 계층 귀속 유형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중산층가족은 어느 계층부터 어느 계층까지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 계층과 최고 계층**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최저 계층: _____ ~ 최고 계층: _____



16.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소득보장분야**에서 중산층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연금·퇴직금의 내실화
- ②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 확대(가족수당, 양육수당 등)
- ③ 경제위기시 사회 안전망 강화
- ④ 각종 대출이자 부담 경감으로 가계부채 완화
- ⑤ 기타()

17.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조세분야**에서 중산층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소득공제 한도 상향
- ② 소득세율 인하
- ③ 경기회복을 위한 단기적 세제지원
- ④ 양도소득세 증과 완화/폐지, 종부세·재산세 인하 등 비과세 혜택
- ⑤ 기타()

18.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보건의료분야**에서 중산층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②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건의료 서비스 범위 확대
- ③ 공공립병원 확충으로 서비스 접근성 제고
- ④ 병원비 부담 상한제 제고
- ⑤ 기타()

19.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교육분야**에서 중산층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교육의 질 제고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 ② 대학교 등록금 반값 조정
- ③ 초중고교생 무상급식 전면 확대
- ④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비 전면 확대
- ⑤ 기타()

20.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주거분야**에서 중산층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공임대 및 전세주택의 입주기준을 중산층까지 확대
- ② 주택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확대
- ③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및 상환부담 완화
- ④ 주택거래 지원 확대(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관련한 금융·세제상 지원)
- ⑤ 기타()

21.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고용분야**에서 중산층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업의 정년 보장
- ② 중장년층의 고용안정화(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강화)
- ③ 고용보험(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확대
- ④ 실직 중산층의 재취업지원 확대(교육·훈련·생계비 지원 제고)
- ⑤ 기타(_____)

22.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일가정양립분야**에서 중산층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산층의 차등 보육료 지원 확대
- ② 유연근무제 확대 등 직장 내 가정친화 분위기 조성
- ③ 유급 육아 휴직 기간 확대 및 급여제고 등 실효성 확보
- ④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확대
- ⑤ 기타(_____)

23. 마지막으로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건의하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부표 1〉 소득계층 및 이용여부별 '한국사회유형' 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이용	비 이용	소계	이용	비 이용	소계	이용	비 이용	소계	이용	비 이용	합계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	25.7	15.4	19.5	26.2	22.5	23.4	17.1	20.2	19.7	25.1	19.6	21.3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	51.1	43.9	46.7	38.5	37.8	38.0	34.1	35.1	34.9	44.9	39.5	41.1
가난한 사람 중산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	8.2	14.5	12.0	13.9	18.0	17.0	22.0	23.4	25.8	11.5	18.1	16.2
중간층 대다수,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극소수 사회	9.7	14.9	12.9	14.4	13.5	13.7	12.2	14.6	12.7	11.7	13.9	13.2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 사회	5.2	11.3	8.9	7.0	8.3	8.0	14.6	9.5	7.0	6.7	8.9	8.2
계(수)	100 (268)	100 (415)	100 (683)	100 (187)	100 (579)	100 (766)	100 (41)	100 (188)	100 (229)	100 (496)	100 (1,182)	100 (1,678)
χ^2	이용			비이용			26.269***			전체		33.886***

주: 1) * p<.05, ** p<.01, *** p<.001;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부표 2〉 소득계층 및 이용여부별 '성장과 분배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이용	비 이용	소계	이용	비 이용	소계	이용	비 이용	소계	이용	비 이용	합 계
성장만이 중요	10.1	10.4	10.3	11.8	13.0	12.7	12.2	9.6	10.1	10.9	11.6	11.4
성장이 분배보다 중요	34.7	39.1	37.4	45.5	43.1	43.7	48.8	47.1	47.4	39.9	42.3	41.6
분배가 성장보다 중요	50.7	46.4	48.1	36.9	38.6	38.2	36.6	40.1	39.5	44.4	41.5	42.4
분배만이 중요	4.5	4.1	4.3	5.9	5.4	5.5	2.4	3.2	3.1	4.8	4.6	4.7
계(수)	100 (268)	100 (412)	100 (680)	100 (187)	100 (578)	100 (765)	100 (41)	100 (187)	100 (228)	100 (496)	100 (1,177)	100 (1,673)
χ^2	이용			10.780			비이용			9.491		전체
												19.208**

주: * p<.05, ** p<.01, *** p<.001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부표 3〉 소득계층 및 이용여부별 '우리나라 소득/재산 평등정도' 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점)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이용	비 이용	소계	이용	비 이용	소계	이용	비 이용	소계	이용	비 이용	합계
매우 평등	0.4	1.7	1.2	0.5	1.0	0.9	-	0.5	0.4	0.4	1.2	1.0
평등	3.4	1.7	2.3	1.6	1.6	1.6	-	0.5	0.4	2.4	1.4	1.7
대체로 평등	3.7	4.3	4.1	3.7	6.4	5.7	4.9	5.9	5.7	3.8	5.6	5.1
보통	16.0	14.7	15.2	15.0	15.2	15.1	14.6	13.3	13.5	15.5	14.7	15.0
대체로 불평등	24.3	23.9	24.0	34.2	28.7	30.0	26.8	30.9	30.1	28.2	27.3	27.6
불평등	29.5	29.4	29.4	24.1	23.3	23.5	22.0	28.7	27.5	26.8	26.3	26.5
매우 불평등	22.8	24.3	23.7	20.9	23.8	23.1	31.7	20.2	22.3	22.8	23.4	23.2
계(수)	100 (268)	100 (415)	100 (683)	100 (187)	100 (579)	100 (766)	100 (41)	100 (188)	100 (229)	100 (496)	100 (1,182)	100 (1,678)
χ^2	이용			비이용			13,151			전체		
평균	5.40	5.43	5.42	5.36	5.34	5.35	5.61	5.40	5.44	5.40	5.38	5.39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부표 4〉 소득계층 및 이용여부별 '소득격차 감소에 대한 정부책임' 에 대한 동의도

(단위: %, 명, 점)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이용	비 이용	소계	이용	비 이용	소계	이용	비 이용	소계	이용	비 이용	소계
매우 동의	25.7	26.3	26.1	27.8	29.6	29.2	43.9	30.3	32.8	28.0	28.5	28.4
동의	43.7	43.9	43.8	47.1	42.2	43.4	36.6	41.0	40.2	44.4	42.6	43.1
동의/반대도 하지 않음	13.4	16.1	15.1	14.4	16.4	15.9	9.8	20.7	18.8	13.5	17.0	16.0
반대	9.7	8.7	9.1	8.0	7.6	7.7	4.9	6.9	6.6	8.7	7.9	8.1
매우 반대	1.1	1.0	1.0	0.5	1.6	1.3	2.4	0.5	0.9	1.0	1.2	1.1
모름	6.3	4.1	5.0	2.1	2.6	2.5	2.4	0.5	0.9	4.4	2.8	3.3
계(수)	100 (268)	100 (415)	100 (683)	100 (187)	100 (578)	100 (765)	100 (41)	100 (188)	100 (229)	100 (496)	100 (1,181)	100 (1,677)
χ^2	이용			비이용			11,484			전체		
평균	2.36	2.27	2.30	2.13	2.17	2.16	1.93	2.08	2.05	2.24	2.19	2.20
F값	4,896**											

주: 1) * p<.05, ** p<.01, *** p<.001;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부표 5〉 소득계층 및 경제적 의식수준별 향후 복지사회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점)

구분	高세금 高복지	←		→	低세금 低복지	계(수)	χ ²	평균	F값
전체	36.1	29.7	27.5	5.2	1.6	100.0(5,998)			
소득계층									
저소득층	38.3	26.8	27.3	6.3	1.3	100.0(2,693)	전체	21	
이용	40.2	25.4	26.9	6.4	1.1	100.0(1,988)	41,569***	20	
비이용	32.8	30.6	28.4	6.1	2.1	100.0(705)		21	
중산층	37.0	30.6	25.0	5.6	1.9	100.0(2,576)	이용	21	
이용	36.6	29.9	26.3	5.4	1.8	100.0(982)	30,913***	21	4.827***
비이용	37.3	30.9	24.2	5.7	1.9	100.0(1,594)		20	
고소득층	39.0	35.9	19.9	3.6	1.6	100.0(729)	비이용	19	
이용	39.0	28.4	24.8	5.7	2.1	100.0(141)	12,477	20	
비이용	38.9	37.8	18.7	3.1	1.5	100.0(588)		19	
경제적 의식									
가난	37.2	26.8	28.1	6.3	1.6	100.0(2,701)		21	
보통	53.6	56.6	49.1	49.3	52.1	100.0(3,182)	36,718***	20	6.574***
부유	42.1	38.6	14.0	3.5	1.8	100.0(114)		18	

주: 1) * p<.05, ** p<.01, *** p<.001; 2) 평균이 1에 가까울수록 ‘高세금, 高복지’ 선호
자료: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부표 6〉 소득계층 및 이용여부별 중산층가족의 복지서비스 체감도: 2007년도

(단위: 점, 명)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F값
	이용	비 이용	소계	이용	비 이용	소계	이용	비 이용	소계	이용	비 이용	합계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2.4	2.6	2.6	3.0	2.8	2.9	2.9	3.0	3.0	2.7	2.8	2.8	34.403***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	2.8	2.9	2.9	3.3	3.2	3.2	3.2	3.4	3.3	3.0	3.1	3.1	35.457***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	2.9	2.9	2.9	3.6	3.4	3.4	3.3	3.4	3.4	3.2	3.2	3.2	56.290***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 제공	2.9	2.9	2.9	3.3	3.3	3.3	3.4	3.4	3.4	3.1	3.2	3.1	48.331***
빈곤 예방 및 감소	3.2	3.3	3.3	3.6	3.6	3.5	3.7	3.6	3.6	3.4	3.5	3.4	29.082***
실업에 대한 대응	3.5	3.7	3.6	3.8	3.8	3.8	3.7	3.8	3.8	3.6	3.7	3.7	8.694***
성평등 수준 향상	2.8	2.9	2.9	3.2	3.0	3.0	2.9	3.1	3.0	3.0	3.0	3.0	5.742**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 거주	3.0	3.2	3.1	3.4	3.2	3.3	3.4	3.3	3.3	3.2	3.2	3.2	10.091***
인재 육성 위한 학교교육	3.1	3.1	3.1	3.4	3.3	3.3	3.4	3.5	3.5	3.2	3.2	3.2	22.396***
(분석대상수)	(267)	(415)	(682)	(187)	(577)	(764)	(41)	(188)	(229)	(495)	(1,180)	(1,675)	

주: 1) * p<0.05, ** p<0.01, *** p<0.001; 2) 복지서비스 체감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체감도가 낮음을 의미함.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부표 7〉 소득계층 및 이용여부별 복지서비스 체감도: 2011년도

(단위: 점, 명)

구분	소득계층											F(t)값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전체			
	이용	비 이용	소계	이용	비 이용	소계	이용	비 이용	소계	이용	비 이용		합계
아픈사람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2.7	3.0	2.9	3.0	3.0	3.0	2.9	3.1	3.1	2.9	3.1	3.0	2.920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	2.9	3.1	2.9	3.3	3.3	3.3	3.2	3.4	3.3	3.2	3.3	3.2	11.445***
장애인의 불편을 달기 위한 서비스 제공	2.9	3.1	3.0	3.4	3.4	3.4	3.2	3.4	3.3	3.2	3.3	3.3	10.735***
질 높고 충분한 보육 서비스 제공	3.2	3.0	3.1	3.2	3.2	3.2	3.1	3.4	3.3	3.2	3.2	3.2	1.120
빈곤 예방 및 감소	3.2	3.5	3.3	3.6	3.7	3.7	3.5	3.6	3.6	3.5	3.6	3.6	8614***
실업에 대한 대응	3.4	3.8	3.5	3.8	3.9	3.8	3.7	3.8	3.8	3.6	3.9	3.8	6.032**
성평등 수준 향상	2.9	2.8	2.8	3.0	2.9	2.9	2.7	3.0	2.9	2.9	2.9	2.9	0.781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 거주	3.1	3.0	3.1	3.2	3.2	3.2	3.2	3.3	3.3	3.2	3.2	3.2	2.308
인재 육성 위한 학교교육	3.3	3.4	3.4	3.6	3.5	3.5	3.4	3.5	3.4	3.5	3.5	3.5	1.273
사회통합 위한 다문화정책	2.8	3.2	2.9	3.0	2.9	2.9	3.0	3.0	3.0	2.9	3.0	2.9	0.425
(분석대상수)	(55)	(117)	(172)	(269)	(212)	(481)	(107)	(55)	(162)	(431)	(384)	(815)	

주: 1) * p<.05, ** p<.01, *** p<.001; 2) 복지서비스 체감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체감도가 낮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부표 8〉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복지체감도

(단위: %, 명, 점)

구분	소득계층			주관적 사회적 지위			전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상	중	하	
매우 잘하고 있음	2.3	2.7	2.5	4.3	2.4	3.6	2.9
잘하고 있는 편임	34.9	23.9	21.0	25.5	26.5	29.1	27.4
보통/그저그림	40.7	46.8	50.6	51.1	48.5	43.0	46.4
잘 못하는 편임	20.9	23.1	21.6	14.9	20.0	19.8	19.9
매우 잘못하고 있음	-	2.3	3.7	4.3	1.6	3.6	2.4
모름	1.2	1.2	0.6	-	1.0	1.1	1.0
계수	100.0 (172)	100.0 (481)	100.0 (162)	100.0 (47)	100.0 (890)	100.0 (561)	100.0 (1,501)
χ^2				12.917			
평균	2.9	3.0	3.1	2.9	3.0	2.9	2.94
F값	2.920			.102			

주: 1) * $p<.05$, ** $p<.01$, *** $p<.001$;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부표 9〉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에 대한 복지체감도

(단위: %, 명, 점)

구분	소득계층			주관적 사회적 지위			전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상	중	하	
매우 잘하고 있음	2.9	0.8	0.6	2.1	0.8	2.5	1.5
잘하고 있는 편임	31.4	17.9	19.8	25.5	21.0	21.4	21.3
보통/그저그림	37.2	38.7	35.2	34.0	40.6	38.5	39.6
잘 못하는 편임	26.2	35.8	36.4	31.9	31.6	32.6	32.0
매우 잘못하고 있음	1.7	6.0	8.0	6.4	5.1	4.6	4.9
모름	0.6	0.8	-	-	1.0	0.4	0.7
계수	100.0 (172)	100.0 (481)	100.0 (162)	100.0 (47)	100.0 (890)	100.0 (561)	100.0 (1,501)
평균	2.9	3.3	3.3	3.2	3.2	3.2	3.2
F값	11.445***			.723			

주: 1) * $p<.05$, ** $p<.01$, *** $p<.001$;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부표 10〉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복지체감도

(단위: %, 명, 점)

구분	소득계층			주관적 사회적 지위			전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상	중	하	
매우 잘하고 있음	2.9	0.8	2.5	-	1.3	1.6	1.4
잘하고 있는 편임	36.6	21.6	21.6	19.1	23.4	26.6	24.5
보통/그저그림	29.7	29.9	30.2	36.2	33.4	31.9	32.8
잘 못하는 편임	26.2	37.8	35.8	36.2	33.3	30.7	32.4
매우 잘못하고 있음	2.3	6.7	8.0	6.4	6.1	7.0	6.4
모름	2.3	3.1	1.9	2.1	2.6	2.3	2.5
계수	100.0 (172)	100.0 (481)	100.0 (162)	100.0 (47)	100.0 (890)	100.0 (561)	100.0 (1,501)
χ^2				4.684			
평균	3.0	3.4	3.3	3.4	3.3	3.2	3.3
F값	10.735***			.743			

주: 1) * p<.05, ** p<.01, *** p<.001;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부표 11〉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복지체감도

(단위: %, 명, 점)

구분	소득계층			주관적 사회적 지위			전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상	중	하	
매우 잘하고 있음	0.6	1.0	1.2	2.1	1.2	0.9	1.1
잘하고 있는 편임	38.4	26.8	21.6	23.4	23.0	27.3	24.7
보통/그저그림	34.3	35.6	38.3	25.5	40.7	36.7	38.7
잘 못하는 편임	12.2	28.5	26.5	36.2	25.3	21.0	24.1
매우 잘못하고 있음	2.3	3.1	7.4	8.5	3.8	3.7	3.9
모름	12.2	5.0	4.9	4.3	6.0	10.3	7.5
계수	100.0 (172)	100.0 (481)	100.0 (162)	100.0 (47)	100.0 (890)	100.0 (561)	100.0 (1,501)
χ^2	41.846***			24.489**			
평균	3.1	3.2	3.3	3.4	3.3	3.3	3.3
F값	1.120			.573			

주: * p<.05, ** p<.01, ***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부표 12〉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빈곤예방 및 감소에 대한 복지체감도

(단위: %, 명, 점)

구분	소득계층			주관적 사회적 지위			전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상	중	하	
매우 잘하고 있음	1.7	0.4	0.6	2.1	0.3	1.4	0.8
잘하고 있는 편임	22.1	12.7	13.0	12.8	12.2	13.7	12.9
보통/그저그림	33.7	26.4	30.9	25.5	30.6	26.6	28.9
잘 못하는 편임	33.7	45.5	42.6	42.6	44.3	44.6	44.3
매우 잘못하고 있음	5.2	12.1	11.7	17.0	10.3	11.4	10.9
모름	3.5	2.9	1.2	-	2.2	2.3	2.2
계수	100.0 (172)	100.0 (481)	100.0 (162)	100.0 (47)	100.0 (890)	100.0 (561)	100.0 (1,501)
χ^2				11.957			
평균	3.3	3.7	3.6	3.6	3.6	3.6	3.6
F값	8.614***			.023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부표 13〉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실업에 대한 대응에 대한 복지체감도

(단위: %, 명, 점)

구분	소득계층			주관적 사회적 지위			전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상	중	하	
매우 잘하고 있음	1.2	0.2	1.2	-	0.3	0.9	0.5
잘하고 있는 편임	15.7	7.3	6.8	8.5	7.9	9.3	8.5
보통/그저그림	25.6	25.4	22.2	25.5	25.8	24.6	25.3
잘 못하는 편임	45.9	46.8	52.5	51.1	48.4	48.3	48.5
매우 잘못하고 있음	8.7	18.3	17.3	14.9	16.3	14.8	15.7
모름	2.9	2.1	-	-	1.2	2.1	1.5
계수	100.0 (172)	100.0 (481)	100.0 (162)	100.0 (47)	100.0 (890)	100.0 (561)	100.0 (1,501)
평균	3.5	3.8	3.8	3.7	3.8	3.7	3.8
F값	6.302**			.205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부표 14〉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한 복지체감도

(단위: %, 명, 점)

구분	소득계층			주관적 사회적 지위			전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상	중	하	
매우 잘하고 있음	4.1	3.5	3.7	2.1	3.6	3.7	3.6
잘하고 있는 편임	37.8	32.0	29.6	34.0	33.3	32.4	32.9
보통/그저그림	39.5	40.3	45.7	40.4	42.2	39.2	41.0
잘 못하는 편임	12.8	19.1	19.8	21.3	17.5	18.9	18.2
매우 잘못하고 있음	1.7	2.5	0.6	2.1	1.7	2.9	2.1
모름	4.1	2.5	0.6	-	1.7	2.9	2.1
계수	100.0 (172)	100.0 (481)	100.0 (162)	100.0 (47)	100.0 (890)	100.0 (561)	100.0 (1,501)
χ^2				7.250			
평균	2.8	2.9	2.9	2.9	2.9	2.9	2.9
F값	.781			1.126			

주: 1) * p<.05, ** p<.01, *** p<.001;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부표 15〉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모두가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에 대한 복지체감도

(단위: %, 명, 점)

구분	소득계층			주관적 사회적 지위			전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상	중	하	
매우 잘하고 있음	1.7	1.0	0.6	4.3	0.4	1.2	0.9
잘하고 있는 편임	32.0	23.5	19.1	25.5	20.6	21.9	21.2
보통/그저그림	38.4	38.3	44.4	40.4	43.1	39.2	41.6
잘 못하는 편임	20.3	30.1	27.8	25.5	28.7	29.6	28.9
매우 잘못하고 있음	2.9	5.2	5.6	4.3	4.7	5.2	4.9
모름	4.7	1.9	2.5	-	2.5	2.9	2.6
계수	100.0 (172)	100.0 (481)	100.0 (162)	100.0 (47)	100.0 (890)	100.0 (561)	100.0 (1,501)
평균	3.1	3.2	3.3	3.0	3.2	3.2	3.2
F값	2.308			1.455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부표 16〉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교육'에 대한 복지체감도

(단위: %, 명, 점)

구분	소득계층			주관적 사회적 지위			전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상	중	하	
매우 잘하고 있음	1.7	0.2	-	-	0.4	0.2	0.3
잘하고 있는 편임	22.1	17.5	16.7	23.4	18.4	16.4	17.8
보통/그저그림	36.0	29.7	37.7	29.8	35.3	37.3	35.8
잘 못하는 편임	26.2	38.9	32.1	34.0	34.4	31.9	33.4
매우 잘못하고 있음	5.2	10.6	11.7	12.8	9.1	7.8	8.7
모름	8.7	3.1	1.9	.0	2.4	6.4	3.9
계수	100.0 (172)	100.0 (481)	100.0 (162)	100.0 (47)	100.0 (890)	100.0 (561)	100.0 (1,501)
χ^2	35.148***						
평균	3.4	3.5	3.4	3.4	3.4	3.5	3.4
F값	1.273			1.735			

주: 1) * $p<.05$, ** $p<.01$, *** $p<.001$; 2)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부표 17〉 소득계층 및 주관적 사회적 지위별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에 대한 복지체감도

(단위: %, 명, 점)

구분	소득계층			주관적 사회적 지위			전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상	중	하	
매우 잘하고 있음	2.3	0.8	1.9	.0	1.5	1.1	1.3
잘하고 있는 편임	43.6	39.5	32.7	34.0	36.7	38.5	37.2
보통/그저그림	28.5	34.7	38.3	42.6	37.2	33.0	35.8
잘 못하는 편임	18.6	18.1	21.0	21.3	18.5	20.0	19.2
매우 잘못하고 있음	1.7	3.5	3.1	-	2.9	2.0	2.5
모름	5.2	3.3	3.1	2.1	3.1	5.5	4.1
계수	100.0 (172)	100.0 (481)	100.0 (162)	100.0 (47)	100.0 (890)	100.0 (561)	100.0 (1,501)
χ^2	10.861			12.040			
평균	2.9	2.9	3.0	2.9	2.9	3.0	2.97
F값	.425			.529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부표 18〉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이혼 사람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복지체감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잘함	잘하고 있는 편임	보통/ 그저 그렇	잘 못하는 편임	매우 잘못함	모름	계(수)	χ^2	평균	F(t)값
전체	2.9	27.4	46.4	19.9	2.4	1.0	100.0(481)		2.9	
거주지역										
도시	2.6	23.0	46.7	23.7	2.6	1.4	100.0(426)		3.0	(1.757)
농·어촌	3.6	30.9	47.3	18.2	-	-	100.0(55)		2.8	
성별										
남성	2.4	27.1	44.7	22.0	3.1	0.8	100.0(255)	5.938	3.0	(-0.528)
여성	3.1	20.4	49.1	24.3	1.3	1.8	100.0(226)		3.0	
연령										
20~29세	3.9	14.3	54.5	26.0	1.3	-	100.0(77)		3.1	5.274***
30~39세	2.3	16.4	50.0	25.0	5.5	0.8	100.0(121)		3.2	
40~49세	0.8	19.8	53.7	23.1	0.8	1.7	100.0(334)		3.0	
50~64세	3.6	34.2	37.8	21.6	1.8	0.9	100.0(111)		2.8	
65세 이상	4.5	47.7	27.3	15.9	-	4.5	100.0(44)		2.6	
결혼상태										
기혼	2.7	26.6	46.2	21.2	1.6	1.6	100.0(372)		2.9	(-2.914)
미혼	2.8	14.7	48.6	29.4	4.6	-	100.0(109)		3.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3	43.5	31.9	17.4	1.4	1.4	100.0(168)		2.7	5.688**
고등학교	2.4	23.2	45.8	25.0	3.0	0.6	100.0(424)		3.0	
대학 이상	2.5	18.6	51.7	23.6	2.1	1.7	100.0(242)		3.0	
가구형태										
1인 가구	4.8	28.6	19.0	42.9	4.8	-	100.0(21)		3.1	7.679***
부부가구	7.3	41.8	41.8	7.3	-	1.8	100.0(55)		2.5	
부부+자녀	2.1	20.0	49.4	25.6	2.1	0.9	100.0(340)		3.1	
기타가구	1.5	27.7	46.2	16.9	4.6	3.1	100.0(65)		3.0	
가구원수										
1인	4.8	28.6	19.0	42.9	4.8	-	100.0(21)		3.1	7.777***
2인	6.0	38.8	43.3	7.5	3.0	1.5	100.0(67)		2.6	
3인 이상	2.0	21.1	48.9	24.7	2.0	1.3	100.0(393)		3.0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2.4	22.5	46.4	25.8	0.5	2.4	100.0(209)		3.0	(0.274)
비취업	2.9	25.0	47.1	21.0	3.7	0.4	100.0(272)		3.0	
응답자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66.7	-	-	33.3	-	100.0(3)		3.0	0.908
100~200만원 미만	5.9	33.8	36.8	19.1	2.9	1.5	100.0(68)		2.8	
200~300만원 미만	3.7	21.1	46.0	26.1	1.2	1.9	100.0(161)		3.0	
300~400만원 미만	1.4	21.2	53.4	20.5	2.1	1.4	100.0(146)		3.0	
400~500만원 미만	1.1	24.1	46.0	25.3	3.4	-	100.0(87)		3.1	
500만원 이상	-	25.0	50.0	25.0	-	-	100.0(16)		3.0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01$, *** $p<0.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부표 19〉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에 대한 복지체감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잘함	잘하고 있는 편임	보통/그 저그림	잘 못하는 편임	매우 잘못함	모름	계(수)	평균	F(t)값
전체	0.8	17.9	38.7	35.8	6.0	0.8	100.0(481)	3.3	
거주지역									
도시	0.7	16.9	39.0	35.7	6.8	0.9	100.0(426)	3.3	
농·어촌	1.8	25.5	36.4	36.4	-	-	100.0(55)	3.1	(1.955)
성별									
남성	1.2	19.2	36.9	36.1	6.3	0.4	100.0(255)	3.3	
여성	0.4	16.4	40.7	35.4	5.8	1.3	100.0(226)	3.3	(-0.365)
연령									
20~29세	1.3	3.9	44.2	41.6	7.8	1.3	100.0(77)	3.5	
30~39세	-	11.7	34.4	43.8	10.2	-	100.0(128)	3.5	
40~49세	1.7	13.2	41.3	38.0	5.0	0.8	100.0(121)	3.3	
50~64세	0.9	28.8	37.8	28.8	3.6	-	100.0(111)	3.1	
65세 이상	-	45.5	36.4	13.6	-	4.5	100.0(44)	2.7	12.373***
결혼상태									
기혼	0.8	22.0	37.1	34.7	4.8	0.5	100.0(372)	3.2	
미혼	0.9	3.7	44.0	39.4	10.1	1.8	100.0(109)	3.6	(-3.68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36.2	36.2	27.5	-	-	100.0(69)	2.9	
고등학교	0.6	19.0	38.1	33.3	7.7	1.2	100.0(168)	3.3	
대학 이상	1.2	11.6	39.7	40.1	6.6	0.8	100.0(242)	3.4	8.748***
가구형태									
1인 가구	-	19.0	19.0	47.6	9.5	4.8	100.0(21)	3.5	
부부가구	-	36.4	27.3	32.7	3.6	-	100.0(55)	3.0	
부부+자녀	0.9	14.7	41.8	36.2	5.6	0.9	100.0(340)	3.3	
기타가구	1.5	18.5	38.5	32.3	9.2	-	100.0(65)	3.3	2.077
가구원수									
1인	-	19.0	19.0	47.6	9.5	4.8	100.0(21)	3.5	
2인	-	29.9	31.3	28.4	10.4	-	100.0(67)	3.2	
3인 이상	1.0	15.8	41.0	36.4	5.1	0.8	100.0(393)	3.3	1.008
취업여부									
취업	-	18.7	40.7	35.4	3.8	1.4	100.0(209)	3.3	
비취업	1.5	17.3	37.1	36.0	7.7	0.4	100.0(272)	3.3	(-0.832)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33.3	-	66.7	-	-	100.0(3)	3.3	
100~200만원 미만	-	23.5	41.2	27.9	5.9	1.5	100.0(68)	3.2	
200~300만원 미만	0.6	17.4	34.8	39.1	7.5	0.6	100.0(161)	3.4	
300~400만원 미만	1.4	16.4	44.5	32.9	3.4	1.4	100.0(146)	3.2	
400~500만원 미만	-	16.1	36.8	39.1	8.0	-	100.0(87)	3.4	
500만원 이상	6.3	18.8	31.3	37.5	6.3	-	100.0(16)	3.2	1.022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01, *** p<0.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부표 20〉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복지체감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잘함	잘하고 있는 편임	보통/ 그저 그럼	잘 못하는 편임	매우 잘못함	모름	계(수)	χ^2	평균	F(t)값
전체	0.8	21.6	29.9	37.8	6.7	3.1	100.0(481)		3.4	
거주지역										
도시	0.7	20.2	30.5	38.5	6.6	3.5	100.0(426)		3.3	(1.538)
농·어촌	1.8	32.7	25.5	32.7	7.3	-	100.0(55)		3.1	
성별										
남성	1.2	23.1	30.6	36.5	6.7	2.0	100.0(255)	4.030	3.3	(-1.001)
여성	0.4	19.9	29.2	39.4	6.6	4.4	100.0(226)		3.3	
연령										
20~29세	1.3	7.8	35.1	46.8	9.1	-	100.0(77)		3.6	11.560***
30~39세	-	15.6	24.2	45.3	10.2	4.7	100.0(128)		3.5	
40~49세	0.8	15.7	34.7	43.0	4.1	1.7	100.0(121)		3.3	
50~64세	1.8	34.2	29.7	26.1	5.4	2.7	100.0(111)		3.0	
65세 이상	-	47.7	25.0	15.9	2.3	9.1	100.0(44)		2.7	
결혼상태										
기혼	0.8	25.0	29.3	35.2	5.6	4.0	100.0(372)		3.2	(-3.458)
미혼	0.9	10.1	32.1	46.8	10.1	-	100.0(109)		3.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31.9	36.2	29.0	1.4	1.4	100.0(69)		3.0	4.502*
고등학교	-	24.4	26.8	38.7	6.5	3.6	100.0(168)		3.3	
대학 이상	1.7	16.5	30.6	39.7	8.3	3.3	100.0(242)		3.4	
가구형태										
1인 가구	-	23.8	23.8	47.6	4.8	-	100.0(21)		3.3	3.402*
부부가구	1.8	34.5	29.1	21.8	3.6	9.1	100.0(55)		2.9	
부부+자녀	0.9	19.4	31.2	38.5	7.4	2.6	100.0(340)		3.3	
기타가구	-	21.5	26.2	44.6	6.2	1.5	100.0(65)		3.4	
가구원수										
1인	-	23.8	23.8	47.6	4.8	-	100.0(21)		3.3	3.967*
2인	1.5	32.8	28.4	25.4	4.5	7.5	100.0(67)		3.0	
3인 이상	0.8	19.6	30.5	39.4	7.1	2.5	100.0(393)		3.3	
취업여부										
취업	-	22.0	32.5	35.4	5.3	4.8	100.0(209)	8.873	3.3	(-0.737)
비취업	1.5	21.3	27.9	39.7	7.7	1.8	100.0(272)		3.3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66.7	-	33.3	-	-	100.0(3)		2.7	1.098
100~200만원 미만	-	27.9	25.0	36.8	7.4	2.9	100.0(68)		3.2	
200~300만원 미만	0.6	19.3	27.3	43.5	6.2	3.1	100.0(161)		3.4	
300~400만원 미만	1.4	22.6	34.2	33.6	5.5	2.7	100.0(146)		3.2	
400~500만원 미만	1.1	17.2	29.9	37.9	9.2	4.6	100.0(87)		3.4	
500만원 이상	-	25.0	43.8	25.0	6.3	-	100.0(16)		3.1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부표 21〉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 제공 에 대한 복지체감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잘함	잘하고 있는 편임	보통/ 그저 그렇	잘 못하는 편임	매우 잘못함	모름	계(수)	χ^2	평균	F(t)값
전체	1.0	26.8	35.6	28.5	3.1	5.0	100.0(481)		3.1	
거주지역										
도시	0.7	25.4	35.2	29.8	3.5	5.4	100.0(426)		3.3	(3.192)
농·어촌	3.6	38.2	38.2	18.2	-	1.8	100.0(55)		2.8	
성별										
남성	1.6	27.5	36.5	27.1	2.7	4.7	100.0(255)	2.388	3.2	(-1.034)
여성	0.4	26.1	34.5	30.1	3.5	5.3	100.0(226)		3.3	
연령										
20~29세	2.6	18.2	45.5	28.6	3.9	1.3	100.0(77)		3.2	1.424
30~39세	0.8	17.2	42.2	31.3	6.3	2.3	100.0(128)		3.3	
40~49세	-	25.6	33.9	32.2	3.3	5.0	100.0(121)		3.3	
50~64세	0.9	38.7	30.6	23.4	-	6.3	100.0(111)		3.0	
65세 이상	2.3	43.2	15.9	22.7	-	15.9	100.0(44)		3.2	
결혼상태										
기혼	0.8	29.3	32.3	29.3	3.0	5.4	100.0(372)		3.2	(-0.137)
미혼	1.8	18.3	46.8	25.7	3.7	3.7	100.0(109)		3.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37.7	24.6	24.6	2.9	10.1	100.0(69)		3.2	0.030
고등학교	0.6	27.4	33.9	31.0	2.4	4.8	100.0(168)		3.2	
대학 이상	1.7	23.1	40.1	27.7	3.7	3.7	100.0(242)		3.2	
가구형태										
1인 가구	-	42.9	19.0	28.6	-	9.5	100.0(21)		3.1	0.055
부부가구	1.8	32.7	30.9	23.6	-	10.9	100.0(55)		3.2	
부부+자녀	1.2	25.6	35.9	29.7	4.1	3.5	100.0(340)		3.2	
기타가구	-	23.1	43.1	26.2	1.5	6.2	100.0(65)		3.3	
가구원수										
1인	-	42.9	19.0	28.6	-	9.5	100.0(21)		3.1	0.068
2인	1.5	31.3	31.3	23.9	1.5	10.4	100.0(67)		3.2	
3인 이상	1.0	25.2	37.2	29.3	3.6	3.8	100.0(393)		3.2	
취업여부										
취업	0.5	26.3	36.8	27.3	1.9	7.2	100.0(109)	6.781	3.3	(0.827)
비취업	1.5	27.2	34.6	29.4	4.0	3.3	100.0(272)		3.2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66.7	-	-	-	33.3	100.0(3)		3.3	1.200
100~200만원 미만	-	29.4	29.4	25.0	4.4	11.8	100.0(68)		3.4	
200~300만원 미만	1.2	23.6	37.3	29.8	4.3	3.7	100.0(161)		3.2	
300~400만원 미만	2.1	28.1	39.0	27.4	0.7	2.7	100.0(146)		3.1	
400~500만원 미만	-	25.3	33.3	33.3	4.6	3.4	100.0(87)		3.3	
500만원 이상	-	37.5	31.3	18.8	-	12.5	100.0(16)		3.2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부표 22〉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빈곤예방 및 감소'에 대한 복지체감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잘함	잘하고 있는 편임	보통/ 그저 그럼	잘 못하는 편임	매우 잘못함	모름	계(수)	χ^2	평균	F(t)값
전체	0.4	12.7	26.4	45.5	12.1	2.9	100.0(481)		3.7	
거주지역										
도시	0.5	12.0	25.4	46.0	13.4	2.8	100.0(426)		3.6	(2.598)
농·어촌	-	18.2	34.5	41.8	1.8	3.6	100.0(55)		3.3	
성별										
남성	0.8	12.9	27.8	41.6	14.9	2.0	100.0(255)	9.420	3.6	(0.048)
여성	-	12.4	24.8	50.0	8.8	4.0	100.0(226)		3.6	
연령										
20~29세	-	-	26.0	57.1	13.0	3.9	100.0(77)		3.9	14.311***
30~39세	-	5.5	26.6	49.2	15.6	3.1	100.0(128)		3.8	
40~49세	0.8	9.1	27.3	47.1	13.2	2.5	100.0(121)		3.6	
50~64세	0.9	20.7	27.0	40.5	9.9	0.9	100.0(111)		3.4	
65세 이상	-	45.5	22.7	22.7	2.3	6.8	100.0(44)		2.8	
결혼상태										
기혼	0.5	15.9	26.6	43.0	11.0	3.0	100.0(372)		3.5	(-4.367***)
미혼	-	1.8	25.7	54.1	15.6	2.8	100.0(109)		3.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37.7	23.2	29.0	8.7	1.4	100.0(69)		3.1	13.595***
고등학교	-	11.3	27.4	49.4	10.1	1.8	100.0(168)		3.6	
대학 이상	0.8	6.6	26.9	47.1	14.5	4.1	100.0(424)		3.7	
가구형태										
1인 가구	-	19.0	23.8	38.1	19.0	-	100.0(21)		3.6	5.781**
부부가구	-	29.1	30.9	34.5	3.6	1.8	100.0(55)		3.1	
부부+자녀	0.6	9.4	26.2	46.8	13.8	3.2	100.0(340)		3.7	
기타가구	-	13.8	24.6	50.8	7.7	3.1	100.0(65)		3.5	
가구원수										
1인	-	19.0	23.8	38.1	19.0	-	100.0(21)		3.6	4.987**
2인	-	23.9	29.9	37.3	6.0	3.0	100.0(67)		3.3	
3인 이상	0.5	10.4	26.0	47.3	12.7	3.1	100.0(393)		3.6	
취업여부										
취업	-	13.4	27.3	45.9	9.1	4.3	100.0(209)	6.977	3.5	(-1.019)
비취업	0.7	12.1	25.7	45.2	14.3	1.8	100.0(272)		3.6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33.3	33.3	-	33.3	-	100.0(3)		3.3	0.519
100~200만원 미만	-	20.6	25.0	39.7	13.2	1.5	100.0(68)		3.5	
200~300만원 미만	0.6	14.3	23.6	47.2	12.4	1.9	100.0(161)		3.6	
300~400만원 미만	-	7.5	30.1	50.7	6.8	4.8	100.0(146)		3.6	
400~500만원 미만	1.1	11.5	25.3	40.2	19.5	2.3	100.0(87)		3.7	
500만원 이상	-	12.5	31.3	43.8	6.3	6.3	100.0(16)		3.5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01, *** p<0.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부표 23〉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실업에 대한 대응' 에 대한 복지체감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잘함	잘하고 있는 편임	보통/ 그저 그럼	잘 못하는 편임	매우 잘못함	모름	계(수)	평균	F(t)값
전체	0.2	7.3	25.4	46.8	18.3	2.1	100.0(481)	3.8	
응답자 거주지역									
도시	0.2	7.3	23.9	47.9	18.5	2.1	100.0(426)	3.8	(1.154)
농·어촌	-	7.3	36.4	38.2	16.4	1.8	100.0(55)	3.7	
성별									
남성	0.4	8.6	24.7	44.3	20.4	1.6	100.0(255)	3.8	(-0.107)
여성	-	5.8	26.1	49.6	15.9	2.7	100.0(226)	3.8	
연령									
20~29세	-	3.9	32.5	41.6	22.1	-	100.0(77)	3.8	1.359
30~39세	-	4.7	28.1	43.0	21.9	2.3	100.0(128)	3.8	
40~49세	-	7.4	22.3	49.6	18.2	2.5	100.0(121)	3.8	
50~64세	0.9	10.8	19.8	50.5	17.1	0.9	100.0(111)	3.7	
65세 이상	-	11.4	27.3	50.0	4.5	6.8	100.0(44)	3.5	
결혼상태									
기혼	0.3	8.9	25.0	47.3	15.9	2.7	100.0(372)	3.7	(-2.841*)
미혼	-	1.8	26.6	45.0	26.6	-	100.0(109)	4.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4	13.0	24.6	44.9	14.5	1.4	100.0(69)	3.6	2.021
고등학교	-	7.1	20.8	50.0	18.5	3.6	100.0(168)	3.8	
대학 이상	-	5.8	28.5	45.0	19.4	1.2	100.0(242)	3.8	
가구형태									
1인 가구	-	9.5	28.6	42.9	19.0	-	100.0(21)	3.7	0.460
부부가구	-	7.3	27.3	50.9	10.9	3.6	100.0(55)	3.7	
부부+자녀	0.3	7.4	25.9	45.3	19.4	1.8	100.0(340)	3.8	
기타가구	-	6.2	20.0	52.3	18.5	3.1	100.0(65)	3.9	
가구원수									
1인	-	9.5	28.6	42.9	19.0	-	100.0(21)	3.7	0.221
2인	-	7.5	25.4	49.3	13.4	4.5	100.0(67)	3.7	
3인 이상	0.3	7.1	25.2	46.6	19.1	1.8	100.0(393)	3.8	
취업여부									
취업	-	5.7	26.8	49.3	15.8	2.4	100.0(209)	3.8	(-0.072)
비취업	0.4	8.5	24.3	44.9	20.2	1.8	100.0(272)	3.8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	66.7	33.3	-	-	100.0(3)	3.3	1.167
100~200만원 미만	-	11.8	20.6	44.1	22.1	1.5	100.0(68)	3.8	
200~300만원 미만	0.6	6.2	23.6	49.7	16.8	3.1	100.0(161)	3.8	
300~400만원 미만	-	9.6	28.8	43.2	15.8	2.7	100.0(146)	3.7	
400~500만원 미만	-	3.4	25.3	48.3	23.0	-	100.0(87)	3.9	
500만원 이상	-	-	25.0	56.3	18.8	-	100.0(16)	3.9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부표 24〉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 에 대한 복지체감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잘함	잘하고 있는 편임	보통/ 그저 그렇	잘 못하는 편임	매우 잘못함	모름	계(수)	χ^2	평균	F(t)값
전체	3.5	32.0	40.3	19.1	2.5	2.5	100.0(481)		2.9	
거주지역										
도시	3.3	32.2	40.4	19.5	2.3	2.3	100.0(426)		2.9	(0.314)
농·어촌	5.5	30.9	40.0	16.4	3.6	3.6	100.0(55)		2.8	
성별										
남성	4.7	37.6	37.3	15.7	2.4	2.4	100.0(255)	12.203*	2.7	(-3.221*)
여성	2.2	25.7	43.8	23.0	2.7	2.7	100.0(226)		3.0	
연령										
20~29세	2.6	18.2	59.7	15.6	3.9	-	100.0(77)		3.0	4.648**
30~39세	3.1	25.0	42.2	21.1	4.7	3.9	100.0(128)		3.0	
40~49세	2.5	29.8	43.0	23.1	0.8	0.8	100.0(121)		2.9	
50~64세	6.3	45.0	27.9	17.1	0.9	2.7	100.0(111)		2.6	
65세 이상	2.3	50.0	25.0	13.6	2.3	6.8	100.0(44)		2.6	
결혼상태										
기혼	3.5	35.2	36.8	19.4	1.9	3.2	100.0(372)		2.8	(-2.006**)
미혼	3.7	21.1	52.3	18.3	4.6	-	100.0(109)		3.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3	47.8	29.0	15.9	1.4	1.4	100.0(69)		2.6	3.637*
고등학교	3.0	33.9	36.9	20.8	1.2	4.7	100.0(168)		2.8	
대학 이상	3.7	25.6	46.3	19.0	3.7	1.7	100.0(242)		2.9	
가구형태										
1인 가구	-	42.9	23.8	28.6	4.8	-	100.0(21)		3.0	0.707
부부가구	3.6	41.8	25.5	20.0	3.6	5.5	100.0(55)		2.8	
부부+자녀	2.6	30.9	42.6	19.1	2.4	2.4	100.0(340)		2.9	
기타가구	9.2	26.2	46.2	15.4	1.5	1.5	100.0(65)		2.7	
가구원수										
1인	-	42.9	23.8	28.6	4.8	-	100.0(21)		3.0	0.263
2인	6.0	37.3	26.9	20.9	4.5	4.5	100.0(67)		2.8	
3인 이상	3.3	30.5	43.5	18.3	2.0	2.3	100.0(393)		2.9	
취업여부										
취업	2.4	33.5	41.6	19.1	1.4	1.9	100.0(209)	3.931	2.8	(-0.272)
비취업	4.4	30.9	39.3	19.1	3.3	2.9	100.0(272)		2.9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66.7	33.3	-	-	-	100.0(3)		2.3	0.280
100~200만원 미만	5.9	36.8	26.5	19.1	7.4	4.4	100.0(68)		2.9	
200~300만원 미만	3.1	28.6	44.1	20.5	0.6	3.1	100.0(161)		2.9	
300~400만원 미만	2.7	29.5	45.9	18.5	1.4	2.1	100.0(146)		2.9	
400~500만원 미만	3.4	35.6	39.1	16.1	4.6	1.1	100.0(87)		2.8	
500만원 이상	6.3	43.8	18.8	31.3	-	-	100.0(16)		2.8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부표 25〉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모두가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에 대한 복지체감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잘함	잘하고 있는 편임	보통/ 그저 그림	잘 못하는 편임	매우 잘못함	모름	계(수)	평균	F(값)
전체	1.0	23.5	38.3	30.1	5.2	1.9	100.0(481)	3.2	
거주지역									
도시	0.7	23.2	37.8	30.5	5.6	2.1	100.0(426)	3.2	(1.528)
농·어촌	3.6	25.5	41.8	27.3	1.8	-	100.0(55)	3.0	
성별									
남성	1.2	25.5	34.9	31.8	4.7	2.0	100.0(255)	3.1	(-0.432)
여성	0.9	21.2	42.0	28.3	5.8	1.8	100.0(226)	3.2	
연령									
20~29세	1.3	14.3	44.2	31.2	9.1	-	100.0(77)	3.3	7.478***
30~39세	-	18.0	39.8	35.9	5.5	0.8	100.0(128)	3.3	
40~49세	-	19.8	37.2	33.9	6.6	2.5	100.0(121)	3.3	
50~64세	2.7	34.2	32.4	25.2	2.7	2.7	100.0(111)	2.9	
65세 이상	2.3	38.6	40.9	13.6	-	4.5	100.0(44)	2.7	
결혼상태									
기혼	1.1	25.5	37.1	29.8	4.0	2.4	100.0(372)	3.1	(-2.158)
미혼	0.9	16.5	42.2	31.2	9.2	-	100.0(109)	3.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39.1	36.2	21.7	-	2.9	100.0(69)	2.8	6.516**
고등학교	1.8	25.0	35.1	29.8	6.0	2.4	100.0(168)	3.1	
대학 이상	0.8	18.2	40.9	32.6	6.2	1.2	100.0(242)	3.3	
가구형태									
1인 가구	9.5	19.0	19.0	42.9	9.5	-	100.0(21)	3.2	2.868*
부부가구	1.8	34.5	38.2	18.2	3.6	3.6	100.0(55)	2.9	
부부+자녀	0.3	21.8	38.8	32.4	5.6	1.2	100.0(340)	3.2	
기타가구	1.5	24.6	41.5	24.6	3.4	4.6	100.0(65)	3.0	
가구원수									
1인	9.5	19.0	19.0	42.9	9.5	-	100.0(21)	3.2	2.598
2인	3.0	31.3	37.3	20.9	4.5	3.0	100.0(67)	2.9	
3인 이상	0.3	22.4	39.4	31.0	5.1	1.8	100.0(393)	3.2	
취업여부									
취업	0.5	24.9	37.8	28.7	5.3	2.9	100.0(209)	3.1	(-0.312)
비취업	1.5	22.4	38.6	31.3	5.1	1.1	100.0(272)	3.2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33.3	33.3	33.3	-	-	100.0(3)	3.0	0.758
100~200만원 미만	2.9	23.5	35.3	26.5	8.8	2.9	100.0(68)	3.2	
200~300만원 미만	1.2	21.1	31.7	39.1	4.3	2.5	100.0(161)	3.3	
300~400만원 미만	0.7	24.0	44.5	24.7	5.5	0.7	100.0(146)	3.1	
400~500만원 미만	-	27.6	40.2	27.6	2.3	2.3	100.0(87)	3.1	
500만원 이상	-	18.8	50.0	18.8	12.5	-	100.0(16)	3.3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부표 26〉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교육'에 대한 복지체감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잘함	잘하고 있는 편임	보통/ 그저 그렇	잘 못하는 편임	매우 잘못함	모름	계(수)	χ^2	평균	F(t)값
전체	0.2	17.5	29.7	38.9	10.6	3.1	100.0(481)		3.5	
거주지역										
도시	-	16.0	30.8	39.2	11.0	3.1	100.0(426)		3.5	(2.091)
농·어촌	1.8	29.1	21.8	36.4	7.3	3.6	100.0(55)		3.2	
성별										
남성	0.4	19.2	26.7	40.4	11.4	2.0	100.0(255)	6.509	3.4	(0.111)
여성	-	15.5	33.2	37.2	9.7	4.4	100.0(226)		3.4	
연령										
20~29세	-	15.6	29.9	41.6	10.4	2.6	100.0(77)		3.5	2.005
30~39세	-	14.1	34.4	36.7	14.1	0.8	100.0(128)		3.5	
40~49세	-	14.9	32.2	44.6	6.6	1.7	100.0(121)		3.4	
50~64세	-	18.0	28.8	36.0	12.6	4.5	100.0(111)		3.5	
65세 이상	2.3	36.4	11.4	31.8	6.8	11.4	100.0(44)		3.1	
결혼상태										
기혼	0.3	18.0	29.3	38.4	10.2	3.8	100.0(372)		3.4	(-0.713)
미혼	-	15.6	31.2	40.4	11.9	0.9	100.0(109)		3.5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	18.8	29.0	31.9	7.2	13.0	100.0(69)		3.3	2.000
고등학교	0.6	19.0	31.5	38.1	8.9	1.8	100.0(168)		3.4	
대학 이상	-	16.1	28.1	41.7	12.8	1.2	100.0(242)		3.5	
가구형태										
1인 가구	-	14.3	23.8	47.6	14.3	-	100.0(21)		3.6	1.321
부부가구	1.8	27.3	12.7	38.2	10.9	9.1	100.0(55)		3.3	
부부+자녀	-	14.1	34.1	38.2	10.9	2.6	100.0(340)		3.5	
기타가구	-	27.7	23.1	40.0	7.7	1.5	100.0(65)		3.3	
가구원수										
1인	-	14.3	23.8	47.6	14.3	-	100.0(21)		3.6	0.774
2인	1.5	26.9	14.9	37.3	11.9	7.5	100.0(67)		3.3	
3인 이상	-	16.0	32.6	38.7	10.2	2.5	100.0(393)		3.4	
취업여부										
취업	-	16.3	27.3	43.1	10.0	3.3	100.0(209)	3.657	3.5	(1.020)
비취업	0.4	18.4	31.6	35.7	11.0	2.9	100.0(272)		3.4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33.3	33.3	-	33.3	-	100.0(3)		3.3	0.424
100~200만원 미만	-	11.8	32.4	33.8	14.7	7.4	100.0(68)		3.6	
200~300만원 미만	0.6	17.4	29.8	40.4	7.5	4.3	100.0(161)		3.4	
300~400만원 미만	-	20.5	28.8	37.0	11.6	2.1	100.0(146)		3.4	
400~500만원 미만	-	17.2	27.6	43.7	11.5	-	100.0(87)		3.5	
500만원 이상	-	12.5	37.5	43.8	6.3	-	100.0(16)		3.4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부표 27〉 중산층가족의 특성별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에 대한 복지체감도

(단위: %, 명, 점)

특성	매우 잘함	잘하고 있는 편임	보통/ 그저 그렇	잘 못하는 편임	매우 잘못함	모름	계(수)	χ^2	평균	F(t)값
전체	0.8	39.5	34.7	18.1	3.5	3.3	100.0(481)		2.9	
거주지역										
도시	0.7	39.2	34.3	18.3	4.0	3.5	100.0(426)		2.9	(1.307)
농·어촌	1.8	41.8	38.2	16.4	-	1.8	100.0(55)		2.7	
성별										
남성	0.8	40.0	36.1	16.1	3.9	3.1	100.0(255)	1.837	2.8	(-0.439)
여성	0.9	38.9	33.2	20.4	3.1	3.5	100.0(226)		2.9	
연령										
20~29세	-	32.5	40.3	19.5	6.5	1.3	100.0(77)	2.564*	3.0	
30~39세	-	39.1	39.1	12.5	5.5	3.9	100.0(128)		2.8	
40~49세	0.8	33.1	36.4	23.1	2.5	4.1	100.0(121)		2.9	
50~64세	2.7	49.5	25.2	18.0	0.9	3.6	100.0(111)		2.6	
65세 이상	-	45.5	31.8	18.2	2.3	2.3	100.0(44)		2.8	
결혼상태										
기혼	1.1	41.1	33.3	18.0	2.4	4.0	100.0(372)		2.8	(-2.149)
미혼	-	33.9	39.4	18.3	7.3	0.9	100.0(109)		3.0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4	44.9	31.9	17.4	1.4	2.9	100.0(69)		2.7	0.904
고등학교	1.8	38.7	31.5	22.0	1.8	4.2	100.0(168)		2.8	
대학 이상	-	38.4	37.6	15.7	5.4	2.9	100.0(242)		2.9	
가구형태										
1인 가구	-	42.9	9.5	33.3	4.8	9.5	100.0(21)		3.0	1.076
부부가구	-	43.6	38.2	16.4	-	1.8	100.0(55)		2.7	
부부+자녀	1.2	38.8	37.1	15.9	3.8	3.2	100.0(340)		2.8	
기타가구	-	38.5	27.7	26.2	4.6	3.1	100.0(65)		3.0	
가구원수										
1인	-	42.9	9.5	33.3	4.8	9.5	100.0(21)		3.0	0.515
2인	-	44.8	32.8	19.4	1.5	1.5	100.0(67)		2.8	
3인 이상	1.0	38.4	36.4	17.0	3.8	3.3	100.0(393)		2.8	
취업여부										
취업	-	39.7	34.0	18.7	3.8	3.8	100.0(209)	3.574	2.9	(0.571)
비취업	1.5	39.3	35.3	17.6	3.3	2.9	100.0(272)		2.8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	33.3	33.3	-	-	33.3	100.0(3)	0.426	2.5	
100~200만원 미만	1.5	44.1	26.5	20.6	5.9	1.5	100.0(68)		2.9	
200~300만원 미만	0.6	36.6	38.5	16.1	3.7	4.3	100.0(161)		2.9	
300~400만원 미만	1.4	37.0	34.9	22.6	2.7	1.4	100.0(146)		2.9	
400~500만원 미만	-	46.0	34.5	13.8	3.4	2.3	100.0(87)		2.7	
500만원 이상	-	37.5	31.3	12.5	-	18.8	100.0(16)		2.7	

주: 1) 비취업에는 주부, 군인, 학생 등 무직자도 포함; 2) * $p<0.5$, ** $p<0.1$, *** $p<0.01$; 3)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부표 28〉 소득계층별 정부로부터 세금을 내는 만큼 복지혜택 수혜정도: 2007년도

(단위: %, 명, 점)

구분		저소득층 ¹⁾			중산층 ²⁾			고소득층 ³⁾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중산층이 내는 세금 수준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중산층이 내는 세금 수준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중산층이 내는 세금 수준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전 체	지나치게 높음	2.0	4.5	18.9	1.7	9.4	19.1	4.4	11.8	12.2
	꽤 높음	6.6	28.7	38.1	6.4	34.0	39.9	6.1	41.5	33.2
	적절한 편임	10.2	39.1	29.1	9.6	35.1	23.2	13.1	30.1	32.8
	꽤 낮음	41.6	11.9	4.5	46.1	12.4	5.9	45.4	8.7	4.8
	너무 지나치게 낮음	26.4	1.0	0.9	28.5	1.2	0.8	25.8	2.2	1.3
	모름	13.2	14.8	8.5	7.7	7.9	11.1	5.2	5.7	15.7
	계(수)	100.0 (683)	100.0 (683)	100.0 (683)	100.0 (764)	100.0 (764)	100.0 (764)	100.0 (229)	100.0 (229)	100.0 (229)
	χ ²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수준		27.038**	중산층이 내는 세금수준		56.289***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수준		25.812**
	평균	4.0	2.7	2.2	4.0	2.6	2.2	4.0	2.5	2.4
이 동	지나치게 높음	2.6	3.0	13.4	1.1	7.0	19.3	2.4	7.3	9.8
	꽤 높음	3.7	26.5	41.0	3.2	28.9	44.4	2.4	48.8	31.7
	적절한 편임	9.3	40.3	29.1	8.0	35.8	22.5	19.5	36.6	41.5
	꽤 낮음	44.0	13.8	5.2	48.1	19.3	4.3	41.5	7.3	9.8
	너무 지나치게 낮음	26.9	0.7	1.5	34.2	1.6	0.5	19.5	-	2.4
	모름	13.4	15.7	9.7	5.3	7.5	9.1	14.6	-	4.9
	계(수)	100.0 (268)	100.0 (268)	100.0 (268)	100.0 (187)	100.0 (187)	100.0 (41)	100.0 (41)	100.0 (41)	100.0 (41)
	χ ²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수준			중산층이 내는 세금수준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수준		
	평균	4.0	2.8	2.3	4.2	2.8	2.2	4.1	2.4	2.6
비 이 용	지나치게 높음	1.7	5.5	22.4	1.9	10.2	19.1	4.8	12.8	12.8
	꽤 높음	8.4	30.1	36.1	7.5	35.7	38.5	6.9	39.9	33.5
	적절한 편임	10.8	38.3	29.2	10.1	34.8	23.4	11.7	28.7	30.9
	꽤 낮음	40.0	36.7	4.1	45.4	10.2	6.4	46.3	9.0	3.7
	너무 지나치게 낮음	26.0	1.2	0.5	26.7	1.0	0.9	27.1	2.7	1.1
	모름	13.0	14.2	7.7	8.5	8.0	11.8	5.5	6.9	18.1
	계(수)	100.0 (415)	100.0 (415)	100.0 (415)	100.0 (577)	100.0 (577)	100.0 (577)	100.0 (188)	100.0 (188)	100.0 (188)
	χ ²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수준		23.273	중산층이 내는 세금수준		31.715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수준		28.420
	평균	3.9	2.7	2.2	4.0	2.6	2.2	4.0	2.5	2.4

주: 1) 저소득층이 생각하는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저소득층이 생각하는 중산층이 내는 세금 수준, 저소득층이 생각하는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2) 중산층이 생각하는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중산층이 생각하는 중산층이 내는 세금 수준, 중산층이 생각하는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3) 고소득층이 생각하는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고소득층이 생각하는 중산층이 내는 세금 수준, 고소득층이 생각하는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 4) 지나치게 높음, 꽤 높음, 적절한 편임, 꽤 낮음, 너무 지나치게 낮음 등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세금을 내는 수준이 낮은 것을 말한다.

자료: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부표 29〉 소득계층별 정부로부터 세금을 내는 만큼 복지혜택 수혜정도: 2011년도

(단위: %, 명, 점)

구분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이용	비이용	소계	이용	비이용	소계	이용	비이용	소계
전혀 그렇지 않음	16.2	43.6	25.0	25.0	33.1	29.5	22.4	8.4	30.9
그렇지 않음	35.9	32.7	34.9	39.2	32.0	35.1	37.8	42.1	40.1
보통	26.5	20.0	24.4	25.5	27.5	26.6	25.8	16.8	19.8
그럼	18.8	3.6	14.0	9.9	7.1	8.3	13.0	7.5	9.3
매우 그럼	2.6	-	1.7	0.5	0.4	0.4	1.0	-	-
계수	100.0 (117)	100.0 (55)	100.0 (172)	100.0 (212)	100.0 (269)	100.0 (481)	100.0 (55)	100.0 (107)	100.0 (162)
평균	2.6	1.8	2.3	2.2	2.1	2.2	2.3	2.1	2.0
F값	3.092*								

주: 1) 산재보험을 이용한 적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2) * $p<0.5$, ** $p<.01$, *** $p<.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전화조사결과임.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홍보팀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303)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 2011년	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9,000원
	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자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미정
	11-03	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6,000원
	11-04	약제비 자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미아	5,000원
	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야채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7,000원
	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농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7,000원
	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6,000원
	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6,000원
	11-09	인구집단 의료이용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김동진	6,000원
	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방안	황나미	미정
	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재고방안	신영석	7,000원
	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7,000원
	11-13	사회보장제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5,000원
	11-14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미정
	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6,000원
	비발간	해외사회보장제도 정보서비스 제공	강유구	미정
	11-16-1	선진국의 아동사태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미정
	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6,000원
	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 수준에 관한 연구	고경환	6,000원
	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8,000원
	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7,000원
	11-17-4	2011 보건복지 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10,000원
	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미정
	11-17-6	사회복지재정 추계모형개발	원종욱	8,000원
	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5,000원
	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 정책 개선 방안	이태진	6,000원
	11-19	한국인의 복지외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7,000원
	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6,000원
	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10,000원
	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6,000원
	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7,000원
	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8,000원
비발간	11-24	2011 기초보장평가 및 정책대안 모색	이태진	미정
	11-24	2011 기초보장모니터링 및 현장보고	최현수	미정
	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미정
	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제검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12,000원

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10,000원
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5,000원
11-29	장애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7,000원
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6,000원
11-31	사회복지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제공 실태 및 운영구조 연구	강혜규	미정
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분석	이삼식	7,000원
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5,000원
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6,000원
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6,000원
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11,000원
11-37-1	출산율 예측모형 개발	이삼식	6,000원
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 (외부)	미정
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 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7,000원
11-37-4	소득계층별 출산 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6,000원
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 (외부)	미정
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7,000원
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6,000원
11-37-8	외국의 이민정책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 (외부)	미정
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정희	9,000원
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모색: OECD 국가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소정	5,000원
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5,000원
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8,000원
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1)	오영희	6,000원
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미정
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8,000원
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판	이삼식	5,000원
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정희	7,000원
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시각지대 분석	이소정	8,000원
11-37-19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10,000원
비발간	국제심포지움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사회연구관련 학술대회	이삼식	미정
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유지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홍 (외부)	미정
11-37-21	북한연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	이삼식	미정
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방안	(미정) (외부)	미정
11-37-23	저출산고령화대응영세자영업자생활실태연구	박종서	미정
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8,000원
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10,000원
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 지원	김동진	11,000원
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의 정책동향	최은진	10,000원

	11-39-4	건강영향평가 DB구축	김동진	10,000원
	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9,000원
	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8,000원
	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8,000원
	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홍석표	5,000원
	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2차년도)	김승권	11,000원
	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김미숙	13,000원
	11-44-1	한국의 복지실태	남상호	16,000원
	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옥	8,000원
	비발간	한국의 사회복지분석	남상호	미정
	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7,000원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정책방향 모색	박실바아	미정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분석	조재국	미정
	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7,000원
	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6,000원
■ 2010년	10-0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상영	5,000원
	10-02	화개난치성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방안	박실바아	5,000원
	10-03	해외의료시장 개척의 투자효과 분석과 중장기 발전 전략	조재국	7,000원
	10-04	식품안전분야의 사회적 위험 요인 중장기 관리전략 수립	정기혜	6,000원
	10-05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김혜련	7,000원
	10-06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박노성	7,000원
	10-07	식품위해물질 모니터링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김정선	5,000원
	10-08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신영식	7,000원
	10-09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신현웅	5,000원
	10-10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환경 분석을 위한 주요 해외금융시장 비교 연구	원종욱	5,000원
	10-11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이태진	5,000원
	10-12	한국 제3세대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노대명	8,000원
	10-13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김태완	7,000원
	10-14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 -기초보장제도 시행 10년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원
	10-15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노대명	7,000원
	10-16	2010년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8,000원
	10-17	OECD 국가 빈곤정책 동향분석: 복지자본주의 체제 변화에 따른 공공부조제도의 조율성 분석	여유진	7,000원
	10-18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최현수	8,000원
	10-19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김미숙	6,000원
	10-20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최저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상용	8,000원
	10-21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강혜규	8,000원
	10-22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김성희	8,000원
	10-23	민간 복지지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박세경	7,000원
	10-24	자살의 원인과 대책연구: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강은정	5,000원
	10-25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개발	이윤경	7,000원
	10-26	보건복지통계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27	보건복지통계 생산 표준화 방안 연구: 메타정보관리를 중심으로	손창균	6,000원
	10-28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0	장영식	10,000원
	10-29	지역별 보건통계 생산방안	도세록	6,000원

10-30-1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이삼식	17,000원
10-30-2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수준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이삼식	5,000원
10-30-3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변용찬	5,000원
10-30-4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김나영	6,000원
10-30-5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가치와 출산율 관계 연구	김은정	5,000원
10-30-6	저출산의 가시경제적 효과분석	남상호	6,000원
10-30-7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은지 (외부)	6,000원
10-30-8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신윤정	6,000원
10-30-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개편방안	윤석명	7,000원
10-30-10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장영식	6,000원
10-30-11	임양실태와 정책방안	김유경	10,000원
10-30-12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최정수	6,000원
10-30-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황나미	6,000원
10-30-14	저출산·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염지혜	5,000원
10-30-15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이삼식	5,000원
10-30-16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30-17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정경희	6,000원
10-30-18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정경희	10,000원
10-30-19	에비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원
10-30-20	신노년층(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 분석과 정책과제	신우덕	5,000원
10-30-21	신노년층의 소비행태 특성과 고령친화산업적 함의	김수봉	7,000원
10-31-1	2010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8,000원
10-31-2	2010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9,000원
10-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4차년도): DB의 활용성 측면을 중심으로	고경환	7,000원
10-31-4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자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최성은	6,000원
10-31-5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고경환	6,000원
10-31-6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7,000원
10-31-7	건강보험 재정평가	신영석	5,000원
10-32-1-1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1권	김동진	8,000원
10-32-1-2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2권	김동진	11,000원
10-32-2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서미경	5,000원
10-32-3	건강마을의 건강영향평가	최은진	5,000원
10-33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3년차)	오영호	9,000원
10-34	보건사회 기후변화 모니터링센터 운영 (1년차)	신호성	14,000원
10-35	취약위험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1년차)	김승권	10,000원
10-36	아시아 복지국가 자료 및 전략센터 구축 (1년차):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홍석표	8,000원
10-37-1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강신욱	14,000원
10-37-2	2009년 한국복지패널 삼층분석 보고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김미곤	6,000원
10-38-1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Ⅱ)	정영호	11,000원
10-38-2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Ⅰ)	정영호	7,000원
10-39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년차)	정영철	7,000원
10-40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년차)	이연희	5,000원